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42호

2026. 4. 16.(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규 칙]

제4763호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
제4764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2
제4765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31
제4766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35
제4767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6
제476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9
제476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2

[행정예고]

제2026-167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위험·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102

◈ 고 시

제2026-181호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115
제2026-190호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 118
제2026-193호 중랑구 묵동 16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9
제2026-194호 중랑구 묵동 165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130
제2026-195호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31
제2026-196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 156
제2026-19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 158
제2026-19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고시 ····· 161
제2026-19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62
제2026-200호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봄꽃열차 운행 지정고시 ····· 164
제2026-20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및 지정 고시 ('24년 모아타운 수립(선정)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 166

제2026-202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 170
제2026-203호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9
제2026-204호 신이문2역세권(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52
제2026-207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74
제2026-20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 284
제2026-2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87
제2026-21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89
제2026-211호 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91
제2026-213호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 320
제2026-214호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 323
제2026-215호 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26

◈ 공 고

제2026-1011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 362
제2026-115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 366
제2026-117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81
제2026-119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82
제2026-1198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83
제2026-1211호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 385
제2026-121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391
제2026-1214호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심의 결과 공고 ····· 393
제2026-1218호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심의 결과 공고 ····· 394
제2026-1219호 2026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395
제2026-122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01

제2026-1230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05
제2026-123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406
제2026-124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 407
제2026-1249호 체납처분비 공시송달 ····· 431
제2026-1250호 지방세 공시송달 ····· 433
제2026-125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435
제2026-1261호 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 450
제2026-1263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454
제2026-1274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 공고 ····· 455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6-1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59

◈ 구 고 시

제2026-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광진구) ····· 463
제2026-54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성북구) ····· 467
제2026-48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 469
제2026-49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구) ····· 471

◈ 구 공 고

제2026-562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종로구) ····· 473
제2026-572호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한양대역세권(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성동구) ····· 475
제2026-691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성북구) ····· 487
제2026-6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재열람공고 (강북구) ····· 488
제2026-634호 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갱신(연장)을 위한 의견 청취 열람공고 (강북구) ····· 491
제2026-658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안) 공람공고 (강북구) ····· 494

제2026-669호 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안) 공람공고 (강북구) ····· 506
제2026-629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도봉구) ····· 511
제2026-63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마포구) ···· 512
제2026-781호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주민공람 재공람 공고(동작구) ····· 515
제2026-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남구) ····· 537
제2026-733호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송파구) ····· 539

◈ 사업소고시

제2026-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3
제2026-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3
제2026-1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4
제2026-1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4
제2026-1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5
제2026-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6
제2026-1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7
제2026-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7
제2026-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548

◈ 사업소공고

제2026-16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549

◈ 기 타

제2026-11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52
제2026-11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53
제2026-11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54
제2026-1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55
제2026-1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556

◈ 정 정

제2026-206호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557

자치법규 등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3호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본 시행규칙에 시설 운영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에 제약이 발생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조항 삭제(제3조)

- 본 조항을 삭제하여 시설의 유연한 관리 추진
- 구체적 운영시간은 「서울갤러리 대관 운영규정」에 포함해 탄력 운영하고자 함

〔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신청서

1. 대관개요

신청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주 소	
	대표자명	
신 청 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행사 개요	행사명	
	주관/주최/후원	
	주요 일정	
	세부 내용	
대관 내용	일시 (준비/철수 시간 포함)	
	장소	
	참석인원	
	장비 반입 및 시설 설치	▶ 장비규모, 운반계획, 일정 등
	요청 사항	▶ 사용 요청품목(서울갤러리 홈페이지 대관안내 참고) - ▶ 기타 협조요청 사항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관허가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서

대관신청인	기관(단체)명	
	주 소	
행 사 명		
대 관 장 소		
대 관 일 시		
대 관 료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계약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대관계약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3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1. 신청자

신청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주 소	
	대표자명	
신 청 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2. 변경신청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행 사 명		
대관공간		
대관일시		
행사내용		
대 관 료		
추가 변경사항		

3. 변경신청 사유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대관허가 취소신청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 취소신청서

1. 신청자

신청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주 소	
	대표자명	
신 청 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2. 취소신청 내용

행 사 명	
대관공간	
대관일시	
행사내용	

3. 취소신청 사유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내용을 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연장신청서

서울갤러리 대관허가 연장신청서

※ 연장신청의 경우, 공간사용 현황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신청기관 (단체)	기관(단체)명	
	주 소	
	대표자명	
신 청 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2. 연장신청 내용

행 사 명	
대관공간	
대관일시	▶ 기존 : ▶ 연장 :
행사내용	
추가사항	

3. 연장신청 사유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 시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4호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업무 중요도 구분에 따른 전결권 조정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 및 체계 정비(별표2)

나. 「노동조합」 업무 관련 전결사항 신설(별표2)

[별표 2]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분담자	5급 총괄책임자					
1. 정원조정	1. 실·국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직렬·직급 조정제외)	기안			○			
	2. 실·국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조직담당관
	가. 정원 증원요구	기안			○			
	나. 직급 상향조정	기안			○			
	다. 직급·직렬 간 상계조정	기안			○			
2. 비정규인력 정수관리	1. 비정규인력 정수책정 승인 요구	기안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 사무소관 조정요구	기안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조직담당관
	가. 실·본부·국 간 직제개정 요구		기안			○		
	나. 실·본부·국 내 직제개정 요구	기안			○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유연근무 제외)							
	가. 3급이상 실·본부·국장	기안		○				성과관리 담당사무관
	나. 3급 보좌 기관	기안		○				
	다. 4급	기안		○				
	라. 5급이하	기안		○				
	2. 유연근무							
	가. 3급이상 실·본부·국장	기안		○				성과관리 담당사무관
	나. 3급 보좌 기관	기안		○				
	다. 4급	기안		○				
	라. 5급	기안		○				
	마. 6급이하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3.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도시외교담당관, 인력개발과장
	가. 3급이상		기안			○		
	나. 4급이하	기안			○			
	4.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기안		○				
	5.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기안	○					
	6.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기안		○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기안			○			
	2. 실·국내 전보	기안			○			
	3. 교육파견 명령	기안			○			
	4. 호봉승급획정·정정	기안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6.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 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나. 5억원 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3. 예산의 이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기안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기안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기안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재정담당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9.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요구	기안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기안		○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기안		○				
8. 지방채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기안			○			
	3. 원리금 상환	기안		○				
9. 기금운용 계획 변경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기안		○				
10. 규제개혁	1.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창의규제담당관
	가. 조례·규칙 제·개정시		기안			○		
	나. 훈령·예규 제·개정시	기안			○			
11.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3. 공사착공 명령	기안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기안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기안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기안		○				
	8. 도급공사의 중지·재개 결정 및 준공기간의 연기결정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기안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기안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기안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기안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2. 설계·공사 감리용역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용역착공 명령	기안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	기안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안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기안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 단속	기안		○				
	라. 감리단 이력승인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방침)	기안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기안		○				
13. 물건의 제조·구매·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예산담당관
	2. 물품제조 및 용역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물품구매·임대차 등							재무과장, 계약담당사무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2 참조)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14. 재산 및 채권관리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공유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1) 건당 10,000㎡ 이상			기안			○	
	(2) 건당1,650㎡ 이상 10,000㎡ 미만		기안			○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기안			○			
	(4) 건당 330㎡ 이하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기안		○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사용료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기안		○				재산관리과장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재산관리과장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기안		○				재산관리과장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기안		○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기안			○			재무과장
	나. 건당 1억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기안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기안		○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기안			○			재무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3. 분담금 감액 결정	기안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1)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기안			○		
	2) 10억원 미만 또는 계속사업	기안			○			
	(2) 자치구	기안			○			
	나. 경미한 계획변경	기안			○			
	다. 지급결정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3,000만원이상	기안			○			
	(2) 3,000만원미만	기안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기안		○				
16. 보 상	1. 보상업무 계획	기안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기안			○			
	나. 1억원미만	기안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기안		○				
	4. 보상금 재심결정	기안		○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기안		○				
	6. 보상금 재결신청	기안		○				
	7. 보상금 사건확인	기안		○				
	8. 보상금 지급	기안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000만원미만	기안		○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기안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기안		○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분담자	5급총괄책임자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기안		○				
	2. 특별표창 계획수립		기안			○		인사과장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기안			○			
20. 의회업무	1.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기안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21. 행정심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보충서면 등 제출	기안		○				
22. 민사, 행정 등 소송	1.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법률지원담당관
	가. 중요 소송		기안			○		
	나. 일반 소송	기안			○			
	다. 집행정지	기안		○				
	2.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기안		○				
	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기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창의규제담당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	기안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기안		○				
	7.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법무담당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및 폐지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안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기안		○				법무담당관
	9. 고시·공고문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24.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기안		○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기안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기안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기안		○				
	5. 정기보고	기안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기안		○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기안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기안		○				
25.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및 위원(제)구성에 관한 방침							조직담당관
	가.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			기안			○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기안			○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 등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기안		○				
26. 회 의	1. 회의소집							
	가. 자치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나. 그 밖의 직원회의	기안		○				
27. 민원 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진행 상황, 처리결과, 처리기간 연장 등의 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사항							
	가.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나.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의뢰	기안		○				
28. 지방공사 지도 감독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다. 기구조정							
	(1) 부급이상 기구	기안			○			
	라. 정원조정	기안			○			
	마. 임원의 임면승인			기안			○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안			○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조직담당관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조직담당관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2. 실행계획 수립·집행	기안			○			
30. 자치구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1.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기안			○		자치행정과장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기안			○			
	2. 시정 주요정책(혁신, 청년, 일자리, 복지, 문화, 안전, 도시공간, 주택) 중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							젠더자문관
32. 의전행사	1. 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과장
	가. 주 요 행 사	기안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기안		○				
33.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기안			○			
	2. 실·국간의 사업협조	기안			○			
	3.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구,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시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기안		○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기안			○	
	나. 4급 부여자		기안			○		
	다. 5급이하 부여자	기안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기안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기안	○					
	10. 물품의 반납	기안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기안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기안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 (중앙부처, 타 기관)	기안		○				
	16. 소속직원 교육	기안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기안	○					
	19. 사망조위금 신청	○						
34. 의료보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35. 재난관리대상 시설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기안		○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기안		○				
36.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기안		○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기안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기안	○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기안		○				
37.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안			○			
	나. 정책자료집 발간	기안		○				
38. 행정 정보공개 (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39. 행정 정보공개 (원문공개)	1. 국장급이상 결재문서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 담당사무관
40.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기안		○				
	3.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여부 의견 제출	기안		○				
	4. 기록물 인계·인수	기안		○				
41.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 능직	기안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기안	○					
42. 공모전 운영	1. 공모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공정경제정책 담당사무관
	2. 공모전 심사, 결과보고	기안		○				
	3. 그 밖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43.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분쟁 및 교섭 대응							노동정책과, 법률지원담당관
	가. 단체교섭 요구 응낙 여부 결정	기안			○			
	나. 지방 · 중앙노동위원회 답변서 승인	기안		○				
	다. 교섭위원 위임 및 위임장 발급	기안		○				
	라. 노동위원회 중재 · 조정안 수용 여부	기안			○			
	마. 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등 분쟁 대응	기안			○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5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당직의 편성)”을 “(당직의 편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위치하여”를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로,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의 기능·성격, 기관의 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주”를 “4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9조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을 “당직근무 수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해야 한다.

⑤ 시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정부의 당직 개편을 위해 정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맞춰 주요 개선사항을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편성 최소인원 축소(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제4조제4항)

다. 소속기관 당직 현황 통보의무 신설(제4조제6항)

라. 당직 미시행 조건 완화(제4조의3)

마. 당직근무자의 방범 · 방호 · 방화 기타 보안상태 순찰 · 점검 의무 조정(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바.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 ·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제13조제1항 및 제5항)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보안점검표

점검일: 년 월 일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책상 위 서류 상태, 캐비닛·책상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상태	○	○
화기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	○	○
문단속 상태	○	○

특이 사항

※ 점검 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란의 ○표시에 √표시를 합니다.

점검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80g/㎡)]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6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17호 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별표18”을 “별표 18”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23조제2항”을 “제2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을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급”을 “6급”으로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별표 3, 별표 6,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5,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의 가점의 적용례) 제45조제5항, 별표 2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등의 적용례) 별표 3, 별표 6, 별표 9의2,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직공무원 가점대상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1항,

별표 23에 따라 승진임용 시에 가산점을 반영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자격증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5항에 따른 근무경력이 있는 5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 서류전형 기준을 강화하고, 연구직 응시자격과 관련한 전공명을 현행화 하는 한편, 실무자 중심의 가점체계 운영을 위해 가점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인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서류전형 위원 구성 방식 개선(제14조제1항)

-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타 기관 공무원, 민간인)로 위촉 의무화하여 채용 공정성 강화

나. 신규채용 자격증 가산점 정비(별표 6)

- 자격증 소지가 필수인 직렬(사회복지직, 의료기술직)을 임용시험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과의 합치성 확보

다. 연구직 응시자격 전공분야 현행화 및 확대(별표 3)

- 학예연구 직렬 전공 명칭 변경(문화재관리학 → 국가유산관리학) 및 보건연구 직렬 전공과목(유전공학, 생명정보학) 추가

라. 가점대상 직렬 및 자격증 신설(별표 23)

- 방재안전 직렬을 가점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자격증 가산점 기준 마련

마.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범위 조정(제45조)

- 가산점 부여 대상 직급을 현행 '일반직 5급 이하'에서 '일반직 6급 이하'로 하향 조정

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현행화(별표 3, 별표 6,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5, 별표 23)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맞춰 통합·변경되거나 폐지된 자격증 명칭 일괄 정비

[별표 3]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

(제18조 제5항 및 제22조 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 · 식생활 · 주생활 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 역사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 직류 \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해양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 직렬	직류	연구관 · 연구사
해양수산연구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주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문 또는 관련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 사 :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조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산업기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기 능 사 :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기 능 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 기 능 사 : 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 안전	방재 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 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기계분야), 조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기계시설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	

		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 판금제관 기사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설비보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자동화설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전기시설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 : 전기, 승강기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 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 능 장 : 염색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화 학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촌지도	농 업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촌지도	원 예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농촌지도	잠 업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농촌지도	임 업 조 경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농촌지도	수 의 가축위생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어촌지도	해양환경 수산자원 어 촌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야 금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 사 : 식품안전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조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제조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정 비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능 장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 기능사 : 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기 사: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산업기사: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기능사 :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기계시설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 판금제관 기사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설비보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금형, 설비보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 응용밀링,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전기시설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 : 전기, 승강기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 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원자로조종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위생사(8)	위생사(5)	위생사(2)	위생사
		영양사(12)	영양사(8)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안경사(12)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4) 언어재활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안경사(8)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언어재활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안경사(5)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2) 언어재활사1급 언어재활사2급(3)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안경사(2)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언어재활사2급(2)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언어재활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약사(3)	약사		
	약 제	한약사(7)	한약사(3)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기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관사(10)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1)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014.7.31.>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9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0]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 계급 /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 계급 /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계급 / 직렬 /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식 어 로 수산물 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	응급구조사2급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보조기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5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와 가점(제45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사회복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행 정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 통신설비, 가스)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선체, 조선의장,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설비보전, 궤도장비정비)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교통, 조선)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능장(전기, 전자)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자, 컴퓨터시스템, 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에너지관리)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안전, 품질경영, 화학분석)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농 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시설원예)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산림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수 의	수의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안전,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임상심리사 1급, 1급 응급구조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축산, 품질경영) 임상심리사 2급, 2급 응급구조사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2급 응급구조사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전문간호사, 조산사, 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1급)	사회복지사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2급)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방재안전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안전,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시설관리 (기계시설)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품질관리, 소방, 금형, 공장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배관, 금형, 판금제관)	산업기사(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용접, 설비보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설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에너지관리)	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자동화설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정밀측정) 기능사(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배관,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정밀측정)
시설관리(전기시설)	기술사(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발송배전)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전기, 승강기)
간호조무		간호사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전자)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비, 방송통신, 전자)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가스, 위험물)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일반기계, 항로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조경, 식품)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산림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축산,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1급, 1급 응급구조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2급 응급구조사

주 :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직급별로 2년 이상 해당직무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해당직무는 "여성가족실, 복지실, 시민건강국, 시립병원"의 업무관할로 한정한다.

나. 연구사

직렬 \ 계급	연 구 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자, 컴퓨터시스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공, 섬유, 의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안전, 화학분석)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안전,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및지반,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산림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안전,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섬유, 의류,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1·2급

2. 삭제 <2014.7.31.>

3.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 정 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주: 위 표의 등급별 가점 평정점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며, 기존 취득한 평정점도 위 표에 따라 변경된 평정점으로 부여한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7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산교부금 배분 시 적용하는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 및 자치구 간 합리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지표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임시세외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변경(별표 1)

나. 평가지표 단서조항에 기재된 세출예산 목-세목코드 삭제(별표1)

다. 세수오차비율 산정 공식 가중치 비율 조정(별표 1)

〔별표 1〕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비율		$\frac{\{수입-(지출+순융자)\}}{(지출+순융자)} \times 100(\%)$
	통합유동부채비율		$\frac{유동부채}{유동자산} \times 100(\%)$
재정효율성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수입 비율	$\frac{전년도\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전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지방세수입 증감률	$\frac{전년도\ 지방세수입 - 전전년도\ 지방세수입}{전전년도\ 지방세수입} \times 100(\%)$
		세외수입 비율	$\frac{전년도\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전년도\ 세입결산액} \times 100(\%)$
		세외수입 증감률	$\frac{전년도\ 세외수입 - 전전년도\ 세외수입}{전전년도\ 세외수입} \times 10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 비율	$\frac{지방보조금결산액}{세출결산액} \times 100(\%)$
		지방보조금 증감률	$\frac{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 전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전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times 100(\%)$ ※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frac{출자\cdot출연\cdot전출금\ 결산액}{세출결산액} \times 100(\%)$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frac{(전년도\ 출자\cdot출연\cdot전출금\ 결산액 - 전전년도\ 출자\cdot출연\cdot전출금\ 결산액)}{전전년도\ 출자\cdot출연\cdot전출금\ 결산액} \times 100(\%)$ ※ 출자·출연·전출금 : 출연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출자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비율	$\frac{자체경비\ 결산액}{자체세입\ 결산액} \times 100(\%)$ ※ 자체경비 :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 일반운영비 중 공립대학운영비 제외 ※ 의회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만 해당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해당
		자체경비비율 증감률	$\frac{전년도\ 자체경비 - 전전년도\ 자체경비}{전전년도\ 자체경비} \times 100(\%)$
재정계획성	세수오차비율		$\frac{당초예산액}{세입결산액} \times 60(\%) + \frac{최종예산액}{세입결산액} \times 40(\%)$
	이불용액비율		$\frac{이불용액}{예산현액} \times 100(\%)$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명부 내 세대주 성명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토지등소유자명부 내 세대주 성명 삭제(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토 지 등 소 유 자 명 부

(정비사업 명칭 :)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 리 내 역								동의여부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면적(㎡)	편입면적(㎡)	공유여부	동수	허가유무	공유여부			

※ 공동주택의 경우 소재지에 호수를 기재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내역 증빙서류(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무허가건축물확인원 등) 각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울특별시규칙 제476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한강공원 내 피클볼장 이용 기준을 신설하고, 장기간 미개정된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운영·미설치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기타 선박’, ‘야외원형극장’ 및 타 요금제 적용 가능한 ‘야외무대 사용’ 조항 삭제(별표 1 제1호 가, 제5호)

나. 민간대관 활성화를 위한 ‘여의도 물빛무대’ 요금체계 단순화(별표 1 제1호 나)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이용료 부과 근거의 시행규칙 반영(별표 1 제1호 다)

라. ‘테니스장’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신규 시설인 ‘피클볼장’을 추가(별표 1 제2호)

마. ‘강변물놀이장’을 ‘물놀이장’으로 문구를 수정(별표 1 제3호)

바. ‘체육행사’에 대한 장소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별표 1 제8호)

사.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 선순위자에 대한 주차장 감면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아. 조문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별표 2 제2호)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가. 선박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3,000원 5,000원	00:00 ~ 24:00
	1회 대여(운항)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 인(19세 이상) – 4시간 이내 운항(70명 기준) – 3시간 이내 운항(70명 기준) – 2시간 이내 운항(70명 기준) 정박대여(4시간 이내)	 210,000원 700,000원 525,000원 350,000원 350,000원	

나. 여의도 물빛무대

1) 무대이용료

문화공연	기타 대관	기준
750,000원 (4시간)	1,500,000원 (4시간)	1회사용
※ 무대 설치준비 및 철수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적용 <신규>		

2) 부속시설 이용료

구 분	내 용
시스템사용료 (조명, 음향, LED 등 일체 시스템 포함)	100만원

다. 서울수상레포츠센터<신설>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4">기 준 및 이 용 료</th><th>비 고</th></tr>
<tr><td rowspan="14">서울수상레포츠센터</td><td colspan="2" rowspan="2">수상계류장</td><td colspan="2">일간이용료</td><td colspan="2">월간이용료</td><td rowspan="14">1.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해당 이용료를 공고한다.

2.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료는 당일 1인 1회(2시간 이내) 기준이며, 교육 프로그램(10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의 이용료는 1인 기준이며 교육 횟수 및 시간 등은 따로 정한다.

3.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당일 왕복 기준의 금액이다. 다만, 계류장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경사면(슬립웨이) 이용료는 면제한다.

4. 그 밖에 규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유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이용료에 준하여 부과한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풍수해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설물 정비 등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각종 행사(국제대회, 축제, 공연 등)가 개최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td></tr>
<tr><td colspan="2">7,000~
35,000원</td><td colspan="2">131,000~
460,000원</td></tr>
<tr><td colspan="2" rowspan="2">육상계류장</td><td colspan="2">일간이용료</td><td colspan="2">월간이용료</td></tr>
<tr><td colspan="2">6,000~
18,000원</td><td colspan="2">119,000~
302,000원</td></tr>
<tr><td colspan="2" rowspan="3">장비보관함</td><td>1일</td><td colspan="3">4,000~10,000원</td></tr>
<tr><td>1개월</td><td colspan="3">50,000~110,000원</td></tr>
<tr><td>1년</td><td colspan="3">280,000~420,000원</td></tr>
<tr><td colspan="2">수상레포츠
프로그램</td><td>어린이
(6~12세)</td><td>청소년
(13~18세)</td><td colspan="2">성인
(19세 이상)</td></tr>
<tr><td rowspan="2">체험</td><td>무동력</td><td>8,000~
30,000원</td><td>10,000~
36,000원</td><td colspan="2">10,000~
48,000원</td></tr>
<tr><td>동력</td><td colspan="4">20,000~50,000원</td></tr>
<tr><td>교육</td><td>무동력</td><td colspan="4">40,000~100,000원</td></tr>
<tr><td colspan="2">경사면
(슬립웨이)</td><td>1일</td><td colspan="3">6,000~20,000원</td></tr>
</table>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조명시설이 설치된 경우 야간 사용 시)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2,000원 (25,000원) 225,000원	◦동절기 (1,2,3,10,11,12월) :07:00~17:00 ◦하절기 (4월~9월) :06:00~20:00 ※ 조명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이용시간은 동절기 07:00~21:00, 하절기 06:00~22:00로 한다.
어 린 이 야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8,000원 120,000원	
성인야구장	면당 1회 3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80,000원 (광나루 야구장은 평일 20,000원, 주말 및 공휴일 26,000원)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4,000원 75,000원	
배드민턴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2,000원 30,000원	
테니스장 피클볼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 주중주간 - 주중 야간시간 및 조조시간(조명 사용 시) - 토요일·공휴일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 이내 사용)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 주중 - 토요일·공휴일	 8,000원 10,400원 10,400원 120,000원 90,000원 117,000원	06:00~22:00 ※ 주·야간 구분은 절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1개월	5,000원 5,000원 40,000원	09:00~19:00
축구교육장	1개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60,000원	09:00~18:00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어린이(6~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 이상) ·1회	1,000원 1,500원 2,000원	09:00~19:00
파크골프장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1회당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회당 성 인(19세 이상) 1회당	2,000원 3,000원 4,000원	06:00~20:00 ※ 절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원	06:00~20:00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캠핑장	1박 기준 · 1면당(일반 2인용) · 1면당(일반 4인용) · 1면당(프리 4인용)	15,000원 20,000원 15,000원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장	1박 기준 · 1면당	100,000원	15:00 ~ 다음 날 11:00
	캠프시설	바비큐 · 1면당(4인용) · 1면당(8인용) · 1면당(12인용)	10,000원 15,000원 20,000원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캠프파이어 · 1면당(8인용) · 1면당(15인용)	5,000원 10,000원	1차 17:30~20:00 2차 20:30~23:00
물놀이장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1,000원 2,000원 3,000원	09:00~20:00
수 영 장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3,000원 4,000원 5,000원	09:00~22:00

4. 학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기획전시실	기본(5일 이내) 1일 추가 시	200,000원 25,000원	09:00~18:00
강 연 홀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0,000원 100,000원	09:00~18:00

5. 시민편익시설<삭제>

6. 유희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다인승(3~4인) · 전기동력 · 기타(유아동승, MTB 등) 추가요금(10분당) · 1인승 · 2인승 · 다인승(3~4인) · 전기동력 · 기타(유아동승, MTB 등)	3,300원 6,600원 20,000원 9,000원 5,000원 500원 1,000원 3,300원 1,500원 1,000원	◦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 단체 독점 사용	50,000원	09:00~18:00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 분	기준 및 이용료				이용시간	비 고
주차요금	1회 주차(1구획)		1일 최대	월정기권	06시 ~24시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여의도샛강쪽 (4, 5주차장) 80,000원 한강본류호안쪽 (1, 2, 3주차장) 100,000원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양화·망원·난지·강서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8. 그 밖의 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1회당 - 주 간 (08:00~18:00) - 야 간 (18:00~다음 날 08:00)	130,000원 260,000원	00:00~24:00
녹 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26,000원 13,000원	00:00~24:00
잔디밭행사	100명 이상 독점 모임행사는 2시간 기준	30원/1㎡당	00:00~24:00
도로점용 행 사	5㎞당(1일 이내) 행사집결지에 대하여는 잔디밭행사는 별도로 징수함	50,000원	00:00~24:00
입 장 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상업성 행사 (체육행사, 콘서트·전시회 및 기타공연)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	
	비 고 : 여의도 물빛무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10%이내를 징수한다.		
서울함공원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 성 인(19세 이상) 단 체(20인 이상) - 어린이(6~12세) - 청소년(13~18세) - 성 인(19세 이상)	1,000원 2,000원 3,000원 700원 1,400원 2,000원	○하절기(3~10월) - 평일 10:00~19:00 - 토요일, 공휴일 10:00~20:00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평일 10:00~17:00 - 토요일, 공휴일 10:00~18:00

[별표 2]

이용료 감면범위(제8조 관련)

1. 별표 1의 이용시설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나. 한강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 이내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다만,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감면 시설 및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50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 가족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다만, 별표 1 제2호 체육시설에 한함)
사.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50
아. 6세 미만의 영유아(증빙자료 소지한 자에 한함)	50
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50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관련 서류를 제시한 사람	50
카.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전·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50 (다만, 별표 1 제6호 유희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인 이하(방학기간 제외) ※ 신청서(표준서식 본부 홈페이지 참조) 승인자에 한함	100 (다만, 별표 1 제6호 유희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이용자 ※ 신청서(표준서식 본부 홈페이지 참조) 승인자에 한함	50 (다만, 별표 1 제6호 유희시설, 제7호 공원편의시설(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주차장, 여의도 물빛무대, 한강르네상스호 대여,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감면규정은 별도로 정함
※ 별표 1의 이용시설 중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항목 1개만 적용함
※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은 팀 구성원 50% 이상의 인원이 감면대상에 해당할 시 적용함
※ 감면은 현장 감면에 한함 (추후 감면 불가)

2. 주차장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차량	100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발행일로부터 1년간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80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법률에 의한 관련 증서를 제시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80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50%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50	
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1시간 범위 내 100%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0	
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20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50	
카. 한강공원을 3시간 초과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의 경우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이용료	30	다만, 여의도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본류 호 안쪽)은 적용 제외
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는 차량	30	
파.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이상)	50	

3. 여의도 물빛무대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 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사업예산을 후원하는 행사	100 이내	부속시설 사용료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 주관행사(학생단체 주관 포함)	100	
다. 비영리단체 주관 비수익성 행사	100	

4. 한강르네상스호 대여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등	100 이내	

5.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감 면 대 상	감면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100 이내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다만,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감면 시설 및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50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50
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증서를 제시한 자	50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30
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50

[행정예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167호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위험·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위험·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한강 수상교통 및 수상레저 활성화에 따라 한강 이용시민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안 제1조)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전화: 02-3780-0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nomad35@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000호

이 고시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중요문서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위험·금지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부과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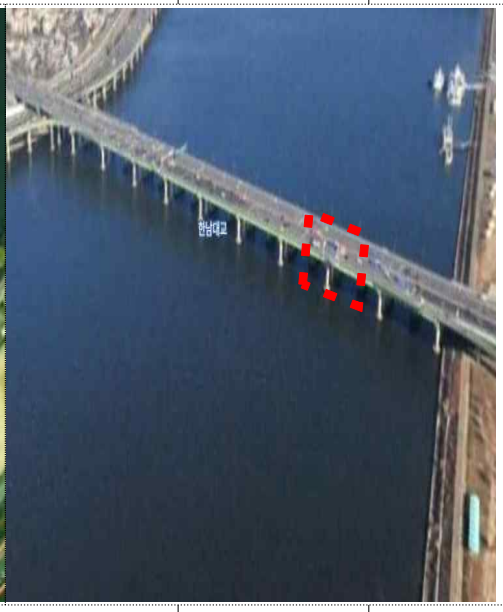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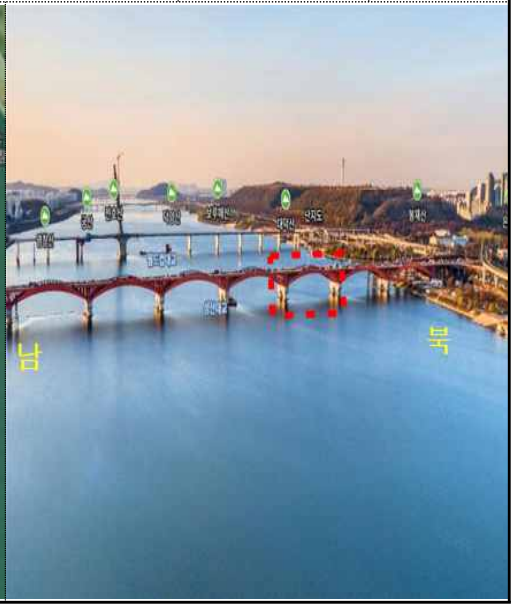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위험·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월 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신규 지정
   가.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지명	위치	구역	지정기간	대상레저기구	사유
한강	한남대교 하부	교각번호 P16~P18	2026. 7. 1. ~ 2029. 6. 30. (3년간)	모든 수상레저기구	한강 이용시민 및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성산대교 하부	교각번호 P6~P7			

나.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위치도

구분 연번	대지위치 (장소)		지정기간	위험구역 지정 세부구역	대상 수상레저기구	비고 (적용법령)
1	강	한강	2026. 7. 1. ~ 2029. 6. 30. (3년간)	한남대교(강남구 신사동) 교각번호 P16~P18	모든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2	강	한강	2026. 7. 1. ~ 2029. 6. 30. (3년간)	성산대교(마포구 망원동) 교각번호 P6~P7	모든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다.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내에서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라목	20	30	50

※ 위험구역 내에서 운항방법
- 위험구역 진입 시 신속하게 해당 구역을 벗어날 것
- 위험구역 내 정박, 정류, 계류 및 계선 금지
- 지그재그 운항 등 한강버스 운항 방해행위 금지
- 기타 한강수상보안관이 지시하는 사항
-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함

< 운항방법 예외 >

▶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또는 수상레저기구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및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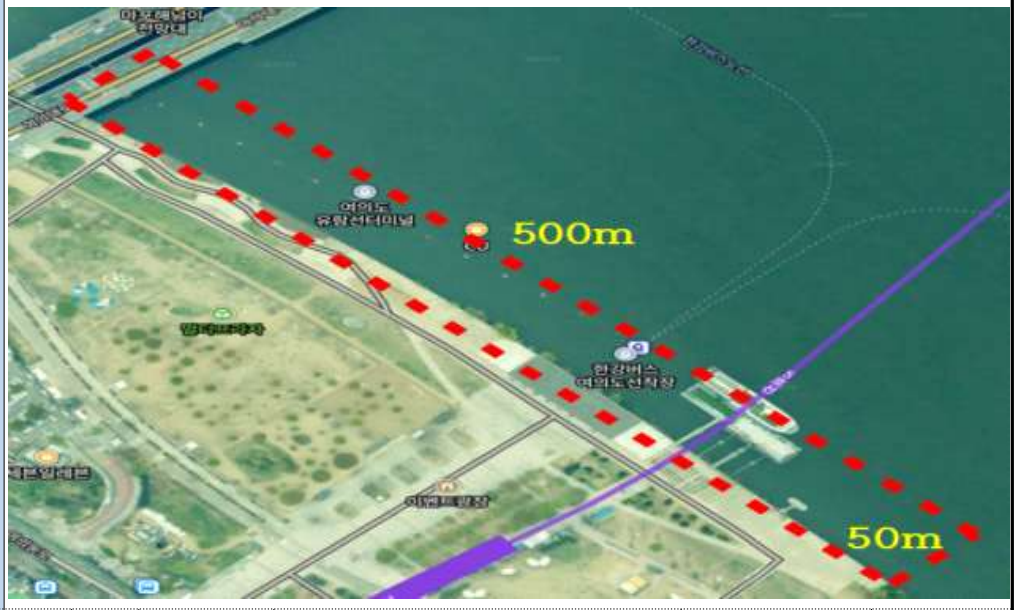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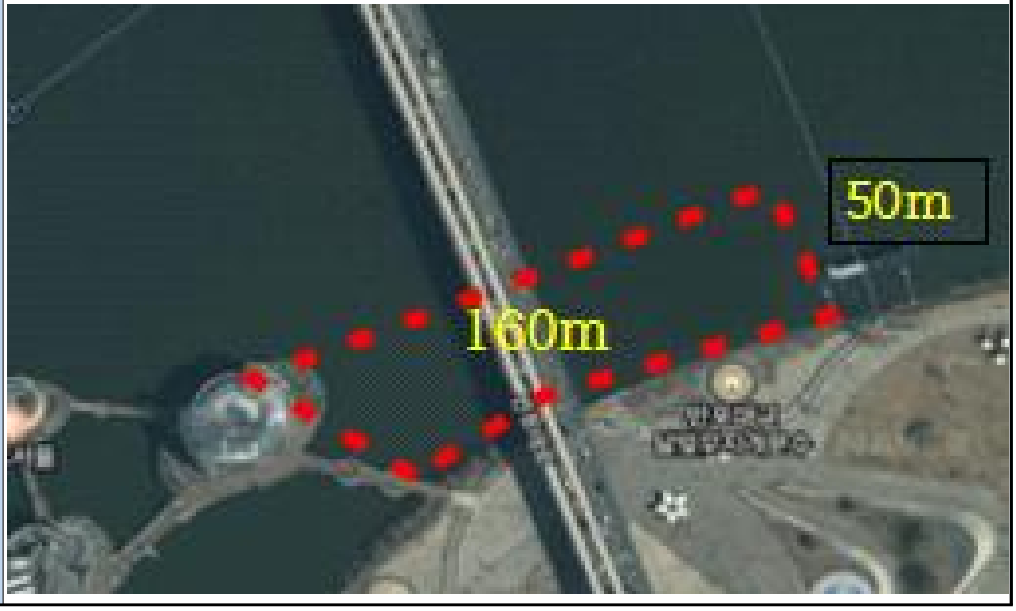
가.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명	위치	구역	금지기간	대상레저기구	사유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측 하류 (400m)	한강 둔치로부터 50m까지	2026. 7. 1. ~ 2029. 6. 30. (3년간)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한강 이용시민 및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마포대교 ~ 상류측 (5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채빛) ~ 반포이크루즈선착장 하류 (160m)				

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치도

구분 / 연번	대지위치 (장소)		지정기간	위험구역 지정 세부구역	대상 수상레저기구	비고 (적용법령)
1	강	한강	2026. 7. 1. ~ 2029. 6. 30. (3년간)	물빛무대 ~ 마포대교 남측하류 (영등포구 여의도동 84-1 ~ 85-1) 400m x 50m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구분 연번	대지위치 (장소)		지정기간	위험구역 지정 세부구역	대상 수상레저기구	비고 (적용법령)
2	강	한강	2026. 7. 1. ~ 2029. 6. 30. (3년간)	마포대교에서 상류측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500m x 50m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3	강	한강	2026. 7. 1. ~ 2029. 6. 30. (3년간)	세빛섬(채빛) ~ 반포이크루즈선착장 하류 (서초구 반포동 650 ~ 649-1) 160m x 50m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다. (위반 시 조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4 제2호카목	60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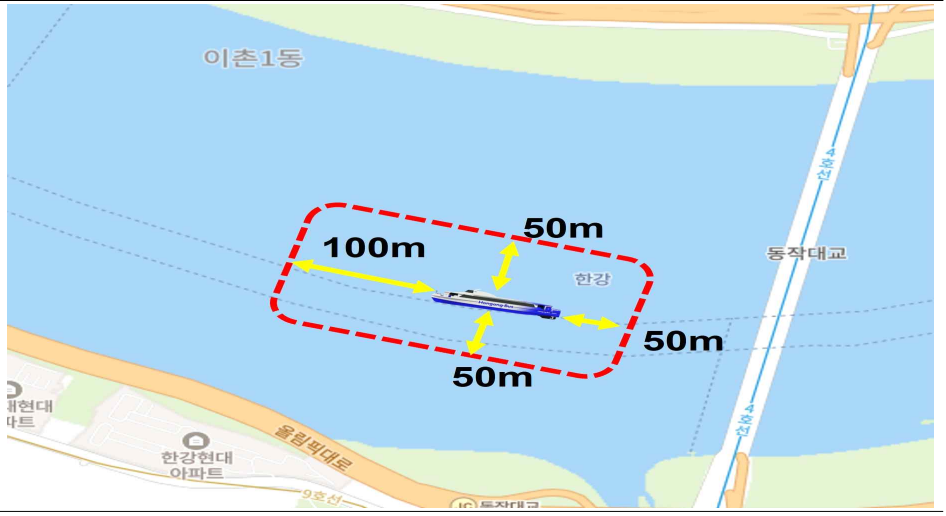
1. 규제사무명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지정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안전사업부 수상안전과 한강수상안전부장 이주영, 수상안전과장 이성희, 주무관 라진형								
4. 근거법령명등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제30조					관 련 규제수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수상레저활동자(개인), 유/도선·수상레저사업자, 한강을 이용하는 관계기관 (한강경찰대, 해양경찰, 수난구조대 등) 및 시민 ※ 한강 내 수상업체 및 관계기관 대상 간담회 완료(’ 26. 3.)								
6. 규제존속기한	지정일로부터 3년 (3년 후 재검토 및 연장)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4개소), 위험구역(1개소)** - p.3 참고자료 참조 **ㅇ 신설규제: 위험구역 신설(2개소)** - 운영기간: ’ 26. 7. ~ (지정일로부터 3년) - 대상: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 위치: 한남대교 하부 P16~P18, 성산대교 하부 P6~P7 - 과태료: 위험구역 내 운항규칙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변경규제: 금지구역 확대(1개소), 금지구역 재지정(3개소)** - 금지구역 확대(1개소) ✓ 변경내역: 마포대교 남단 상류 300m x 50m -> 500m x 50m - 금지구역 운영기간 연장(마포대교 남단/반포대교 남단 3개소) ✓ 변경내역: 금지구역 지정기간 (’ 23.10. 6.~’ 26.10. 5. -> ’ 26. 7. ~ 지정일로부터 3년)								

<참고자료>

○ 현재 운영 중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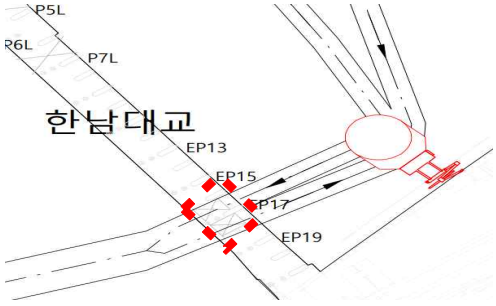
위치 및 규모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하류 (400m x 50m) ※ 재지정 대상	마포대교에서 상류측 (300m x 50m) ※ 확대 및 재지정 대상	세빛섬(채빛) ~ 반포선착장 (160m x 50m) ※ 재지정 대상	망원한강공원 경사로 한강진입부 (50m x 20m)
금지 기간	’ 23.10. 6. ~ ’ 26.10. 5.			’ 25. 6. 1. ~ ’ 25. 5.31.
금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모든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금지구역 진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현재 운영 중인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위치 및 규모	
지정 기간	’ 25. 6. 1. ~ ’ 28. 5.31.
관리 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과태료	위험구역 내 운항규칙 위반 시 1회 20만원/2회 30만원/3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규 지정 예정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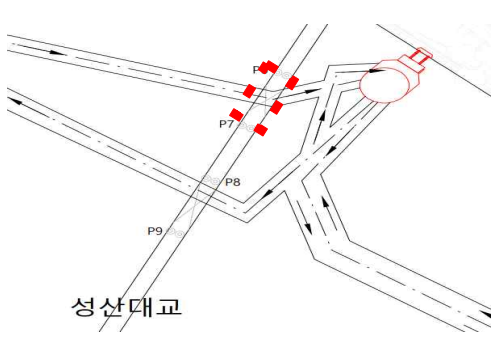
– 한남대교 P16 ~ 하행 ~ P17 ~ 상행 ~ P18





한남대교 남단

– 성산대교 P6 ~ P7(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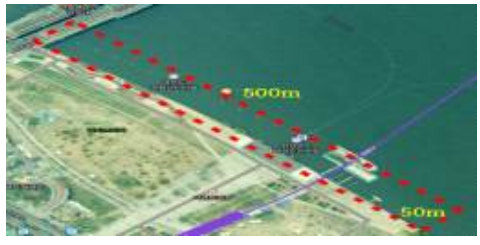
성산대교 북단

○ 확대 예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마포대교 상류측 300m x 50m(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기존) 300m x 50m



(변경) 500m x 50m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수상레저활동자 증가 및 한강버스 도입에 따라 수상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제30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및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한남 대교 하부 P16~P18 및 성산대교 P6~P7 구역은 선박통항을 위한 경간장이 좁거나 양방향 통항 구역이며 인근에 한강버스 선착장 및 유선장(수상레저사업장)이 위치해 있어 한강버스 등 운항 시 사고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교량 하부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필요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마포대교 남단 상류 측(300m x 50m) 구역은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등)로 인한 소음 및 물보라 등 민원이 빈발하는 곳으로 최근 새로운 수상시설물 (한강버스 선착장, 현대유람선 선착장) 도입에 따라 해당 구역이 더 혼잡해 질것으로 예상되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대 지정 필요
- 금지구역을 재지정 하고자 하는 마포대교 남단 및 반포대교 남단 구역은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등)로 인한 소음 및 물보라 등으로 민원이 빈발하는 곳으로 한강버스 등 운항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기간 만료 전 재지정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해당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율 제로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한강에서 영업 중인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자
- 한강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상레저활동자
- 한강 수상업체 및 관련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고시(안) 마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규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행동수칙 등을 교육 및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한강 특성상 한계가 있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신설하고자 하는 위험구역(한남대교 하부, 성산대교 하부)의 경우 기존 위험구역 (한강버

스 주변 전방 100m, 좌/우/후방 50m)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구역은 한강버스 운항 시 외에도 수상 레저활동에 위험요소가 있어 고정구역으로 별도 지정 필요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금지구역 진입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60만원의 과태료, 위험구역 진입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활동구역 제한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의 심리적 만족도 감소 및 대체 활동지 이동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 발생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한강버스, 유선 및 수상레저사업 선박, 개인수상레저기구 등으로 혼잡한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지구역을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데 안전 확보
- 수상시설물(유선장, 도선장 등) 및 한강버스 인근에서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사항
-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예방
- 원활한 한강버스 운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 발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수상레저기구의 금지·위험구역 진입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금지구역(확대): 신규 수상시설물(한강버스 선착장 및 현대유람선 선착장)을 포함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등)를 이용한 물보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지정
- 위험구역(신설): 선박 통항을 위한 교량의 경간이 좁거나 양방향 통항로 중 인근에 한강버스 선착장 및 유선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지정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제21조에 의거 금지·위험구역 지정 가능
- 법 상, 존속기한에 대한 내용이 별도 명시되지 않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설정
- 추후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시, 해제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기존 미래한강본부 조직 · 인력 및 추가 채용 예정인 한강수상보안관 인력으로 집행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단속을 위한 한강 수상보안관 인력 보강 필요(정원 38명/현원 20명)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에 의거 금지 · 위험구역 진입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민원 처리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81호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 주민제안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주민제안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	24,975.25	`24.05.25.	

2. 권리산정기준일 : 2024.05.23.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리계획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54호('24.5.23.)에 따른 최초 고시일로부터 자동실효 기간 2년 연장)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4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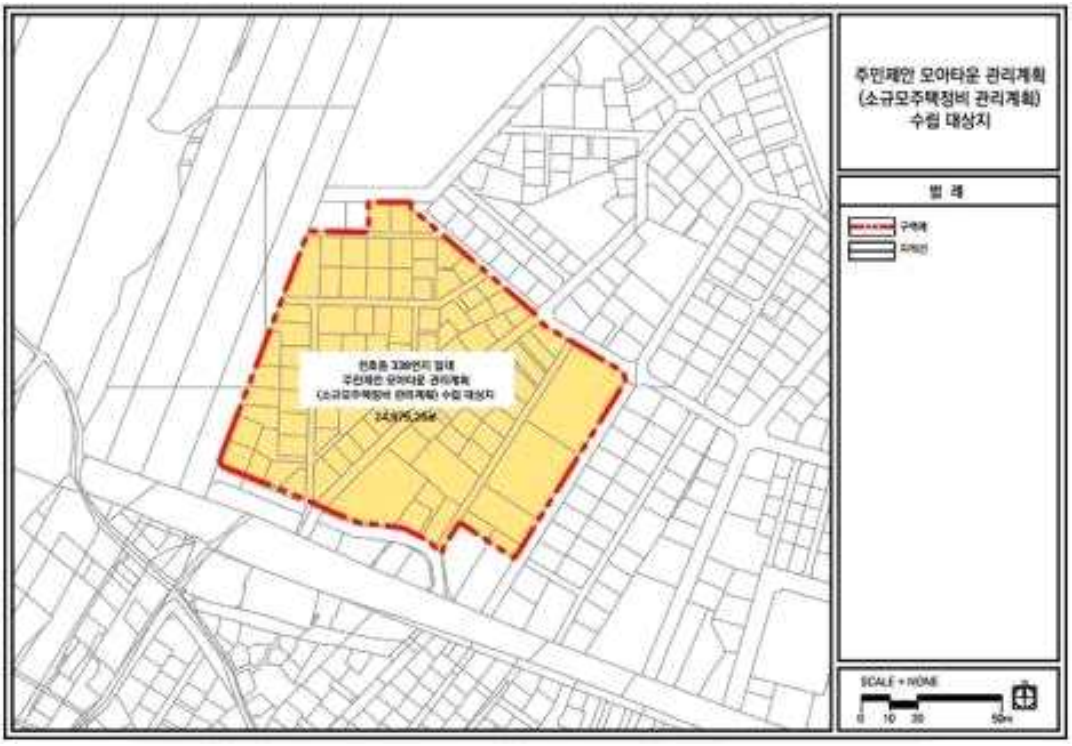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 ☎.02-2133-82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치 않음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강동구 천호동 338번지 일대 주민제안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0호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73호(2024.11.28.)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관악문화플라자 공공주택복합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대표자 : 황상하)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44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5,377.10	층 수	지하 3층, 지상 20층
건축면적(㎡)	3,209.84	건폐율(%)	59.69
연면적(㎡)	38,866.81	용적률(%)	499.89
주 용 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도서관,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대수	270
동 수	1	세 대 수	276

4. 사업시행기간 : 2019. ~ 2029.

5.「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없음)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866)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복합설계부(☎02-3410-794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3호

중랑구 묵동 16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47호(2021.9.30.)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60호(2024.3.28.)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된 중랑구 묵동 16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랑구 묵동 16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변경없음)
   ○ 위 치(변경없음)
   ○ 면 적(변경) :
   - 기 정 : 4,537.5㎡
   - 변 경 : 4,546.6㎡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묵동 1동 (묵동)	165	대	4,537.5	4,537.5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100%	-	-	-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합계				4,537.5	4,537.5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묵동 1동 (묵동)	165	대	4,546.6	4,546.6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100%	-	-	-
합계				4,546.6	4,546.6	-					

2) 물건조서(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 명 칭(변경없음)

○ 위 치(변경없음)

○ 면 적(변경)

– 기 정 : 4,537.5㎡

– 변 경 : 4,546.6㎡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사업기간(변경) : 지구지정일 ~ 2026년

○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537.5	100.0	-
주택건설용지	4,537.5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546.6	100.0	-
주택건설용지	4,546.6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묵동 165, 171번지 일원	82,500 (4,537.5)	서울시고시 제1996-216호 (1996.8.1.)	-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묵동 165, 171번지 일원	82,500 (4,546.6)	서울시고시 제1996-216호 (1996.8.1.)	-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변경조서(변경)

■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2,500	-	82,500	100.0	-
준주거지역	39,200	-	39,200	47.5	-
일반상업지역	43,300 (4,537.5)	-	43,300 (4,537.5)	52.5	-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2,500	-	82,500	100.0	
준주거지역	39,200	-	39,200	47.5	
일반상업지역	43,300 (4,546.6)	-	43,300 (4,546.6)	52.5	

※ ( )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면적임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조서(변경)

① 시장

■ 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시장	중랑구 묵동 165번지	4,537.5	-	4,537.5	1974.3.8 서고제26호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시장	중랑구 묵동 165번지	4,546.6	-	4,546.6	1974.3.8 서고제26호	

② 도시계획시설(시장) 건축물의 공간적범위 결정조서(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조서(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조서(변경)

■ 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A	A5	4,537.5	중랑구 묵동 165	4,537.5	획지계획

■ 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변경	A	A5	4,546.6	중랑구 묵동 165	4,546.6	획지계획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마)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 변경

■ 기정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결정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부지면적의 19%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포함)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9.53%(432.41㎡) • 공공시설 대지지분 - 9.52%(432.15㎡) • 총 공공기여 - 19.05%(864.56㎡)	기본 용적률 1,0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랑구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0%이상 20%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5,847.15㎡(12.89%)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 80% 이상 90% 이하	• 39,521.08㎡(87.11%)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사용면적 54㎡(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사용면적 72㎡(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103세대) : SH선매입(278세대) : 민간임대(546세대) = 11.11% : 29.99% : 58.90%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A㎡, 36㎡, 59㎡ • 민간임대주택 - 전용 18A㎡, 18B㎡, 36㎡, 38㎡, 59㎡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99)×2.5㎡×1.25 = 1,962.5㎡	•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1,963.76㎡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변경

구분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결정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부지면적의 19%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포함)	•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9.51%(432.41㎡) • 공공시설 대지지분 - 11.06%(502.70㎡) • 총 공공기여 - 20.57%(935.11㎡)	기본 용적률 1,0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중랑구 묵동 165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0%이상 20%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5,821.91㎡(12.84%) - 지상 연면적 기준		
		주거비율	• 80% 이상 90% 이하	• 39,529.22㎡(87.16%) - 지상 연면적 기준		
	주택 건설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사용면적 54㎡(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사용면적 72㎡(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103세대) : SH선매입(278세대) : 민간임대(546세대) = 11.11% : 29.99% : 58.90%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A㎡, 36㎡, 59㎡ • 민간임대주택 - 전용 18A㎡, 18B㎡, 36㎡, 38㎡, 59㎡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99)×2.5㎡×1.25 = 1,962.5㎡	•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 1,972.78㎡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5) 공공기여계획(변경)

■ 기정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비율	면적				
			개별	합계	면적	비율	
일반상업지역	1,000%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량 : 14%	635.25㎡	862.13㎡ (19.00%)	864.56㎡	19.05%	가구 A5에 한함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범위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 5%	226.8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2 적용

■ 변경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비율	면적				
			개별	합계	면적	비율	
일반상업지역	1,000%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량 : 14%	636.52㎡	863.85㎡ (19.00%)	935.11㎡	20.57%	가구 A5에 한함
		도시계획시설(시장) 공간적범위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 5%	227.3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3-2 적용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방재계획(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

1) 토지세목조서(변경)

■ 기정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묵동 1동 (묵동)	165	대	4,537.5	4,537.5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100%	-	-	-
합계				4,537.5	4,537.5	-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묵동 1동 (묵동)	165	대	4,546.6	4,546.6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100%			
합계				4,546.6	4,546.6	-					

2) 물건조서 : 변경없음

3) 토지취득방법 : 변경없음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변경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 도서관	-
위치	• 중랑구 묵동 165번지	-
규모	• 연면적 : 1,561.90㎡	-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및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시설 부지가액 및 표준건축비(건축공사비)는 사업계획승인(통합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여량은 변경 가능	-
관리처분계획	•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 추후 측량성 및 감정평가 등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

구 분	내용	비 고
공공시설의 종류	• 도서관	-
위치	• 중랑구 묵동 165번지	-
규모	• 연면적 : 1,567.62㎡	-
계획기준 및 근거	• 원가계산검증결과 적용	-
관리처분계획	•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 추후 측량성 및 감정평가 등에 의해 변경 가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537.5	100.0	-
주택건설용지	4,537.5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546.6	100.0	-
주택건설용지	4,546.6	100.0	임대주택
기반시설용지	-	-	

※ 추후 측량성과에 의해 변경 가능

8. 관계도면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4호

중랑구 묵동 165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47호(2021.09.3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61호(2024.03.2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5호(2025.07.03.)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된 중랑구 묵동 165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변경) 처리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대표자	주 소
묵동아이알디피에프브이(주)	민경예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217, 6층 (신내동, 부영빌딩)

4. 사업의 시행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6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4,546.60㎡
 다. 건폐율 : 59.82% (건축면적 : 2,719.96㎡)
 라. 용적률 : 997.47%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45,351.1268㎡)
 마. 용도 : 공동주택 (공공임대 103세대/ 민간임대 546세대/ SH선매입 278세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기여시설
 바. 규모 : 2개동, 지하 7층/지상 29층, 연면적 68,704.8295㎡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5호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2호(2024.11.14.)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90호(2025.9.4.)로 변경 승인(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에 대하여 '25년 제17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2025.11.17.)'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99,971.60㎡	전체 : 522동 노후·불량 : 393동(75.3%)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변경없음)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99,971.60	-	99,971.60	변경없음

○ 관리지역 지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99,971.60㎡	노후 · 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 분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 후	구성비(%)	비고
합 계				99,971.60	-	99,971.60	100.00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84,505.15	증)743.55	85,248.70	85.27	중화동 316-37 외 8필지 2-5구역 내 포함 및 도로 신설
		2-1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	16,649.60	-	16,649.60	16.65	
		2-2	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	16,876.70	-	16,876.70	16.88	
		2-3	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	19,793.90	-	19,793.90	19.80	
		2-4	사업추진구역4(가로주택정비사업)	7,869.30	-	7,869.30	7.87	
		2-5	사업추진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	15,831.45	증)743.55	16,575.00	16.58	
		2-6	사업추진구역6(가로주택정비사업)	7,484.20	-	7,484.20	7.49	
	정비기반시설	소계		9,044.00	증)604.00	9,648.00	9.65	
		도로		4,844.00	증)604.00	5,448.00	5.45	
		C-1	어린이공원	1,500.00	-	1,500.00	1.50	
		C-2	공공공지	1,700.00	-	1,700.00	1.70	
		C-3	공영주차장	1,000.00 (연면적 1,500.00)	-	1,000.00 (연면적 1,500.00)	1.00	
시행구역 외		소계		6,422.45	감)1,347.55	5,074.90	5.08	중화동 316-37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로	5,074.90	-	5,074.90	5.08	외 8필지 시행구역 내 편입
	중화동 316-37 외 8필지	1,347.55	감)1,347.55	-	-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	• 시행구역 내 변경 - 사업추진구역5: 15,831.45 → 16,575.00㎡ - 정비기반시설(도로): 4,844.00 → 5,448.00㎡	• 중랑역로15길변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대지7, 도로2)를 2-5구역계로 편입 • 2-5구역 남측 중로 3-2호 연장 및 동측 소로 3-3호 도로 신설에 따른 정비기반 시설(도로) 면적 변경
	• 시행구역 외 변경 -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 1,347.55 → 0㎡	•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의 시행구역 내 포함에 따른 시행구역 외 지역 면적 변경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0	25(30)	보조간선	3,250(135)	중화동 330-81	중화동 329-1	일반	서울특별시 고시 제387호 (1978.8.3)	기점 및 종점 오기 정정
변경	중로	1	50	25(30)	보조간선	3,250(135)	이문동(중화동 330-81)	신내동3-42(중화동 329-1)	일반		
기정	중로	3	1	12	집산	420	중화동 329-1	중화동 327-106	일반	서울특별시 고시 제552호 (24.11.14)	-
기정	중로	3	2	12	국지	231	중화동 328-34	중화동 317-40	일반		도로 연장 변경 (231→261m)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2	12	국지	261	중화동 328-34	중화동 316-80	일반		
기정	소로	2	1	8~11	국지	167 (40)	중화동 330-73	중화동 329-72	일반		
기정	소로	2	2	8	국지	113	중화동 315-56	중화동 315-30	일반		
기정	소로	3	1	6	국지	178	중화동 312-107	중화동 312-94	일반		
기정	소로	3	2	6	국지	183	중화동 315-61	중화동 315-30	일반		
신설	소로	3	3	4~6	국지	89	중화동 316-80	중화동 316-46	일반	-	연장(L) 89m, 폭원(B) 4~6m

※ ( )는 구역 내 도로 확폭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50	기점: 중화동330-81 → 이문동(중화동330-81) 종점: 중화동329-1 → 신내동3-42(중화동329-1)	기점 및 종점 오기 정정
중로 3-2	2-5구역 남측 중로 3-2호 연장 변경 (L=231m → 261m)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대지7, 도로2)가 2-5구역 내로 편입됨에 따라, 현황도로 연결성 확보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도로 연장 및 신설
소로 3-3	2-5구역 동측 소로 3-3호 도로 신설(L=89m, B=4~6m)	

2)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	세화 공원	어린이공원	중화동 328-62 일대	1,500	-	1,500	서울특별시 고시 제552호(24.11.14)	-

3)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	공공 공지	공공 공지	중화동 328-55 일대	1,700	-	1,700	서울특별시 고시 제552호(24.11.14)	-

4)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	주차장	공영 주차장	중화동 313-8일대	1,000 (연면적 1,500)	-	1,000 (연면적 1,500)	서울특별시 고시 제552호(24.11.14)	-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타운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에 부족한 생활 편의 시설 확충

구분	시설유형	사유	비고
권장시설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등	모아타운 내 부족한 시설을 고려하여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조성	-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시설구분	도면표시	구역	위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공동이용시설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어린이놀이터	752.40	구역 내
				경로당	581.36	
				어린이집	583.53	
				다함께돌봄센터	114.32	
				키즈스테이션	31.93	
				게스트하우스	152.25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어린이놀이터	754.56	
				주민운동시설	1,387.24	
				작은도서관	282.63	
				키즈스테이션	31.93	
				주민카페	101.36	
				사우나	652.67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어린이놀이터	846.53	
				경로당	333.14	
				어린이집	353.04	
				주민운동시설	503.10	
				다함께돌봄센터	137.24	
				작은도서관	196.59	
				키즈스테이션	31.93	
				주민카페	101.36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경로당	202.00	
				어린이놀이터	450.00	
				마을공방	220.00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어린이놀이터	731.65	
				경로당	338.01	
				어린이집	343.32	
				주민운동시설	807.46	

시설구분	도면표시	구역	위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다함께돌봄센터	114.23	
				작은도서관	175.25	
				키즈스테이션	19.22	
				주민카페	123.76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경로당	180.00	
				어린이놀이터	540.00	
				마을공판장	280.00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사업추진구역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사업추진구역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

라. 교통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봉화산로 및 중랑역로15길, 동일로123길(커뮤니티가로변) 일부 차량 진출입 불허	봉화산로, 중랑역로15길, 동일로123길 일부
차량 진출입 구간	• 봉화산로4길에서 2-1, 2-2, 2-3, 2-4, 2-5구역 차량 진출입 허용 • 중랑역로21길에서 2-6구역 차량 진출입 허용	봉화산로4길, 중랑역로21길
도로 확폭	• 사업추진으로 늘어나는 세대수 및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 확폭	- 봉화산로(25→30m) - 봉화산로4길(7~8m→12m) - 중랑역로15길(6m→12m) - 봉화산로10길(4m→6m) - 중랑역로21길(4→6m)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3m 및 5m 적용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 5m: 중랑천로, 동일로123길 - 3m: 그 외 도로변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봉화산로 및 중랑천로, 동일로123길(커뮤니티가로변) 일부 차량 진출입 불허	도로명 오기정정
차량 진출입 구간	• 봉화산로4길에서 2-1, 2-2, 2-3, 2-4, 2-5구역 차량 진출입 허용 • 중랑역로21길에서 2-6구역 차량 진출입 허용	변경없음
도로 확폭	• 사업추진으로 늘어나는 세대수 및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 확폭	변경없음
도로 연장 및 신설	•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대지7, 도로2)가 2-5구역 내로 편입됨에 따라 중랑역로15길(중로3-2호) 연장 및 소로 3-3호(4~6m) 신설	- 중로 3-2호 연장 (L=231m → 261m) - 소로 3-3호 신설 (L=89m, B=4~6m)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보차혼용 통로	• 신설되는 소로 3-3호(4~6m)와 동일로123길(커뮤니티가로변) 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지 내 보차혼용통로(4m 이상) 조성	2-5구역 내 보차혼용 통로 조성(4m 이상)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3m 및 5m 적용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	변경없음

○ 교통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교통계획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중랑역로15길 → 중랑천로	• 도로명 오기 정정
	• 중로 3-2호 연장 및 소로 3-3호 신설 - 중로 3-2호 연장: L=231m → 261m - 소로 3-3호 신설(L=89m, B=4~6m)	• 중랑역로15길변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대지7, 도로2)를 2-5구역계로 편입됨에 따라, 현황도로 연결성 확보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도로 연장 및 신설
	• 보차혼용통로 조성 - 2-5구역 내 보차혼용통로(B=4m이상) 조성	• 소로 3-3호(B=4~6m)와 커뮤니티가로변과의 연결성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변경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기정

도면표시번호	사업구역	위 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	추진단계	
합 계			93,549.15	84,505.15	9,044.00	-	-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18,689.60	16,649.60	2,040.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18,280.70	16,876.70	1,404.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23,086.90	19,793.90	3,293.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중	-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8,269.30	7,869.30	400.00	조합	동의서 징구 중	-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17,337.45	15,831.45	1,506.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예정	-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7,885.20	7,484.20	401.00	조합	동의서 징구 중	-

○ 변경

도면표시번호	사업구역	위 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	시행자	추진단계	
합 계			94,896.70	85,248.70	9,648.00	-	-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18,689.60	16,649.60	2,040.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조합설립 변경완료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18,280.70	16,876.70	1,404.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조합설립 변경완료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23,086.90	19,793.90	3,293.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조합설립 변경완료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8,269.30	7,869.30	400.00	조합	조합설립	조합설립 완료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18,685.00	16,575.00	2,110.00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구역확대)	2-5구역 면적 확대, 조합설립 변경완료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7,885.20	7,484.20	401.00	조합	동의서 징구 중	변경없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 사업추진구역의 사업추진단계 반영	• 사업추진구역1,2,3,5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추진구역4 조합설립 완료
		• 2-5구역 확대에 따른 면적 변경

바. 모아주택 통합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로 「건축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 적용 계획

○ 기정

도면표시번호	사업구역	위 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공동주택용지			
합 계			84,505.15	-	-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16,649.60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 치	면적(㎡) 공동주택용지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16,876.70	높이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건축물 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19,793.90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7,869.30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15,831.45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7,484.20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변경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 치	면적(㎡) 공동주택용지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합 계			85,248.70	-	-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16,649.60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16,876.70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19,793.90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7,869.30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16,575.00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7,484.20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모아주택 통합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모아주택 통합계획	• 사업추진구역5 면적 변경 : 15,831.45→16,575.00㎡	• 2-5구역 내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 (대지7, 도로2) 편입에 따른 면적 확대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기정

구분		내용		비고
시행구역 내	2-1, 2-2, 2-3, 2-4, 2-6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2-5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 + α * 공동이용시설 설치(공공경로당)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향후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시행구역 내	2-1	건폐율	50% 이하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99% 이하 *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2-2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34% 이하 *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2-3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20% 이하 *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구분		내용		비고
	2-4, 2-6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0.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2-5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상향) 250% 이하 / 상한 303.00% 이하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공공경로당)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향후 관련 법령 변경 사항(밀도, 높이 등)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토록 함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 2-5구역 확대에 따른 면적 변경 : 공동주택용지 15,831.45→16,575.00㎡	• 2-5구역 내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 편입에 따른 면적 확대
	• 2-1구역 상한 용적률 변경 : 상한 300.99% 이하 적용	• 정비기반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2-2구역 상한 용적률 변경 : 상한 300.34% 이하 적용	• 정비기반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2-3구역 상한 용적률 변경 : 상한 300.20% 이하 적용	• 정비기반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2-5구역 상한 용적률 변경 : 상한 303.00% 이하 적용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용도

적용지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2-1 ~ 2-6	유형		• 공동주택 용지	-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2-3, 2-5구역	• 철도 소음, 조명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배치 및 철도 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조명 시설 배제(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는 2-3구역, 2-5구역)	-
건축 한계선	가로변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커뮤니티가로(동일로 123길)를 따라 건축한계선 5m 적용하여,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2-1, 2-2구역 중랑천로변 도로 건축한계선 5m 적용 • 중랑천로 및 동일로123길 제외한 각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적용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가로 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동일로123길 (커뮤니티가로)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통경축 확보구간	동일로123길 (커뮤니티가로)	•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 • 커뮤니티가로축 고려하여 경관 및 조망을 위한 배치 유도	-

○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	• 2-5구역 확대에 따른 면적 변경 : 공동주택용지 15,831.45→16,575.00㎡	• 2-5구역 내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 편입에 따른 면적 확대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기정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표시	사업구역					
합계		-	2,798	671	-	임대주택 24.0%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556	11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21.2%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556	129		임대주택 23.2%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655	164		임대주택 25.0%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247	74		임대주택 30.0%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525	111		임대주택 21.1%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259	75		임대주택 29.0%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할 것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표시	사업구역					
합계		-	2,818	613	-	임대주택 21.8%
2-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38일대	561	107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19.1%
2-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9-28일대	560	111		임대주택 19.8%
2-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27-1일대	656	148		임대주택 22.6%
2-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3-20일대	247	74		임대주택 30.0%

구분 표시	구분 사업구역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2-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7-64일대	535	98		임대주택 18.3%
2-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중화동 315-61일대	259	75		임대주택 29.0%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할 것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계획 변경 - 사업추진구역1 전체세대수: 556→561세대 임대세대수: 118→107세대 - 사업추진구역2 전체세대수: 556→560세대 임대세대수: 129→111세대 - 사업추진구역3 전체세대수: 655→656세대 임대세대수: 164→148세대 - 사업추진구역5 전체세대수: 525→535세대 임대세대수: 111→98세대	• 사업추진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수립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1)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기 정	면 적(㎡) 변 경	면 적(㎡) 변경후	구성비 (%)	비 고
합 계		99,971.60	-	99,971.60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0.00	-	1,500.00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57.04	감) 157.04	1,700.00	1.7	-
	제2종일반주거지역	2,201.71	감) 1,201.71	1,000.00	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94,412.85	증) 1,358.75	95,771.60	95.8	-

○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면 적(㎡)	변경사유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제2종(7층이하): 1,857.04㎡ → 1,700.00㎡	•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의 2-5구역 내 편입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 제2종일반: 2,201.71㎡ → 1,000.00㎡	
	• 제3종일반: 94,412.85㎡ → 95,771.60㎡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971.60	-	99,971.60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7.80	증) 352.2	1,500.00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9,615.39	감) 87,915.39	1,700.00	1.7	-
	제2종일반주거지역	9,208.41	감) 8,208.41	1,000.00	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95,771.60	95,771.60	95.8	-

○ 용도지역의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면 적(㎡)	변경사유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사유서	• 제1종일반: 1,147.8㎡ → 1,500.00㎡	•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의 2-5구역 내 편입에 따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 제2종(7층이하): 89,615.39㎡ → 1,700.00㎡	
	• 제2종일반: 9,208.41㎡ → 1,000.00㎡	
	• 제3종일반: 0.00㎡ → 95,771.60㎡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도시 경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안전한 가로환경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제69조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훈령 제1445호)」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안)_서울특별시」에 준하여 모아주택 사업추진구역 2-1~6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권장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특별건축구역	2-1 ~ 2-6구역	98,612.85	증) 1,358.75	99,971.60	2-5구역 내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 편입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배제 또는 완화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등	-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건축구역 지정 면적 변경 : 98,612.85㎡ → 99,971.60㎡	• 중화동 316-37번지 외 8필지의 2-5구역 내 편입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 지정 면적 변경

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

○ 해당없음

파.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모아타운의 면적을 타운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계산착오 · 오기 ·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41) 및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903)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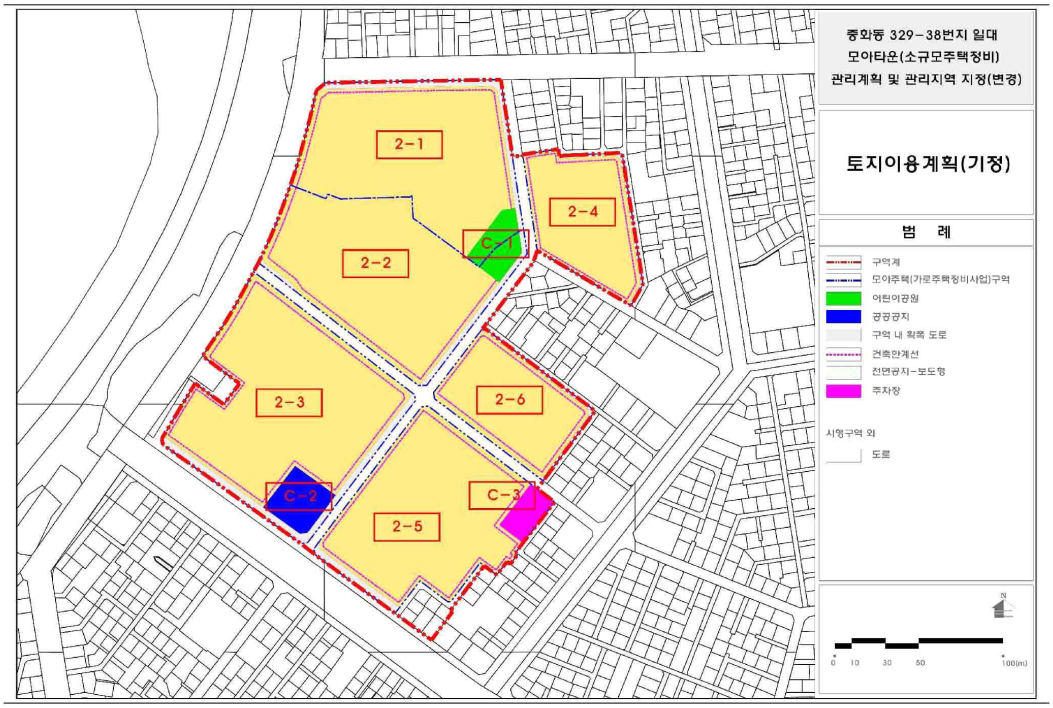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관리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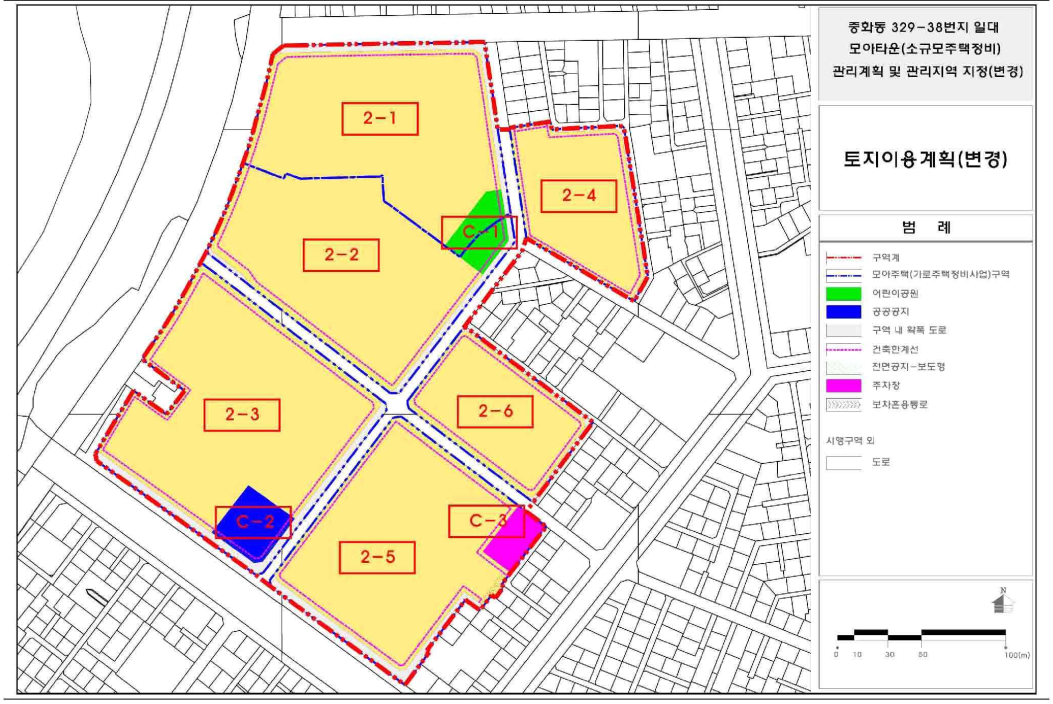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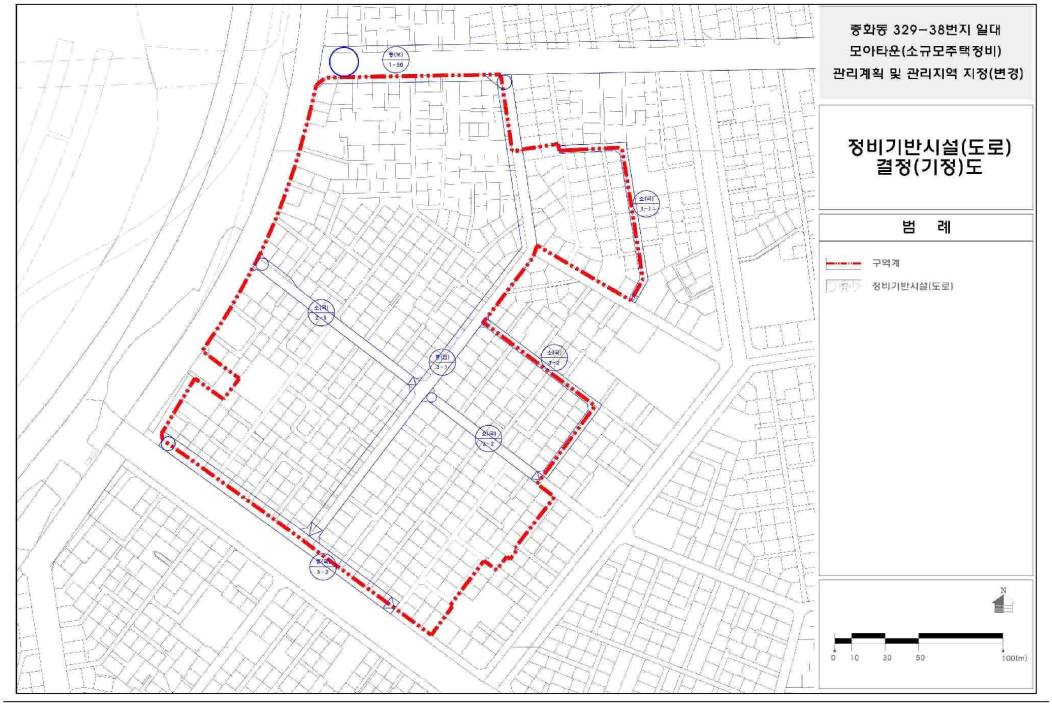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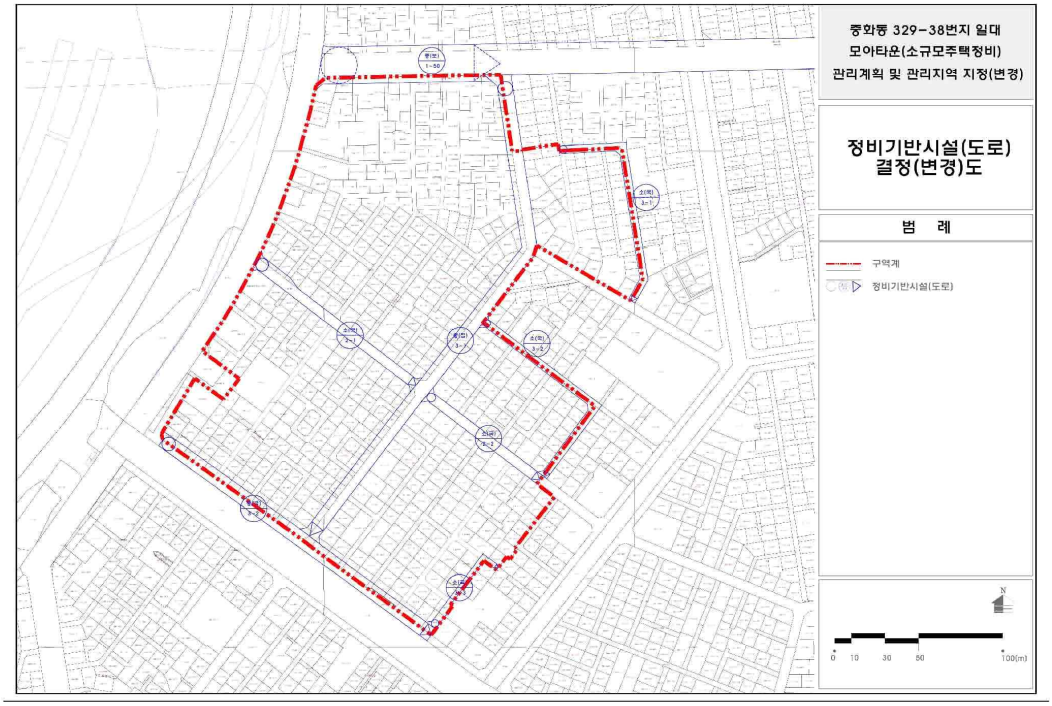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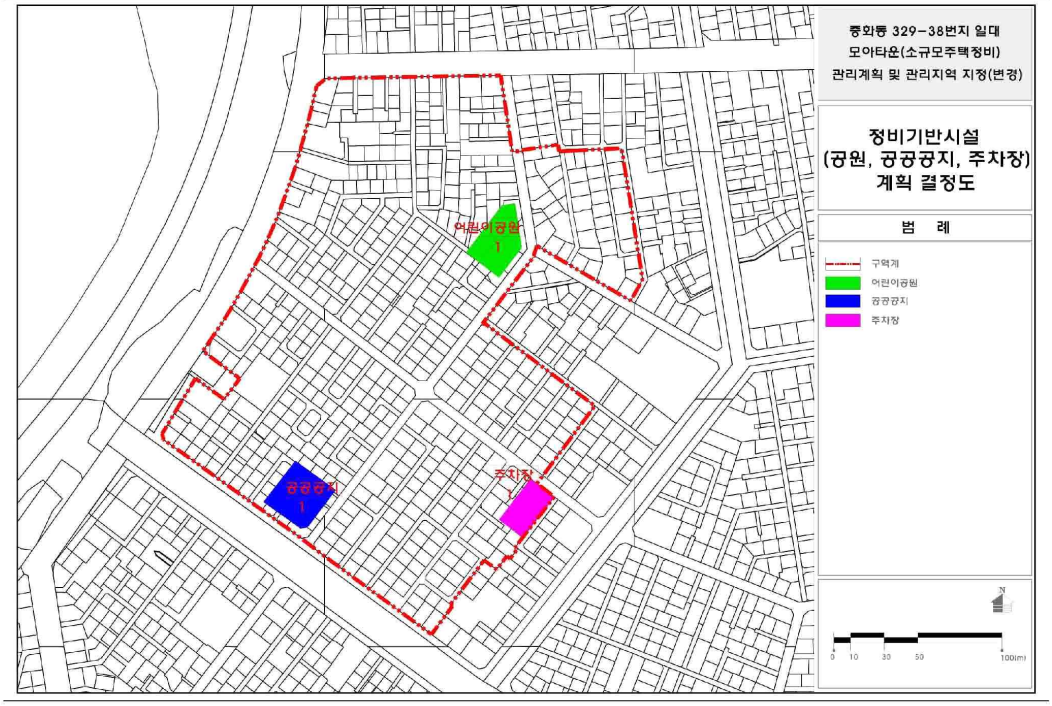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기정)도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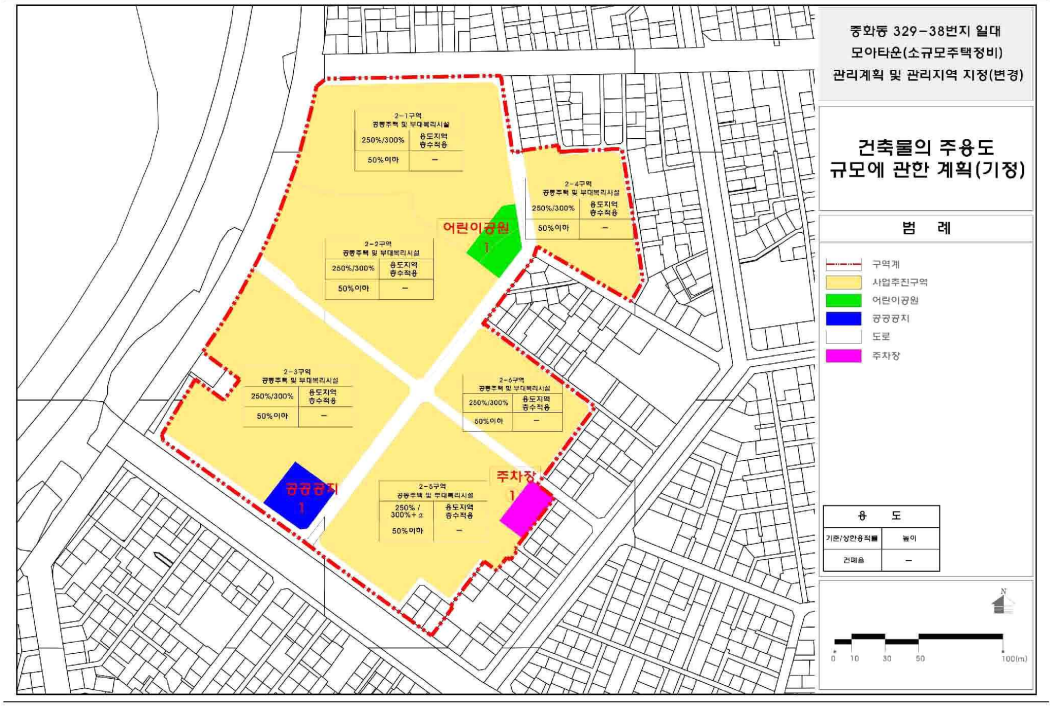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공원, 공공공지, 주차장)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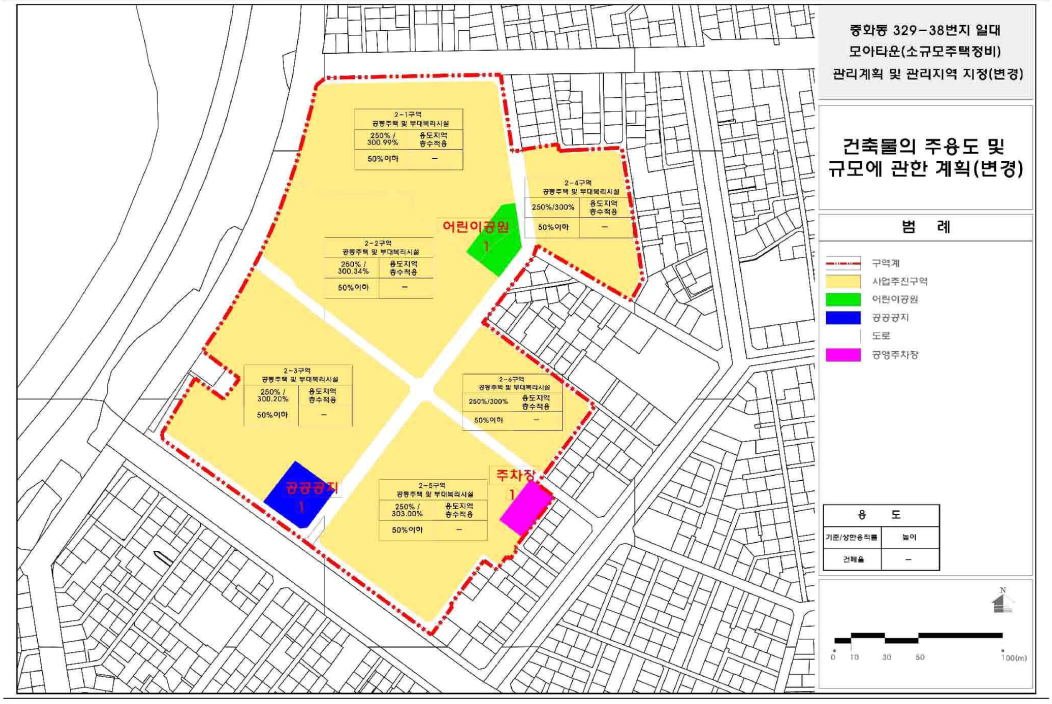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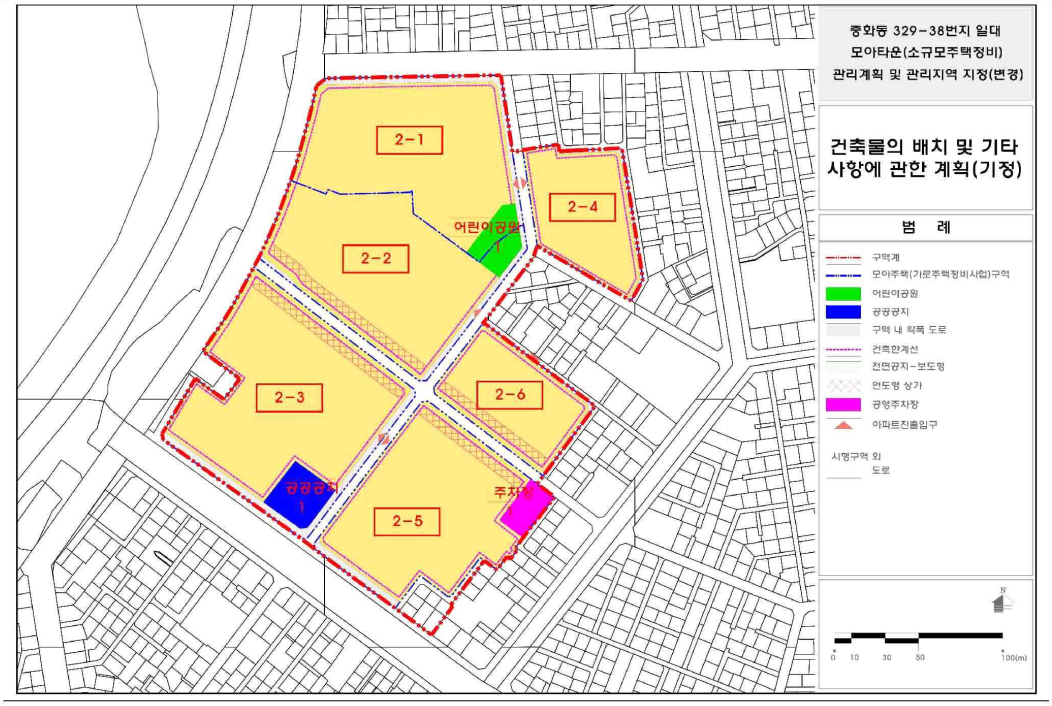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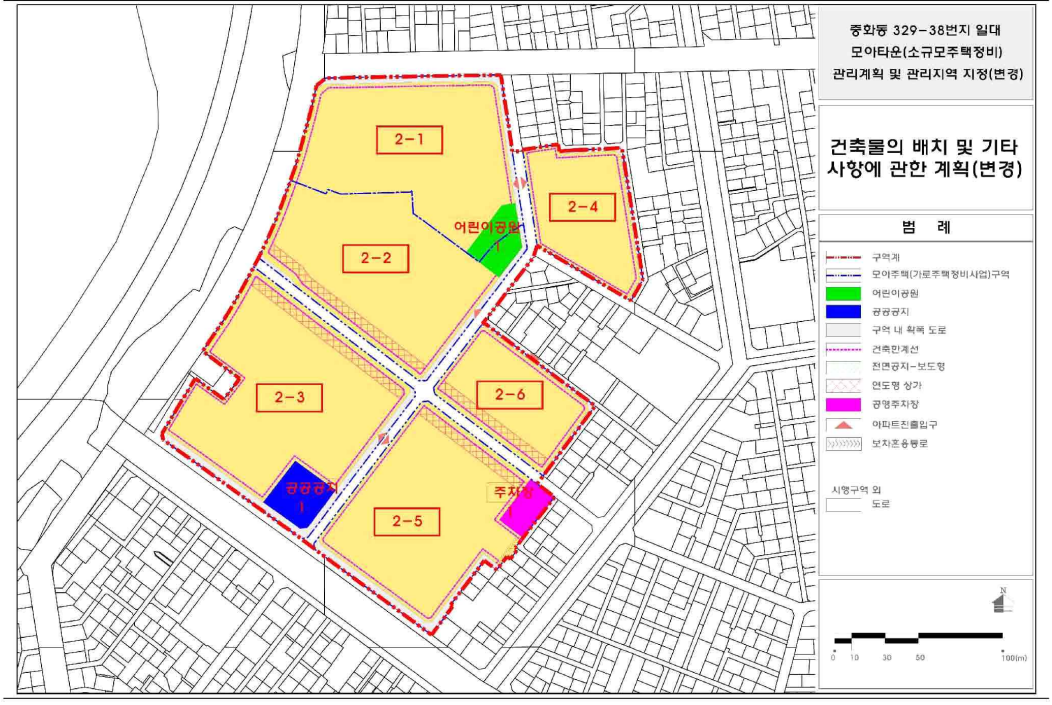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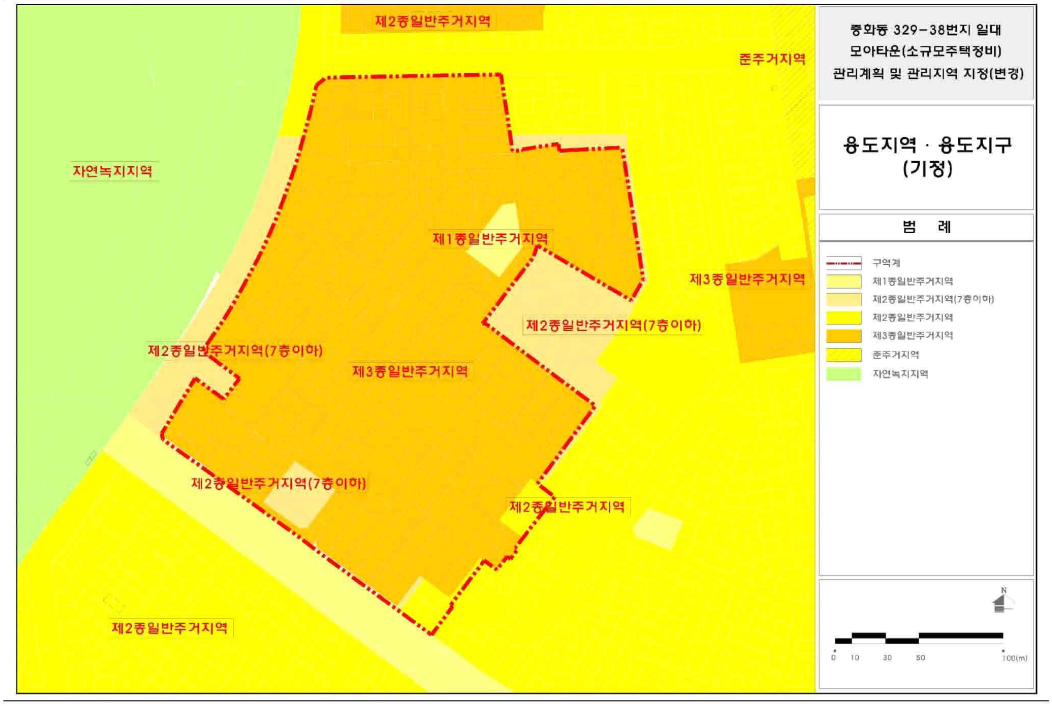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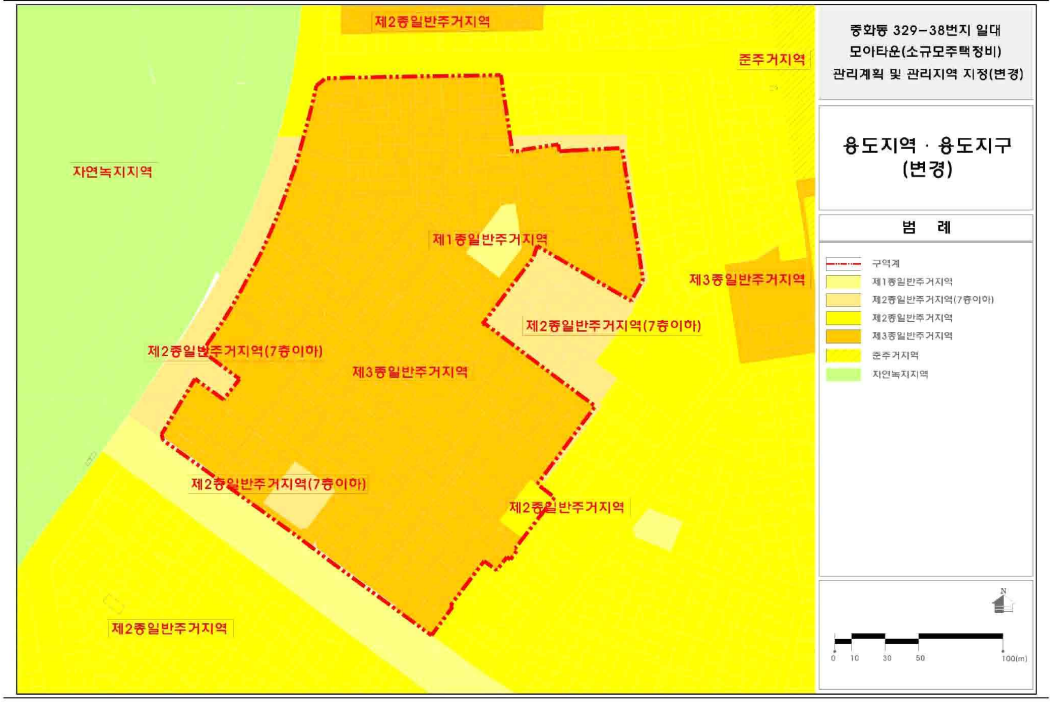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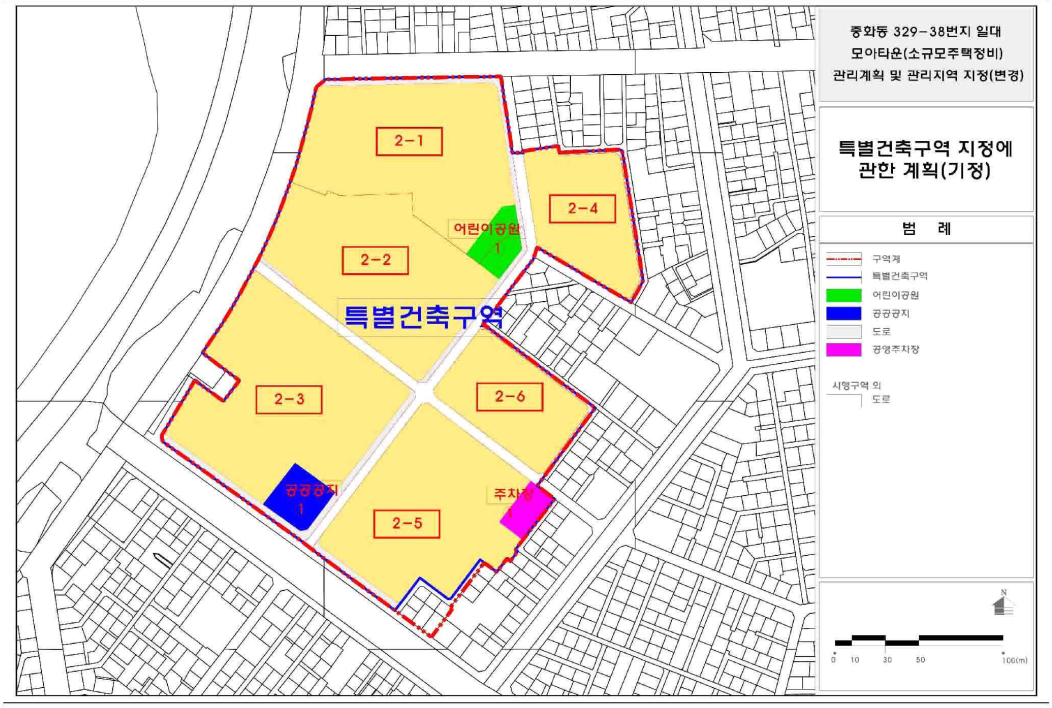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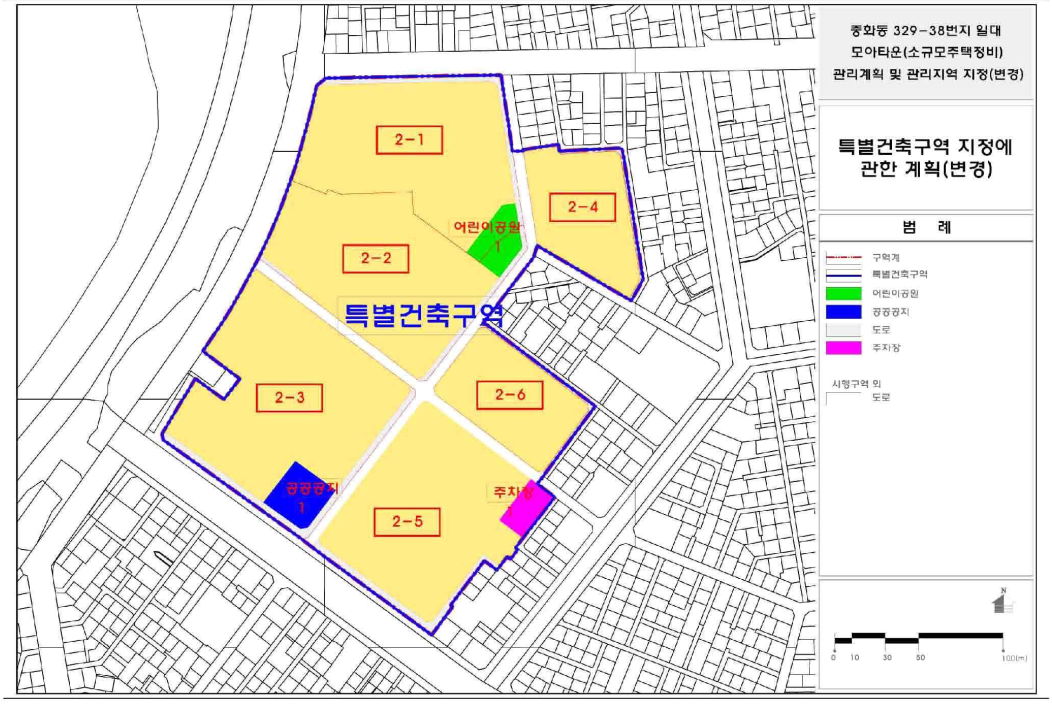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기정)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6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보행환경개선지구 : 2개소

연번	자치구	위 치	지구면적	지구 지정 기준	지정연도
1	강서구	화곡로13길 일대	322,440㎡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026
2	송파구	문정초교 통학로 일대	7,600㎡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행환경개선지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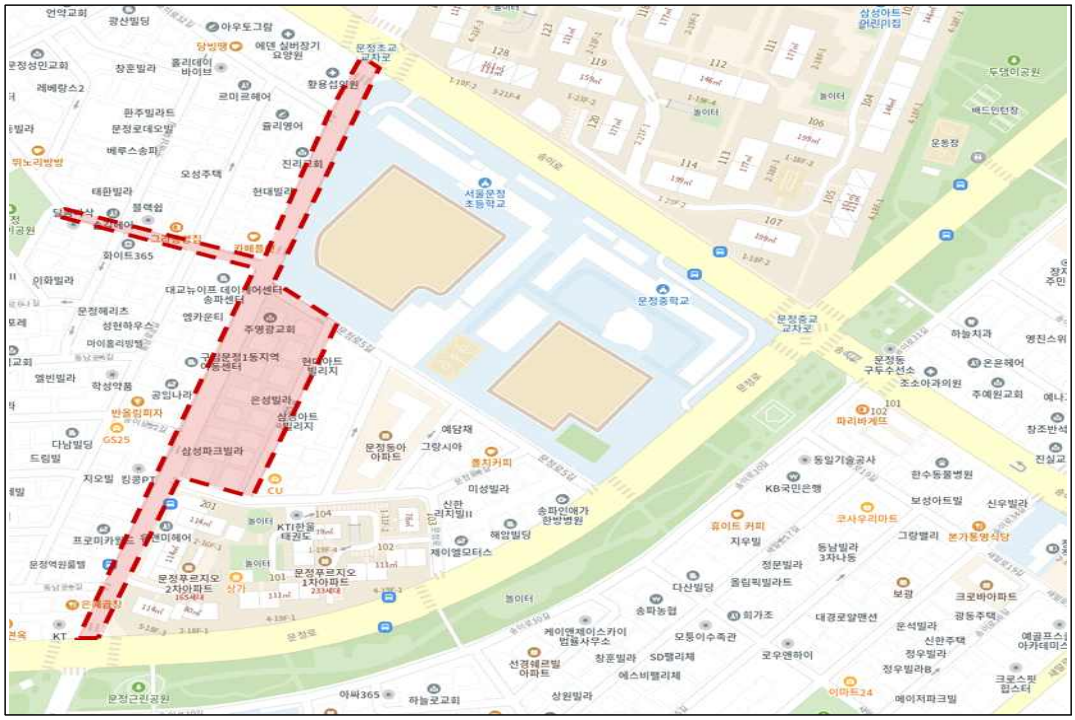
위 치 도

▢ 보행환경개선지구

① 강서구 화곡로13길 일대 (지구면적:322,440㎡)



② 송파구 문정초교 통학로 일대 (지구면적: 7,6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5.08.27.)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89호(’ 25.09.04.)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5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동작구	사당15	사당동 419-1 일대	133,007.4	·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
변경	동작구	사당15	사당동 419-1 일대	139,544.9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5. 07. 30.	133,007.4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5. 07. 30.(기존구역) 2025. 07. 30.(추가구역)	6,537.5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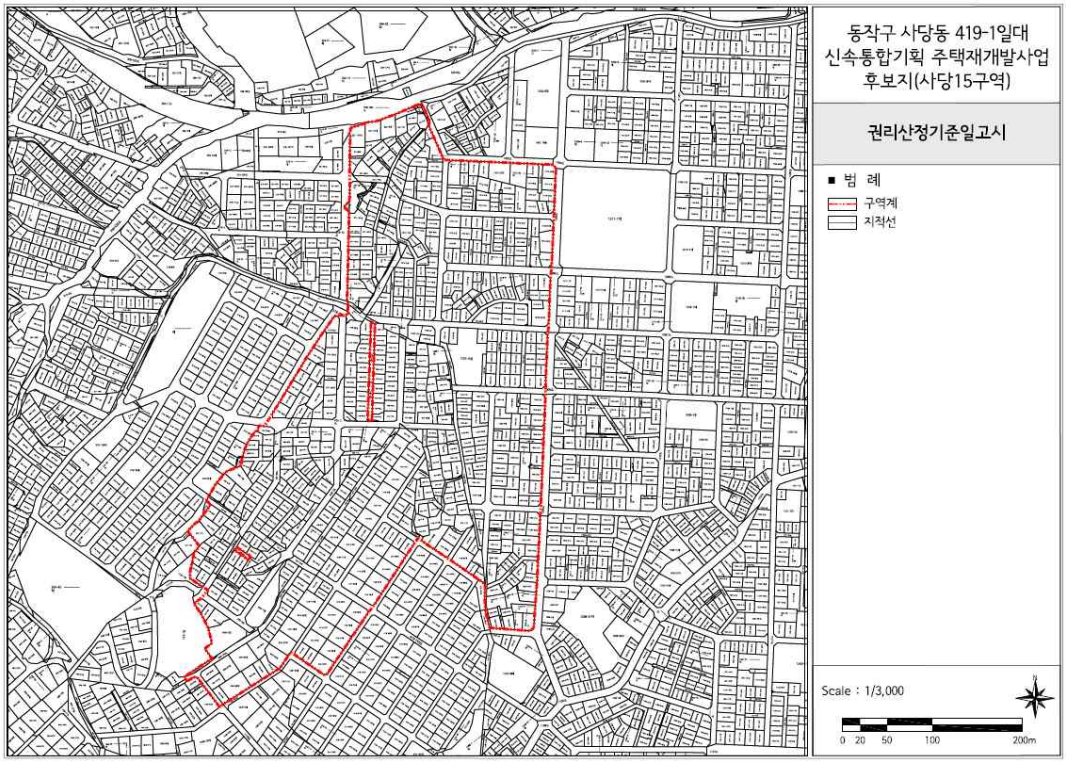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2) 또는 동작구 도시정비과(☎02-820-19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동작구 사당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후보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5호(2016.3.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6호(2016.9.29.)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6호(2019.8.29.) 실시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11호(2019.9.19.)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5호(2019.10.4.) 실시계획(경미한 변경)고시된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유수지, 자동차정류장)
- 명 칭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다. 사업규모(변경 없음) : 면적 14,391㎡, 박차면수 101대, 저류조 35,000㎥

라.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변경 - 사업착수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준공예정일 : 2026.5.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버스정책과(☎02-2133-9754)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6438-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1981.7.30.)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1호(1983.3.29.)로 지적승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3-150호(2023.12.21.)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1번지 일대 도시철도(무악재역)의 출입구 E/L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출구 E/L 신설 공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6-676호)를 시행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도시철도: 정거장)
2) 명 칭 :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4번 출입구 E/L 설치 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3호선 무악재 정거장)	서대문구 홍제동 26-1	4,500	증22	4,522	경미한 변경 (증 0.4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홍제동	25-1	도	6,949	22	서울시						

사. 인가신청일 : 2026.02.13.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서소문별관 1동) 도시철도과(중구 덕수궁길 15, 6층)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0호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봄꽃열차 운행 지정고시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6 행사 운영을 위하여 한강공원 구역 내 도입·운행하고자 하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봄꽃열차'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제10호 나목 규정에 따라 여의도한강공원 관리구역 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사용하고자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고시 취지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6 행사 운영 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운행 추진중인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봄꽃열차'를 여의도 한강공원 구역 내 차도외의 장소에 출입·사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제10호 나목에 근거하여 지정고시하고자 함

2. 지정대상
관광정책과-4406호(2026.4.9.),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6 봄꽃열차 운영계획」에 따라 도입·운행하는 '서울스프링페스티벌 봄꽃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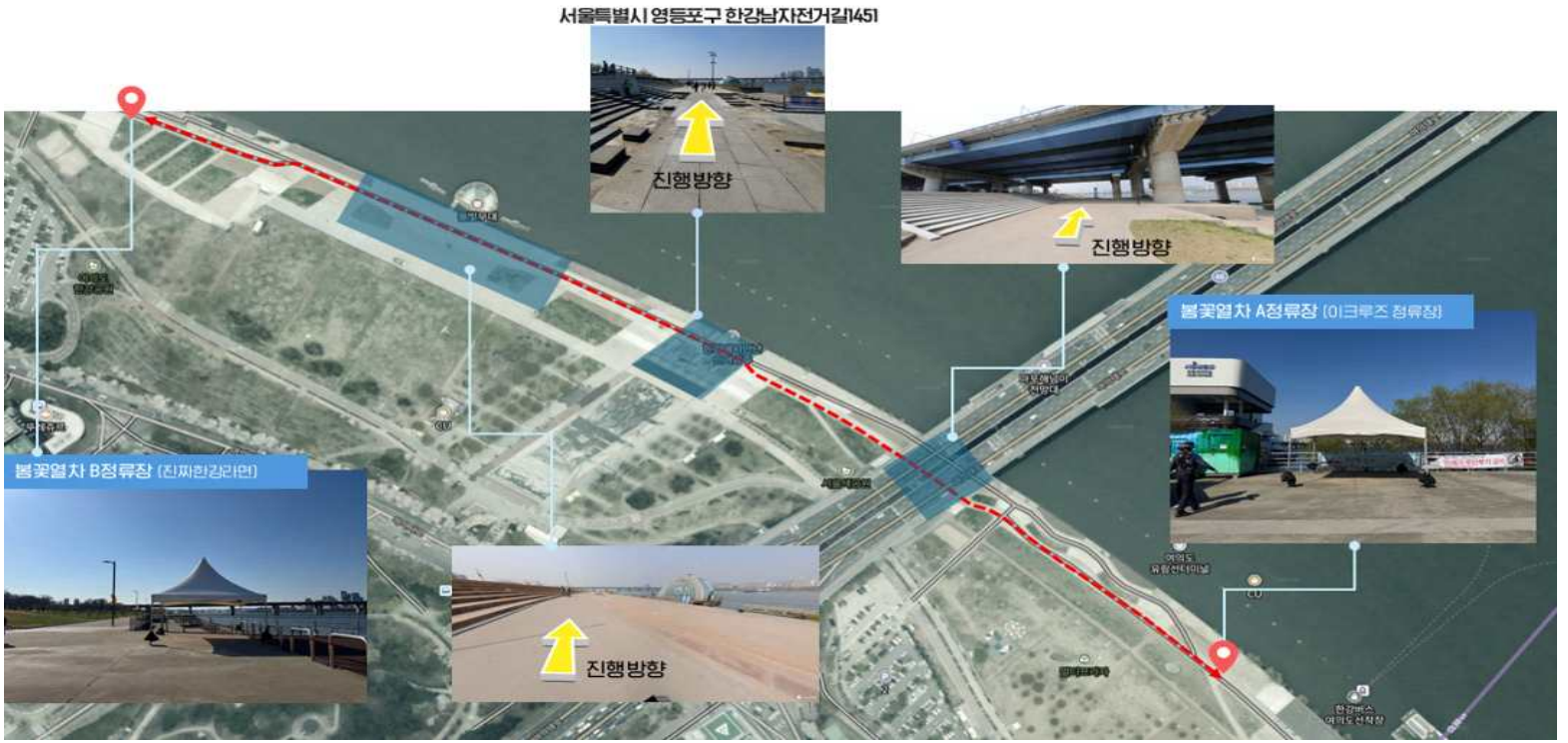
3. 한강공원 정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 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 일원

4. 여의도한강공원 관리구역 정의
(1) 여의도한강공원 : 최하류쪽 한강철교 중앙 ~ 국회 뒤 샛강 사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02-3780-0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의도한강공원 지구지정도

□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강남자전거길1451
진행방향
진행방향
봄꽃열차 A정류장 (이크루즈 정류장)
봄꽃열차 B정류장 (진짜한강라면)
진행방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및 지정 고시 ('24년 모아타운 수립(선정)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4년 모아타운 수립(선정) 대상지 중 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 24년 모아타운 수립(선정) 대상지 중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광진구	자양1동 799 일대	73,362.00		'24. 5. 1.	시고시 제2024-353호
2	광진구	자양2동 649 일대	합계	95,352.80		
			기존	94,070.57	'24. 5. 3.	시고시 제2024-416호 ※ 오기면적 수정
			추가	1,282.23	'25. 6. 2.	구역변경 ※ ' 25년 제8차 전문가 자문회의('25.06.05.)
3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대	835.25		'24. 6.20.	시고시 제2024-303호

2. 권리산정기준일 : 사업구역별 개별 권리산정기준일 참조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3호(‘24. 7.18.), 제2024-416호(’ 24. 8.29.), 제2024-254호(‘24. 5.23.), 제2024-303호(‘24. 6.20.)에 따른 최초 고시일로부터 자동실효 기간에서 2년 연장)에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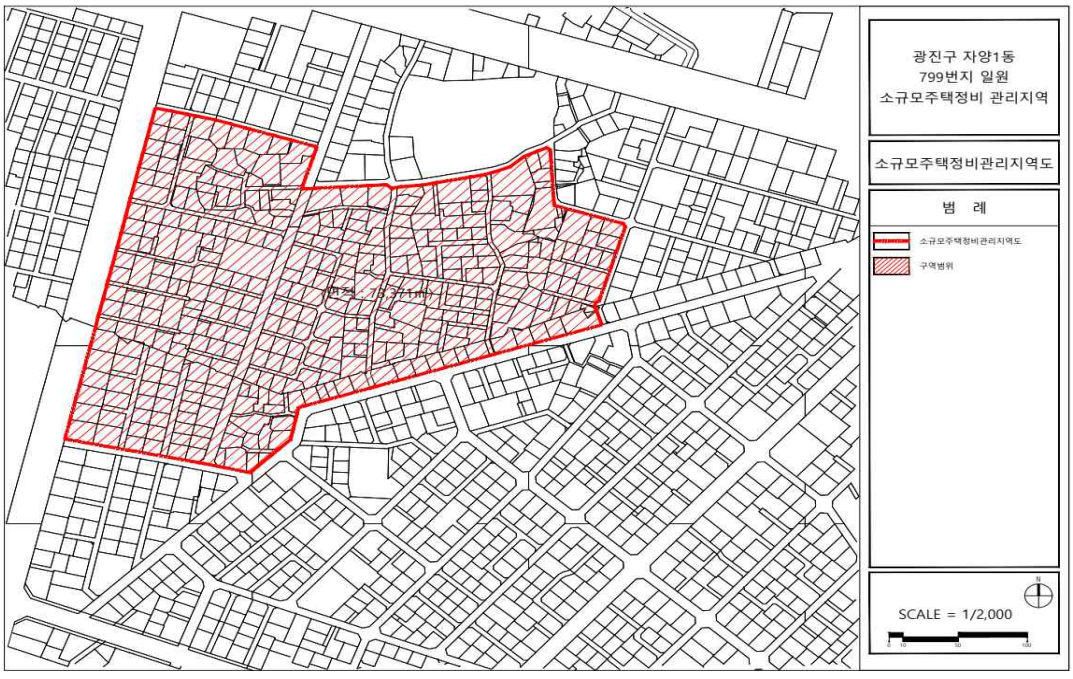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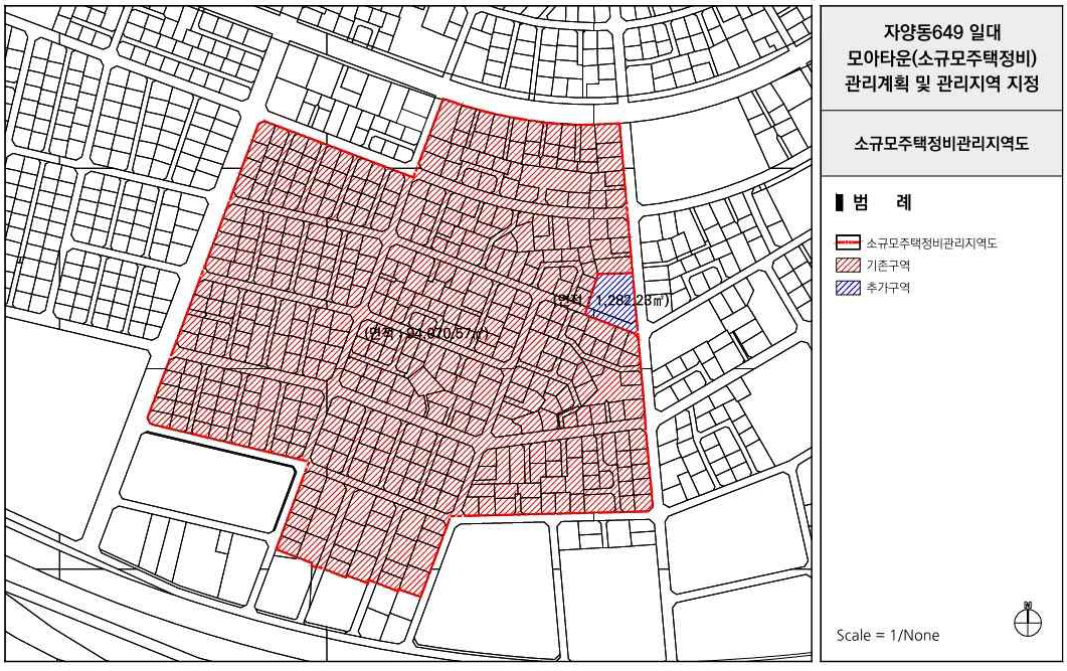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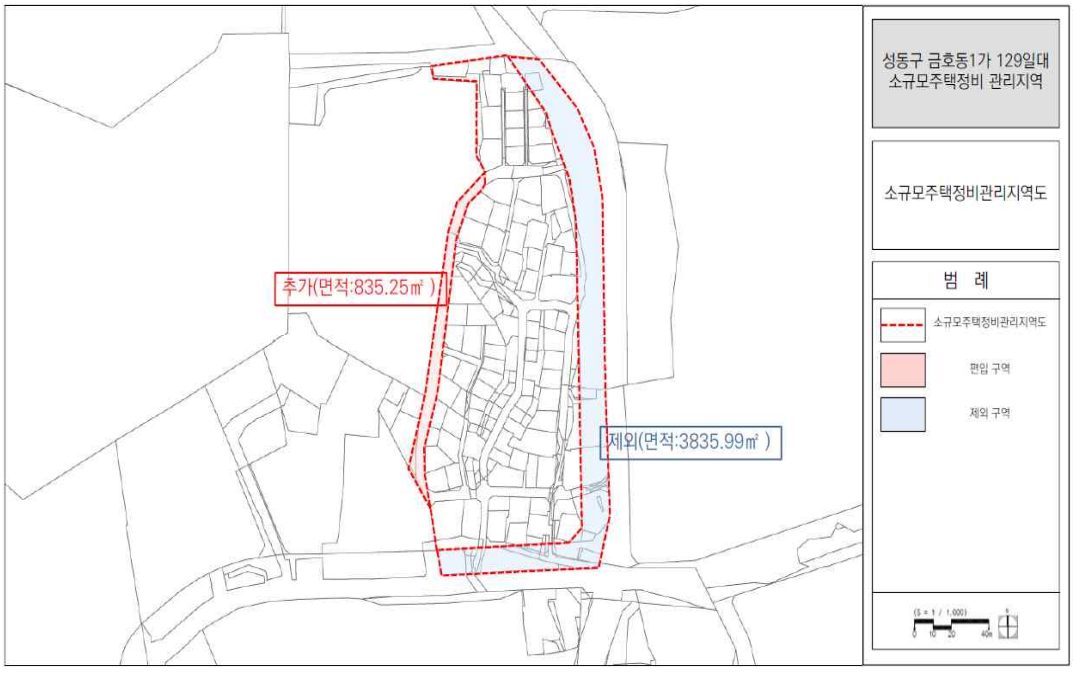
1. 자양1동 799



2. 광진구 자양2동 649일대



3. 금호동 129번지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2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7호(1996.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2012.03.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9호(2025.08.07.)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일원가람아파트)에 대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12.24.)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35,246.0	-	1,335,246.0	100.0	
일반주거지역	소 계	1,205,879.0	-	1,205,879.0	90.3	
	제1종일반주거지역	337,243.9	-	337,243.9	25.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32,531.6	감) 39,946.3	292,585.3	21.8	
	제2종일반주거지역	15,712.0	증) 39,946.3	55,658.3	4.2	
	제3종일반주거지역	520,391.5	-	520,391.5	39.0	
일반상업지역		42,747.4	-	42,747.4	3.2	
자연녹지지역		86,619.6	-	86,619.6	6.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일원동 735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2,585.3 (감) 39,946.3)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사업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①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세곡동 13-4	-	7,144	125,683	국토부고시 제2017-135호 (2017.3.9.)	• 연구시설 중복결정 - 지상 : 연구시설 - 지상4층~지하1층 - 지하 : 철도시설 - L = 92.9m - b = 12.4m - H = 지하39.5m ~ 62.4m(해발고도 65.3m ~ 88.2m)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일원정거장)	-	-	일원동 717번지 일대	-	7,564.0	건설부고시 제1990-358호 (1990.6.22.)	• 중복결정 (대로2-82, 대로3-108) • 일부 입체적 결정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변경								8,090.6		

※ 국토부고시 제2023-209호(2023.4.25.) 및 강남구고시 제2015-79호(2015.7.16.) 누락사항 반영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철도 (일원정거장)	• 일원정거장 5번출입구 개선 및 엘리베이터 신설 - 면적 : 7,564.0㎡ → 8,090.6㎡ (증) 526.6㎡)	• 협소한 기존 일원정거장 5번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②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일원동 717번지 일대	길이(m)	11.5	-	-	강남구고시 제2015-79호 (2015.7.16.)	• 1번출입구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이설 및 신설 (면적 : 52㎡)
				폭(m)	5.5	-	-		
				높이(m)	지하 15.25 ~지상 4.8 (해발고도: 29.45~49.5)	-	-		
신설	②	철도	일원동 735번지	길이(m)	-	증) 51.34	51.34	-	• 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철도 입체적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고
				폭(m)	-	증) 4.35~7.48	4.35~7.48		
				높이(m) (해발고도)	-	증) +28.26 ~+51.72	+28.26 ~+51.72		
				수평투영면적(㎡)	-	증) 261.22	261.22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 범위 - 지상부 : 면적 = 119.87㎡ 높이 = +45.00m ~ +51.72m - 지하부 : 면적 = 261.22㎡ 높이 = +28.26m ~ +45.00m				

※ 강남구고시 제2015-79호 (2015.7.16.) 누락사항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일원정거장)	• 가람아파트 획지 내 철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길이:51.34m, 폭:4.35~7.48m - 높이:+28.26~+51.72m, 수평투영면적:261.22㎡	• 협소한 기존 일원정거장 5번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③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53	14,551	250,506.8	14	2,664	32,526.0	15	7,282	163,558.3	24	4,605	55,620.9
광로	1	93	6,660.1	1	93	6,660.1	-	-	-	-	-	-
대로	6	4,790	136,257.4	-	-	-	3	3,466	106,091.5	3	1,324	30,1659
중로	12	4,764	69,577.8	-	-	-	8	3,663	56,244.3	4	1,101	13,333.5
소로	34	4,904	39,209.9	13	2,571	25,865.9	4	153	1,222.5	17	2,180	12,121.5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8	50 ~55	주간선 도로	13,250 (93)	천호동 103광장	과천시제	일반 도로	양재대로	서고시406 (87.6.9)	양재대로
기정	대로	2	27	30	보조 간선도로	3,750 (520)	수서동 142호 광장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수서역	건고시41 (84.2.14)	밤고개길
기정	대로	2	82	30	보조 간선도로	3,340 (2,546)	개포동 69	가락동 660-1	일반 도로	일원역	서고시17 (90.5.9)	광평로
기정	대로	2	26	30	보조 간선도로	3,340 (400)	대로2-82	가락동 660-1	일반 도로	로즈데일 빌딩	서고시17 (90.5.9)	광평로
기정	대로	3	185	25	집산도로	257	일원동 701-4	중로2-332	일반 도로	일원역	건고시26 (90.2.2)	일원동길
기정	대로	3	192	25	집산도로	51	송파구 장지동717	일원동711	일반 도로	일원 1동 사무소	건고시518 (92.9.22)	수서1단지 아파트 진입도로
기정	대로	3	192	27	도시 고속도로	9,416 (1,016)	대로2-82	광진구 노유동96-4	자동차 전용도로	강남구 스포츠 문화센터	서고시 96-43 (69.3.2)	동부간선 도로
기정	중로	2	332	15	집산도로	525	대로2-82	대로3-185	일반 도로	밀알학교	건고시26 (90.2.2)	벌말길
기정	중로	2	335	15	집산도로	915	대로2-82	대로3-185	일반 도로	왕북초교	건고시26 (90.2.2)	벌말길
기정	중로	2	336	15	집산도로	298	대로2-82	중로2-335	일반 도로	수서 까치마을	건고시26 (90.2.2)	왕북길
기정	중로	2	333	15	집산도로	965	대로2-82	대로2-82	일반 도로	서울 로봇고교	건고시26 (90.2.2)	대모산길
변경	중로	2	333	15 ~18	집산도로	965	대로2-82	대로2-82	일반 도로	서울 로봇고교	건고시26 (90.2.2)	대모산길
기정	중로	2	334	15	집산도로	210	대로2-82	중로2-333	일반 도로	일원동 735	건고시26 (90.2.2)	서원길
변경	중로	2	334	18 (16.5)	집산도로	210	대로2-82	중로2-333	일반 도로	일원동 735	건고시26 (90.2.2)	서원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348	15	국지도로	230	대로2-82	중로3-321	일반도로	수서환승주차장	건고시26(90.2.2)	수서7단지길
기정	중로	2	338	15	집산도로	435	대로2-86	소로1-26	일반도로	세종고교	건고시26(90.2.2)	수서길
기정	중로	2	349	15	국지도로	85	대로2-86	중로3-323	일반도로	수서동사무소	건고시307(91.6.12)	-
기정	중로	2	321	12	국지도로	454	중로2-348	수서동732-1공	일반도로	대진디자인고교	건고시26(90.2.2)	궁말길
기정	중로	3	312	12	국지도로	105	중로2-338	대로2-27	일반도로	현대벤쳐빌	건고시26(90.2.2)	하나로길
기정	중로	3	323	12	국지도로	295	중로2-338	소로1-28	일반도로	수서한아름아파트	건고시26(90.2.2)	하나로길
기정	중로	3	324	12	집산도로	156	대로2-86	수서동261도	일반도로	수서6단지아파트	건고시26(90.2.2)	수서6단지길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70	소로3-41	소로1-21	일반도로	일원동727-6	건고시307(91.6.12)	느티나무4로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79	소로1-21	소로3-35	일반도로	일원동728-7	건고시307(91.6.12)	느티나무4로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160	중로2-332	소로1-20	일반도로	일원동725-3	건고시307(91.6.12)	느티나무길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325	중로2-333	소로3-43	일반도로	한솔공원	건고시26(90.2.2)	대모산1로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235	대로3-185	대로2-82	일반도로	일원역	건고시307(91.6.12)	-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135	중로2-333	서러3-45	일반도로	서울로봇고교	건고시26(90.2.2)	대모산2로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365	대로2-82	중로3-321	일반도로	수서신동아아파트	건고시26(90.2.2)	궁말길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35	중로2-338	소로1-27	일반도로	수서초교	건고시26(90.2.2)	수서길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370	고로1-28	중로2-338	일반도로	수서중교	건고시26(90.2.2)	수서길
기정	소로	1	28	10	국지도로	90	소로1-27	대로2-86	일반도로	수서사회체육센터	건고시307(91.6.12)	수서길
기정	소로	1	29	10	국지도로	280	대로2-86	수서동221-12천	일반도로	탄천공원	건고시26(90.2.2)	-
기정	소로	1	30	10	국지도로	207	중로2-338	중로2-349	일반도로	한신사이룩스	건고시518(92.9.22)	맑은마음길
기정	소로	1	31	10	국지도로	120	중로3-324	수서동724-4잡	일반도로	수서타워	건고시518(92.9.22)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55	중로2-333	일원동 산63-38임	일반도로	일원장미공원	건고시26(90.2.2)	대모산1로
기정	소로	2	33	8	국지도로	34	소로1-30	중로3-323	일반도로	수서동717	건고시26(90.2.2)	-
기정	소로	2	34	8	국지도로	60	소로1-31	수서동261도	일반도로	수서타워	건고시518(92.9.22)	-
기정	소로	2	50	8	국지도로	4	중로2-335	수서동 산10-6임	일반도로	수서동743-4	건고시307(91.6.12)	-
기정	소로	3	35	6	국지도로	192	소로1-20	소로1-21	일반도로	일원동724번지	건고시307(91.6.12)	-
기정	소로	3	36	6	국지도로	75	소로1-21	소로3-35	일반도로	일원동725-6	건고시307(91.6.12)	느티나무3로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60	소로1-21	소로3-35	일반도로	일원동724-6	건고시307(91.6.12)	느티나무2로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65	소로1-21	소로3-41	일반도로	일원동726-6	건고시307(91.6.12)	느티나무3로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65	소로1-21	소로3-41	일반도로	일원동723-6	건고시307(91.6.12)	느티나무2로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65	소로1-21	소로3-41	일반도로	일원동721-6	건고시307(91.6.12)	느티나무1로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170	중로2-332	소로1-19	일반도로	일원동722-1	건고시307(91.6.12)	-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415	소로1-22	소로3-43	일반도로	일원터널	건고시26(90.2.2)	-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40	소로1-22	소로3-43	일반도로	한솔공원	건고시26(90.2.2)	대모산1로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405	소로1-22	일원동433답	일반도로	한솔공원	건고시26(90.2.2)	-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155	소로1-24	일원동737-1수	일반도로	서울로봇고교	건고시307(91.6.12)	대모산2로
기정	소로	3	46	6	국지도로	90	중로2-335	수서동 산10-6임	일반도로	수서소방파출소	건고시307(91.6.12)	-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45	대로2-82	수서동739-1대	일반도로	수서동익아파트	건고시307(91.6.12)	-
기정	소로	3	48	6	국지도로	280	대로2-27	대로8-28	일반도로	수서동727	서고시207(96.7.27)	-
기정	소로	3	49	6	국지도로	30	대로2-82	소로1-30	일반도로	한신사이룩스	건고시26(90.2.2)	-
기정	소로	3	51	4	국지도로	14	소로1-20	일원동730-1공	일반도로	일원동729-1	건고시307(91.6.12)	-
기정	소로	3	52	4	국지도로	14	소로1-19	일원동730-2공	일반도로	일원동729-6	건고시307(91.6.12)	-

주) ( )는 구역내의 연장 및 폭원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호(2024.1.18.) 누락사항 반영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333	중로 2-333	• 도로 확폭 - 15m → 15~18m(3m 확폭)	• 광평로20길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중로 2-334	중로 2-334	• 도로 확폭 - 15m → 18m(3m 확폭)	• 일원로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일원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1.5m씩 가람아파트와 상록수아파트 구역 내 확폭

④ 주차장 : 변경없음

⑤ 여객자동차 정류장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4) 기타 도시계획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BL1	441.7	일원동 729	210.6	단독개발
			일원동 729-1	231.1	
기정	BL2	717.1	일원동 729-3	224.0	단독개발
			일원동 729-4	159.9	
			일원동 729-5	166.9	
			일원동 729-6	166.3	
기정	BL63	658.2	일원동 729-8	164.9	단독개발
			일원동 729-9	166.7	
			일원동 729-10	162.8	
			일원동 729-11	163.8	
기정	BL4	450.0	일원동 730	450.0	단독개발
기정	BL5	2,320.3	일원동 728	223.9	단독개발
			일원동 728-1	231.7	
			일원동 728-2	229.2	
			일원동 728-3	229.7	
			일원동 728-4	234.1	
			일원동 728-5	236.1	
			일원동 728-6	232.8	
			일원동 728-7	232.9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일원동 728-8	231.6	
			일원동 728-9	238.3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BL6	1,859.7	일원동 727	236.0	단독개발
			일원동 727-1	232.9	
			일원동 727-2	231.6	
			일원동 727-3	228.8	
			일원동 727-4	231.1	
			일원동 727-5	233.0	
			일원동 727-6	233.5	
			일원동 727-7	232.8	
기정	BL7	2,054.6	일원동 725	267.8	단독개발
			일원동 725-1	230.6	
			일원동 725-2	227.8	
			일원동 725-3	229.8	
			일원동 725-4	233.1	
			일원동 725-5	230.2	
			일원동 725-6	233.4	
			일원동 725-7	231.4	
			일원동 725-8	170.8	
기정	BL8	1,859.2	일원동 726	232.3	단독개발
			일원동 726-1	231.0	
			일원동 726-2	232.7	
			일원동 726-3	232.3	
			일원동 726-4	229.6	
			일원동 726-5	232.9	
			일원동 726-6	232.3	
			일원동 726-7	236.1	
기정	BL9	1,733.4	일원동 724	162.9	단독개발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일원동 724-1	233.1	
			일원동 724-2	227.9	
			일원동 724-3	228.5	
			일원동 724-4	229.6	
			일원동 724-5	229.8	
			일원동 724-6	229.4	
			일원동 724-7	192.2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BL10	1,865.5	일원동 723	233.9	단독개발
			일원동 723-1	234.5	
			일원동 723-2	225.0	
			일원동 723-3	238.3	
			일원동 723-4	234.0	
			일원동 723-5	233.4	
			일원동 723-6	230.7	
			일원동 723-7	235.7	
기정	BL11	1,963.5	일원동 720	331.0	단독개발
			일원동 720-1	244.9	
			일원동 720-2	230.1	
			일원동 720-3	230.0	
			일원동 720-4	229.1	
			일원동 720-5	235.4	
			일원동 720-6	231.6	
			일원동 720-7	231.4	
기정	BL12	1,694.0	일원동 721	231.3	단독개발
			일원동 721-1	229.9	
			일원동 721-2	230.9	
			일원동 721-3	230.6	
			일원동 721-4	227.6	
			일원동 721-5	157.6	
			일원동 721-6	158.1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일원동 721-7	228.0	
기정	BL13	714.9	일원동 722	384.2	단독개발
			일원동 722-1	330.7	
기정	BL14	47,768.7	일원동 731	47,768.7	특별계획구역16
기정	BL15	742.9	일원동 732-1	742.9	단독개발
기정	BL16	24,542.0	일원동 714	14,709.6	단독개발
			일원동 713	9,832.4	
기정	BL17	65,545.9	일원동 719	33,298.3	특별계획구역12
			일원동 718	33,247.6	특별계획구역11
기정	BL18	61,562.8	일원동 734	61,562.8	특별계획구역14
기정	BL19	25,386.7	일원동 739	25,386.7	특별계획구역15
기정	BL20	970.0	일원동 715-1	970.0	단독개발
기정	BL21	34,776.6	일원동 716	34,776.6	특별계획구역10
기정	BL22	11,169.9	일원동 717	11,169.9	단독개발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BL10	1,865.5	일원동 723	233.9	단독개발
			일원동 723-1	234.5	
			일원동 723-2	225.0	
			일원동 723-3	238.3	
			일원동 723-4	234.0	
			일원동 723-5	233.4	
			일원동 723-6	230.7	
			일원동 723-7	235.7	
기정	BL11	1,963.5	일원동 720	331.0	단독개발
			일원동 720-1	244.9	
			일원동 720-2	230.1	
			일원동 720-3	230.0	
			일원동 720-4	229.1	
			일원동 720-5	235.4	
			일원동 720-6	231.6	
			일원동 720-7	231.4	
기정	BL12	1,694.0	일원동 721	231.3	단독개발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일원동 721-1	229.9	
			일원동 721-2	230.9	
			일원동 721-3	230.6	
			일원동 721-4	227.6	
			일원동 721-5	157.6	
			일원동 721-6	158.1	
			일원동 721-7	228.0	
기정	BL13	714.9	일원동 722	384.2	단독개발
			일원동 722-1	330.7	
기정	BL14	47,768.7	일원동 731	47,768.7	특별계획구역16
기정	BL15	742.9	일원동 732-1	742.9	단독개발
기정	BL16	24,542.0	일원동 714	14,709.6	단독개발
			일원동 713	9,832.4	
기정	BL17	65,545.9	일원동 719	33,298.3	특별계획구역12
			일원동 718	33,247.6	특별계획구역11
기정	BL18	61,562.8	일원동 734	61,562.8	특별계획구역14
기정	BL19	25,386.7	일원동 739	25,386.7	특별계획구역15
기정	BL20	970.0	일원동 715-1	970.0	단독개발
기정	BL21	34,776.6	일원동 716	34,776.6	특별계획구역10
기정	BL22	11,169.9	일원동 717	11,169.9	단독개발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BL23	42,879.7	일원동 735	41,144.7	특별계획구역13
			일원동 735-2	161.5	단독개발
			일원동 735-3	997.8	
			일원동 735-4	575.7	
변경	BL23	41,681.3	일원동 735	39,946.3	특별계획구역13
			일원동 735-2	161.5	단독개발
			일원동 735-3	997.8	
			일원동 735-4	575.7	
기정	BL24	35,876.5	일원동 738	13,612.8	단독개발
			일원동 737	12,291.6	
			일원동 736	9,972.1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BL25	10,708.0	수서동 745	10,708.0	단독개발
기정	BL26	795.8	수서동 745-2	795.8	단독개발
기정	BL27	68,244.7	수서동 746	36,629.8	특별계획구역9
			수서동 747	31.614.9	특별계획구역8
기정	BL28	11,379.0	수서동 750	10,650.4	단독개발
			수서동 750-1	728.6	
기정	BL29	9,162.2	수서동 744	4,099.1	단독개발
			수서동 743	4,401.5	
			수서동 743-1	661.6	
기정	BL30	2,271.8	수서동 742	168.7	단독개발
			수서동 742-1	169.0	
			수서동 742-3	201.7	
			수서동 742-4	201.0	
			수서동 742-7	200.8	
			수서동 742-6	200.9	
			수서동 742-5	201.1	
			수서동 742-9	333.5	
			수서동 742-10	200.2	
			수서동 742-11	197.3	
			수서동 742-12	197.6	
기정	BL31	5,026.4	수서동 741-1	651.5	단독개발
			수서동 741	4,374.9	
기정	BL32	19,490.7	수서동 738	14,805.8	특별계획구역7
			수서동 739	2,753.3	단독개발
			수서동 739-1	1,249.8	
			수서동 738-1	681.8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BL33	12,102.7	수서동 737	12,102.7	특별계획구역17
기정	BL34	31,684.6	수서동 736	31,684.6	특별계획구역6
기정	BL35	30,592.0	수서동 732	19,954.5	단독개발
			수서동 733	10637.5	
기정	BL36	10,358.4	수서동 730	5,949.5	단독개발
			수서동 731	4,408.9	
기정	BL37	661.1	수서동 733-2	661.1	단독개발
기정	BL38	5,016.8	수서동 734	4,972.1	공동개발(권장) : 734-1
			수서동 731-1	44.7	공동개발(권장) : 734
기정	BL39	95,808.1	수서동 711	80,844.0	특별계획구역1
			수서동 711-1	2,801.7	단독개발
			수서동 712	10,352.4	
			수서동 712-1	505.9	
			수서동 712-2	152.0	
			수서동 712-3	1,152.1	
기정	BL40	78,288.5	수서동 707	54,319.1	특별계획구역2
			수서동 708	23,939.4	특별계획구역3
기정	BL41	66,366.4	수서동 709	9,471.4	단독개발
			수서동 710	10,848.1	
			수서동 711	18,923.6	
			수서동 712	27,123.3	특별계획구역4
기정	BL42	5,421.9	수서동 713	5,421.9	단독개발
기정	BL43	3,440.1	수서동 714	1,001.8	단독개발
			수서동 714-1	350.8	
			수서동 714-2	350.6	
			수서동 714-3	517.8	
			수서동 714-6	350.7	
			수서동 714-5	350.6	
			수서동 714-4	517.8	
기정	BL44	3,433.0	수서동 717	516.9	단독개발
			수서동 717-1	357.0	
			수서동 717-2	343.1	
			수서동 717-3	1,001.0	
			수서동 717-6	517.2	
			수서동 717-4	697.8	

구 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비고
기정	BL45	3,485.8	수서동 715	1,121.6	단독개발
			수서동 715-1	989.7	
			수서동 715-2	990.3	
			수서동 715-3	38/4.2	
기정	BL46	3,724.9	수서동 716	3,724.9	단독개발
기정	BL47	5,077.0	수서동 718-1	170.8	단독개발
			수서동 718-2	1,051.4	
			수서동 718-3	550.3	
			수서동 718	3,304.5	
기정	BL48	6,265.7	수서동 724	6,265.7	단독개발
기정	BL49	3,148.3	수서동 725	1,983.5	단독개발
			수서동 725-1	398.9	
			수서동 725-2	365.6	
			수서동 725-3	400.3	
기정	BL50	2,657.8	수서동 726	663.2	단독개발
			수서동 726-1	332.4	
			수서동 726-4	332.3	
			수서동 726-2	332.6	
			수서동 726-3	332.5	
			수서동 726-5	664.8	
기정	BL51	29,698.8	수서동 723	29,968.8	특별계획구역5
기정	BL52	5,064.7	수서동 721	3,079.7	단독개발
			수서동 721-1	1,985.0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BL23	가구면적 변경	특별계획구역13 도로 확폭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으로 가구면적 변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 특별계획구역1 - 수서1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2 - 수서주공1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3 - 수서삼익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4 - 수서한아름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5 - 수서6단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6 - 신동아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7 - 수서동익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8 - 수서삼성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9 - 까치마을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0 - 목련타운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1 - 샘터마을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2 - 푸른마을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3 - 일원가람(변경)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2">기 정</th><th>변 경</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colspan="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5번지 일원</td><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35번지 일원</td><td></td></tr>
<tr><td colspan="3">구역면적</td><td colspan="2">• 41,144.7㎡</td><td>• 41,144.7㎡</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 · 지구</td><td colspan="2">•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을 검토하되,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 가능 (기반시설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 유지)</td><td>•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공공시설 등 계획</td><td>2종(7층) 유지시</td><td rowspan="2">• 일원로 : 18m(도로중심선기준 양측 1.5m확폭)
• 광평로20길 : 18m(구역내 3m확폭)
• 지역필요시설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td><td rowspan="2">• 일원로 : 18m(도로중심선기준 양측 1.5m확폭)
• 광평로20길 18m(구역내 3m 확폭)
• 지하철 출입구 등 대지 내 이전</td><td rowspan="2"></td></tr>
<tr><td>2종 상향시</td></tr>
<tr><td rowspan="2">용도계획</td><td colspan="2">지정용도</td><td>2종(7층) 유지시
2종 상향시</td><td>•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td><td>•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td><td></td></tr>
<tr><td colspan="2">불허용도</td><td colspan="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업소</td><td>•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업소</td><td></td></tr>
</table>

(표 계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물 밀도	건폐율	2종(7층) 유지시	• 60% 이하	• 60% 이하	
		2종 상향시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법적상한)	2종(7층) 유지시	• 170% / 190% / 250%	• 190% / 210% / 225.11% / 250%	
		2종 상향시	• 190% / 200% / 250%		
	높 이	2종(7층) 유지시	• 최고 75m이하(평균13층 이하) • 비행안전구역 제한높이 이하	• 최고 75m 이하 • 비행안전구역 제한높이 이하	
		2종 상향시	• 최고 75m이하 • 비행안전구역 제한높이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광평로변 전면공지 확보 건축한계선 10m • 일원로변 건축한계선 10m • 광평로20길변 건축한계선 3m (지구통경축변 건축한계선 5m)		• 광평로변 전면공지 확보 건축한계선 10m • 일원로변 건축한계선 10m • 광평로20길변 건축한계선 3m (지구통경축변 건축한계선 5m)	
건축물 형태 및 배치		• 광평로변 및 일원로변 통학로 가로대응형배치구간 (폭 10m) • 대모산 조망을 위한 통경구간 조성 (지구조망축, 폭 10m / 지구통경축, 폭 5m) • 광평로변 보행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배치		• 광평로변 및 일원로변 통학로 가로대응형배치구간 (폭 10m) • 대모산 조망을 위한 통경구간 조성 (지구조망축, 폭 10m / 지구통경축, 폭 5m) • 광평로변 보행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배치	
커뮤니티시설 등 배치		• 커뮤니티시설 등 배치 시 주요(간선)가로 및 공공보행통로변으로 배치		• 커뮤니티시설 등 일원로변으로 배치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 광평로변 및 가각부대지의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 광평로변 및 가각부대지의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주차출입구	• 간선변에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면부에 주차출입구 조성		• 간선변에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면부에 주차출입구 조성	
기타	친환경	• 에너지제로빌딩 5등급 이상 권장		-	

※ 1)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체계 등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기준을 따르며,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2)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등) 수립시 대모산 경관 조망을 위한 높이관리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8장 경관 및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14 - 상록수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5 - 청솔빌리지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6 - 한솔마을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7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일원동 735번지 일대	41,144.7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5.61%

⇒ (1,830,863,076천원 - 654,146,059천원) / 1,114,217,000천원 X 100 = 105.61%

- 총 수입 추정 : 1,830,863,076천원
- 총 지출 추정 : 654,146,059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114,217,000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아파트는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2024년 12월 기준) 및 최근 1년(2024년) 실거래가 평균 등을 참작하여 KB시세, 한국부동산원시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값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추정
- 아파트外(근린생활시설 등)는 본건 아파트 내 상가 및 인근 아파트 상가 등의 거래사례 (2022년 ~ 2024년)를 조사한 후 위치별·층별·면적별 효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으로 추정

(단위 : 천원)

구분	건물면적(㎡) 공급	건물면적(㎡) 전용	세대수	일반평균시세(2024년 12월) KB부동산	일반평균시세(2024년 12월)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고려 가격 [현실화율 : 1.643]	종전자산 (세대 평균)	종전자산 추산액
아파트	75.16	90.35	196	1,950,000	1,910,000	2,072,000	2,014,000	394,744,000
	84.95	100.95	300	2,350,000	2,225,000	2,356,000	2,352,000	705,600,000
	합계		496	-	-	-	-	1,100,344,000
아파트外	층	전용 평균(㎡)	호수				종전자산 (호평균)	종전자산총액
	1	29.40	6	-	-	-	941,670	5,650,000
	2	208.80	1	-	-	-	2,719,000	2,719,000
	3	48.84	8	-	-	-	688,000	5,504,000
	합계		15	-	-	-	-	13,873,000
종전자산 총계			511					1,114,217,000

※ 상기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은 개략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될 예정임.

추정 분담금 산출

(단위 : 천원)

전용면적 (㎡)	예상평균 종전자산	추정권리가액		예상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비례율	권리가액	주택형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구분
75.16	2,014,000	105.61%	2,126,985	59	1,670,800	-456,185	환급
				73	1,935,000	-191,985	환급
				84	2,154,900	27,915	추가분담
				102	2,537,200	410,215	추가분담
				136	3,128,100	1,001,115	추가분담
84.95	2,352,000	105.61%	2,483,947	59	1,670,800	-813,147	환급
				73	1,935,000	-548,947	환급
				84	2,154,900	-329,047	환급
				102	2,537,200	53,253	추가분담
				136	3,128,100	644,153	추가분담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작성시점 현재의 정비계획(안)과 설계 개요를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예시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분담금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통하여 확정됨.

※ 상기 분담금 추산액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물가상승률, 시공사와의 공사비 계약내용, 사업진행속도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른 분양수입은 현재 주택형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가액은 소수점 또는 단위 절사 등으로 제곱미터 또는 평당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정비계획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144.7	-	41,144.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1,144.7	감) 39,946.3	1,198.4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9,946.3	39,946.3	97.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일원동 735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98.4 (감) 39,946.3)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사업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1,144.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198.4	2.9	
	도 로	1,198.4	2.9	
	철 도	(261.22)	(0.6)	획지 내 입체적 결정
획 지	소 계	39,946.3	97.1	
	공동주택	39,946.3	97.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일원정거장)	-	-	일원동 717번지 일대	-	7,564.0	건설부고시 제1990-358호 (1990.6.22.)	• 중복결정 (대로2-82, 대로3-108) • 일부 입체적 결정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변경								8,090.6		

※ 국토부고시 제2023-209호(2023.4.25.) 및 강남구고시 제2015-79호 (2015.7.16.) 누락사항 반영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철도 (일원정거장)	• 일원정거장 5번출입구 개선 및 엘리베이터 신설 - 면적 : 7,564.0㎡ → 8,090.6㎡ (증) 526.6㎡)	• 협소한 기존 일원정거장 5번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②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②	철도	일원동 735번지	길이(m)	-	증) 51.34	51.34	-	• 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내 철도 입체적 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고
				폭(m)	-	증) 4.35~7.48	4.35~7.48		
				높이(m) (해발고도)	-	증) +28.26 ~+51.72	+28.26 ~+51.72		
				수평투영 면적(㎡)	-	증) 261.22	261.22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 범위 - 지상부 : 면적 = 119.87㎡ 높이 = +45.00m ~ +51.72m - 지하부 : 면적 = 261.22㎡ 높이 = +28.26m ~ +45.00m				

※ 강남구고시 제2015-79호 (2015.7.16.) 누락사항 반영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일원정거장)	• 가람아파트 획지 내 철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길이:51.34m, 폭:4.35~7.48m - 높이:+28.26~+51.72m, 수평투영면적:261.22㎡	• 협소한 기존 일원정거장 5번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③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333	15	집산도로	965	대로2-82	대로2-82	일반 도로	서울 로봇고교	건고시26 (90.2.2)	대모산길
변경	중로	2	333	15~18	집산도로	965	대로2-82	대로2-82	일반 도로	서울 로봇고교	건고시26 (90.2.2)	대모산길
기정	중로	2	334	15	집산도로	210	대로2-82	중로 2-335	일반 도로	일원동 735	건고시26 (90.2.2)	서원길
변경	중로	2	334	18 (16.5)	집산도로	210	대로2-82	중로 2-335	일반 도로	일원동 735	건고시26 (90.2.2)	서원길

주) ( )는 구역 내 폭원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333	중로 2-333	• 도로 확폭 - 15m → 15~18m(3m 확폭)	• 광평로20길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중로 2-334	중로 2-334	• 도로 확폭 - 15m → 18m(3m 확폭)	• 일원로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한 구역 내 도로 확폭 -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일원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1.5m씩 가람아파트와 상록수아파트 구역 내 확폭

라.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 : 해당없음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면 적(㎡)		비고
			서울시 기준	계획(안)	
경비실,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	380.0	지상/지하
주민공동 이용시설	경로당 (개방형)		330.0	350.0	지상
	돌봄시설 (개방형)	어린이집	330.0	350.0	지상
		다함께 돌봄센터	66.0	100.0	지하
		기타돌봄시설	-	630.0	지상/지하
	기타 주민공동시설		-	960.0	지상
	실내 주민운동시설		-	1,600.0	지하
	옥외 주민운동시설		-	800.0	옥외

구분		면 적(㎡)		비고
		서울시 기준	계획(안)	
	작은도서관	158.0	370.0	지하
	어린이놀이터	1,018.0	1,200.0	옥외
	소 계	1,902.0	6,360.0	-
합 계			6,740.0	-

※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라 1,000세대 미만의 경우 세대당 2.5㎡ 더한 면적의 1.25를 곱한 면적 이상 확보
= (818세대×2.5㎡)×1.25 = 2,556.25㎡ 이상 < 6,740.0 계획
※ 향후 정비계획 결정 절차,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 설	일원가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1,144.7	획 지	39,946.3	일원동 735	14	-	-	14	-	

사.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시설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m) (최고층수)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일원가람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1,144.7	획지	39,946.3	일원동 73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25.11 이하	250 이하	75m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818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60.4%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m) (최고층수)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구분	세대수									
		소계		분양		공공					
	합 계	818	100.0%	757	92.5%	61	7.5%				
	60㎡ 이하	119	14.6%	58	7.1%	61	7.5%				
	60~85㎡ 이하	375	45.8%	375	45.8%	-	-				
	85㎡ 초과	324	39.6%	324	39.6%	-	-				
심의완화 사항	•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상한용적률 225.11% → 법적상한용적률 249.98%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광평로변, 일원로변, 광평로20길변, 지구통경축변 : 폭 3~10m 지정 • 가로대응형 배치구간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0m • 대모산 높이관리구간 - 지구조망축 폭 10m, 지구통경축 폭 5m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조정 될 수 있음.

2) 용적률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		구역면적	대지면적 (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순부담 제외 면적	
				소계	토지 및 지분 (①+②)	건축물 (환산부지) (③)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41,144.7	39,946.3	2,057.4	1,882.1	175.3	-	-
전체		• 순부담면적 : 2,057.4㎡ (5.0%) =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057.4㎡ – 0㎡ – 0㎡ = 2,057.4㎡						
토지	도로	① 토지 기부채납 면적 : 1,198.4㎡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산정내용</th></tr>
<tr><td></td><td>키즈랜드</td><td>②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면적 : 683.7㎡ (연면적 : 3,000㎡)</td></tr>
<tr><td>건축물</td><td>키즈랜드</td><td>③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175.3㎡ (연면적 : 3,000㎡)</td></tr>
<tr><td colspan="2">기준 용적률</td><td>• 190%</td></tr>
<tr><td colspan="2">허용 용적률</td><td>•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190% + 20% = 210%
• 인센티브 = 20%
(열린단지 5%, BF인증 4%, 돌봄시설 5%, 층간소음해소 3%, 방재안전 3%)</td></tr>
<tr><td colspan="2">상한 용적률</td><td>•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a(토지)+(1.0×a(건축물))]
⇒ 210% × [1+(1.3×1.0×0.0479)+(1.0×0.0045)] = 223.74%
<table>
<tr><td>가중치</td><td>공공시설(건축물)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0% ÷ 210% = 1.0</td></tr>
<tr><td>α토지</td><td>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부지면적
= 1,882.1㎡ ÷ 39,262.6㎡ = 0.0479</td></tr>
<tr><td>α건축물</td><td>공공시설 등 부지 중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부지면적
= 175.3㎡ ÷ 39,262.6㎡ = 0.0045</td></tr>
</table>
• 지하철 출입구 등 대지내 이전에 따른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지하철 출입구 등 건폐면적÷대지면적)
⇒ 210% × (261.22÷ 39,946.3) = 1.37%
•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 223.74% + 1.37% = 225.11%</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 용적률</td><td>•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 225.11% → 법적상한용적률 249.98%</td></tr>
</table>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면적

기부채납 항목	합계	도로	공공지원시설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2,057.4	1,198.4	859.0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	-
순부담	2,057.4 (5.0%)		

■ 건축물 공공기여

구분	시설명	위치	층	면적(㎡)	비고(관리청)
1	공공지원시설 (키즈랜드)	일원동 735 일원	지하1층~지상1층	토지(지분) : 683.7 연면적 : 3,000	서울특별시

※ 공공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지원시설의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량		적용
보행중심 생활공간 조성	① 열린단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5%p	5%
세대 맞춤형	② BF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5%p 이내	4%
	③ 돌봄시설	•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xa) = 190% x ((1,080㎡ - 396㎡)/2,556.25㎡) x 0.1 = 5.08% * (국공립어린이집 350㎡+ 다함께돌봄센터 100㎡+ 키즈카페 등 630㎡) * a=0.1이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 어린이놀이터 등	5%p 이내	5%
	④ 층간소음 해소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5%p 이내	3%
환경친화	⑤	•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5%p	3%

구 분		인센티브량		적용
안전한 주거지 조성	방재안전	- 화재,소방,침수,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을 통한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 - 안전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해 적용	이내	
합 계		최대 20%p 이내		20% 적용

아.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 사업지 주변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2개소) •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계획안 반영 - 일원로 : B=15.0→18.0m, 왕복2→3차로 - 광평로20길 : B=15.0→15.0~18.0m, 왕복2→2~3차로
진·출입 동선	Ⓒ Ⓓ -	• 차량진출입구 운영계획 - 주출입구 : 진입2차로, 진출2차로(비신호교차로) - 부출입구 : 진입1차로, 진출2차로(비신호교차로) •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m 이상)
대중교통 및 보행	Ⓔ - - -	• 주출입구부 통학차량 정차 및 회차동선 확보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시설 설치 - 횡단보도 6개소, 고원식횡단보도 3개소 • 건축한계선을 이용한 보행공간 확보(B=3.0~10.0m) • 자전거보관소 설치 - 220대분 (법정주차의 20% 이상 확보)
주차시설	-	• 법정주차 : 1,081대 • 주차수요 : 1,029대(2033년 원단위법) • 계획주차 : 1,661대 - 법정대비 153.7%, 수요대비 161.4%
교통안전 및 기타	-	• 주차장 진출입구 차량경고등 설치(3개소) • 교통안전시설 재설치 - 과속방지턱 및 노면표시 등

주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방지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200m 이내에 3개소 (대모초, 대왕중, 로봇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정비계획·건축계획 검토 시 대모초, 대왕중, 로봇고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건축배치 시 일조영향 등을 고려한 층수계획 • 향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거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하겠음	-

카.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현황) 496세대 계획) 818세대 증) 322세대	

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①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14	13	1	14	14	-

②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496	496	278	218	1,408	789	619	
공동주택	496	496	278	218	1,408	789	619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 일원본동 세대당 인구 2.84인 적용 (2025년 1월 기준, 강남구 주민등록인구통계)

③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496	-	-	-	-	496	496	-	-	-
60㎡ 이하	소계	-	-	-	-	-	-	-	-	-	-
	30㎡초과~50㎡이하	-	-	-	-	-	-	-	-	-	-
	50㎡초과~60㎡이하	-	-	-	-	-	-	-	-	-	-
60㎡초과~85㎡이하		496	-	-	-	-	496	496	-	-	-
85㎡ 초과	소계	-	-	-	-	-	-	-	-	-	-
	85㎡초과~135㎡이하	-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현황

구분		계	분양주택	공공임대	비고
합 계		818	757	61	-
60㎡ 이하	소 계	119	58	61	-
	50㎡초과 ~ 60㎡이하	119	58	61	-
60㎡초과 ~ 85㎡이하		375	375	-	-
85㎡ 초과	소 계	324	324	-	-
	85㎡초과 ~ 135㎡이하	324	324	-	-
	135㎡초과	-	-	-	-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착공전	착공 ~ 공사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현재 추진 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 추진중으로 주민들 거주중	• 펜스 설치 및 유지 · 관리 • 1일 오전 · 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법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획 지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획지	강남구 일원동 735 일원	39,946.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거.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225.11%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249.98%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결정)</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49.98% - 225.11% = 24.87%</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24.87% × 50% = 12.435%</td></tr>
<tr><td>의무 연면적(지상층)</td><td colspan="5">• 39,946.3㎡(대지면적) × 12.435% = 4,967.32㎡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td><td colspan="2">세대규모</td><td rowspan="2">세대수</td><td rowspan="2">연면적</td><td rowspan="2">비고</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59.99㎡</td><td>82.48㎡</td><td>61</td><td>5,031.28㎡</td><td>획지</td></tr>
<tr><td colspan="2">합계</td><td>61</td><td>5,031.28㎡</td><td>〉4,967.32㎡</td></tr>
</table>

너.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 평가도 4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 평가제외 등급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대상지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 대상지 내 녹지계획을 수립 및 주변 자연자원과 주거지간의 연계성 강화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 해당 사항 없음	-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동주택, 도로 및 철도를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7	지형·지질	지형·지질영향 최소화	■	• 표고 45.00m~58.56m, 평균 경사도 3.27° 의 완만한 경사지형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8	물순환, 수리·수문	자연물순환 유지	■	• 대상지 내 녹지 계획	• 생태면적률 30% 이상 수입	-
9	수질	수질오염 방지	■	• 지표 수질 및 지하수질 현황 조사, 공사 중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10	바람	바람길 및 미기후 개선	■	• 서울기상대 기상현황 조사 분석, 주풍향 등 검토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녹지 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5층 이상 주거지로 온도가 높은 편	• 향후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환경정화수종 식재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 해당 사항 없음	-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 및 분뇨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16	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 지역 에너지 소비현황 조사,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공사장 소음 유발 • 운영 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	• 공사 중 가설방음판넬,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녹지 완충공간 조성	-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 이룸	• 대상지 배후 대모산의 스카이라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높이 및 배치계획 형성을 유도해 지상 25층 이하로 계획 • 자연경관과 어루어지는 도시경관 형성	-
19	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 해당 사항 없음	-	-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연평균 및 월별, 계절별 일조 시간 검토	• 높이 25층이하 규모의 사업계획 수립,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준수	-
21	보행 친화공간	보행친화형 도시 조성	-	• 해당 사항 없음	-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 해당 사항 없음	-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 해당 사항 없음	-	-

더.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향후 대상지 내 분포하는 이식대상 수목을 조사하여 사업시행 시 전문가가 재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활용할 계획임.

러.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1)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세대수				구성비 (%)	비고
	총계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소계	국민주택규모 주택		
합 계	818	757	61	61	100.0	-
60㎡이하	119	58	61	61	14.6	-
60㎡초과 ~ 85㎡이하	375	375	-	-	45.8	-
85㎡초과	324	324	-	-	39.6	-

Ⅲ.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 25.12.24.)심의결과 : 수정가결

연 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1	[수정사항]		
	• 용적률 계획, 공공기여 계획, 순부담면적 및 주택공급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요청(안) 반영	• 용적률 계획, 공공기여 계획, 순부담면적 및 주택공급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요청(안)을 반영하여 고시토록 하겠음	반영
2	[조건사항]		
	• 공공시설 배치계획은 연접 단지 간 공공시설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일원역사거리변으로 배치계획 검토	• 공공시설 배치계획은 공공시설 담당부서(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일원역사거리변보다는 당초 위치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반영하였음 - 일원역사거리변으로 배치할 경우 지역주민 접근성, 어린이공원 등 외부공간과의 연계성, 공공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됨. - 산후조리원과 키즈랜드의 시설용도 및 운영기관도 상이하여 공공시설 집적배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반영
3	• 랜드마크 주동 관련 지침은 대상지 입지 여건, 가로 및 경관 특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특화 지침으로 마련 필요	• 랜드마크 주동 관련 지침은 대상지 입지 여건, 가로 및 경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통합기획(자문) 가이드라인으로 건축물 디자인 특화 지침을 마련하였음	반영
4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개선이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 현황(상·하수도) 확인하였으며, 향후 통합심의 과정에서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재협의하여 반영하겠음 ※ 정비계획 결정고시 시 조건 사항으로 추가하겠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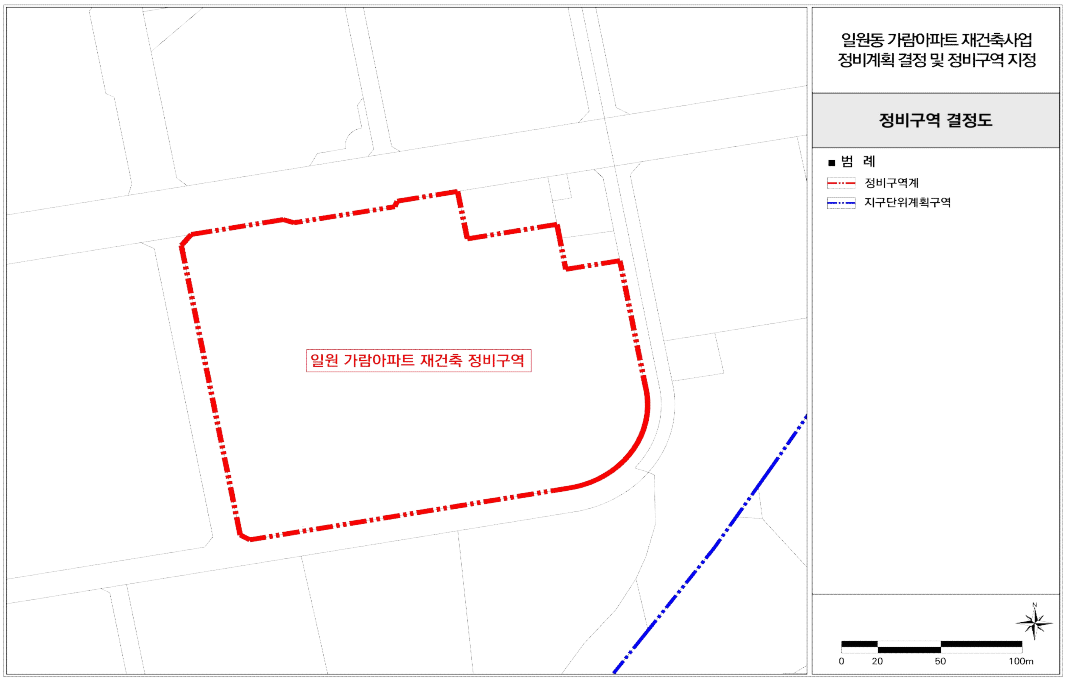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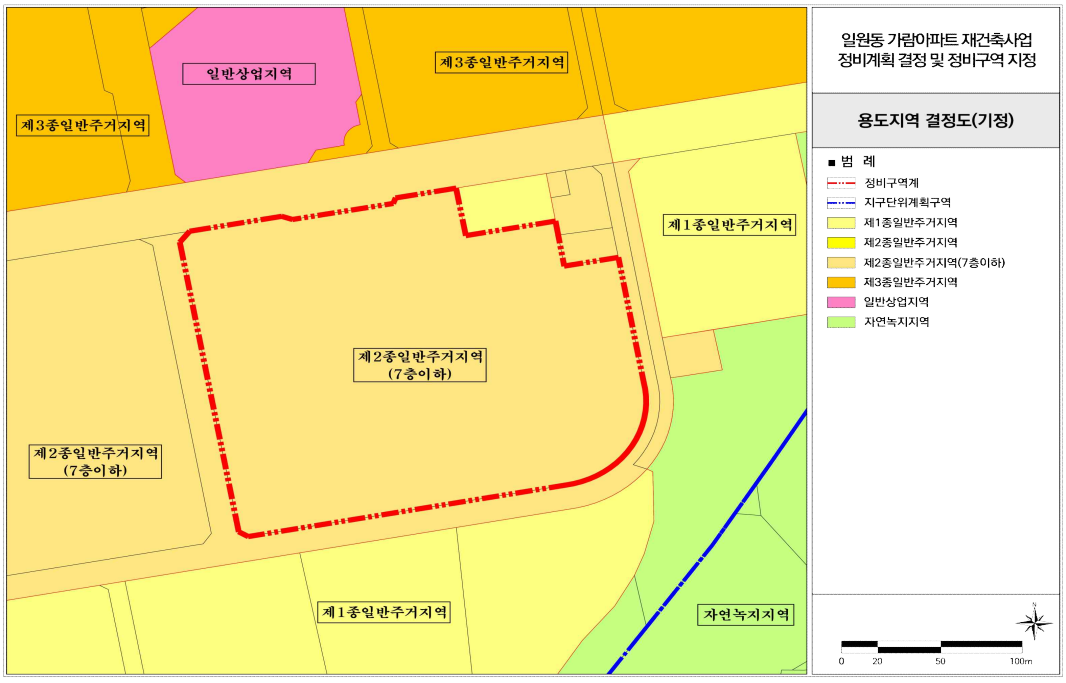
Ⅴ.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133-7142) 및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3423-607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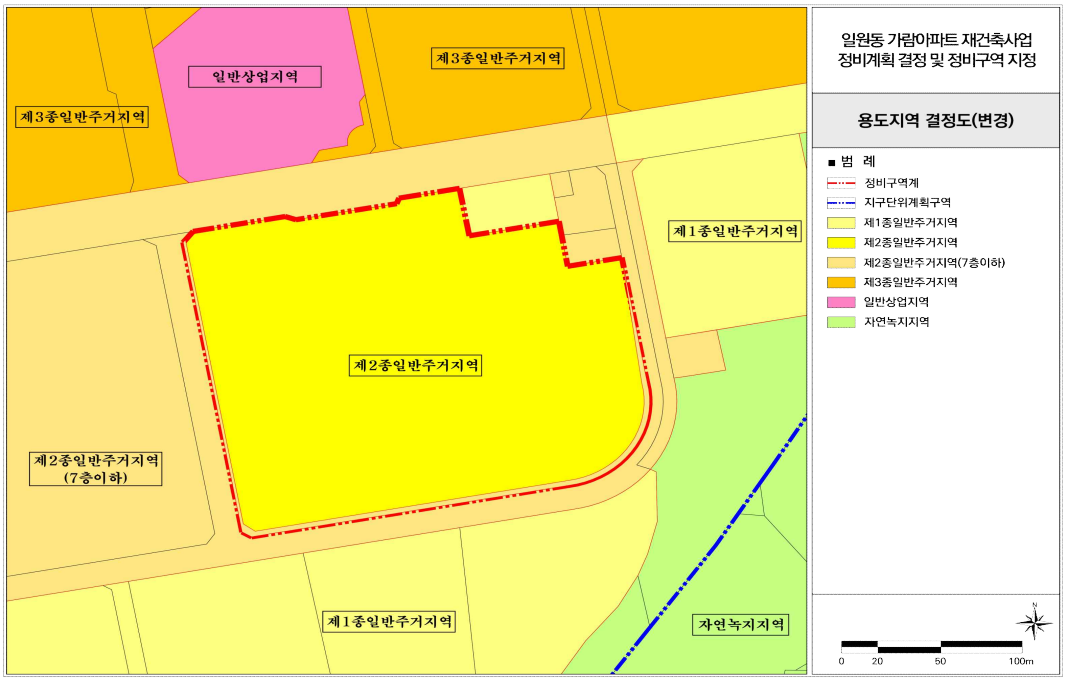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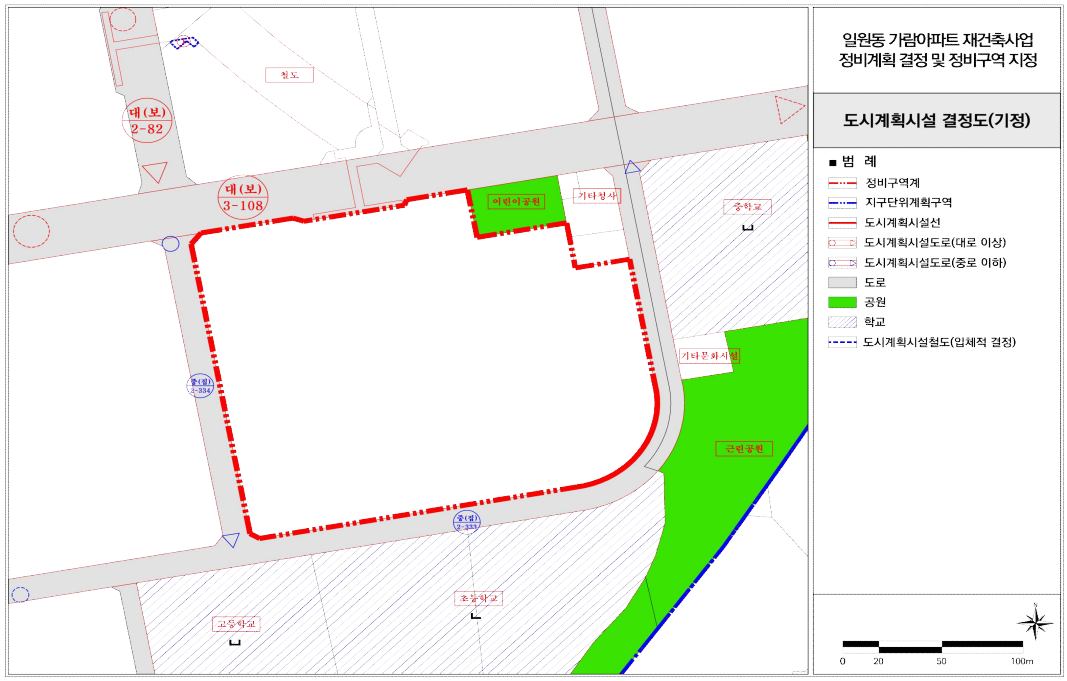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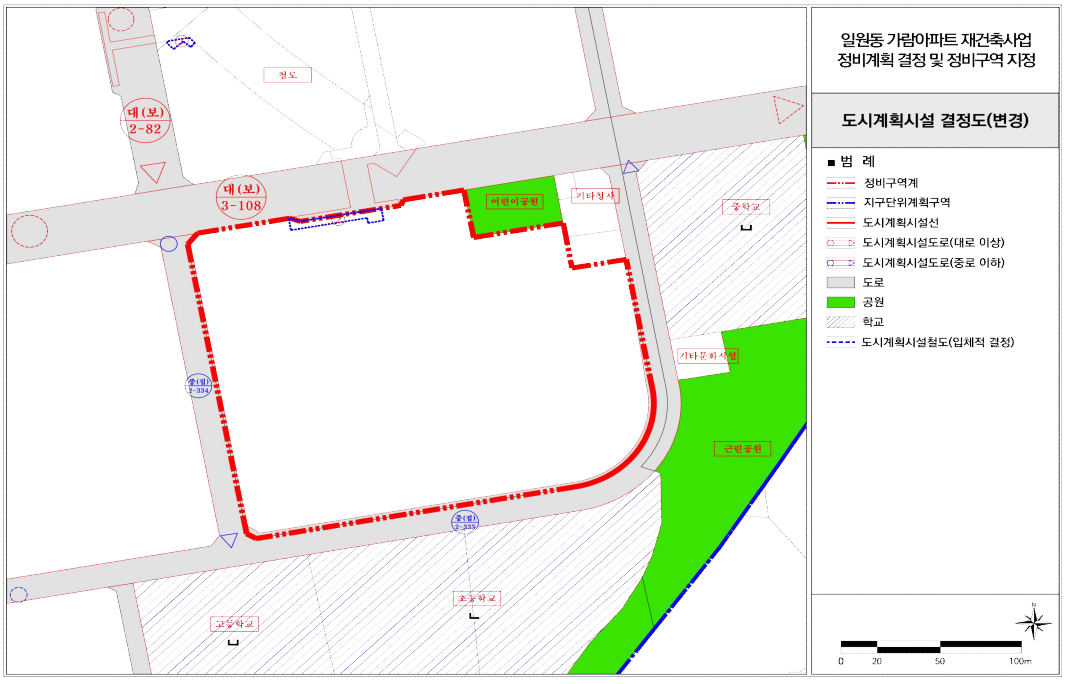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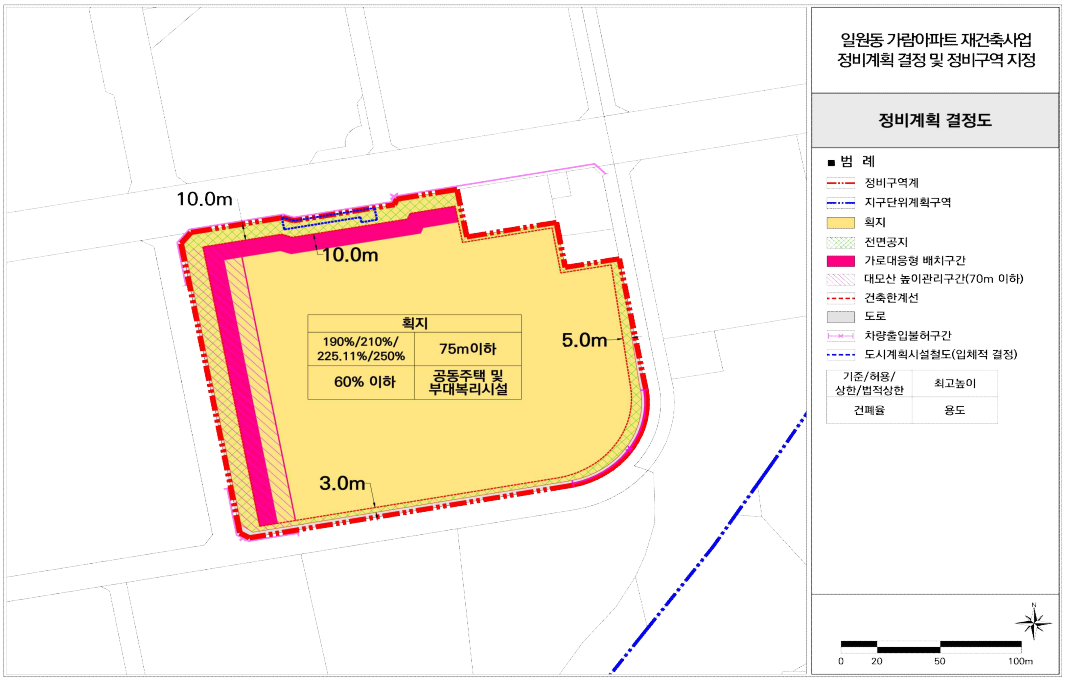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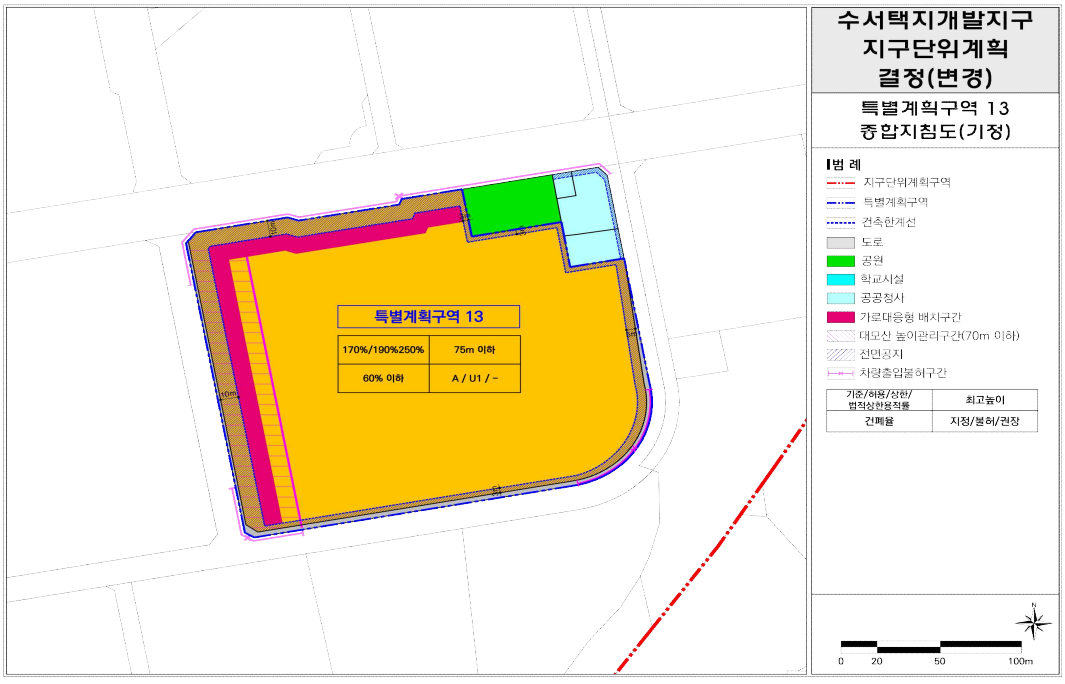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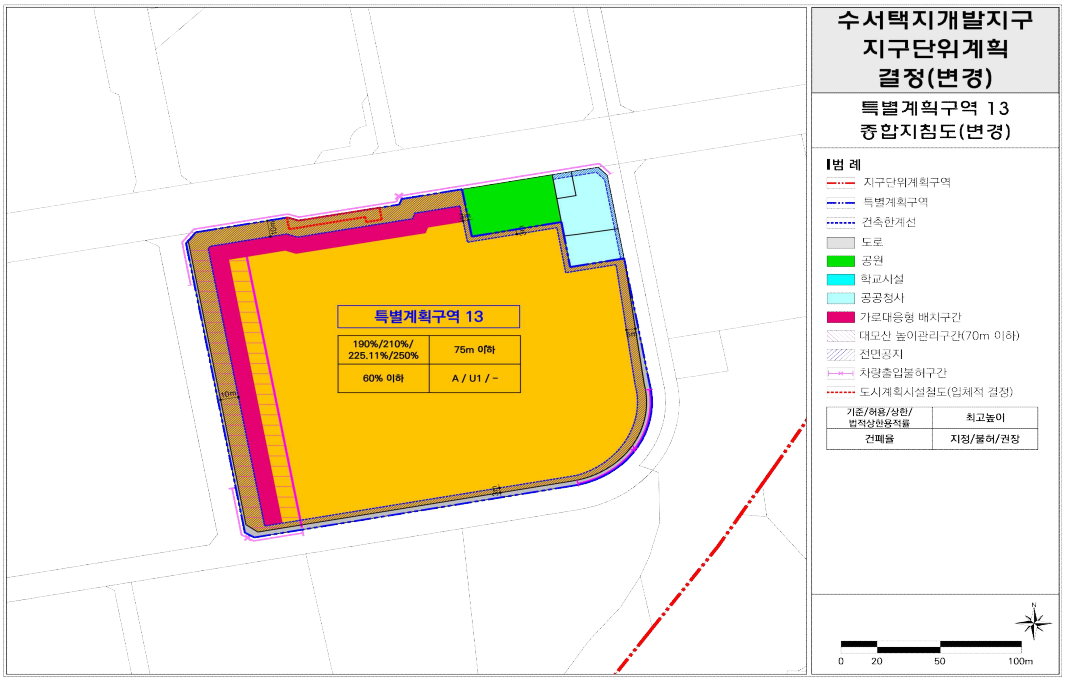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3호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2.17.)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포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호(2008.1.2.)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포함)하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21,398.0	-	21,398.0	

■ 지정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지정사유
신 설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21,398.0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2,455.8	11.5	-
	도 로	2,455.8	11.5	
획 지	소 계	18,942.2	88.5	-
	획 지 1	5,942.8	27.8	
	획 지 2	12,999.0	60.7	

4.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398.0	-	21,398.0	100.0
주거지역	소 계	21,398.0	감) 2,383.5	19,014.5	88.9
	제1종일반주거지역	486.3	감) 486.3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538.6	감) 2,082.8	2,455.8	11.5
	제2종일반주거지역	4,081.4	감) 4,081.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91.7	감)12,291.7	-	-
	준주거지역	-	증)16,558.7	16,558.7	77.4
상업지역	소 계	-	증) 2,383.5	2,383.5	11.1
	근린상업지역	-	증) 2,383.5	2,383.5	11.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대방동 393-66 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7,107.6	-	•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근린상업지역	983.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451.1	-	
			근린상업지역	1,400.5	-	

5.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률 산정방식:(총수입 - 총지출)/ 총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15.87%
(747,475,684천원 - 571,635,277천원) ÷ 151,761,538천원 X 100(%) = 115.87%
• 총 수입 추정 : 747,475,684천원
• 총 지출 추정 : 571,635,277천원
• 총 종전자산총액 : 151,761,538천원</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주변지역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를 반영하여 공시지가 대비 보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td></tr>
<tr><td>추정분담금
산출</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39㎡</td><td>5.53억</td><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15.87%)</td><td rowspan="4">권리가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
(-)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td></tr>
<tr><td>전용51㎡</td><td>6.95억</td></tr>
<tr><td>전용59㎡</td><td>7.92억</td></tr>
<tr><td>전용84㎡</td><td>10.28억</td></tr>
</table></td></tr>
</table>

※ 상기 금액은 추산액으로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체 등을 통해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기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 571,635,277천원

구 분		금액(천원)	비고
소요비용추산액	연면적	112,700.61㎡	-
	공사비	341,252,383,500	건축시설 공사비, 토지관련 공사비
	보상비	52,787,000,000	국공유지 매입비, 이주 및 손실 보상비
	관리비	21,080,000,000	추진위원회, 조합 운영비, 소송비용 등
	설계비	7,539,158,000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등
	감리비	4,750,205,000	건축, 전기, 소방 등
	부대경비	134,226,530,600	기타사업비,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예비비	10,000,000,000	기타 향후 정산시까지의 돌발발생 제비용 등
	소 계	571,635,277,100	-

※ 상기 금액은 추산액으로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체 등을 통해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기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6.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	12	국지도로	956	대방동 393-65	대방동 385-24	일반도로	동작구고시제2023-143 (2023.12.21)	-
변경	중로	3	-	12	국지도로	796	대방동 319-19	대방동 385-24	일반도로	동작구고시제2023-143 (2023.12.21)	-
신설	중로	2	-	15	국지도로	160	대방동 393-65	대방동 319-1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45	대방동 394-1	대방동 394-3	일반도로	서고2008-501호 (2009.1.2)	-

※ 정비계획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	중로3-	• 도로 연장 및 기점 변경 - 폭원: 12m - 연장 : 956m →796m(감 160) - 기점 : 대방동 393-65 → 대방동 319-19	•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구역 내 도로확폭에 따른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	중로2-	• 도로 확폭 - 폭원: 12m → 15m - 연장 : 160m	•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확폭하여 신설

2)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신대방삼거리정거장 (7호선)]	대방동	4,831.6	서고 제1993-77호 (1993.03.18.)	-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신대방삼거리정거장 (7호선)]	대방동	4,831.6	서고 제1993-77호 (1993.03.18.)	민간토지부분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철도 시설	대방동 393-66 일대	층수(층)	-	지상1~지하3층	지상1~지하3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	증) 269.0㎡	269.0㎡		
				길이		증) 15.6m	15.6m		
				폭		증) 6.2m	6.2m		
				높이 (해수면기준)		증) 11.4m~27m	11.4m~27m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 면적은 향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상1~지하3층 - 수평투영면적 269.0㎡ - 높이(해수면 기준) : 11.4m~27m	•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입구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를 이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을 입체적 결정

나.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 계획

구분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	기존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순부담면적(㎡)				비고
						정비기반 시설	건축물 (부속토지포함)	현금	소계	
신설	21,398.0	18,942.2	2,455.8	1,333.1	-	512.5	4,024.7	-	5,147.4	

순부담 면적

• 계획 순부담 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기반시설내기존국공유지-대지내용도폐지되는국공유지
= 2,455.8㎡ - 1,333.1㎡ - 0 = 1,122.7㎡
• 가중치 적용 순부담면적 : 계획 순부담면적을 획지, 용도지여별면적비율로 배분하여 가중치 적용

구 분	계	획 지 1	획 지 2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순부담면적	1,122.7	352.2㎡	629.2㎡	141.1㎡
가중치	-	190.61%/400%= 0.4765	190.61%/600% = 0.3176	190.61%/600%= 0.3176
가중치적용 순부담면적	512.5	(가) 167.8㎡	(나)299.8㎡	(다) 44.9㎡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 = (352.2㎡×150%) + (629.2㎡×200%) + (141.1㎡×250%) / 1,122.7㎡
= 190.61%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도지역별 면적 : 제1종일반 352.2㎡, 제2종일반 629.2㎡, 3종일반 141.1㎡)
** 사업부지 용적률 : 준주거지역 400%, 근린상업지역 600%

7.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적기준	면적(㎡)	비고
획지1	관리사무소	획지	◦ 10㎡+(223세대-50)x0.05㎡ = 18.65㎡이상	40	지상2층
	경비실/MDF실		-	45	지상1층
	용역원 휴게실		-	35	지상2층
	주민공동시설		◦ 227세대 X 2.5㎡ X 1.25 = 709.38㎡이상	710	
	어린이놀이터		◦ 150세대~300세대미만	360	옥외
	경로당		◦ 150~300세대 미만 = 99㎡이상	120	지상2층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의무	-	
	작은도서관		◦ 300세대 이상 의무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의무	110	
	맘스스테이션		-	50	지하1층
	주민카페		-	70	지상2층
	합 계			830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적기준	면적(㎡)	비고
획지2	관리사무소	획지	◦ 10㎡+(569세대-50)x0.05㎡ = 35.95㎡이상	120	지상1층
	경비실/MDF실		-	60	지상1층
	용역원 휴게실		-	45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		◦ 569세대 X 2.5㎡ X 1.25 = 1,778.1㎡이상	2,290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세대수) = 769㎡ 이상	780	옥외
	경로당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360	지상1층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30㎡ 이상	360	지상1층
	작은도서관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58㎡ 이상	180	지상1층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의무	250	옥외
	다함께 돌봄센터		◦ 500세대 이상 의무, 66㎡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00	지상1층
	맘스스테이션		-	60	지하1층
	주민카페		-	200	지상4층
	합 계			2,515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9.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21,398.0	획지	18,942.2	동작구 대방동 393-66 일대	80	-	-	80	-	

10. 건축물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4">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 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 (㎡)</th><th colspan="2">기준</th><th colspan="2">상한</th></tr>
<tr><td rowspan="2">신규</td><td rowspan="2">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재개발) 정비구역</td><td rowspan="2">21,398</td><td>획지1</td><td>5,942.8</td><td>대방동 391-586 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td><td>60% 이하</td><td colspan="2">226.5%이하</td><td colspan="2">400%이하</td><td>95m이하 /28층이하</td><td>-</td></tr>
<tr><td>획지2</td><td>12,999.4</td><td>대방동 393-66 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td><td>60% 이하</td><td>준주거</td><td>근린 상업</td><td>준주거</td><td>근린 상업</td><td>120m이하 /39층이하</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229.6% 이하</td><td>229.3% 이하</td><td>400% 이하</td><td>600%이하</td><td></td><td></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3">▪주택공급계획 : 792세대(임대주택 포함)
◦ 공동주택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 고</th></tr>
<tr><td colspan="2">합 계</td><td>792세대</td><td>100.0</td><td></td></tr>
<tr><td rowspan="5">60㎡ 미만</td><td>소계</td><td>590세대</td><td>74.5</td><td></td></tr>
<tr><td>39㎡</td><td>110세대</td><td>13.9</td><td>임대주택 55세대</td></tr>
<tr><td>51㎡</td><td>82세대</td><td>10.3</td><td>임대주택 75세대</td></tr>
<tr><td>59㎡</td><td>398세대</td><td>50.3</td><td>임대주택 37세대</td></tr>
<tr><td colspan="2">60㎡ ~ 85㎡이하</td><td>202세대</td><td>25.5</td><td>임대주택 14세대</td></tr>
</table>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 공동주택 내 임대주택 건설계획(전용면적기준) : 181세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합 계</th><th>재개발임대주택</th><th>역세권임대주택</th><th>비율(%)</th><th>비고</th></tr>
<tr><td colspan="2">합 계</td><td>181</td><td>106</td><td>75</td><td>100.0</td><td></td></tr>
<tr><td rowspan="4">85㎡ 이하</td><td>39㎡</td><td>55</td><td>55</td><td>-</td><td>30.4</td><td></td></tr>
<tr><td>51㎡</td><td>75</td><td>51</td><td>24</td><td>41.5</td><td></td></tr>
<tr><td>59㎡</td><td>37</td><td>-</td><td>37</td><td>20.4</td><td></td></tr>
<tr><td>84㎡</td><td>14</td><td>-</td><td>14</td><td>7.7</td><td></td></tr>
</table></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3">◦ 건축한계선 지정(보도형 전면공지)
- 상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대방동길변, 대방동1길변, 대방동3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3">◦ 전면공지
- 상도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대방동길변, 대방동1길변, 대방동3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획지1) 서측변 대림초 인접지역의 대방동1길~대방동3길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6m 이상 조성(지상권 설정)
◦ 보차혼용통로 : 대상지(획지2)의 북측 단절된 도로(대방동길과 대방동2길)연결을 위해 보차혼용통로 6m 계획 (도로기능 유지시까지 지상권설정)
◦ 공개공지 : 신대방삼거리역5번출구와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개소 설치 (피로티구조 8m이상, 최소면적 45㎡이상)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상도로변</td></tr>
</table>

11. 공공기여 계획

1)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용적률 산정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증가용적률 (%)
	현 황	변 경		기 준	상 한	
획지1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942.8	226.5	400	173.5
	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10,615.9	229.6	400	170.4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2,383.5	229.3	600	370.7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율

구 분			용도지역 상향 면적	증가용적률의 50%	공공기여 면적	공공기여율
획지1	준주거	기 준	5,942.8㎡ (제2종 2,792.0㎡, 제3종 3,150.8㎡	86.8% (173.5×50%)	1,288.8㎡	21.7%이상
		계 획			3,017.4㎡	50.8%
획지2	준주거	기 준	10,615.9㎡ (제2종(7층) 1,347.5㎡, 제2종 2,968.1㎡, 제3종 6,300.3㎡)	85.2 (170.4×50%)	2,260.2㎡	21.3%이상
		계 획			955.4㎡	9.0%
	근린 상업	기 준	2,383.5㎡ (제2종 983.0㎡, 제3종1,400.5㎡	185.4 (370.7×50%)	736.2㎡	30.9%이상
		계 획			564.4㎡	23.7%
기준 합계					4,285.1㎡	22.6%이상
계획 합계					4,537.2㎡	23.9%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주2) 공공기여 면적은 용도지역 상향 면적(획지)에 대한 공공기여량을 말함.
주3) 획지1(준주거) 기준 순부담면적 초과분= 3,017.4㎡ - 1,288.8㎡ = 1,728.6㎡
(획지1(준주거) 계획 순부담면적 : 3,017.4㎡, 획지1(준주거) 기준 순부담면적 : 1,288.8㎡)
⇒ 공공시설등제공 위치 고려, 초과분(1,728.6㎡ 중 1,304.8㎡)에 대하여 획지2 용도지역별 가중치 적용하여 공공기여 제공
- 획지2(준주거) = 1,304.8㎡ X 1* = 1,304.8㎡
* 가중치 = 획지1(준주거) 용적률 / 획지2(준주거) 용적률
- 획지2(근린상업) = 257.9㎡ X 0.6667** = 171.9㎡
** 가중치 = 획지1(준주거) 용적률 / 획지2(근린상업) 용적률

3) 공공기여율 산정

<table>
<tr><th colspan="4">구 분</th><th colspan="11">산 정 내 용</th></tr>
<tr><td colspan="4" rowspan="3">토지이용계획</td><td rowspan="3">사업 면적</td><td colspan="3">대지면적</td><td rowspan="3">소계</td><td colspan="4">공공시설등 면적</td><td rowspan="3">신설정비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td><td rowspan="3">대지 내용도 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 colspan="2">획지1</td><td colspan="2">획지2</td><td colspan="2">정비기반시설 Ⓐ</td><td colspan="2">공공시설</td></tr>
<tr><td colspan="2">준주거</td><td>준주거</td><td>근린상업</td><td>소계</td><td>도로</td><td>대지지분</td><td>환산부지</td></tr>
<tr><td colspan="4">21,398</td><td>5,942.8</td><td>10,615.9</td><td>2,383.5</td><td>6,480.5</td><td>2,455.8</td><td>2,455.8</td><td>2,393.9</td><td>1,630.8</td><td>1,333.1</td><td>-</td></tr>
<tr><td rowspan="4">순부담</td><td rowspan="2">획지1</td><td>준주거</td><td colspan="12">• 공공기여면적 : (가) 정비기반시설 + (라) 공공임대주택 + (마) 지역필요시설
= 167.8㎡ + 404.8㎡ + 2,444.8㎡ = 3,017.4㎡
• 공공기여율 = 공공기여면적 / 대지면적 = 3,017.4/ 5,942.8 = 50.8% ≥ 21.7%</td></tr>
<tr><td rowspan="2">획지2</td><td>준주거</td><td colspan="12">• 공공기여면적 : (나) 정비기반시설 + (바) 공공임대주택 = 299.8㎡ + 655.6㎡ = 955.4㎡
• 공공기여율 = 공공기여면적 / 대지면적 = 955.4㎡/ 10,615.9㎡= 9.0%≤ 21.3%</td></tr>
<tr><td>근린상업</td><td colspan="12">• 공공기여면적 : (다) 정비기반시설 + (사) 공공임대주택 = 44.9㎡ + 519.5㎡ = 564.4㎡
• 공공기여율 = 공공기여면적 / 대지면적 = 564.4㎡/ 2,383.5㎡= 23.7%≤ 30.9%</td></tr>
<tr><td colspan="3">정비기반시설
(가) + (나) + (다)</td><td colspan="12">• 계획순부담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 2,455.8㎡ - Ⓑ 1,333.1㎡ - Ⓒ 0 = 1,122.7㎡
• 가중치 적용 순부담면적 : 계획 순부담면적을 획지, 용도지역별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가중치 적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th><th>획 지 1</th><th colspan="2">획 지 2</th></tr>
<tr><th>근린상업지역</th><th>준주거지역</th><th>근린상업지역</th></tr>
<tr><td>순부담면적</td><td>1,122.7</td><td>352.2㎡</td><td>629.2㎡</td><td>141.1㎡</td></tr>
<tr><td>가중치</td><td>-</td><td>190.61%/400%
= 0.4765</td><td>190.61%/600%
= 0.3176</td><td>190.61%/600%
=0.3176</td></tr>
<tr><td>가중치적용
순부담면적</td><td>512.5</td><td>(가) 167.8㎡</td><td>(나)299.8㎡</td><td>(다) 44.9㎡</td></tr>
</table>
※ 가중치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 = (352.2㎡×150%) + (629.2㎡×200%) + (141.1㎡×250%) / 1,122.7㎡ = 190.61%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도지역별 면적 : 제1종일반 352.2㎡, 제2종일반 629.2㎡, 3종일반 141.1㎡)
** 사업부지 용적률 : 준주거지역 400%, 근린상업지역 600%</td></tr>
<tr><td rowspan="6">공공시설등 제공면적</td><td rowspan="5">획지1 준주거</td><td>(라) 공공 임대주택</td><td colspan="12">• 대지지분 = 404.8㎡
= (공공주택 연면적 ÷ 전체연면적) × 대지면적
= (2,714.43㎡ ÷ 127,004.27㎡) × 18,942.2㎡</td></tr>
<tr><td rowspan="2">(마) 지역 필요 시설</td><td>공공 지원 시설</td><td colspan="12">• 대지지분 + 건축물 환산면적 = 1,104.2㎡
① 대지지분 =338.9㎡
= (시설연면적/ 전체연면적)× 대지면적
= (2,272.62㎡÷127,004.27㎡) × 18,942.2㎡
② 건축물환산면적 = 765.3㎡
= a : 공공시설등설치비용(원) /
b :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주2) (원/㎡)
= 8,097,458,179/ 10,580,000 원/㎡
a = [(시설연면적(지상) × 설치비용 기준주1)+감리비+설계비]
+[(시설연면적(지하) × 설치비용 기준 주1)+감리비+설계비]</td></tr>
<tr><td>교육 지원 센터</td><td colspan="12">• 대지지분 + 건축물 환산면적 = 1,340.6㎡
① 대지지분 = 475.1㎡
= (시설연면적/ 전체연면적)× 대지면적
= (3,185.68㎡÷127,004.27㎡) × 18,942.2㎡
② 건축물환산면적 = 865.5㎡
= a : 공공시설등설치비용(원) /
b : 토지주가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주2)(원/㎡)
= 9,156,681,384 / 10,580,000 원/㎡
a = [(시설연면적(지상) × 설치비용 기준주1)+감리비+설계비]
+[(시설연면적(지하) × 설치비용 기준 주1)+감리비+설계비]</td></tr>
<tr><td colspan="2">소 계</td><td colspan="12">(라) + (마) = 2,849.6㎡</td></tr>
<tr><td>획지2 준주거</td><td>(바) 공공</td><td colspan="12">• 대지지분 = 655.6㎡
= (공공주택 연면적 ÷ 전체연면적) × 대지면적</td></tr>
</table>

		임대주택	= (4,395.81㎡ ÷ 127,004.27㎡) X 18,942.2㎡
	획지2 근린 상업	(사) 공공 임대주택	• 대지지분 = 519.5㎡ = (공공주택 연면적 ÷ 전체연면적) X 대지면적 = (3,482.87㎡ ÷ 127,004.27㎡) X 18,942.2㎡

주1)지상층공사비: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면세 적용 별도)
지하층 공사비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024,000원/㎡ 준용(면세 적용 별도)
주2)부지가액은 토지주가 제시한 종후(준주거지역) 감정평가(10,580,000원/㎡, ' 24.10.)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5-1-1에 따라 향후 건축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확정함
주3)향후 서울시, 동작구의 운영계획에 따라 기부채납 공공시설 세부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4)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층(전용층)	면적	비고(관리청)
신규	공공지원시설	대방동 393-66번지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지상1층	지분 338.9㎡: 전용면적 1,230.0㎡ 연면적 : 2,272.6㎡	복합설치 (서울특별시)
신규	공공업무시설 (교육지원센터)		지상2층	지분 : 475.1㎡ 전용면적 1,650.0㎡ 연면적 : 3,185.6㎡	복합설치 (동작구)

주1)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및 형태는 조정될수 있음.
주2)향후 서울시, 동작구의 운영계획에 따라 기부채납 공공시설 세부 명칭은 변경될수 있음.
주3)공공지원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주4)공공업무시설은 동작구로 귀속되며, 동작구청장장이 운영 및 관리함
주5)공공지원시설의 세부용도는 서울특별시 공공기여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가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간선도로변에 양호한 녹지 수림대를 설치함으로써 green ville 이미지 창출 생태순환시스템 고려 자원절약형 배치기법(풍향·경관 고려)	-
재난 방지	화재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수해	자연토양유지 및 소공원의 조성을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서측 대림초등학교 입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후 사업시행계획 시 협의 후 반영하겠으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거리 200m이내 포함

14. 세입자 주거대책

○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 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이주대책을 마련 하도록 하겠음.

15.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신설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재개발)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현황) 282세대 계획) 792세대 증) 510세대	-

16.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분	지점	개선방안	비고
가로 및 교차로		◦「대방동 393-66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시설 반영 ◦②신대방 삼거리 대방동길 확장에 따른 교차로 운영방안 수립(3지 교차로→4지 교차로)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방안 수립 및 제시(3개소) ◦2단지 진출입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
진출입 동선	Ⓐ	◦사업지 진출입로(대방동길) 차로운영계획 수립 - 양방 및 일방통행체계 제시	-
	Ⓑ	◦대방동길(중로2호선) 확장운영계획 수립 : 양방토행(3차로)(B=15.0m, L=140.0m)	-
	-	◦사업지 차량 진입 및 진출부 회전반경 R=8.0m 이상 확보	-
	Ⓒ	◦사업지 내 이사차량 및소방차량 진입을 위한 비상차량 동선체계 확보	-
	Ⓓ	◦대방동길(중로2호선) 신대방삼거리 우회전 진출차로 설치	

구분	지점	개선방안	비고
대중교통 및 보행	-	◦ 보행공간 조성 및 보행단절 지점 횡단보도 설치(7개소)	-
	-	◦ 대방돌길 확장에 따른 20513(강현중학교 방면) 버스정류소 이설(1개소)	
주차시설	-	◦ 적정규모 이상의 주차계획 수립 - 법정주차대수 : 771대 (공동주택 : 674대, 일반업무시설 : 15대, 공공업무시설 : 27대, 근린생활시설 : 55대) - 주차수요대수 : 937대 (공동주택 : 824대, 일반업무시설 : 11대, 공공업무시설 : 45대, 근린생활시설 : 57대) - 확장형주차 계획주차대수의 30%이상 설치 - 장애인주차 법정주차대수의 3%이상 설치 - 가족배려주차 계획주차대수의 10%이상 설치 (설치대수의 50%는 확장형으로 설치) - 환경친화적자동차 계획주차대수의 5%이상 설치 (설치대수의 20%는 급속충전시설 설치) ※ 향후 세부적인 건축계획 수립시 법정 및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계획주차대수 확보 필요	-
	-	◦ 사업지 내 자전거 주차장 확보비율 제시 - 계획주차대수의 20%이상 확보	-
교통안전 및 기타	-	◦ 횡단보도 보도턱 낮춤 시공	-
	-	◦ 시거불량지점 반사경 설치(1개소)	
	-	◦ 사업지 진출입부 경고등 설치(2개소)	
	-	◦ 비상차량 진출입부 보도턱 낮춤 및 볼라드 설치	
	-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구역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80	74	2	80	80	-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257	155	102	488	155	333	
단독주택	44	17	27	274	17	257	
공동주택	213	138	75	214	138	76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257	42	15	6	21	276	-	-	215	-
60㎡ 이하	소계	124	14	4	-	10	110	-	-	110	-
	30㎡이하	35	1	1	-	-	34	-	-	34	
	30㎡초과 ~ 50㎡이하	58	1	1	-	-	57	-	-	57	
	50㎡초과 ~ 60㎡이하	31	12	2	-	10	19	-	-	19	
60㎡초과 ~ 85㎡이하		109	7	2	1	4	102	-	-	102	
85㎡ 초과	소계	24	21	9	5	7	3	-	-	3	
	85㎡초과 ~ 135㎡이하	17	14	9	2	3	3	-	-	3	
	135㎡초과	7	7	-	3	4	-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 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분		계	일반분양(조합원등)	공공주택			비고
				소계	재개발의무	역세권 활성화사업	
합 계		792	611	181	106	75	-
60㎡ 이하	소 계	590	423	167	55	61	-
	40㎡ 이하	110	55	55	55	-	-
	40㎡~50㎡ 이하	-	-	-	-	-	
	50㎡~60㎡ 이하	480	368	112	51	61	-
60㎡~85㎡ 이하		202	188	14	-	14	-
85㎡초과		-	-	-	-	-	-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비고
접근통제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 ◦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CCTV,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수 있는 시설 설치 ◦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 불가	-
영역성 확보	◦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등 설치	-
조경	◦ 소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조명	◦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시설 계획 ◦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 설치 ◦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

1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명칭	위치	면적(㎡)	
-	-	21,398.0	획지1	대방동 391-1 일원	5,942.8	-
			획지2	대방동 393-66 일원	12,999.4	-

20.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구 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	획지1	획지2		세대규모(㎡)		비고
					준주거	준주거	근린상업	전 용	공 급	
신 규	획 지	21,398.0	-	75	19	31	25	소 계		
				24	9	15	-	51.90	73.53	
				37	3	9	25	59.97	85.16	
				14	7	7	-	84.95	119.05	

2) 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구 분		확보기준		동 수
세대수 기준	획지1	준주거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임대주택 건설	◦ 223세대 × 15% = 33.5세대(기준) ≦ 34세대(확보)
	획지2	준주거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임대주택 건설	◦ 431세대 × 15% = 64.6세대(기준) ≦ 65세대(확보)
		근린상업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 건설	◦ 138세대 × 5% = 6.9세대(기준) ≦ 7세대(확보)
합 계				106세대
규모 기준	획지1	준주거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34세대 × 30% = 10.2세대(기준) ≦ 23세대(확보)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223세대 × 5% = 11.2세대(기준) ≦ 23세대(확보)

구 분		확보기준		동 수
	획지2	준주거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65세대 × 30% = 19.5세대(기준) ≦ 25세대(확보)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431세대 × 5% = 21.6세대(기준) ≦ 25세대(확보)
		근린 상업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주거전용 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	◦ 7세대 × 30% = 2.1세대(기준) ≦ 7세대(확보)
합 계				55세대

21. 환경성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	비오톱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도 5등급 및 4등급 개별비오톱평가도 평가제외 등급 및 도로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
2	생태 네트워크	녹지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 대상지 내에는 일부 식재된 조경수목 외 자연녹지는 거의 없음	◦ 대상지 내·외부 녹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녹지 확보	-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도심지(대지)로 해당사항 없음	-	-
4	자연환경 자산	자연환경 보전	-	해당 사항 없음	-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조사	◦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을 반영한 종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 발생하지 않음	-	-
7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 평지 형태로 지형변화는 경미하며, 건축터파기 공사로 부분적 지형변화 발생 ◦ 지형에 순응한 계획수립	-
8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30% 자연물순환유지	○	◦ 대지, 도로 등으로 일부 조경수외 녹지 없음	◦ 생태면적률 30% 목표, 획지내 조경녹지 확보 계획	-
9	수질 (지표·지하)	수질오염 방지	-	◦ 공사 시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	◦ 공사 중 수질저감 계획 수립 우수, 하수 처리방안 계획	-
10	바람	바람길 확보	○	◦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시가지, 일부 수공간 및 나지로 분포	◦ 향후 세부 계획 시 바람 방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녹지수목 식재 통한 미기후 개선	-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 대부분 불투수포장비율이 높은 4층이하 주거지 및 일부불투수 포장비율이 높은 기반시설 분포	◦ 투수포장과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
12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장 장비가동 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배출 영향	◦ 세륜측면 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주기적인 살수 등 저감 ◦ 대상지 내 환경정화수종 식재	-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해당 사항 없음	-	-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난방, 취사연료 사용과 차량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대상지 내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 절감, 녹지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저감	-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운영 시 생활·분뇨 폐기물 발생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	-
16	에너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극대화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난방, 취사,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이용량 증가	◦ 향후 에너지 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검토 예정	-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시 투입장비에의한 소음발생 운영 시 교통소음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 녹지완충 공간조성	-
18	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	-	◦ 시가화된 지역으로 인공경관이 주를이룸	◦ 건물배치, 높이설정에 반영	-
19	휴가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 당해 대상지에 조성필요	◦ 휴가 및 여가공간의 확보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며, 주거 및 상업지역과 인접	◦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 고려	-
21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 갓길주차 및 인도 주차차량으로 인한 보행여건 개선 필요 ◦ 대상지 이면부 보차혼용도로 유출입차량 과도한 교통량 발생	◦ 대상지 내 쌈지형공지에 보행 및 휴식공간 활용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해당사항 없음	-	-
23	인구	인구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사항 없음	-	-
24	주거	주거 환경을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사항 없음	-	-
25	산업	산업 동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사항 없음	-	-

2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사업지는 역세권 도심지로서서 수목보존, 이식, 재활용 등의 관상가치와 활용 가치가 높은 수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현황수목조사 등을 통하여 활용계획 수립토록 하겠음.

○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 제공되는 임상도 확인 결과, 수림 및 수목의 분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3.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공동주택의 규모별 세대수는 60㎡이하, 590세대(74.5%), 60~85㎡ 이하, 202세대(25.5%)로 계획

○ 세대 규모별 배분계획

구분		계획세대수(세대)	계획인구(인)	구성비(%)	비고
계		792	1,592	100.0	-
일반주택 및 임대주택	60㎡ 이하	590	1,186	78.0	-
	60~85㎡ 이하	202	406	22.0	-
	85㎡ 초과	-	-	-	-

※ 계획인구는 동작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4.10.30.) 기준으로 세대당인구(2.01인/세대) 산정하여 적용함.

24. 구역 내 옛길, 옛물길, 「 한옥 등 건축자산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21,398.0	-	21,398.0	

■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결정(변경)사유
신 설	-	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398.0	-	21,398.0	100.0
주거지역	소 계	21,398.0	감) 2,383.5	19,014.5	88.9
	제1종일반주거지역	486.3	감) 486.3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538.6	감) 2,082.8	2,455.8	11.5
	제2종일반주거지역	4,081.4	감) 4,081.4	-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91.7	감)12,291.7	-	-
	준주거지역	-	증)16,558.7	16,558.7	77.4
상업지역	소 계	-	증) 2,383.5	2,383.5	11.1
	근린상업지역	-	증) 2,383.5	2,383.5	11.1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107.6	-	◦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근린상업지역	983.0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451.1	-	
			근린상업지역	1,400.5	-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	12	국지 도로	956	대방동 393-65	대방동 385-24	일반 도로	동작구고시제2023-143 (2023.12.21)	-
변경	중로	3	-	12	국지 도로	796	대방동 319-19	대방동 385-24	일반 도로	동작구고시제2023-143 (2023.12.21)	-
신설	중로	2	-	15	국지 도로	160	대방동 393-65	대방동 319-1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45	대방동 394-1	대방동 394-3	일반 도로	서고2008-501호 (2009.1.2)	-

※ 정비계획으로 인한 기반시설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	중로3-	• 도로 연장 및 기점 변경 - 폭원: 12m - 연장 : 956m →796m(감 160) - 기점 : 대방동 393-65 → 대방동 319-19	•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구역 내 도로확폭에 따른 도로연장 및 기점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2-	• 도로 확폭 - 폭원: 12m → 15m - 연장 : 160m	•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확폭하여 신설

(2)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신대방삼거리정거장 (7호선)]	대방동	4,831.6	서고 제1993-77호 (1993.03.18.)	-
변경	①	철도	도시철도 [신대방삼거리정거장 (7호선)]	대방동	4,831.6	서고 제1993-77호 (1993.03.18.)	민간토지부분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철도 시설	대방동 393-66 일대	층	-	증) 지상1~지하3층	지상1~지하3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결정도 참조
				수평투영 면적(㎡)	-	증) 269.0㎡	269.0㎡		
				길이		증) 15.6m	15.6m		
				폭		증) 6.2m	6.2m		
				높이 (해수면기준)		증) 11.4m~27m	11.4m~27m		

입체적 결정 범위 높이, 면적은 향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변경)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도 시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상1~지하3층 - 수평투영면적 269.0㎡ - 높이(해수면 기준) : 11.4m~27m	•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입구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를 이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철도시설)을 입체적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1) 획지 및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신 설	-	21,398.0	획지1	동작구 대방동 391-586번지 일대	5,942.8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획지2	동작구 대방동 393-66번지 일대	12,999.0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지정용도

구 분		용 도	세부용도
지정용도	지상1층 (연면적의 50% 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동물병원, 부동산중개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지상2층 (연면적의 50% 이상)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체육도장, 보건소, 금융업소, 동물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사진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학원, 독서실, 체력단련장, 놀이형시설, 금융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2) 불허용도

구 분		불허용도
불허용도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주거복합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중 집회장으로서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 -제17호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제19호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구 분		불허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시설

2) 건축물 밀도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획지 1	획지 2		비 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26.5% • 상한 용적률 : 400%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 229.6% • 상한 용적률 : 400%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 229.3% • 상한 용적률 : 600%이하	
높 이	95m	120m		

3) 건축물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보도형	상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대방동길변, 대방동1길변, 대방동3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산 정 내 용
형태	개구부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저층부 개방형 입면조성	• 상업 및 업무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개구부 없는 벽면의 가로변 노출 금지(이면도로 제외) • 외벽면 투시형 셔터 설치 시 1/2 이상 개방된 투시형 셔터 사용
외관	외장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한 벽면에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 페인트 마감노출을 금지
	재료	• 건축물의 외벽 골조(조립식, 무피복 골조, 컨테이너 등) 노출 금지
	색채	•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지
	건축설비의 노출	• 폭 30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 금지

구 분		산 정 내 용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담장 및 옹벽	• 담장 및 축대, 옹벽의 설치 금지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상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대방동길변, 대방동1길변, 대방동3길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신대방삼거리역 5번출구와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1개소 설치 - 피로티 구조 8m이상, 최소면적 45㎡이상	-

(2) 대지내 통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대상지(획지1) 서측변 대림초 인접지역의 대방동1길~대방동3길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6m 이상 조성 (지상권 설정)	-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보차혼용통로	대상지 북측 단절된 도로의 연계를 위해 6m 계획 (도로기능 유지시까지 지상권설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상도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4) 공공기여

구분				총환산면적(㎡)	대지지분(㎡)	건축물 환산면적(㎡)	순부담율(%)	비율(%)	제공연면적(㎡)	비고
획지1	준주거	합계		3,017.4	1,433.3	1,630.8	50.8	100.0	8,172.73	-
		정비기반시설	도로	167.8	167.8	-	2.8	5.6	-	-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404.8	404.8	-	6.8	13.4	2,714.43	-
			지역필요시설	2,444.8	814.0	1,630.8	41.2	81.0	5,458.30	
획지2	준주거	합계		955.4	955.4	-	9.0	100.0	4,395.81	-
		정비기반시설	도로	299.8	299.8	-	2.8	31.4	-	-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655.6	655.6	-	6.2	68.6	4,395.81	-
	근린상업	합계		564.4	564.4	-	23.7	100.0	3,482.87	-
		정비기반시설	도로	44.9	44.9	-	1.9	8.0	-	-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	519.5	519.5	-	21.8	92.0	3,482.87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주2) 공공기여 면적은 용도지역 상향 면적(획지)에 대한 공공기여량을 말함.
주3) 획지1(준주거) 기준 순부담면적 초과분= 3,017.4㎡ - 1,288.8㎡ = 1,728.6㎡
(획지1(준주거) 계획 순부담면적 : 3,017.4㎡, 획지1(준주거) 기준 순부담면적 : 1,288.8㎡)
⇒ 공공시설등제공 위치 고려, 초과분(1,728.6㎡ 중 1,304.8㎡)에 대하여 획지2 용도지역별 가중치 적용하여 공공기여 제공
- 획지2(준주거) = 1,304.8㎡ X 1* = 1,304.8㎡
* 가중치 = 획지1(준주거) 용적률 / 획지2(준주거) 용적률
- 획지2(근린상업) = 257.9㎡ X 0.6667** = 171.9㎡
** 가중치 = 획지1(준주거) 용적률 / 획지2(근린상업) 용적률

3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57,025	감) 487.3	56,537.7	서고 제1996-274호 (1996.10.8)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 경	-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면적 : 57,025㎡ → 56,537.7 감) 487.3㎡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대방동393-66번지 일대)을 위해 구역 경계 변경(제척)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7,025	감)487.3	56,537.7	100.0	
주거 지역	소계	38,938	-	38,938	68.3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15	감)487.3	23,327.7	41.9	
	제2종일반주거지역	611	-	611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477	-	477	0.8	
	준주거지역	14,016	-	14,016	24.5	
상업 지역	소계	18,087	-	18,087	31.7	
	근린상업지역	18,087	-	18,087	31.7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사유
-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 23,815㎡ →23,327.7㎡ 감) 487.3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방동 393-66번지 일대)에 따른 구역 경계 변경(제척)으로 용도지역 면적 감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기정)

유형	합계			1류			2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1,545	24,873	-	-	-	3	309	2,892
대로	2	582	14,550	-	-	-	-	-	-
중로	3	580	7,412	-	-	-	1	60	900
소로	3	383	2,911	-	-	-	2	249	1,992

■ 도로 총괄표 (변경)

유형	합계			1류			2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1,545	24,873	-	-	-	3	309	2,892
대로	2	582	14,550	-	-	-	-	-	-
중로	3	580	7,412	-	-	-	1	60	900
소로	3	383	2,911	-	-	-	2	235	1,880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	주 간선도로	6,490 (502)	노량진역 (상도3동345-12)	구로동 (대방동466-61)	일반도로	-	건고시제177호 (62.12.8)	상도동길
기정	대로	3	48	25	주 간선도로	1,920 (80)	대방동 (대방동 406-9)	신림동89 (대방동 408-5)	일반도로	-	건고시제738호 (63.12.24)	신림로
기정	중로	2	1	15	보조 간선도로	1,030 (60)	(상도3동345-13)	(상도3동325-2)	일반도로	-	서고시제64호 (75.5.7)	
기정	중로	3	1	12~18	집산도로	(136)	(신대방 2동 408-1)	(신대방2동 355-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14	집산도로	(384)	상도3동355 (상도3동408-6)	대방동347-2 (상도3동320-22)	일반도로	-	서고시제50호 (70.11.18)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45)	(대방동394-7)	(대방동394-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31)	(대방동 393-64)	(대방동 391-586)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3)	(대방동405-8)	(대방동 407-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6~8	국지도로	(134)	(상도3동336-5)	(상도3동324-72)	일반도로	-		

■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2-1	소로2-1	• 연장 축소 - 폭원: 8m - 연장 : 145m→131m (감14m)	• 신대방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방동 393-66번지일대)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확폭으로 도시계획시설 규모 변경으로 연장145m→131m 축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2025년 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12.17.) 심의 결과 : 수정가결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정사항	• 도시계획시설 계획, 주택공급계획, 공공기여계획,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수정가결요청사항 반영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하였음.	반영
1	• 대방동길로 인해 대상지가 2개 획지로 분리되는 바, 획지 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동선 연결 방안 검토	• 각 획지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하였음. • 보행자의 통행과 편의를 고려하여 15m 도로내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연결성을 확보함.	반영
2	• 보차혼용통로계획은 북측 개발사업 추진 시점을 고려한 장·단기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예각 교차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보차혼용통로의 장단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단기)북측 단절된 도로(대방동길~대방동2길) 연결을 위해 도로기능 유지 시까지 보차혼용통로(폭 6m) 계획 - (장기)북측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로 기능 상실시, 단지 내 조경 (기존조경시설과 연계한 산책로)로 활용 • 원활할 차량 통행을 위해 예각 교차로를 개선하였음.	반영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3	• 지역상권을 고려하여 비주거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검토	• 지역 상권 현황 및 대상지 내 기존 상가 실태를 반영하여 비주거 시설 규모를 조정함.	반영
4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대상지 주변 도로 하부의 노후 상·하수도 관로현황 확인결과 현 시점 교체 물량은 없음. •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시설 수요 및 교제시기에 도래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재협의 하겠음.	반영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참조

Ⅳ. 관련 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활성 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참조 : 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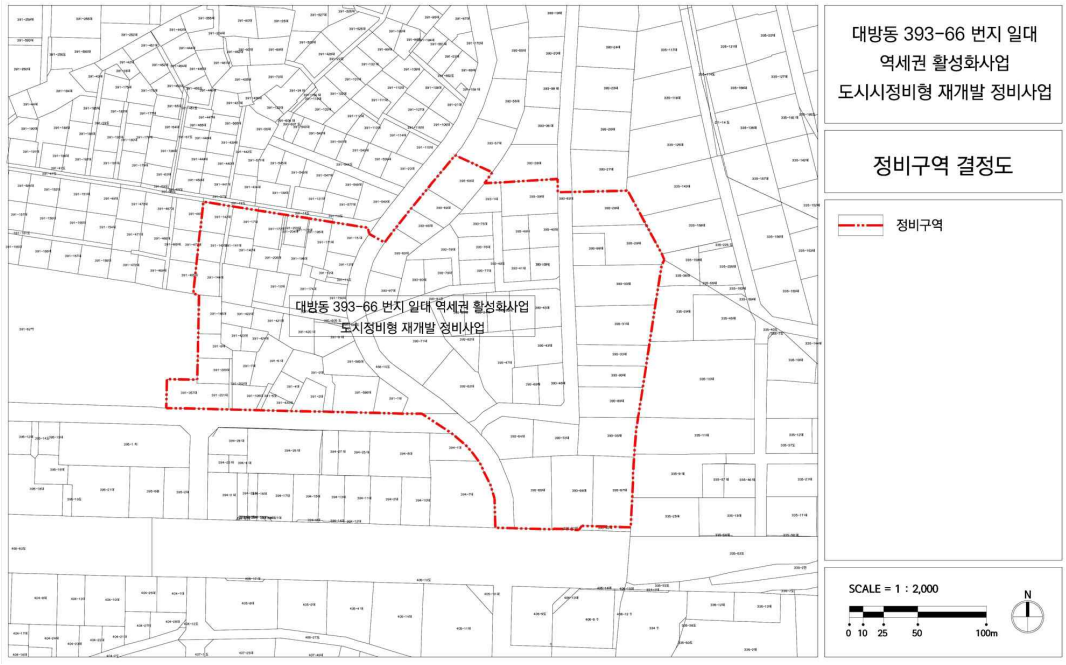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 4654) 및 동작구 핵심정책추진단(☎02-820-1080)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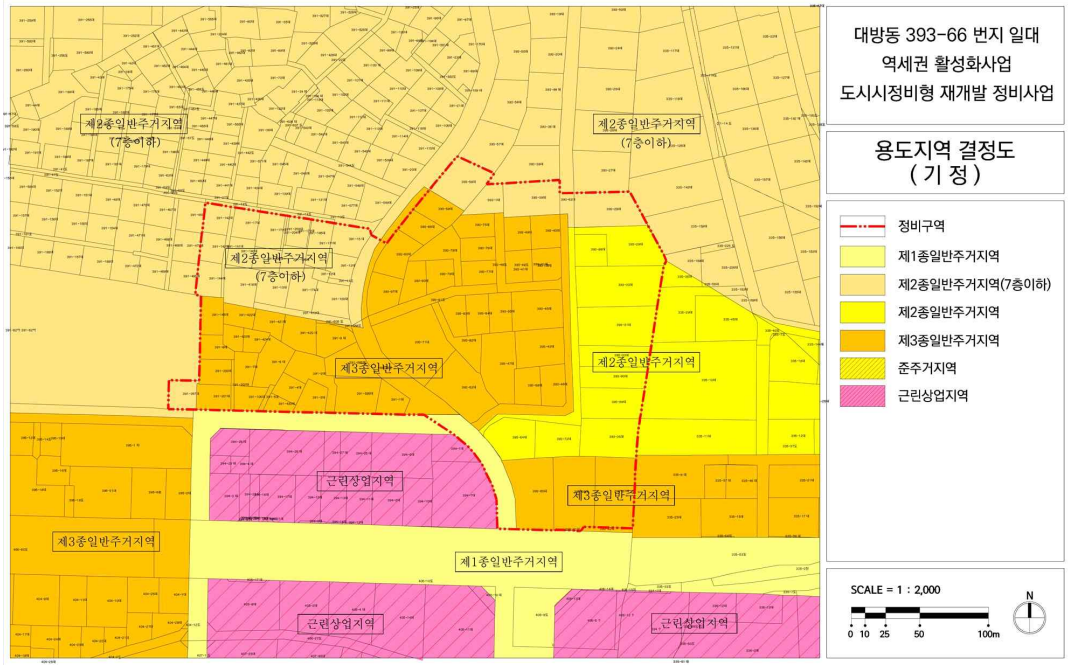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방 393-66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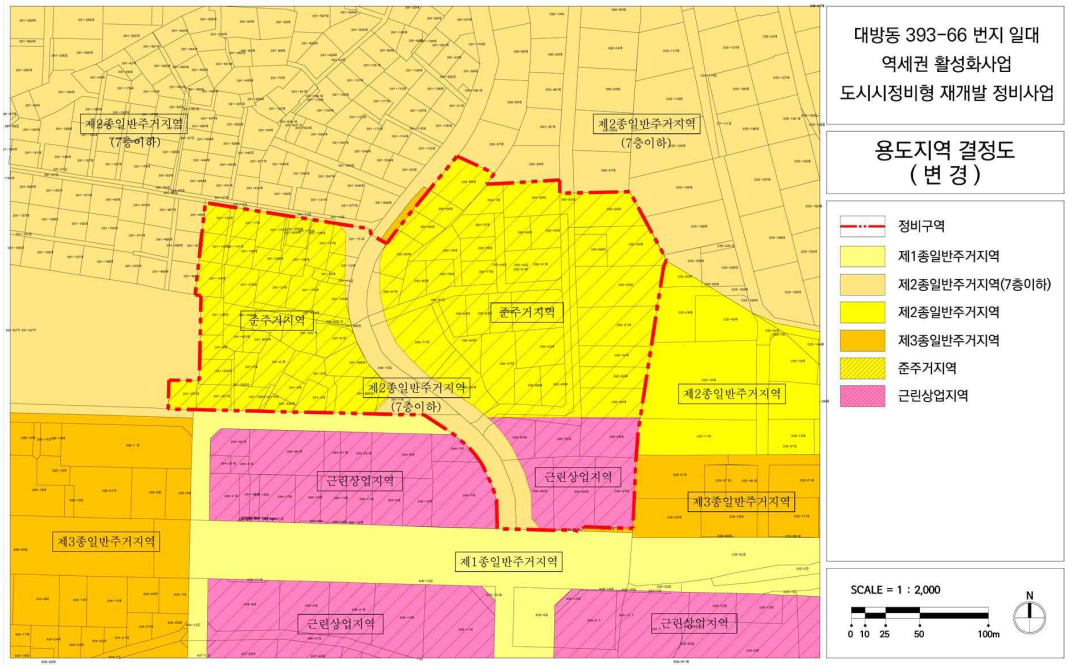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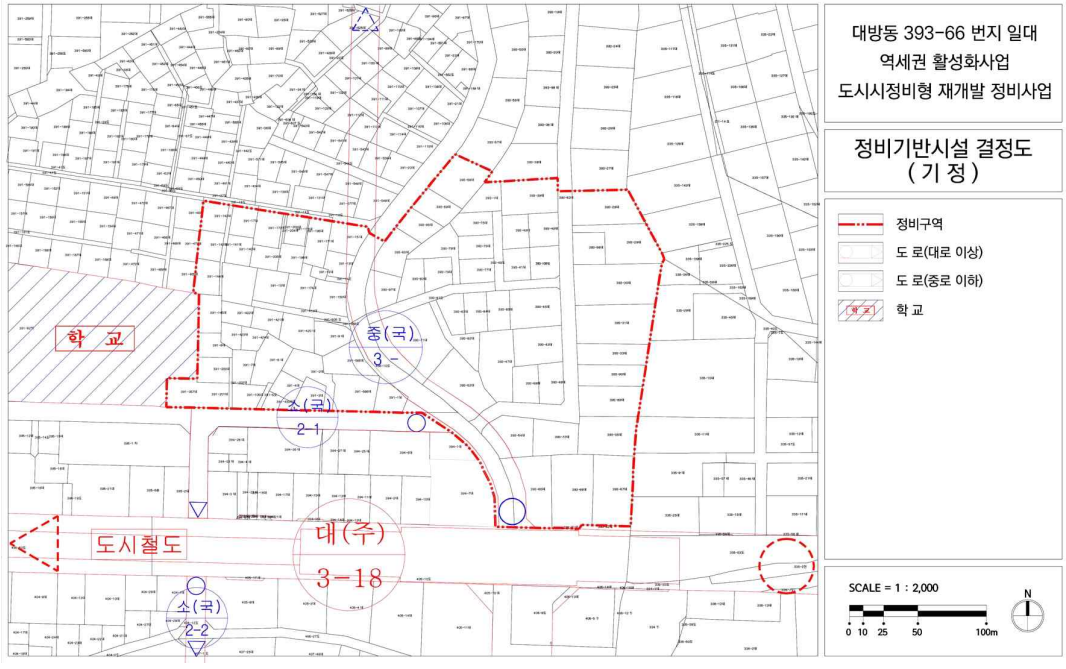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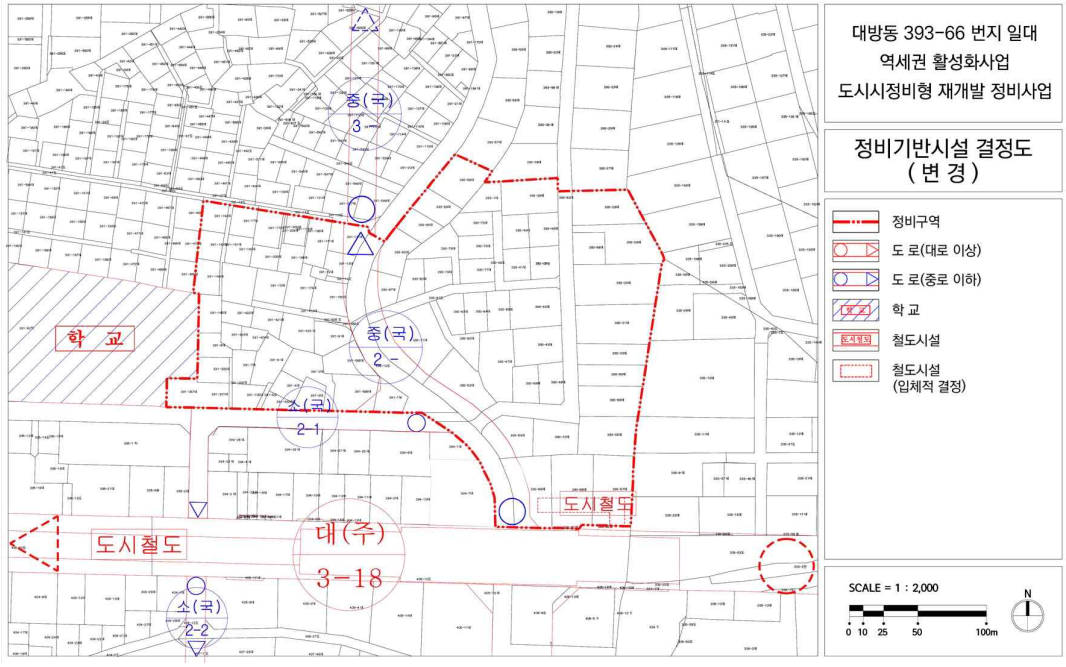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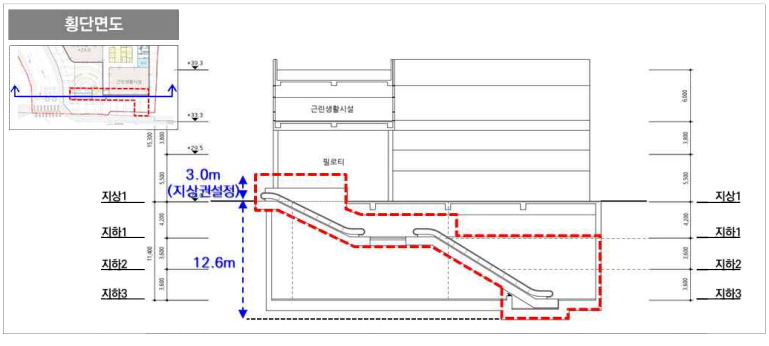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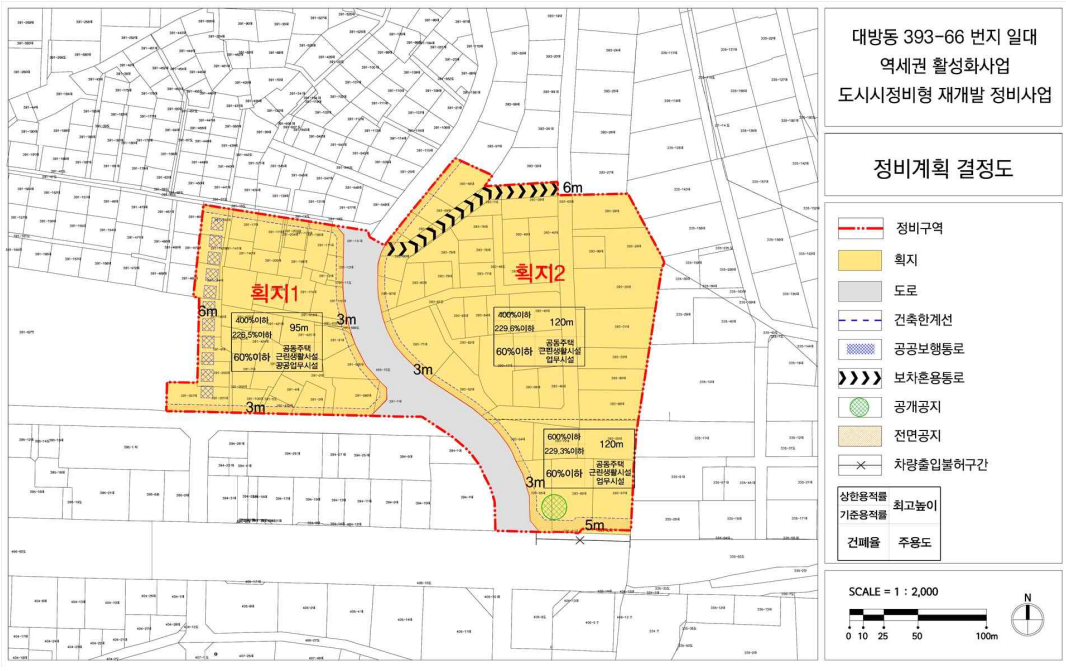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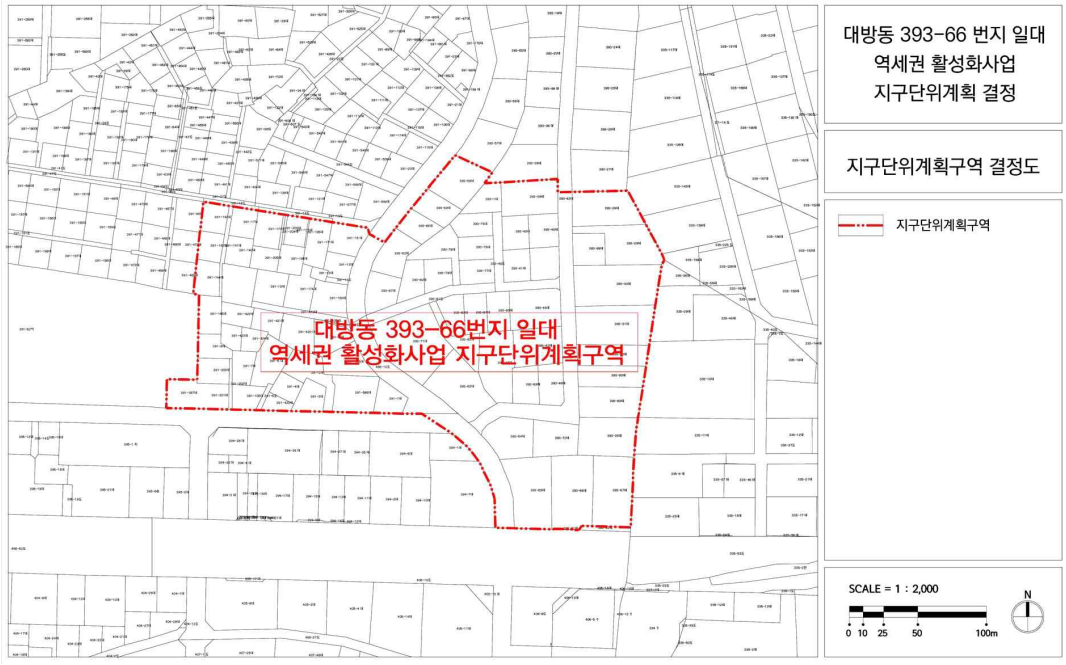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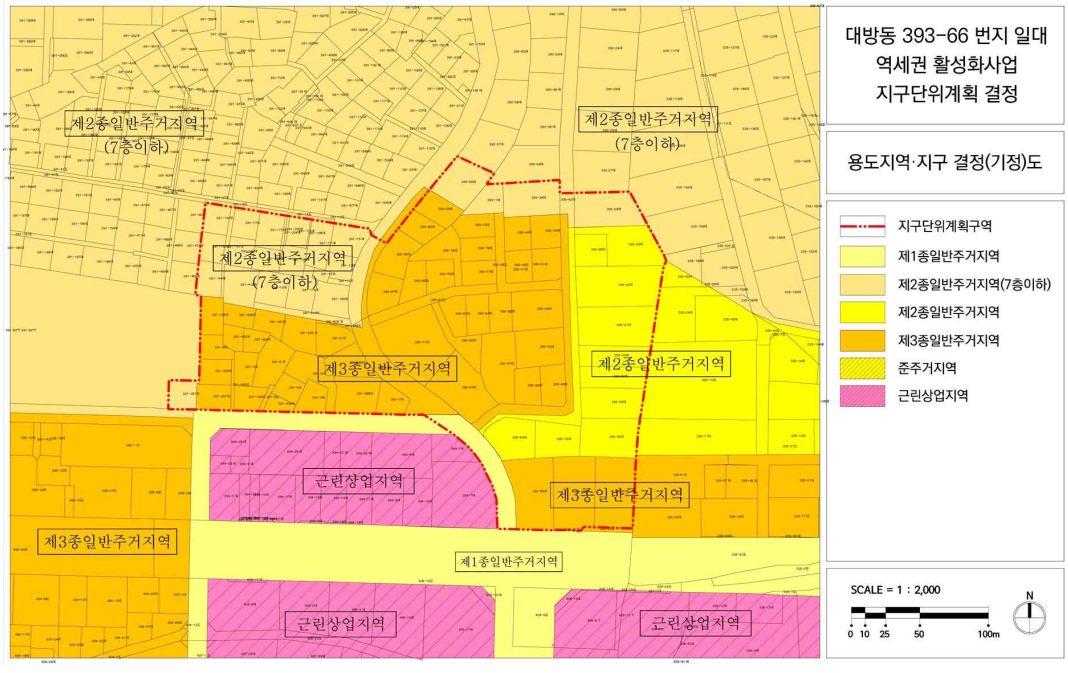

대방동 393-66 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도
정비구역
획지
도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공개공지
전면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주용도
획지1
획지2
6m
3m
95m
120m
400%이하
226.5%이하
229.8%이하
60%이하
229.3%이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5m
SCALE = 1 : 2,000
0 10 25 50 100m
N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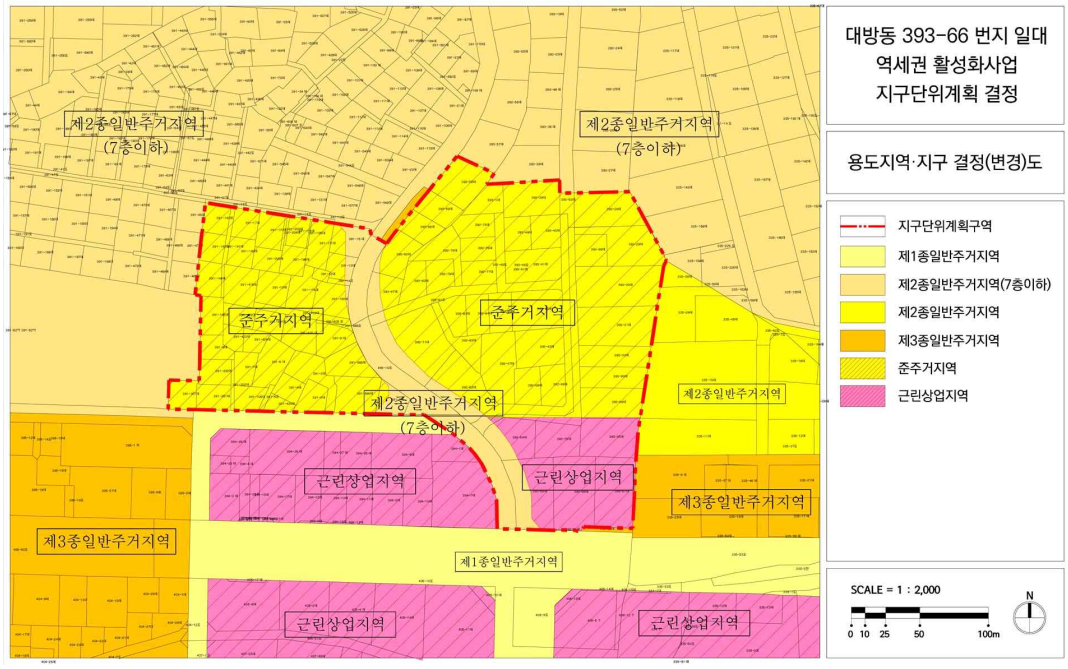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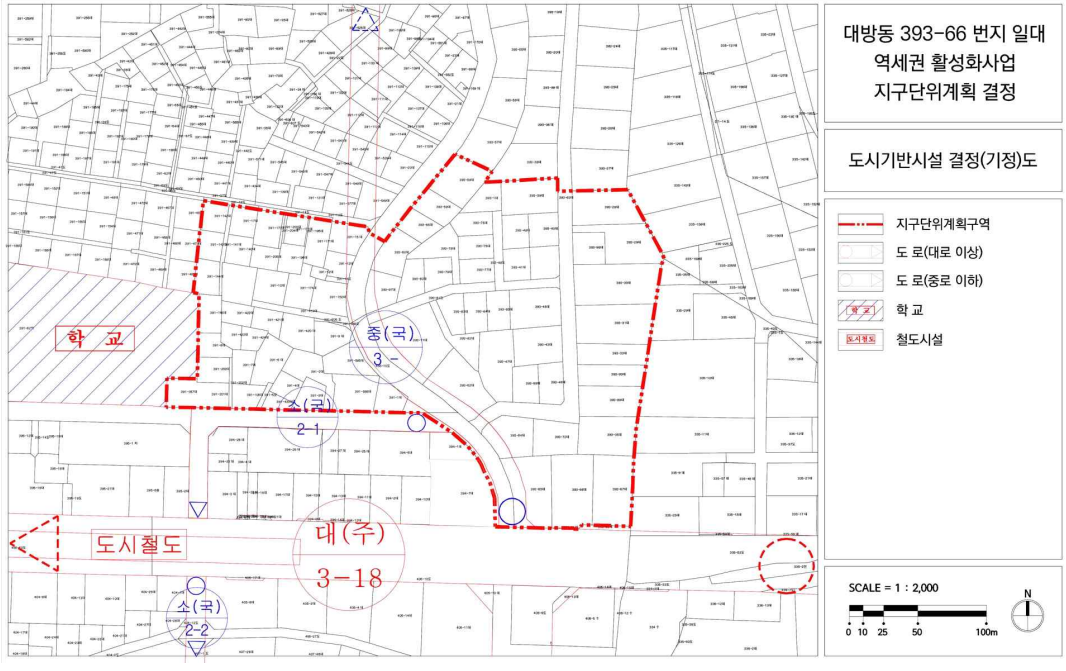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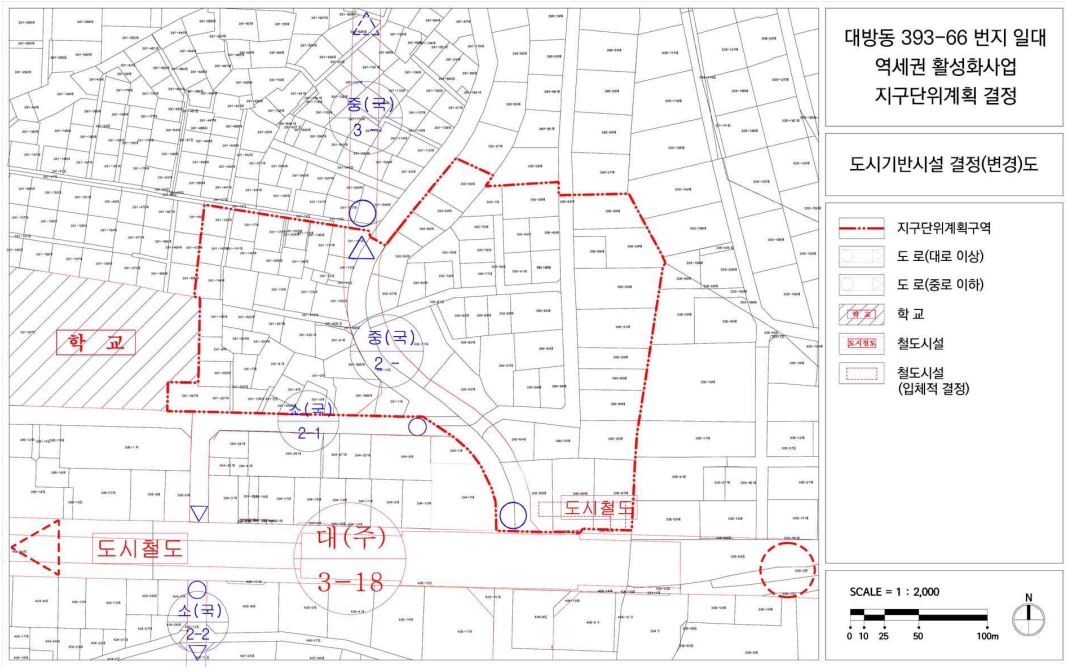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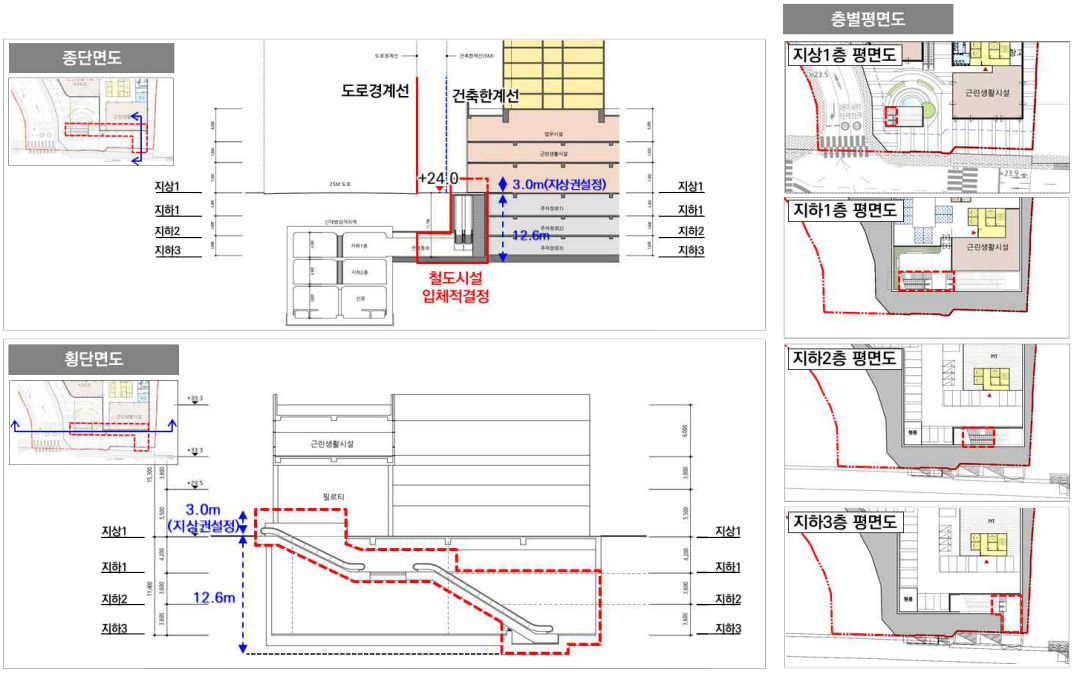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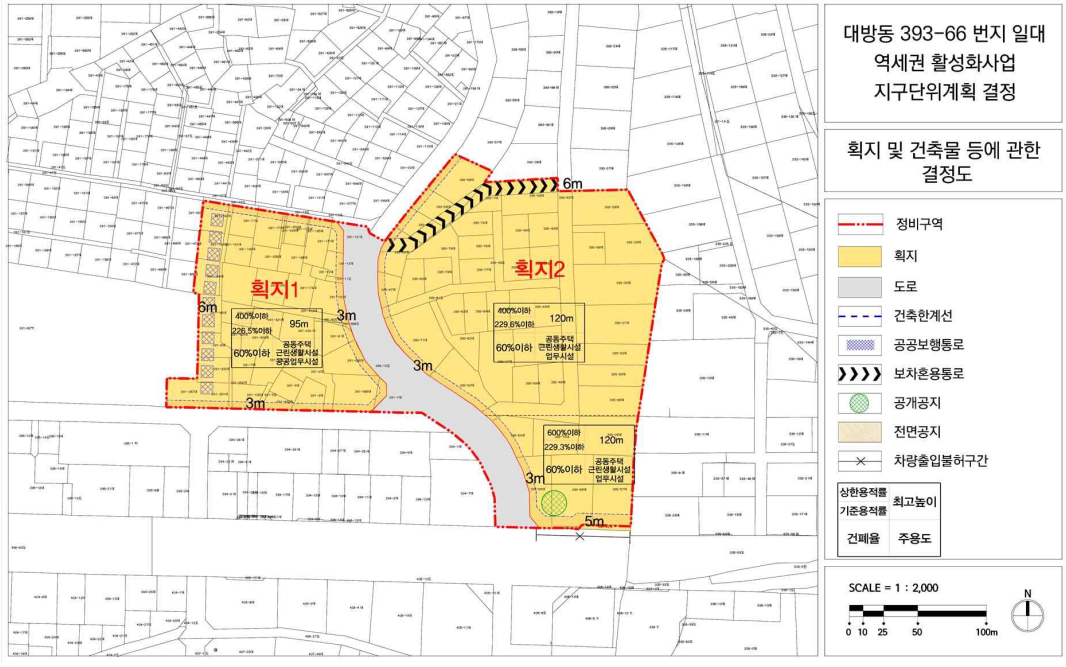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 입체적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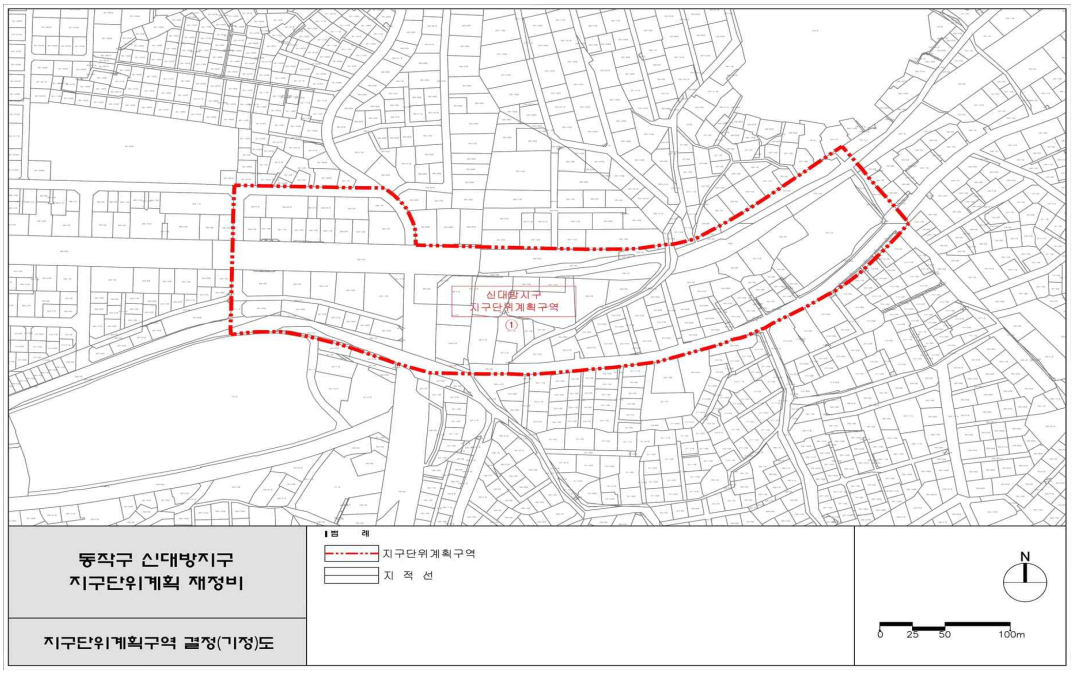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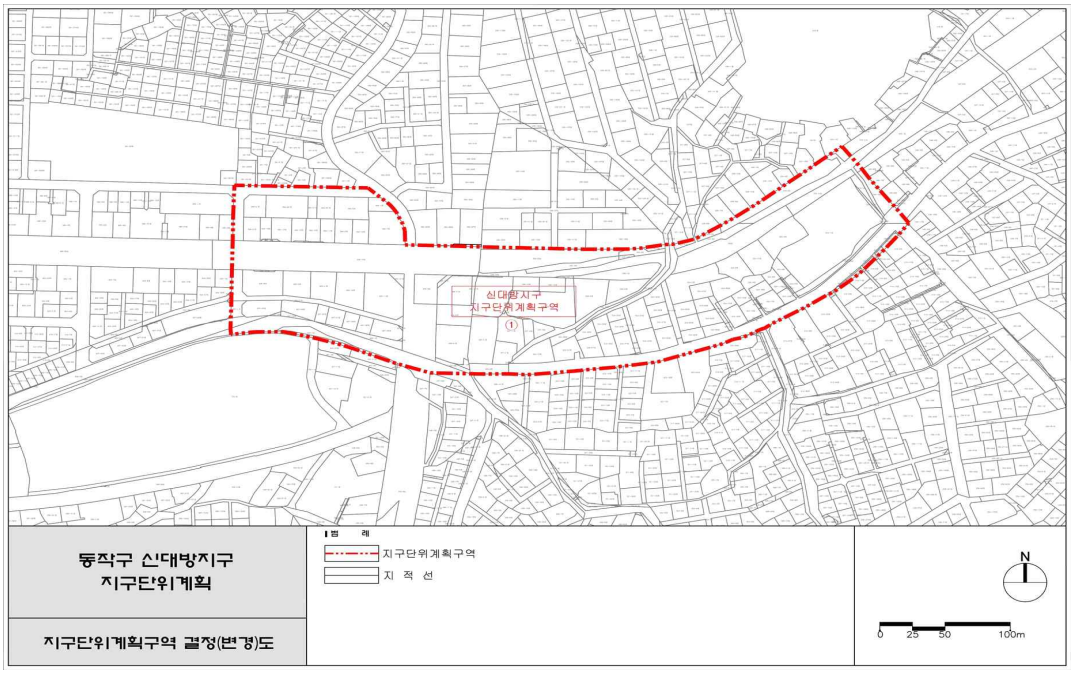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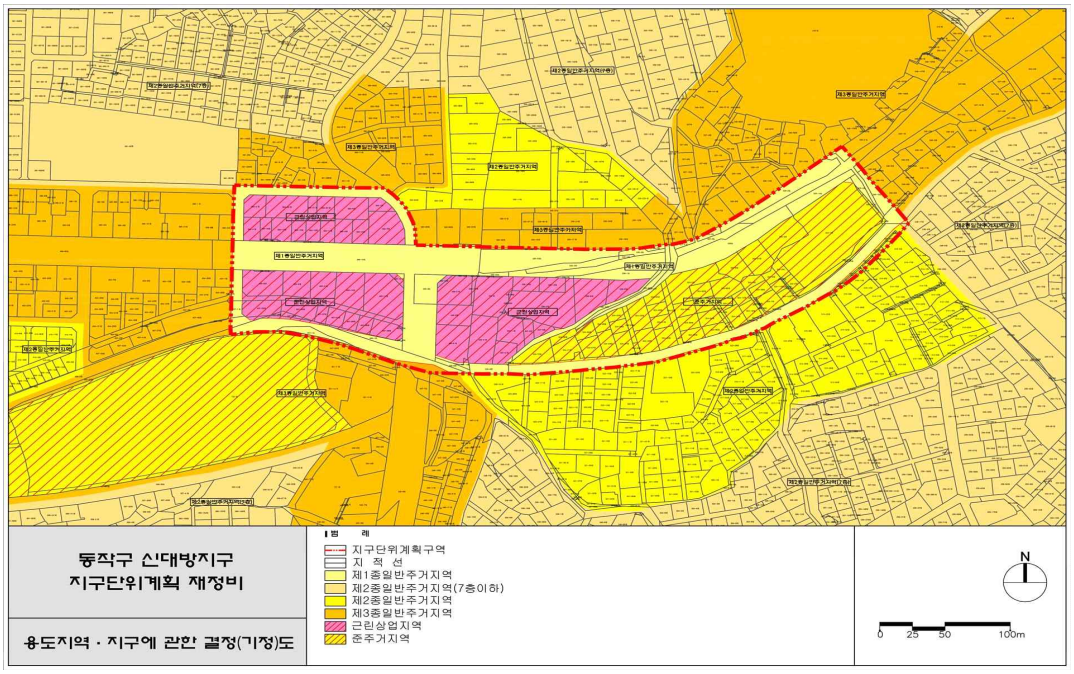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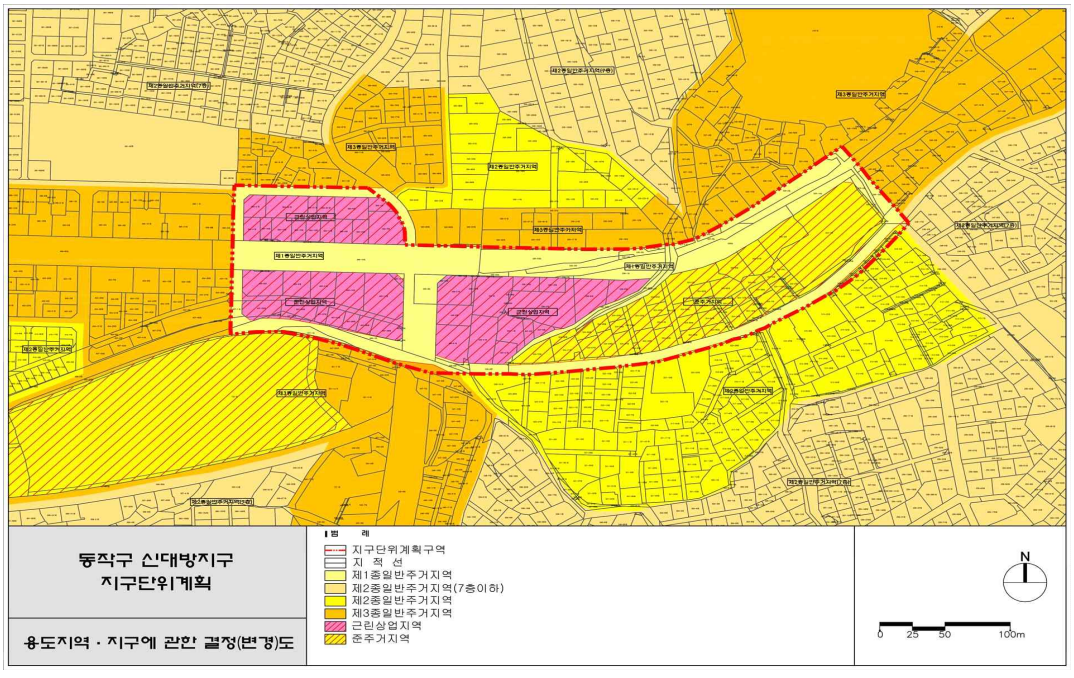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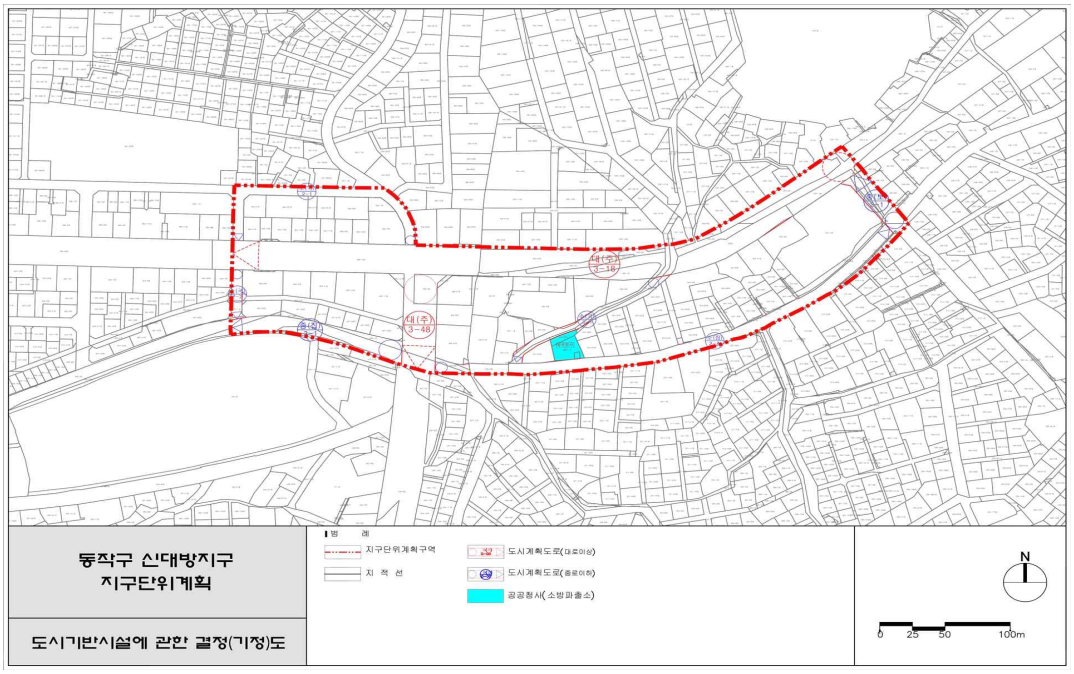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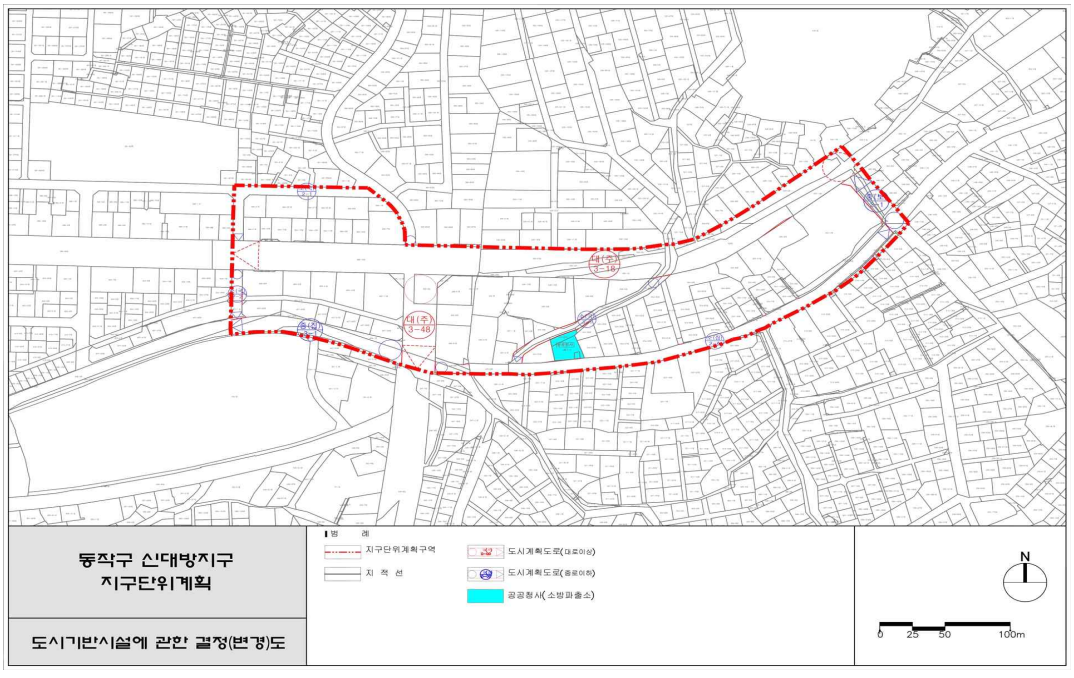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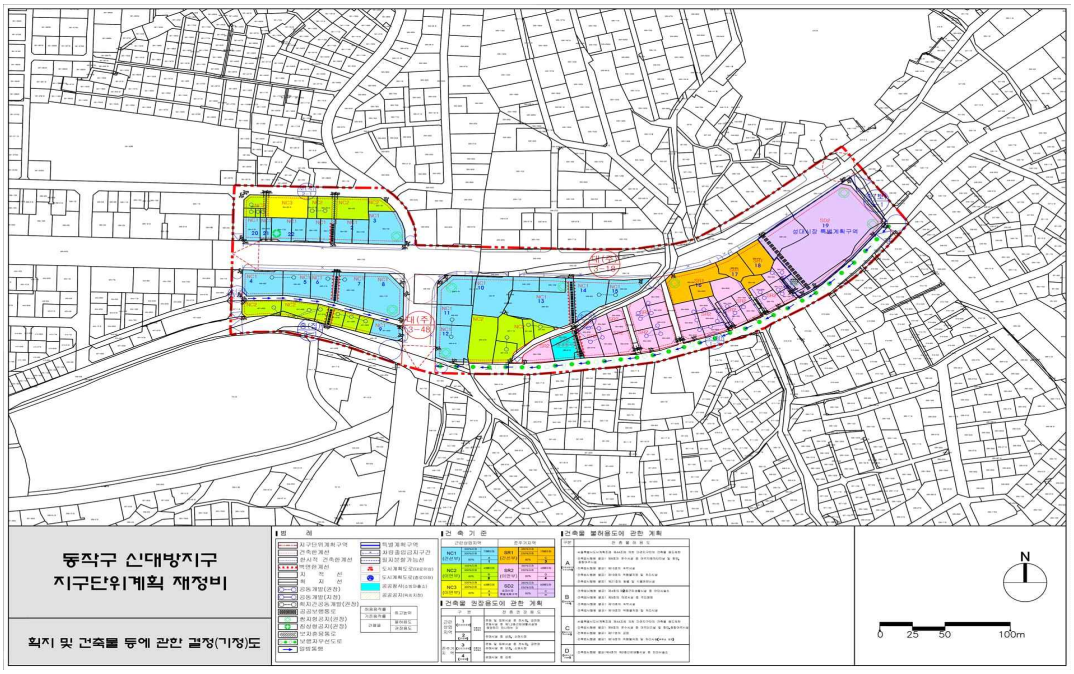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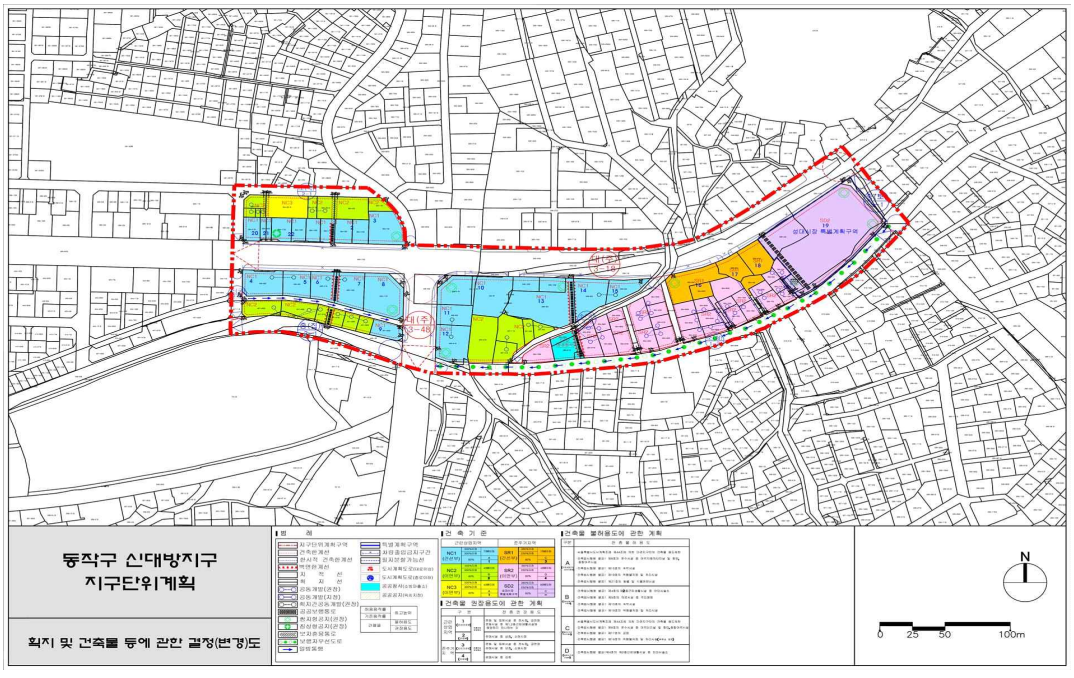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4호

신이문2역세권(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25.12.05.)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7호(2026.01.29.)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	증) 18,004.0	18,004.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18,004.0	18,004.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862.5	862.5	4.8	-
	도 로	-	증)862.5	862.5	4.8	-
획 지	획지 1	-	증)17,141.5	17,141.5	9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8,004.0	-	18,004.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004.0	감)17,141.5	862.5	4.8
	준주거지역	-	증)17,141.5	17,141.5	95.2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 지역	17,141.5	500% 이하	• 신이문역 1차역세권 지역으로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5.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7.44%
(= 536,917,900 천원 - 410,148,106 천원) ÷ 117,989,448 천원)

항목				금액(천원)
총수입	분양주택	소유자		184,008,900
		일반		299,734,400
	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44세대	11,855,000
		장기전세주택	232세대	34,188,000
	보류지			756,600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반분양	6,375,000
합계				536,917,900
총 지출				410,148,106
종전자산 총액				117,989,448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해당 금액은 약식 감정평가 금액임(평가 업체명 :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종전자산 =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평가사례 반영하여 인근 표준지공시지가, 개별요인비교 및 그밖의요인을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토지 · 건물 추정액(천원)	집합건물 추정액(천원)	국공유지 추정액(천원)	현금청산 추정액(천원)	종전자산 추정액(천원)
122,728,428	3,543,400	2,072,410	6,209,970	117,989,448

※ 최종 종전자산 추정액은 토지 · 건물 추정액 및 집합건물 추정액 합산액에서 국공유지 추정액, 현금청산액을 제외한 가액임.
※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될 예정임.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16형	462,600 천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7.44%)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18형	538,000 천원		
24형	756,600 천원		
34형	999,700 천원		
46형	1,250,900 천원		
근린생활시설(2층전체)	6,375,000 천원		

※ 추정분담금은 2026년 01월 기준으로 추정한 가액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에 따른 비례율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천원)				
			-10%	-5%	0%	5%	10%
변동률		84형 단가 (천원/3.3㎡)	7,650	8,075	8,500	8,925	9,350
분양가 (일반분양기준) (천원)	10%	37,730	174.73%	160.85%	147.08%	133.20%	119.43%
	5%	36,015	154.81%	140.93%	127.16%	113.28%	99.51%
	0%	34,300	135.09%	121.21%	107.44%	93.56%	79.79%
	-5%	32,585	114.10%	100.22%	86.45%	72.57%	58.80%
	-10%	30,870	93.33%	79.45%	65.67%	51.80%	38.02%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28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76	일반도로	-	서고제264호 (19.08.08)	-
변경	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58 (30)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33	일반도로	-	-	종점 연장
기정	소로	1	2	2.5~10	국지도로	140	이문동 170-130	이문동 170-44	일반도로	-	서고제278호 (24.06.13)	-
변경	중로	2	(1)	15 (2~5)	국지도로	140	이문동 170-130	이문동 170-44	일반도로	-	-	폭원 확장
기정	소로	3	A	8	국지도로	277	이문동 138	이문동 163-76	일반도로	-	서고제264호 (19.08.08)	구역외 서측
기정	소로	2	8	9	국지도로	45	이문동 176-1	이문동 176-71	일반 도로	-	1992.09.28. (서고 305)	구역외 북측 지하차도

※ ( )는 구역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A	소로1-A	• 변경 - 연장 : 228m → 258m(30m)	•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연장 변경(구역내 30m)
소로1-2	중로2-(1)	• 변경 - 폭원 : 2.5~10m → 15m(2~5m)	• 대상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폭원 확대

※ ( )는 구역내 수치임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공공공지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번지 일대	167.0	감)167.0	-	동대문구고시 제2017-27호 (2017.04.13)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 폐지	• 구역내 협소한 공공공지 폐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내	300.00	법정 : 52.35㎡
공동이용시설	소계		3,246.70	법정 : 2,365.62㎡
	경로당	획지 내	354.33	법정 : 330㎡
	주민운동시설 (옥내)	획지 내	608.08	-
	주민운동시설 (옥외)	획지 내	150.00	-
	다목적실	획지 내	200.00	-
	주민공동시설	획지 내	350.00	-
	어린이집	획지 내	408.29	법정 : 330㎡
	어린이놀이터	획지 내	600.00	옥외 설치
	작은도서관	획지 내	426.00	법정 : 158㎡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내	150.00	법정 : 66㎡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에 따라 1,000세대 미만의 경우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25 이상 확보
= (757세대×2.5㎡)×1.25 = 2,365.62㎡ 이상 < 3,246.70㎡ 계획
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8,004	획지1	17,141.5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146	-	-	146	-	-

2) 건축시설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18,004	획지1	17,141.5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439.99% 이하	106m, 36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 세대수 : 공동주택 757세대
(일반분양 481세대, 재개발임대 44세대, 장기전세 232세대)

구분(전용면적)		계	조합/분양	재개발임대	장기전세
합 계		757	481	44	232
공동주택	39.99㎡형	81	54	27	-
	49.99㎡형	108	53	-	55
	59.98㎡형	200	100	17	83
	84.97㎡형	222	128	-	94
	114.99㎡형	146	146	-	-

심의완화 사항

•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241.57%)
※ 상한용적률 198.42% → 법적상한용적률 439.99%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3m : 대지경계부 도로변
• 9m : 지하철1호선 철도변

기타 사항에 전면공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서측 소로3-A변 2m, 북측도로변 3m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서측 소로3-A변 1m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관한 계획	쌈지형 공지	• 신이문역 4번출입구앞 위치 지정 - 면적 300㎡이상, 북측도로에 접하는 길이 15m이상							
	공공보행통로	• 1호선 경원선변 공공보행통로(폭원6m)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등)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A)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C)
			소계	도로	임대주택 기부채납			
					환산부지	토지지분		
	18,004.0	17,414.5	862.5	862.5	-	-	100.0	178.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584.5㎡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A)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B)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C) = 862.5㎡ - 100.0㎡ - 178.0㎡ = 584.5㎡							
기준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190% (※ 서울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상한 용적률 산정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1 + 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0.7×α현금) = 190%× (1 + 1.3×1.0×0.03409) = 198.42% = 198.42% 이하							
	가중치	• 공공시설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90%/190%) = 1						
	α토지	•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 584.5㎡ ÷ (18,004.0㎡ - 862.5㎡) = 0.03409						
	α건축물	• 해당없음						
법적 상한 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439.99% (계획용적률 : 439.99%)							

구 분	산 정 내 용			
	구분	적용 기준		계획내용
	서울형 주거 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비내력 벽체 부분 설치
		친환경 건축물	환경 성능 부문	• 녹색건축 그린1등급(최우수) 이상 획득
			에너지 성능 부문	• 1+ 등급 이상 획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추가 적용	•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 에너지 인증 5등급 적용
			에너지 관리 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공용부분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 데이터분석 기능
			신재생에너지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
		역사문화 보전	지정등록 문화재 포함 역사생활문화유산 포함 등	• 해당없음
		커뮤니티 지원시설	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이상(권장)	• 해당없음
		기타	지하철 관련시설 등 설치	• 해당없음

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1)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757세대 - 232세대 - 232세대 = 293세대 •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계획 - 세대수의 15%이상 : 293세대 X 15% = 43.95세대 이상 → 총 44세대 계획(※전용 39.99㎡형 27세대, 전용 59.98㎡형 17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44세대 X 30% = 13.2세대, 293세대 X 5% = 14.7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27세대(61.4%)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계	44세대	5.82%	100.0%
전용 39.99㎡	27세대	3.57%	61.37%
전용 59.98㎡	17세대	2.25%	38.63%

(2) 공공주택(장기전세) 계획

계획 기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3-1-1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439.99% - 198.42%)/2 = 120.785%				
산출 근거	• 126.785%(완화용적률) X 17,141.5㎡(대지면적) = 20,704.36㎡(기준)				
건립 규모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 계	-	-	232세대	20,706.85	〉 20,704.36㎡
40㎡이하	39.99	54.03	-	-	기준이상
40㎡초과~50㎡이하	44.99	60.90	55세대	3,349.63	
50㎡초과~60㎡이하	59.98	80.94	83세대	6,718.14	
60㎡초과~85㎡이하	84.97	113.18	94세대	10,639.08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토지이용	•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녹지공간 최대 확보	-
	대 기 질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인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
	수 질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폐 기 물	•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 지구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
	소음,진동	•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내에 녹지 최대확보	-
재난방지	• 피난 및 응급차량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대상지는 호우 침수 피해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해당되지 않음		-

※ 호우 침수피해지역은 서울안전누리(https://seoul.go.kr/index.do) 참고

9.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	-	증) 450세대 (현황 : 307세대 → 계획 : 757세대)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북측	이문유치원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 대상지는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음	-
	이문초등학교		

11.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내용	비 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방범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방법 등 CCTV 설치 • CCTV 및 방범 등의 설치 위치는 주민 요청 및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선정	-

※ 세부 설계지침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1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명칭	위 치	면 적(㎡)	
신규	1	18,004.0	획지1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17,14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 환경성 검토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생태면적률	30%	○	• 사업시행후 : 30.03% 계획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 • 지반녹지 등 적용	
	2.녹지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 수공간 및 조경녹지 확보로 연결성 확보	• 조경계획에 반영	
	3.지형변동	지형변동 최소화	○	• 지형변화는 미미함 • 토양포장율의 변화 예상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 • 포장면은 투수성 포장재 사용	
	4.비오톱	5등급	○	• 개별 비오톱유형평가는 평가 제외 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지역	• 생물서식공간 마련 • 지구내부에 조경 및 녹지 조성	
생활 환경	5.일조	수인한도 만족	△	• 사업지구 주변 일조영향대 지역의 발생 예상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6.바람 및 기후	바람길 확보	○	• 신축건물에 의한 바람길 영향 발생하나 그 영향은 미미함	• 지구내부에 녹지공간 확보	
	7.에너지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	• LNG 사용계획	•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 기법을 최대한 반영	
	8.경관	Skyline 보전	○	• 대상지는 지상35층의 높이로 계획하여 대상지 북측으로 대림e편한세상아파트(최고22층), 서측으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등 가로변 건축 물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변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 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계획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경관변화	○	• 기존 건축물 및 기존경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하여 시각적 경관영향은 긍정적임	•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조화를 위하여 색체계획은 기단부, 중층부, 상층부의 전통적인 3단 구성방식을 채택	
		녹지공간	○	• 계획지구는 공동주택용지로 생태면적률을 법적기준(30%이상) 이상으로 계획함	• 계획지구내 다양한 조경시설 및 수목식재 계획함 • 광역적 그린네트워크(녹지축)를 도모함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동대문구에는 문화공간 11개 소, 공원 248개소, 체육시설 5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지구 내 공공공지, 어린이놀이터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임	
	10.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 계획지구 내 내부도로는 아스콘포장이 되어있어 보행자 전용동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이 용되는 도로가 대부분임	• 계획지구 내부로는 쾌적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주변 주거지와 연계하는 단지 내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 활동축을 구축할 계획임	
추가	11.대기질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 물질(PM-10, NO2)발생 예상 됨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치, 주기적인 살수실시, 공회전 금지, 필요시 방진 망설치 등 • 운영시 환경정화수종 식재 등	
	12.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 활폐기물 발생 •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인근 정비소 이용과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3.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및 소음환경기준	○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발생	• 가설방음판넬설치 • 투입장비 제한 • 작업시간 조절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신이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	증) 18,004.0	18,004.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8,004.0	-	18,004.0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004.0	감)17,141.5	862.5	4.8
	준주거지역	-	증)17,141.5	17,141.5	95.2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28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76	일반도로	-	서고제264호 (19.08.08)	-
변경	소로	1	A	10~12	국지도로	258 (30)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33	일반도로	-	-	종점 연장
기정	소로	1	2	2.5~10	국지도로	140	이문동 170-130	이문동 170-44	일반도로	-	서고제278호 (24.06.13)	-
변경	중로	2	(1)	15 (2~5)	국지도로	140	이문동 170-130	이문동 170-44	일반도로	-	-	폭원 확장
기정	소로	3	A	8	국지도로	277	이문동 138	이문동 163-76	일반도로	-	서고제264호 (19.08.08)	구역외 서측
기정	소로	2	8	9	국지도로	45	이문동 176-1	이문동 176-71	일반 도로	-	1992.09.28. (서고 305)	구역외 북측 지하차도

※ ( )는 구역내 수치임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공공공지	동대문구 이문동 170-127번지 일대	167.0	감)167.0	-	동대문구고시 제2017-27호 (2017.04.13)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명칭	위 치	면 적(㎡)	
신규	1	18,004.0	획지1	이문동 170-65번지 일대	17,14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의 용도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택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안의 부대시설 · 복리시설	허용용도는 주된용도임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 계획

구 분	가 구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설	획지1	준주거지역	60% 이하	-

(2) 용적률 계획

구 분	가 구	용적률			비 고
		기 준	상 한	법적상한	
신설	획지1	190.0%	198.42%	439.99% 이하	-

■ 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 분	용적률완화		비 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신설	8.42%(584.5㎡)	-	총 8.42%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 분	용적률완화		비 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완화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상한용적률)] X 1/2이상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 필수 ①지속가능형 공동주택 ②친환경건축물 ③역사문화 보전 권장 ④커뮤니티지원시설 설치	
신설	241.57%		총 241.57%

(3) 높이 계획

구 분	가 구	지 역	높 이	비 고
신설	획지1	준주거지역	최고 106m 이하, 36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건축한계선	대지경계부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
		지하철1호선 철도변	건축한계선 : 9m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전면공지	북측도로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3m	도면참조
		서측 소로3-A변	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1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2m	도면참조
	쌈지형공지	신이문역 4번출입구 앞	면적 300㎡이상, 북측도로에 접하는 길이 15m이상	-

나. 대지내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신설	공공보행통로	• 보행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1개소 확보 - 1호선 경원선변 폭원 6m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동대문구청장)	지역권 설정

다.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1.생태면적률	30%	○	• 사업시행후 : 30.03% 계획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 • 지반녹지 등 적용	
	2.녹지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 수공간 및 조경녹지 확보로 연결성 확보	• 조경계획에 반영	
	3.지형변동	지형변동 최소화	○	• 지형변화는 미미함 • 토양포장율의 변화 예상	• 현 지형을 최대한 이용 • 포장면은 투수성 포장재 사용	
	4.비오톱	5등급	○	• 개별 비오톱유형평가는 평가 제외 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지역	• 생물서식공간 마련 • 지구내부에 조경 및 녹지 조성	
생활환경	5.일조	수인한도 만족	△	• 사업지구 주변 일조영향대 지역의 발생 예상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6.바람 및 기후	바람길 확보	○	• 신축건물에 의한 바람길 영향 발생하나 그 영향은 미미함	• 지구내부에 녹지공간 확보	
	7.에너지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	• LNG 사용계획	•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 기법을 최대한 반영	
	8.경관	Skyline 보전	○	• 대상지는 지상35층의 높이로 계획하여 대상지 북측으로 대림e편한세상아파트(최고22층), 서측으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등 가로변 건축 물과 조화를 유지하고 있어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주변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 카이라인이 조성되도록 계획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경관변화	○	• 기존 건축물 및 기존경관을 현대적 감각으로 개선하여 시각적 경관영향은 긍정적임	•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조화를 위하여 색체계획은 기단부, 중층부, 상층부의 전통적인 3단 구성방식을 채택	
		녹지공간	○	• 계획지구는 공동주택용지로 생태면적률을 법적기준(30%이상) 이상으로 계획함	• 계획지구내 다양한 조경시설 및 수목식재 계획함 • 광역적 그린네트워크(녹지축)를 도모함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동대문구에는 문화공간 11개 소, 공원 248개소, 체육시설 5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지구 내 공공공지, 어린이놀이터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임	

검토항목		목표 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0.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 계획지구 내 내부도로는 아스콘포장이 되어있어 보행자 전용동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이 용되는 도로가 대부분임	• 계획지구 내부로는 쾌적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주변 주거지와 연계하는 단지 내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 활동축을 구축할 계획임	
추가	11.대기질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 물질(PM-10, NO2)발생 예상 됨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치, 주기적인 살수실시, 공회전 금지, 필요시 방진 망설치 등 • 운영시 환경정화수종 식재 등	
	12.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 투입인부에 의한 분뇨 및 생 활폐기물 발생 •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인근 정비소 이용과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13.소음 · 진동	생활소음진동 및 소음환경기준	○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발생	• 가설방음판넬설치 • 투입장비 제한 • 작업시간 조절	

라.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1) 재개발의무 임대주택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산출근거	• 전체 세대수 : 757세대 - 232세대 - 232세대 = 293세대 •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계획 - 세대수의 15%이상 : 293세대 X 15% = 43.95세대 이상 → 총 44세대 계획(※전용 39.99㎡형 27세대, 전용 59.98㎡형 17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 세대수 : 전체 임대주택(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44세대 X 30% = 13.2세대, 293세대 X 5% = 14.7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 27세대(61.4%)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계	44세대	5.82%	100.0%
전용 39.99㎡	27세대	3.57%	61.37%
전용 59.98㎡	17세대	2.25%	38.63%

(2) 공공주택(장기전세) 계획

계획 기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3-1-1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439.99% - 198.42%)/2 = 120.785%				
산출 근거	• 126.785%(완화용적률) X 17,141.5㎡(대지면적) = 20,704.36㎡(기준)				
건립 규모	세대규모(㎡)		세대수	연면적(㎡)	비고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 계	-	-	232세대	20,706.85	〉 20,704.36㎡
40㎡이하	39.99	54.03	-	-	기준이상
40㎡초과~50㎡이하	44.99	60.90	55세대	3,349.63	
50㎡초과~60㎡이하	59.98	80.94	83세대	6,718.14	
60㎡초과~85㎡이하	84.97	113.18	94세대	10,639.08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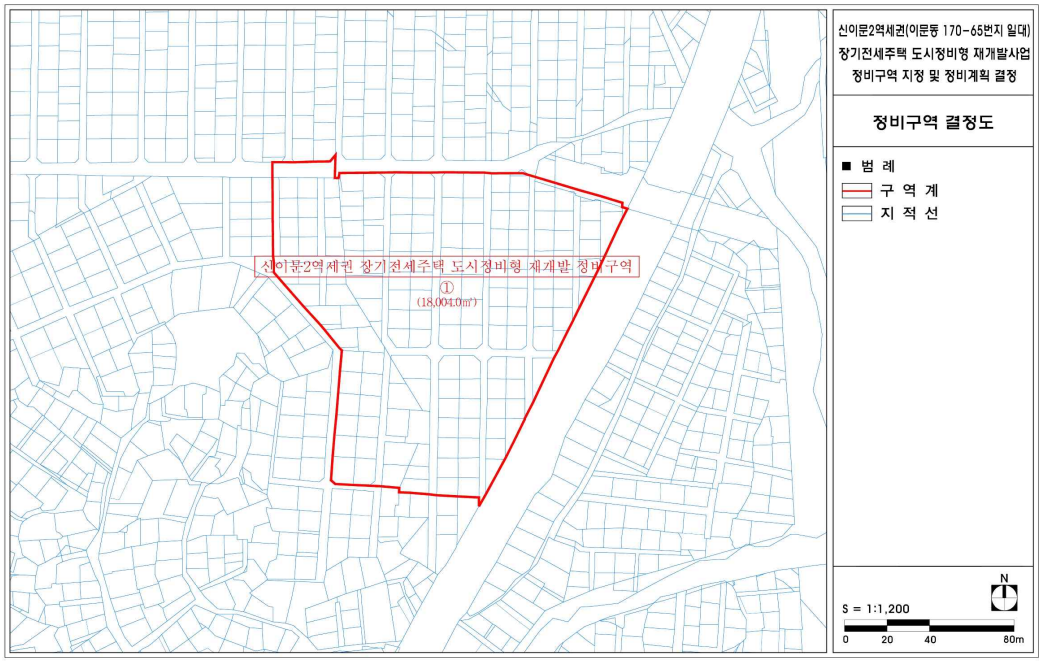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590)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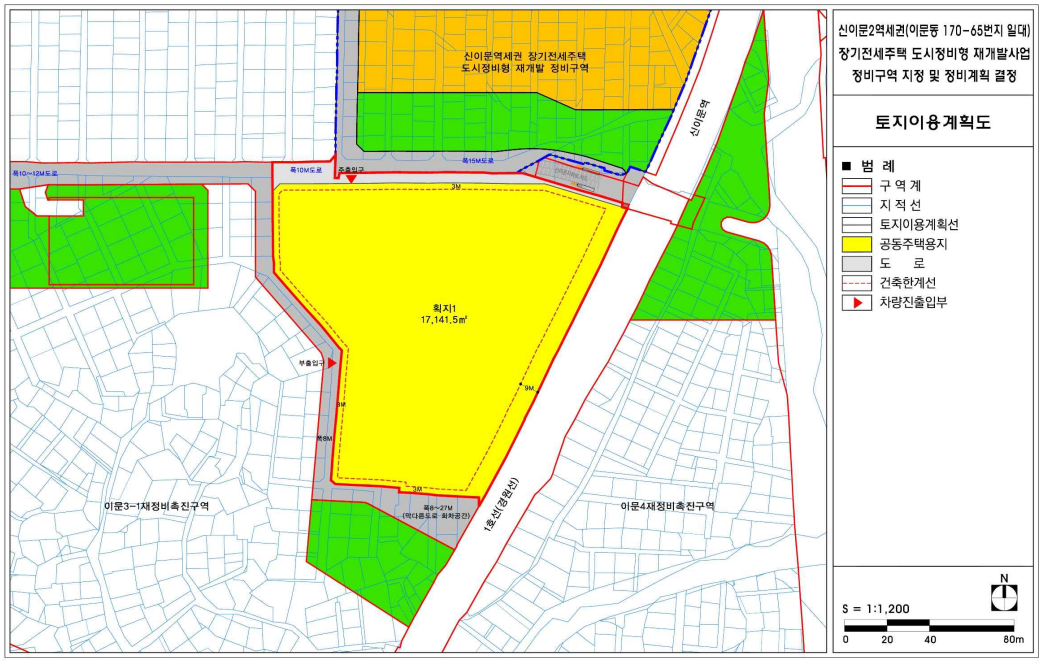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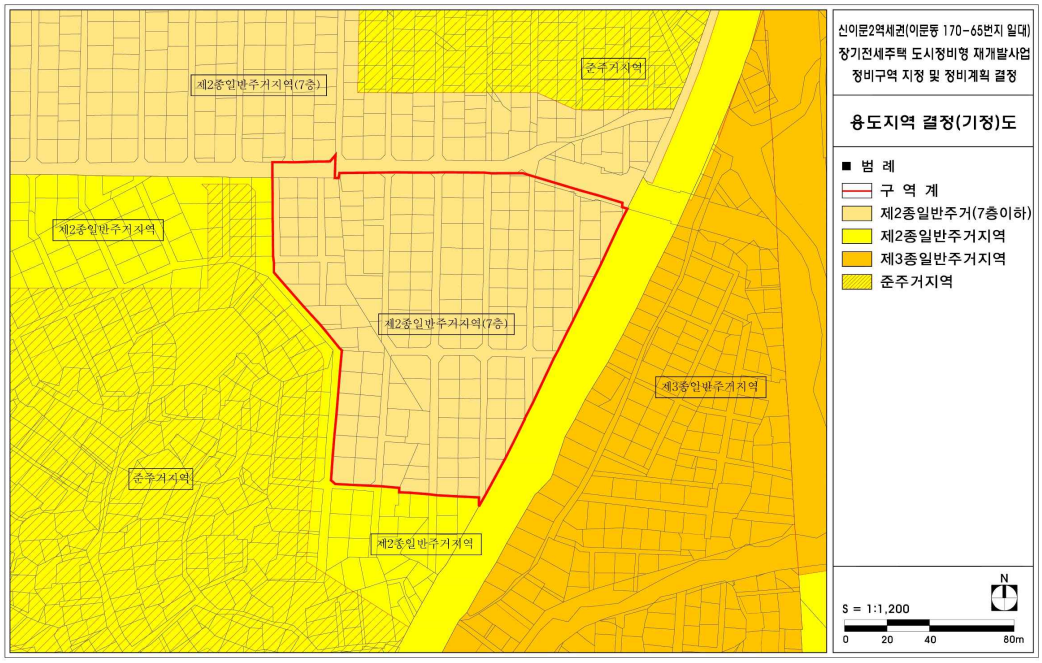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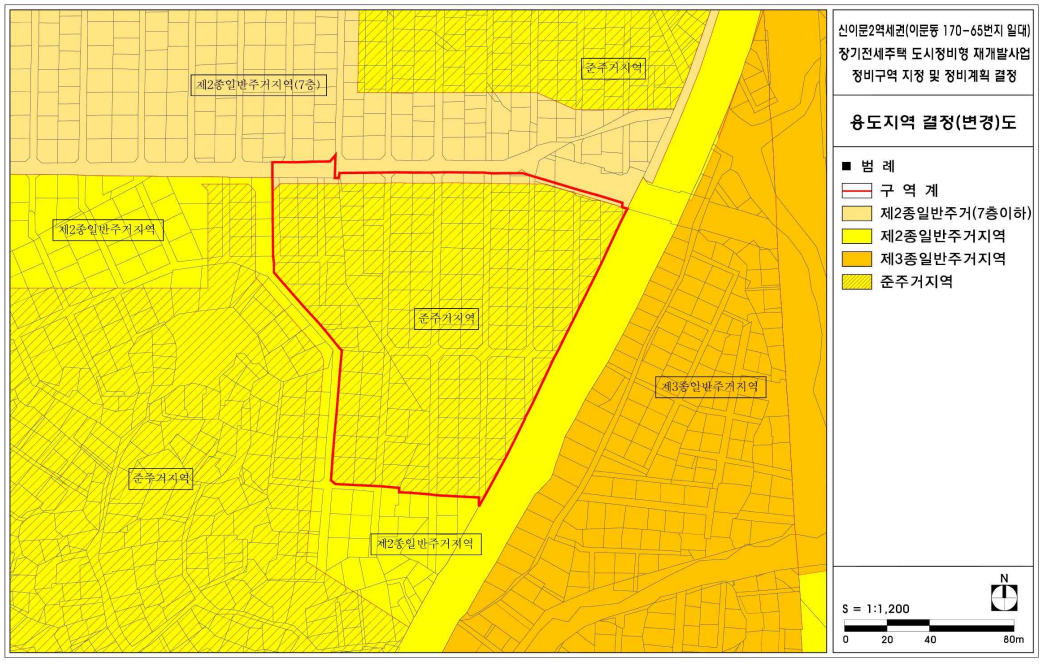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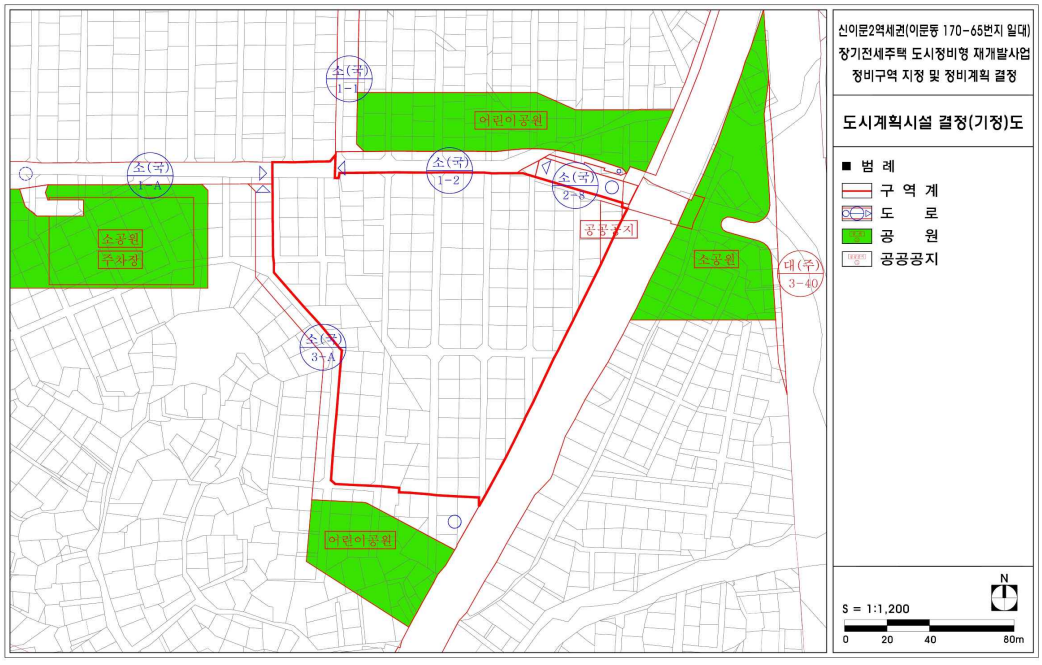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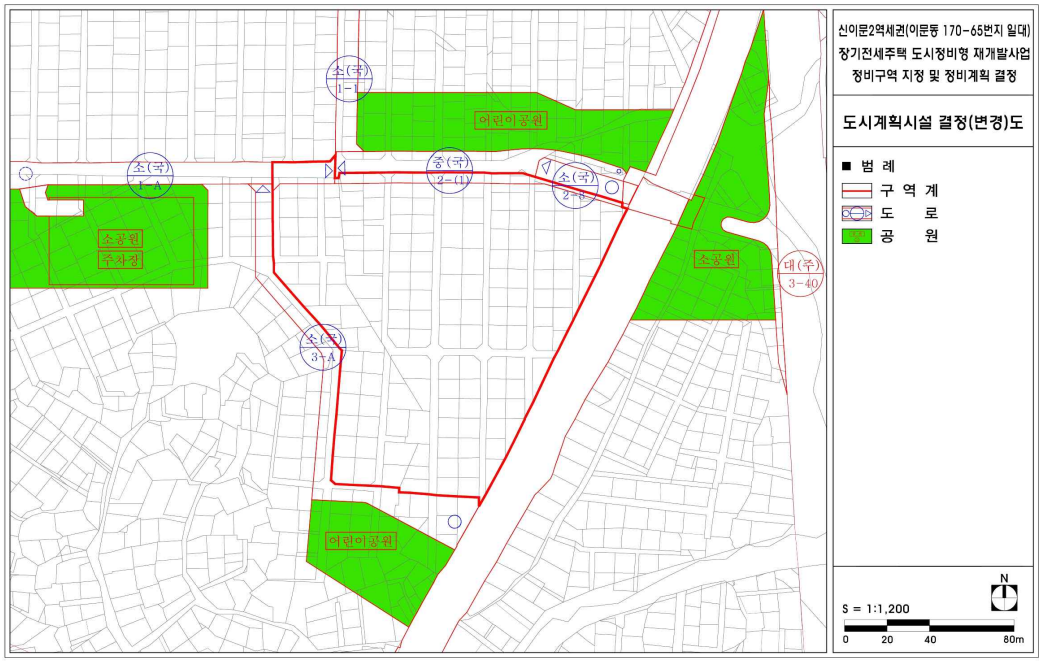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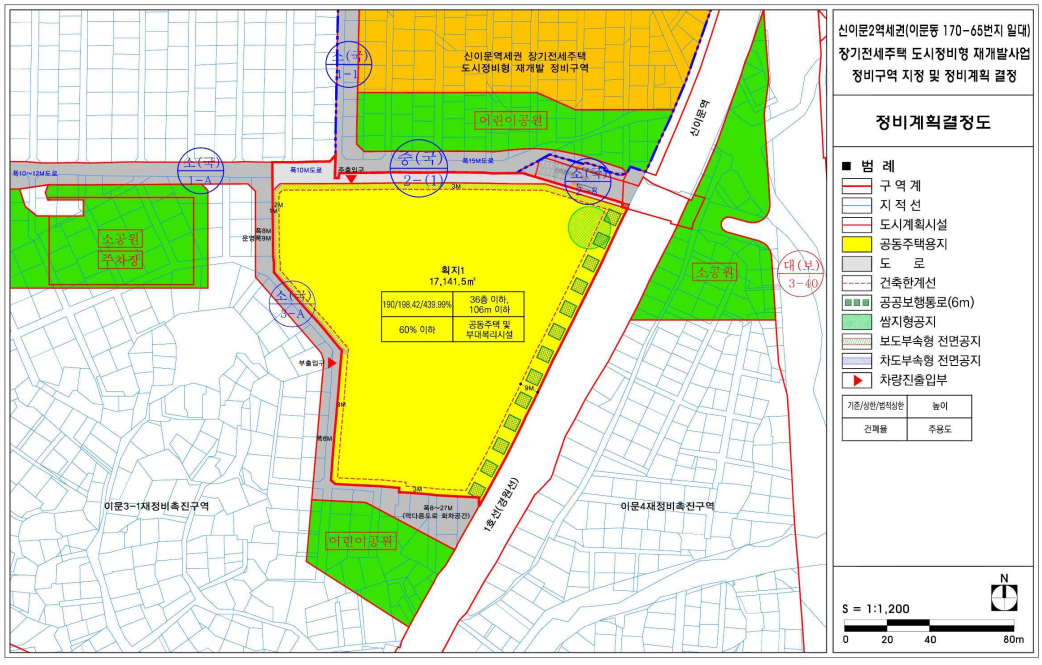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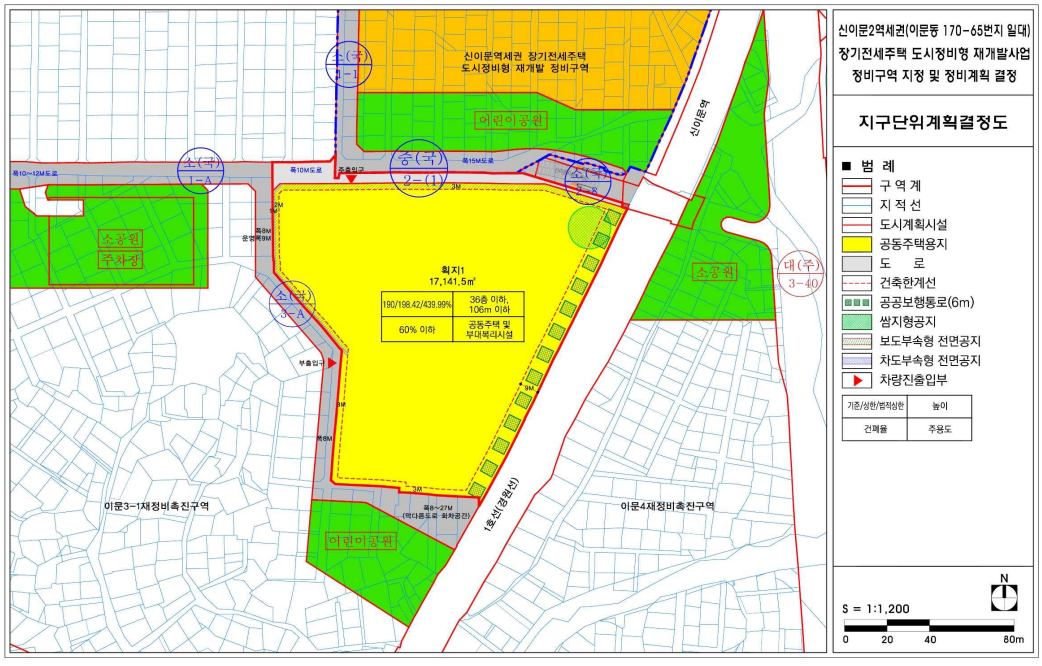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7호

도시관리계획(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6.03.1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초구 신논현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서초구 반포동 737-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신설)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①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외 4필지	-	증) 2,742.5	2,742.5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①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외 4필지	2,742.5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42.5	-	2,742.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16.1	감) 1,916.1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826.4	증) 1,916.1	2,742.5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사유
		기정	변경			
-	서초구 반포동 737-3번지 외 4필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1,916.1	800%	• 용도지역 상향을 통하여 업무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생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1. 공공기여계획 결정 조서

구분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415.73%	800%	부지면적의 24.02% 이상 (658.66㎡)	• 공공기여율 : 총 24.05%(659.81㎡) - 현금기부채납 : 100%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 공공기여량 산정 시 부지가액 기준은 공시지가 2배(65,170,003원/㎡)로 산출하였으며, 추후 건축허가 시점에 관할 관리청과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단위면적 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시행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이 조정될 수 있음

2. 공공기여량 산정 기준

용도지역 (기정)	용도지역 (변경)	① 해당면적(㎡)	② 기준용적률	③ 상한용적률	공공기여기준 토지면적 [{(③-②)/2}/③]x①	공공기여율
계	-	2,742.5	-	-	658.66	24.02%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916.1	415.73%	800.0%	658.66	24.02%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826.4				

*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 제3종일반주거지역(1,916.1㎡, 250%)와 일반상업지역(826.4㎡, 800%)를 가중평균 함

3. 공공기여계획 세부내역

구분		면적(㎡)				건축물 연면적(㎡)	위치	비고
		소계(㎡)	부지제공 면적(㎡)	환산부지 면적(㎡)	구성비(%)			
구역 외 (비용)	서울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461.87	-	461.87	16.84 (70.02)	-	서울시	설치비용 70%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197.94	-	197.94	7.21 (29.98)	-	서초구	설치비용 30%
계		659.81	-	659.81	24.05 (100.0)	-	-	-

* 공공기여량 산정 시 부지가액 기준은 공시지가 2배(65,170,003원/㎡)로 산출하였으며, 추후 건축허가 시점에 관할 관리청과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단위면적 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시행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이 조정될 수 있음

4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획지에 관한 결정

가.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A1	서초구 반포동 737-7번지 일대	2,742.5㎡	-

■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획지번호	계획내용	결정사유
신설	A1	획지 신설 : 2,742.5㎡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불허용도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계획내용	비고
신설	불허용도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9]에 따름

2) 지정용도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계획내용		비고
신설	지정용도 (a)	3층 일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해당층 내 문화 및 집회시설 외 시설은 활성화방안에 부합하는 시설로 한정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제외)	-

* 지정용도는 당해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바닥면적(부설주차장/기계실/계단 등의 공용면적 제외)의 50% 이상 설치한 경우 당해 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봄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폐율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준용

2) 용적률에 관한 결정 조서

가) 용적률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준	상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15.73%	800%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2-1. 준용

나) 가산용적률

구 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정한 ZEB인증,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 기준을 초과 획득 시 용적률 완화 적용하고, 이 경우 ZEB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우선 검토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기준용적률의 15% 이하 적용	
	법적용적률 x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의 'Ⅱ. 3-8-3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준용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인증

구분	ZEB1	ZEB2	ZEB3	ZEB4	ZEB5	에너지 효율 1++	에너지 효율 1+
완화비율	15%	14%	13%	12%	11%	6%	3%

② 녹색건축 인증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그에 따름

3) 용적률 적용 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4.02% 이상	▪부지면적의 24.05% - 현금기부채납 : 24.05%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구분	복합용도	▪복합용도 도입 여부 -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호텔 설치	▪업무시설 83.84% 근린생활시설 14.46% 문화 및 집회시설 1.70%	
	비주거시설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상 1층 비주거시설 설치 - 가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 지하 1층 설치 허용	▪지상3층 일부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1층, 지상 1~3층 근린생활시설 도입	
	비주거비율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주거 : 비주거 = 0% : 100%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85㎡ 이하	▪전체 비주거시설로 해당없음	
건축물 형태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 (해당되는 지역에 한함)	▪1가지 이행 적용 - 친환경 건축물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역사문화 보전 해당 없음) ※가산용적률 완화계획으로 ZEB5등급, 녹색건축 최우수 계획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전체 비주거시설로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2025.10.31. 기준)
*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과 비율 등 변경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시행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공공기여 총량이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물 높이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일반상업지역	103.5m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3-3-5.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강남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결정도 참고
	강남대로83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사평대로57길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건축물 외관	재료 및 색채	•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는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도모	
	야간경관 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등 설치 권장 •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등의 설치 권장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강남대로변	• 보도형 전면공지 3m	결정도 참고
	강남대로83길변	• 보도형 전면공지 2m	
	사평대로57길변	• 차도형 전면공지 1m	
공개공지	강남대로변 가각부	• 강남대로변 1개소 설치 - 보행환경개선 및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강남대로변 • 강남대로83길변 • 사평대로57길변 (일부구간 제외)	•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 최소화 • 도로 가각부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을 통한 교통혼잡 예방	결정도 참고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제9호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5-1-2.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 총량 및 공공기여 세부내역의 변경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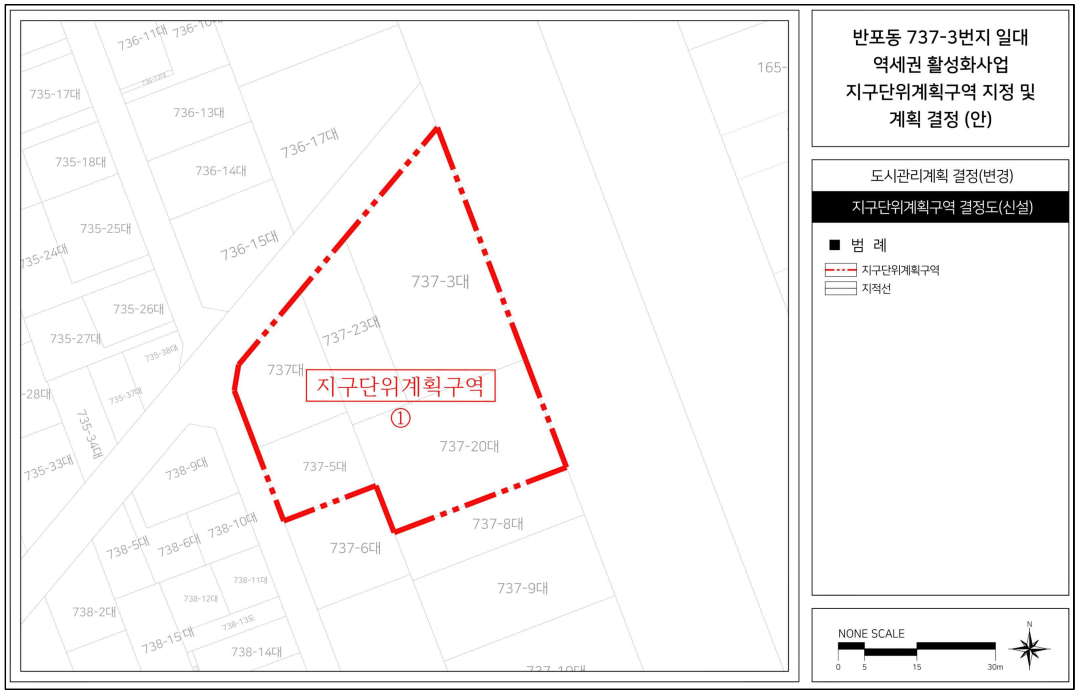
Ⅳ. 기타사항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 02-2133-4655)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7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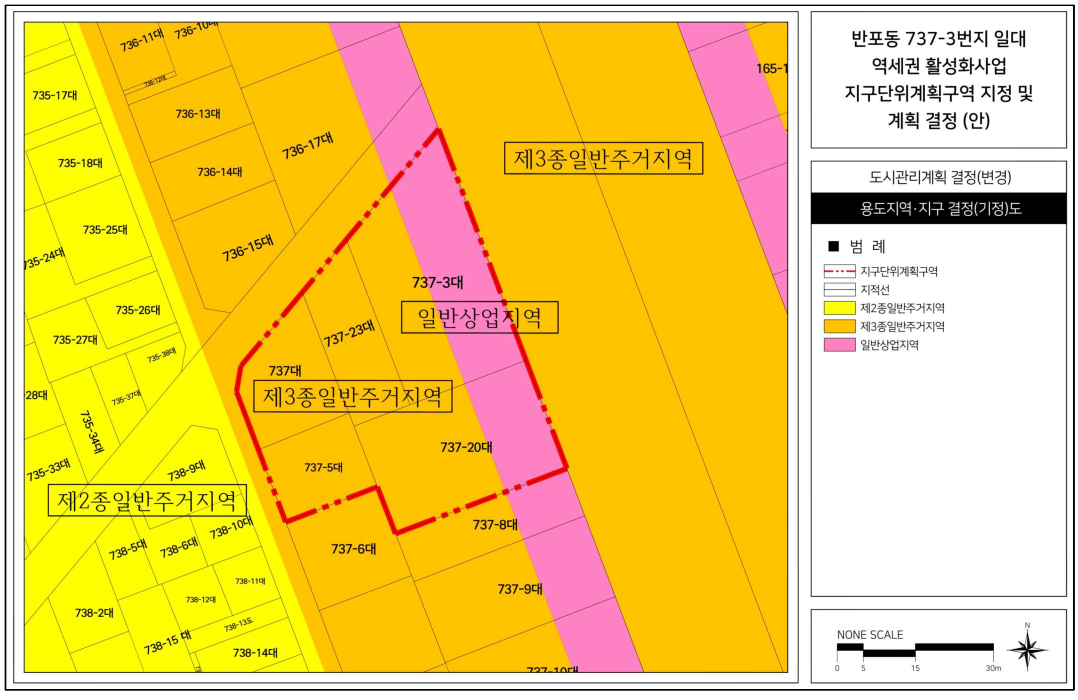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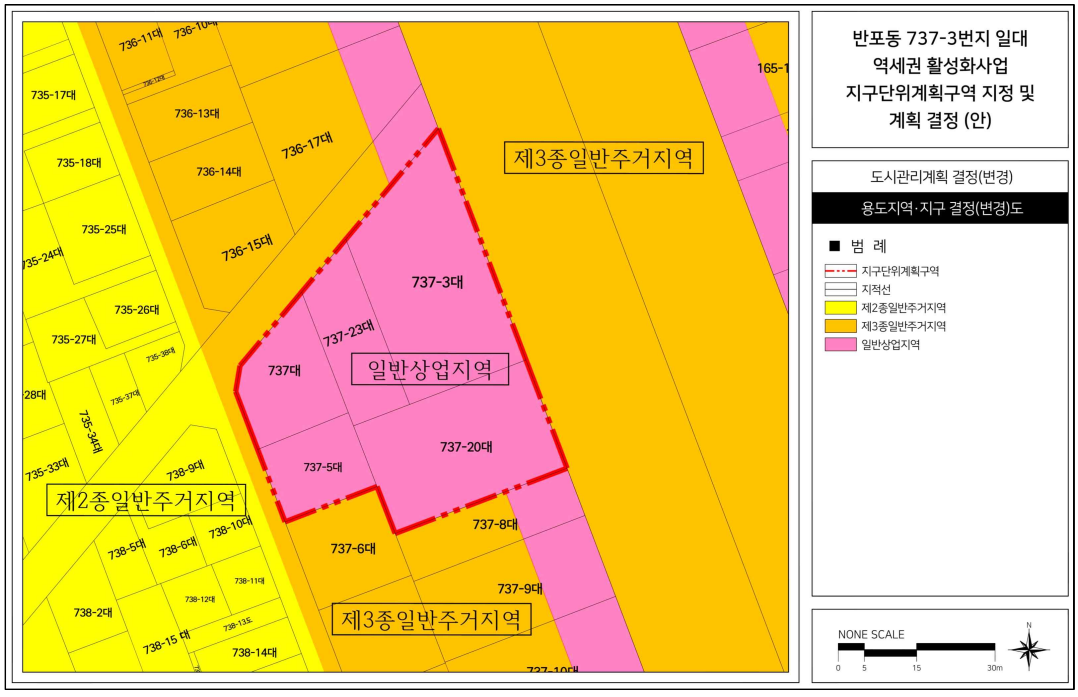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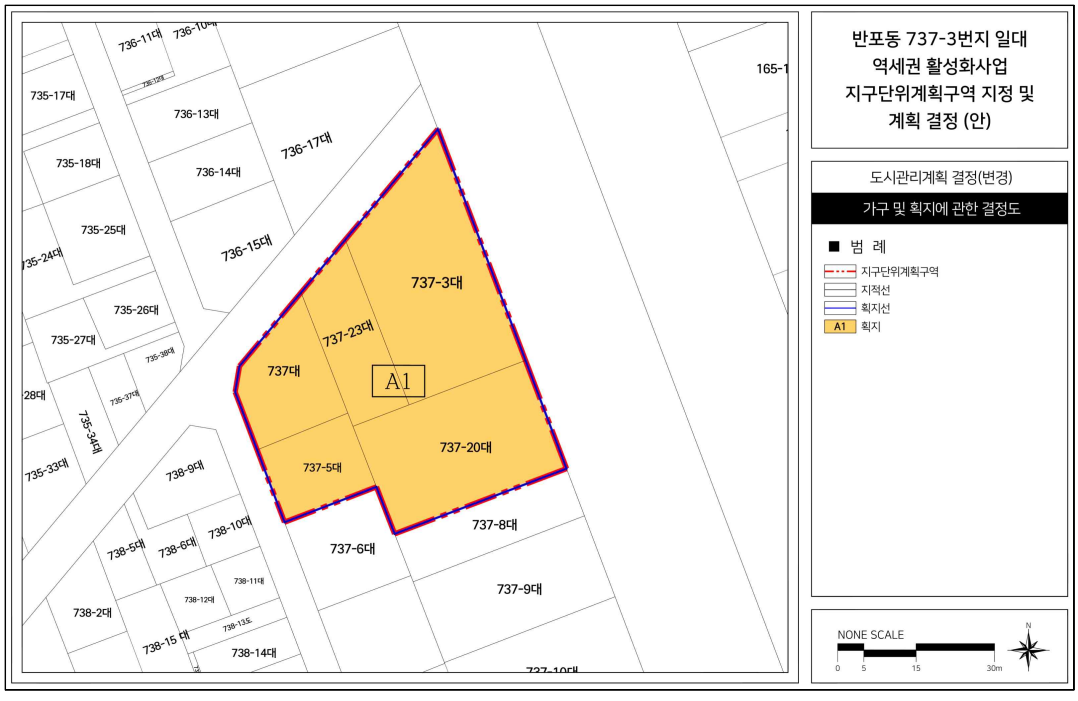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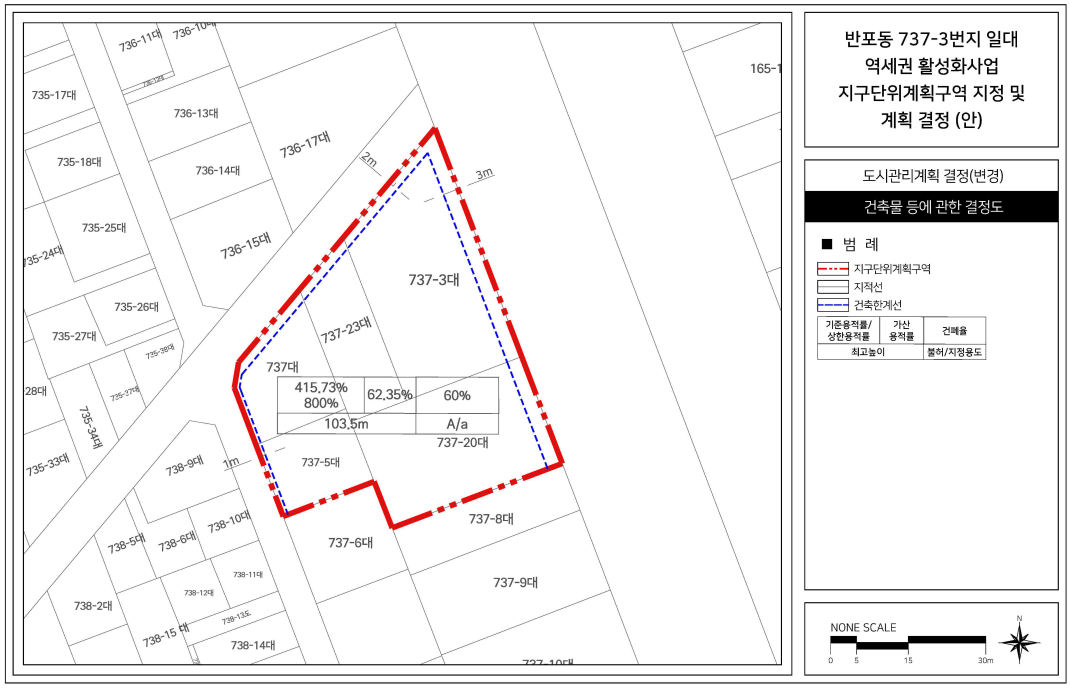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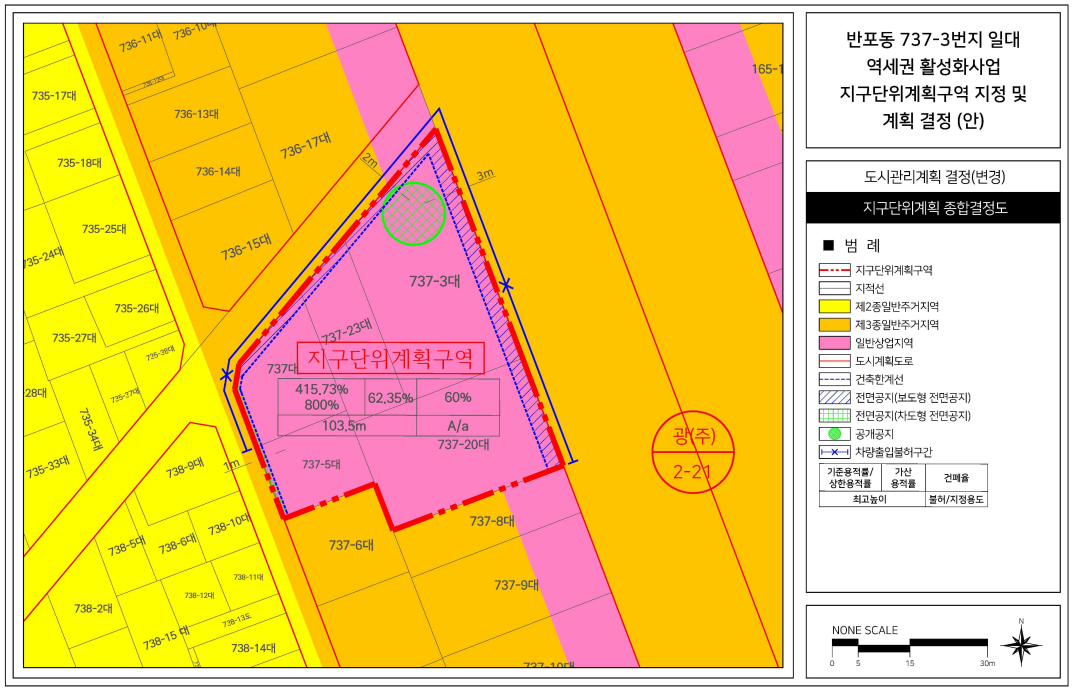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5.06.30.)에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68호(’ 25.07.1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신대방3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신대방3구역)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29,461.8	·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 면적 변경
변경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신대방3구역)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	30,146.8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 고
기정	2025. 03. 26.	29,461.8	· 기존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없음 · 구역면적 변경으로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5. 03. 26.(기존구역) 2025. 03. 26.(추가구역)	685.0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2) 또는 동작구 도시정비과(☎02-820-19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업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번지 일대(신대방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후보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내무부고시 제449호(1958.11.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호(1971.04.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47호(1986.04.10.)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강동구고시 제2015-65호(2015.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호(2016.01.14.)로 실시계획인가되고 강동구 고시 제2017-29호(2017.03.09.)로, 및 강동구고시 제2022-154호(2022.09.2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4호(2017.06.01.)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6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40호(2019.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2호(2024.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2호(2025.02.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8호(2026.01.22.)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를 완료(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59호(2025.03.26.))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광장)사업
- ○ 명 칭 :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 폭원50~93m, 연장 1,940m(변경없음)
면적 : 29,238㎡(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북부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25(영동스마트타워3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 사업기간(변경)

당초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 ~ 2026. 03. 30.
변경 :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일 ~ 2026. 12. 31.

- 변경사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행기간 변경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2팀(☎031-790-7311)

아.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8),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2팀(☎031-790-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91-399호(1991.07.15.)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0-161호(2020.12.24.)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5번지 일대 도시철도(중화역)의 출입구 E/S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지하철 7호선 중화역 1번출구 E/S 신설 공사”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관련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26-677호)를 시행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도시철도: 정거장)
2) 명 칭 : 지하철 7호선 중화역 1번 출입구 E/S 설치 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서울교통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7호선 중화 정거장)	서대문구 중화동 285	5,008	증27	5,035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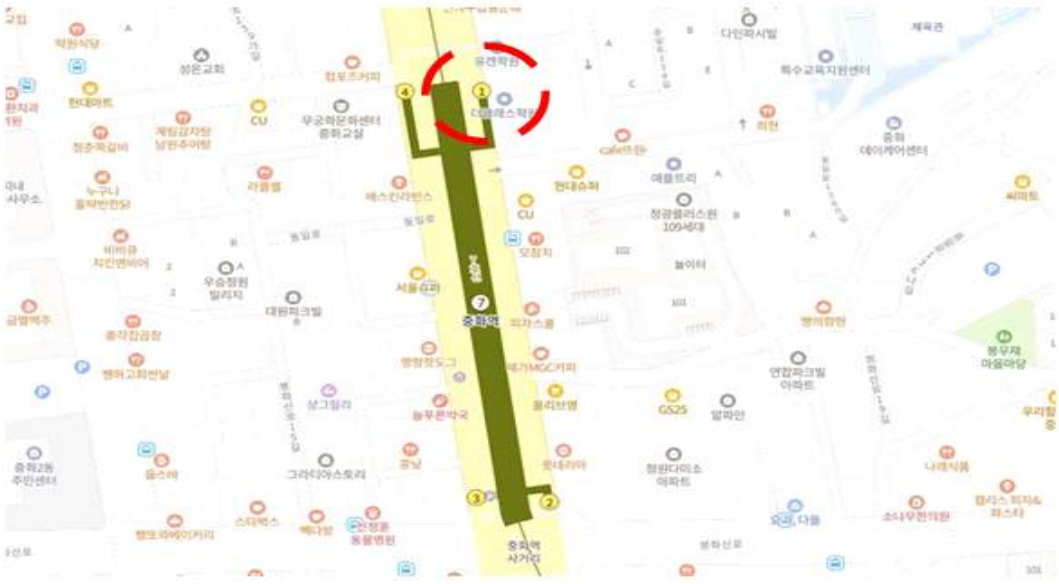
일련번호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중랑구 중화동	50-2	도	7,091	27	서울시						

사. 인가신청일 : 2026.02.13.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서소문별관 1동) 도시철도과(중구 덕수궁길 15, 6층)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1호

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2010.11.04.)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호(2020.02.13.)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02호(2021.09.01)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05호(2022.11.09.)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신당 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12.17.)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

구분	생활권유형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건폐율(%)	용적률(%)	층수	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정	A	5	신당2	432-1008	1.9	60%	170%	7층 이하, 28m 이하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변경없음				2.0	60%	190%	15층 이하, 45m 이하	변경없음		

주) 층수와 관련된 기준(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신당 제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18,651.0	증) 1,422.0	20,073.0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 변경사유 : 정비구역 정형화를 위한 구역계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

3.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651.0	증) 1,422.0	20,073.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375.0	-	375.0	1.9	-
획 지	소 계	18,276.0	증) 1,422.0	19,698.0	98.1	-
	획 지 1	17,672.0	증) 1,422.0	19,094.0	95.1	공동주택
	획 지 2	604.0	-	604.0	3.0	존치

※ 변경사유 : 정비구역 정형화에 따른 구역 및 획지 면적 변경

4.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8,651.0	증) 1,422.0	20,073.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965.0	감) 14,965.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6,387.0	16,387.0	81.6	-
제3종일반주거지역	3,686.0	-	3,686.0	18.4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387.0 [증) 16,387.0]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밀도 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높이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6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28m 이하	1,021,831 (15,662)	'72.58. (건설부고시 제174호)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별도 참조)
변경	16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28m 이하 (완화시 45m 이하)	1,021,831 (17,084)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적용
기정	21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1가 164, 신당동 432-1979, 432-163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04-3, 한남동 일대	24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282,589 (2,989)	'72.58. (건설부고시 제174호)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별도 참조)
변경	21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1가 164, 신당동 432-1979, 432-163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04-3, 한남동 일대	24m 이하 (완화시 45m 이하)	282,589 (2,989)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적용

※ 2025년 제19차('25.12.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당9구역(20,073㎡)에 대하여 고도제한 높이 완화 적용하는 사항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남산 주변	• 고도제한 높이 변경 - 기정 : 28m 이하 - 변경 : 28m 이하 (완화시 45m 이하)	•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며 경관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2025년 제19차('25.12.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제한 높이를 완화받음.
21	남산 주변	• 고도제한 높이 변경 - 기정 : 24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 변경 : 24m 이하 (완화시 45m 이하)	•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며 경관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2025년 제19차('25.12.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제한 높이를 완화받음.

5.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소계		557,520,519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277,640,000
		일반분양	239,108,600
	임대주택	의무임대	36,728,039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4,043,880
지출	소계		346,903,722
	공사비		248,646,759
	제사업경비		98,256,963
종전자산 추정액			193,881,153
추정비례율	108.63% [(총수입(557,520,519천원) - 총지출(346,903,722천원)) / 종전자산(193,881,153천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천원/3.3㎡)	공사비				
			-10%	-5%	0%	5%	10%
분양가 변동	10%	51,400	150.00%	143.59%	137.18%	130.77%	124.35%
	5%	49,000	135.73%	129.32%	122.91%	116.49%	110.08%
	0%	46,700	121.46%	115.04%	108.63%	102.22%	95.81%
	-5%	44,400	107.18%	100.77%	94.36%	87.95%	81.53%
	-10%	42,000	92.91%	86.50%	80.08%	73.67%	67.26%

6.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93	23~32	보조 간선도로	4,890 (98)	삼각지 광장	약수역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156 (10)	신당2동 432-2023	신당2동 432-496	일반 도로	-	중구 고시 제1995-22호 (1995.5.24.)	-
기정	소로	3	6	4	국지도로	24	신당2동 432-1014	신당2동 432-2020	일반 도로	-	중구 고시 제1995-22호 (1995.5.24.)	-

※ ( )은 정비구역내 연장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478.00	증) 869.84	2,347.84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	1,375.20	증) 752.81	2,128.01	
	경로당	획지 1	225.40	증) 105.91	331.31	
	어린이놀이터	획지 1	519.00	증) 187.80	706.80	
	어린이집	획지 1	-	증) 340.00	340.00	
	주민운동시설	획지 1	328.70	감) 50.40	278.30	
	작은도서관	획지 1	108.40	증) 169.16	277.56	
	기 타	획지 1	193.70	증) 0.34	194.04	
관리사무소		획지 1	75.60	증) 114.23	189.83	
경비실		획지 1	27.20	증) 2.80	30.00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신당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8,651.0	획지1	17,672.0	신당2동 432-1008번지 일원	123	1	-	122	-	-
			획지2	604.0	신당2동 432-695						
변경	신당 제9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0,073.0	획지1	19,094.0	신당동 432-1008번지 일원	109	1	-	108	-	-
			획지2	604.0	신당동 432-695						

※ 변경사유 : 현황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건축물 동수 재산정하였음.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정비계획
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2">기정</td><td rowspan="2">신당제9
주택재개발
구역</td><td rowspan="2">18,651</td><td>획지1</td><td>17,672</td><td>신당2동
432-1008번지 일원</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60% 이하</td><td>182% 이하</td><td>28m 이하
(7층이하)</td></tr>
<tr><td>획지2</td><td>604</td><td>신당2동
432-695</td><td>존치</td><td colspan="3">관계 법령에 따름</td></tr>
<tr><td rowspan="2">변경</td><td rowspan="2">신당제9
주택재개발
구역</td><td rowspan="2">20,073</td><td>획지1</td><td>19,094</td><td>신당동
432-1008번지 일원</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60% 이하</td><td>250% 이하</td><td>45m 이하
(15층 이하)</td></tr>
<tr><td>획지2</td><td>604</td><td>신당동
432-695</td><td>존치</td><td colspan="3">관계 법령에 따름</td></tr>
</table>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315세대

• 건립규모

건립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315	100.00	-
85㎡ 이하	60㎡ 이하	167	53.02	-
	60㎡ ~ 85㎡ 이하	148	46.98	-

•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없음

-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 제4항 제2호(국토교통부 2018.02.0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구 분	건축선 지정 내용	계획 목표
대상지 동측(다산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 설치(3m)
대상지 북측(6m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 설치(2m)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총 504세대(분양 432세대, 임대 72세대)
[증] 총 189세대 (분양 117세대, 임대 72세대)]

• 주택건설비율

- 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세대수의 93.0%(469세대)를 전용 85㎡ 이하로 계획

건립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합 계	분 양	임 대 의 무		
합 계		504	432	72	100.0	-
40㎡ 이하		43	18	25	8.5	-
40㎡ ~ 60㎡ 이하	소 계	293	246	47	58.1	-
	40㎡ ~ 50㎡ 이하	120	77	43	23.8	-
	50㎡ ~ 60㎡ 이하	173	169	4	34.3	-
60㎡ ~ 85㎡ 이하		133	133	-	26.4	-
85㎡ 초과		35	35	-	7.0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table>
<tr><td rowspan="3">변경</td><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규모
<table>
<tr><th>구분</th><th>기준</th><th>계획</th><th>충족여부</th></tr>
<tr><td>건설
비율</td><td>• 전체 세대수의 15% : 76세대 이상
(504세대 × 15% = 75.6)
• 전체 연면적의 10% : 4,559.25㎡ 이상
(45,992.53㎡ × 10%= 4,599.25㎡)</td><td>72세대
(14.3%)
4,658.60㎡
(10.1%)</td><td>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충족</td></tr>
<tr><td>규모</td><td>• 전용 40㎡ 이하 건설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 22세대 이상
(72세대 × 30% = 21.6)
- 전체 세대수의 5% : 26세대 이상
(504세대 × 5% = 25.2)</td><td>25세대
(임대주택 세대수의
34.7%)</td><td>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충족</td></tr>
</table>
※ 1)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서고시 제2022-493호, 22.12.12)</td></tr>
<tr><td>심의완화사항</td><td>• 기준용적률 완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전용 60㎡ 이하 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 기준용적률 20% 상향
- 190% + 20% = 210% 적용

• 허용용적률 완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15% 적용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 10%p, 방재·안전 5%p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1.53) : 22.9%
(5,969,319원/㎡(2024년 서울시 평균공시지가) ÷ 3,905,792원/㎡(대상지 평균공시지가) = 1.53)
- 210%(기준용적률 완화 적용) + 22.9% = 232.9% 적용

• 고도지구 높이 완화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24.6.27, 서고시 제2024-317호)
- 성곽길 인근지역(신당동 일대) : 28m 이하 → 45m 이하</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table>
<tr><th>구 분</th><th>건축선 지정 내용</th><th>계획 목표</th></tr>
<tr><td>대상지 동측(다산로)</td><td>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td><td>보도 설치(3m)</td></tr>
<tr><td>대상지 북측(6m 도로)</td><td>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td><td>보도 설치(2m)</td></tr>
<tr><td>대상지 서측(4m 도로)</td><td>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td><td>보도 설치(2m)</td></tr>
<tr><td>대상지 남측(5m 도로)</td><td>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td><td>보도 설치(2m)</td></tr>
</table></td></tr>
</table>

나. 용적률 계획

1) 개발가능용적률

【기정】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
이용계획</td><td rowspan="2">대지면적
(㎡)</td><td colspan="5">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td></tr>
<tr><td colspan="2">신설 기반시설</td><td rowspan="2">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rowspan="2">공공시설 설치
환산부지 면적</td></tr>
<tr><td>순부담 적용</td><td>순부담 제외</td></tr>
<tr><td></td><td>18,276.0</td><td>-</td><td>375.0</td><td>123.3</td><td>-</td><td>1,096.02</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
= 신설 기반시설(순부담 적용)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 0㎡ + 1,096.02㎡ - 123.3㎡ - 0㎡ = 972.72㎡</td></tr>
<tr><td>공공시설
(건축물)
설치환산
부지면적</td><td colspan="6">• 환산부지면적
= (표준건축비 X 연면적) ÷ 부지가액
= (2,820,000원/㎡ X 1,131.92㎡) ÷ 4,403,589원/㎡ = 724.87㎡
• 대지지분면적
= (대지(획지1)면적 X 어린이집 연면적) ÷ 전체연면적
= (17,672㎡ X 1,131.92㎡) ÷ 53,895.23㎡ = 371.15㎡
⇒ 공공시설(건축물)설치 환산부지면적 = 724.87㎡ + 371.15㎡ = 1.096.02㎡</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 기준용적률 = 17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6">• 허용용적률 = 170%</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3">• 기준/허용 용적률 : 170%
• 상한(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3 X α)
= 182.50%
• 정비계획 용적률 = 182%</td><td colspan="3">*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비
= (972.72㎡) / (18,276㎡ - 1,096.02㎡)
= 0.0566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우수디자인, 친환경 계획, 에너지 절약 등)</td></tr>
</table>

※ 2019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대상지 동쪽 다산로변 완화차로는 순부담에서 제외

【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8">산정내용</th></tr>
<tr><td rowspan="3">토지
이용계획</td><td rowspan="2">구역면적
(㎡)</td><td rowspan="2">대지면적
(㎡)</td><td colspan="6">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td></tr>
<tr><td rowspan="2">신설 기반시설
(순부담 제외)</td><td rowspan="2">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d colspan="3">공공시설(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td></tr>
<tr><td>합계</td><td>대지지분</td><td>환산부지</td></tr>
<tr><td>20,073.0</td><td>19,094.0</td><td>375.0 (198.0)</td><td>-</td><td>177.0</td><td>1,571.47</td><td>802.45</td><td>769.02</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8">•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신설 기반시설(순부담 적용) + 공공시설 환산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75.0 - 198.0)㎡ + 1,571.47㎡ - 177.0㎡ = 1,571.47㎡ (7.8%)
[※ 공공성이 낮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신설에 따라 면적 내에서 의무 무상양도(177.0㎡)하고, 잔여부분(198.0㎡)에 대해서는 순부담 제외하였음.]</td></tr>
<tr><td>공공시설
(건축물)
설치환산
부지면적</td><td colspan="8">• 대지지분면적 = 대지(획지1)면적(㎡) × 공영주차장 연면적(㎡) ÷ 전체 연면적(㎡)
= 19,094㎡ × (3,919.59㎡ ÷ 93,264.4558㎡) = 802.45㎡
• 환산부지면적 = (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부지가액 = 769.02㎡
- 지상층 : (2,417,963,520원 + 80,276,000원 + 24,179,000원) ÷ 7,539,252원/㎡ = 334.57㎡
- 지하층 : (3,143,753,600원 + 101,228,000원 + 30,494,000원) ÷ 7,539,252원/㎡ = 434.45㎡
<table>
<tr><td>건립
공사비</td><td>지상층 : 2,696,363 (원/㎡)
지하층 : 1,040,000 (원/㎡)</td><td>▷ 지상층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공영주차장)
▷ 지하층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지하층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공사비 ÷ 1.1)</td></tr>
<tr><td>시설
연면적</td><td>지상층 : 896.75 (㎡)
지하층 : 3,022.84 (㎡)
전체연면적 : 3,919.59 (㎡)</td><td>▷ 공영주차장 (지상1층~지하4층)</td></tr>
<tr><td>설계비</td><td>지상층 : 80,276,000 (원)
지하층 : 101,228,000 (원)</td><td rowspan="2">▷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상 설계비와 감리비 기준 적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3], [별표4], [별표5]</td></tr>
<tr><td>감리비</td><td>지상층 : 24,179,000 (원)
지하층 : 30,494,000 (원)</td></tr>
<tr><td>부지가액</td><td>7,539,252 (원/㎡)</td><td>▷ 구역 내 토지 평균 공시지가 (3,769,626원/㎡, 2025년 기준) × 2</td></tr>
</table></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 210%
- 소형주택 추가 건설에 따른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190%)상향 (+20% 적용)</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8">•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30.6%) = 210% + 22.9% = 232.9%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허용용적률 상향(사업성 보정계수 1.53 적용) [15% × 1.53 = 22.9%]
• 인센티브 = 22.9% [공공보행통로(※ 지역권 설정) 15.3%, 방재·안전 7.6%]</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4">• 상한(개발가능)용적률
= (완화)허용용적률 + (기존)허용용적률 × (1.3×α토지 + 1.0×α공공주택 + 0.7×α건축물)
= 232.9% + 205% × (1.3 × 0.0424 + 0.7 × 0.0406)
= 250.02%
※ 상한 인센티브 산정 시 적용하는 (기존)허용용적률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때의 값으로 계산 함 (기준 190% + 인센티브 15% = 205%)

• 상한용적률 = 250% 이하</td><td colspan="4">*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02.45㎡ / (19,698㎡ - 802.45㎡)
= 0.0424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69.02㎡ / (19,698㎡ - 802.45㎡)
= 0.0406</td></tr>
</table>

※ 2019년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라 대상지 동쪽 다산로변 완화차로는 순부담에서 제외
※ 상한용적률 계산 시 허용용적률은 소형주택, 보정계수 적용 전 용적률로 산정

2) 기준용적률 완화

구분	산정내용	적용
계 (최대 20%)		20% 적용
4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55.43㎡(전용 39㎡ 공급면적) × 18세대 / 19,094㎡(대지면적) = 5.2%	최대 10%
40~5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68.41㎡(전용 49㎡ 공급면적) × 71세대 / 19,094㎡(대지면적) = 25.4% - 68.57㎡(전용 49㎡ 공급면적) × 6세대 / 19,094㎡(대지면적) = 2.1%	최대 15%
50~6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83.06㎡(전용 59㎡ 공급면적) × 82세대 / 19,094㎡(대지면적) = 35.7% - 82.59㎡(전용 59㎡ 공급면적) × 87세대 / 19,094㎡(대지면적) = 37.6%	최대 10%

3)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구분	산정내용	적용
계		총 15% × 보정계수(1.53) = 22.9% 적용
공공 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지역권 설정)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 / 대지면적)×a = 190.0 x (1,005㎡ / 19,093㎡)×1.0 = 10.0% ※ a=1.0 적용	10%p
방재 · 안전	• 화재 · 소방 · 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5%p

4) 공공기여 계획

구분	시설규모	산출근거	비고 (관리청)
도로	• 면적 : 375㎡	-	-
공영주차장	• 규모 : 지상1층~지하4층 - 연면적 : 3,919.59㎡ - 환산부지 : 769.02㎡ - 대지지분 : 802.45㎡	• 지상층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영주차장 • 지하층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지하층 적용 • 설계비 및 감리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상 설계비와 감리비 기준 적용	중구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2018.2.9.) 3-2의 (2)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본 구역은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므로 임대 주택을 건립하지 않음.

【변경】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 물량에서 제외(도시정비법 제97조)		
구분	세대수 (세대)	비율 (%)	비고
총 세대수	504	-	-
의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72	100.0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45,992.53㎡ × 10% = 4,599.25㎡ < 4,658.60㎡
40㎡ 이하	25	34.7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72세대×30%=21.6 < 22세대)
40~50㎡ 이하	43	59.7	-
50~60㎡ 이하	4	5.6	-

※ 공공주택 및 소형 · 국민주택 규모 · 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경관	• 건축물 경관 :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및 가로미관 증진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경관 : 주변지형과 조화되는 건축 배치계획 및 녹지계획 • 일조권 검토 : 대지경계선을 유지하여 법적한도 이상의 일조량 확보 • 가로경관 : 보도폭을 통한 보행공간 확충	
환경보전 재난방지	• 소 음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 작업을 통한 발생시간의 단축 • 폐기물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동·식물상 :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재난방지	•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수해 :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 구축	

11. 환경성 검토 결과 (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조치계획)	비고
1) 비오톱 및 동·식물	•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동식물상 보호 • 자연환경 보전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중구) • 습지보호지역 없음(중구)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녹지 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대상지 내부는 낙후된 주거 및 상업시설 혼재지역으로, 별도의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3)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대상지 내에는 토양 측정망이 없으며, 대상지가 속한 중구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토양 측정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장비 및 작업인부 투입에 따른 토양오염 • 지장물 철거에 의한 토양오염	• 공사장비등의 오일류 교환은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적정규모의 분리수거, 재활용보관소 등 무단투기 금지 • 지장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	-
4) 지형·지질	•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주변으로 다수의 공동주택이 분포하고 있음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5) 물순환	• 자연물순환 유지	• 생태면적률 기준 30% 이상으로 계획(계획 30.09%)	•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적용	-
6) 수질	• 수질 오염 최소화	• 대상지가 속한 서울시 전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임 •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중구)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조치계획)	비고
7) 바람·열	• 기후변화 대응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지역이 열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적정한 건물 배치 계획 수립 • 조경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	-
8) 대기질, 악취	• 대기오염 최소화	• 서울시 전역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지정됨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없음(서울시)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단기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	•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증감	계획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신당 제9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61세대	증) 54세대	315세대	-
변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신당 제9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442세대	증) 62세대	504세대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측 장원중학교, 장충중학교, 장충고등학교 입지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보도 설치 및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겠음	거리 200m 이내 일부 포함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정비구역 현황	계획내용			비고
	추진위/조합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법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18,651.0	증) 1,422.0	20,073.0	신당9구역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구역계 변경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8,651.0	증) 1,422.0	20,073.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965.0	감) 14,965.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6,387.0	16,387.0	81.6	-
제3종일반주거지역	3,686.0	-	3,686.0	18.4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387.0 [증) 16,387.0]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밀도 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높이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6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28m 이하	1,021,831 (15,662)	'72.58. (건설부고시 제174호)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별도 참조)
변경	16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28m 이하 (완화시 45m 이하)	1,021,831 (17,084)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적용
기정	21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1가 164, 신당동 432-1979, 432-163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04-3, 한남동 일대	24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282,589 (2,989)	'72.58. (건설부고시 제174호)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별도 참조)
변경	21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1가 164, 신당동 432-1979, 432-163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04-3, 한남동 일대	24m 이하 (완화시 45m 이하)	282,589 (2,989)	-	①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적용

※ 2025년 제19차('25.12.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당9구역(20,073㎡)에 대하여 고도제한 높이 완화 적용하는 사항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남산 주변	• 고도제한 높이 변경 - 기정 : 28m 이하 - 변경 : 28m 이하 (완화시 45m 이하)	•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며 경관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2025년 제19차('25.12.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제한 높이를 완화받음.
21	남산 주변	• 고도제한 높이 변경 - 기정 : 24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 변경 : 24m 이하 (완화시 45m 이하)	• 신당9구역은 고도지구 내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영향을 최소화하며 경관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2025년 제19차('25.12.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제한 높이를 완화받음.

나. 기반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93	23~32	보조 간선도로	4,890 (98)	삼각지 광장	약수역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156 (10)	신당2동 432-2023	신당2동 432-496	일반 도로	-	중구 고시 제1995-22호 (1995.5.24.)	-
기정	소로	3	6	4	국지도로	24	신당2동 432-1014	신당2동 432-2020	일반 도로	-	중구 고시 제1995-22호 (1995.5.24.)	-

※ ( )은 정비구역내 연장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지	소계	18,276.0	증) 1,422.0	19,698.0	100.0	-
	획지1	17,672.0	증) 1,422.0	19,094.0	96.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604.0	-	604.0	3.1	존치(업무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 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허용용도	획지 2	• 관계법령에 의함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가) 건폐율 계획 (변경)

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기정	획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획지 2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계법령에 의함	
변경	획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획지 2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계법령에 의함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적률 계획 (변경)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획지 1	170% 이하	170% 이하	182% 이하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 170% 이하 허용용적률 : 170% 이하 상한용적률 : 182% 이하
	획지 2	관계법령에 의함			존 치	
변경	획지 1	210% 이하	232.9% 이하	250% 이하	정비계획	기준용적률 : 210% 이하 허용용적률 : 232.9% 이하 상한용적률 : 250% 이하
	획지 2	관계법령에 의함			존 치	

※ 기 결정사항을 정비계획 결정사항으로 정정하였음.

■ 기준용적률 완화

구분	산정내용	적용
계 (최대 20%)		20% 적용
4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55.43㎡(전용 39㎡ 공급면적) X 18세대 / 19,094㎡(대지면적) = 5.2%	최대 10%
40~5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40~5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68.41㎡(전용 49㎡ 공급면적) X 71세대 / 19,094㎡(대지면적) = 25.4% - 68.57㎡(전용 49㎡ 공급면적) X 6세대 / 19,094㎡(대지면적) = 2.1%	최대 15%
50~60㎡ 이하	•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 전용 50~60㎡ 이하 주택으로 건설 - 83.06㎡(전용 59㎡ 공급면적) X 82세대 / 19,094㎡(대지면적) = 35.7% - 82.59㎡(전용 59㎡ 공급면적) X 87세대 / 19,094㎡(대지면적) = 37.6%	최대 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신설)

구 분	획 지	인센티브			비고
		공공보행통로 (※ 지역권 설정)	방재 · 안전	합계	
신설	획지 1	15.3%	7.6%	22.9%	22.9%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허용용적률 상향(사업성 보정계수 1.53 적용) [15% × 1.53 = 22.9%]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변경)

구 분	획 지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토지	건축물	합계	
기정	획지 1	-	12.5%	12.5%	상한용적률 : 182% 이하 (기준/허용용적률 170% + 12.50%)
변경	획지 1	11.3%	5.8%	17.1%	상한용적률 : 250% 이하 (허용용적률 232.9% + 17.1%)

다) 높이 계획 (변경)

구 분		지 역	높이 기준	비 고
기정	획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28m 이하)	남산최고고도지구
	획지 2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계법령에 의함	
변경	획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5층 이하(45m 이하)	
	획지 2	제3종일반주거지역	관계법령에 의함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 고
기정	건축 한계선	대상지 동측(다산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결정도면 참조
		대상지 북측(6m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변경	건축 한계선	대상지 동측(다산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대상지 북측(6m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대상지 서측(4m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대상지 남측(5m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기정	전면공지	• 대상지 동측(다산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 대상지 북측(6m 도로)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공공 보행통로	• 도면에 표기	• 국공립어린이집 접근성 및 대상지 동서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3개소) – 폭원 : 3m ~ 4m • 필로티형으로 조성 가능하며, 유효높이는 3m 이상으로 계획
변경	전면공지	• 대상지 동측(다산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 대상지 북측(6m 도로)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 대상지 서측(4m 도로)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 대상지 남측(5m 도로)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공공 보행통로	• 도면에 표기	• 대상지 동서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2개소) – 폭원 : 3m ~ 4m • 필로티형으로 조성 가능하며, 유효높이는 3m 이상으로 계획 • 공공보행통로는 지속적 개방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건축물 배치 변경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보행동선	구역 전체	• 차량과 보행자간 분리를 통해 대상지 내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확보 • 대상지 내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동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 대상지 내의 지형단차를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계획		• 주차장법 및 서울시 주차장 조례의 기준 이상 주차면수 확보 • 보행위주의 동선체계 및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수용

3) 환경관리계획 (변경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조치계획)	비고
1) 비오톱 및 동·식물	•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동·식물상 보호 • 자연환경 보전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중구) • 습지보호지역 없음(중구)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 녹지 네트워크	•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대상지 내부는 낙후된 주거 및 상업시설 혼재지역으로, 별도의 녹지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대상지 지상부에 조경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복합 환경 창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
3) 토양	• 토양오염 최소화	• 대상지 내에는 토양 측정망이 없으며, 대상지가 속한 중구에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2개소의 토양 측정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장비 및 작업인부 투입에 따른 토양오염 • 지장물 철거에 의한 토양오염	• 공사장비등의 오일류 교환은 전량 수거 후 위탁처리 • 적정규모의 분리수거, 재활용보관소 등 무단투기 금지 • 지장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	-
4) 지형·지질	•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 주변으로 다수의 공동주택이 분포하고 있음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발생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5) 물순환	• 자연물순환 유지	• 생태면적률 기준 30% 이상으로 계획(계획 30.09%)	•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녹지, 투수포장 등 적용	-
6) 수질	• 수질 오염 최소화	• 대상지가 속한 서울시 전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임 •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중구)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일시적인 토사유출 발생	• 공사중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	-
7) 바람·열	• 기후변화 대응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열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지역이 열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	• 적정한 건물 배치 계획 수립 • 조경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	-
8) 대기질, 악취	• 대기오염 최소화	• 서울시 전역 대기환경관리권역으로 지정됨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없음(서울시) • 건축물의 부지정지 및 터파기 작업에 의한 단기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	• 방진망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

□ 2025년 제19차(‘25.12.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수정사항	1	• 공공기여 계획,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	• 공공기여 계획,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하였음	반영
	2	• (위원회) 용적률 계획은 250%이하로 계획 할 것	• 용적률 계획은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음	반영
조건사항	3	• 건축배치계획 수립시 6~8호 조합은 분절 방안을 검토	• 건축배치계획 재검토하여 일부 주동 분절 계획안을 마련하였음	반영
	4	• 공공보행통로는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직선화 방안 검토	• 기존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계획하였으며, 지형 단차 극복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계획하여 보행자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부분 반영
	5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장수명·우수디자인 항목은 방재·안전 및 BF인증 등으로 조정 검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장수명·우수디자인 항목을 방재·안전 및 BF인증으로 조정 검토하였으며, 방재·안전 항목 중 저류지 설치를 계획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 적용하였음 - 심의안 : 총 20% 적용 [공공보행통로(10%), 장수명·우수디자인(우수등급)(10%)] - 조치안 : 총 15% 적용 [공공보행통로(10%), 방재·안전(5%)]	반영
	6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노후 상·하수도 현황 및 수요 등에 대하여 서울시 치수안전과, 물재생계획과,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협의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단계별로 관리청과 지속 검토·협의할 예정임	반영
	7	•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전 건축계획 조정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보고 할 것	•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전 건축계획 조정 사항에 대해 위원회 보고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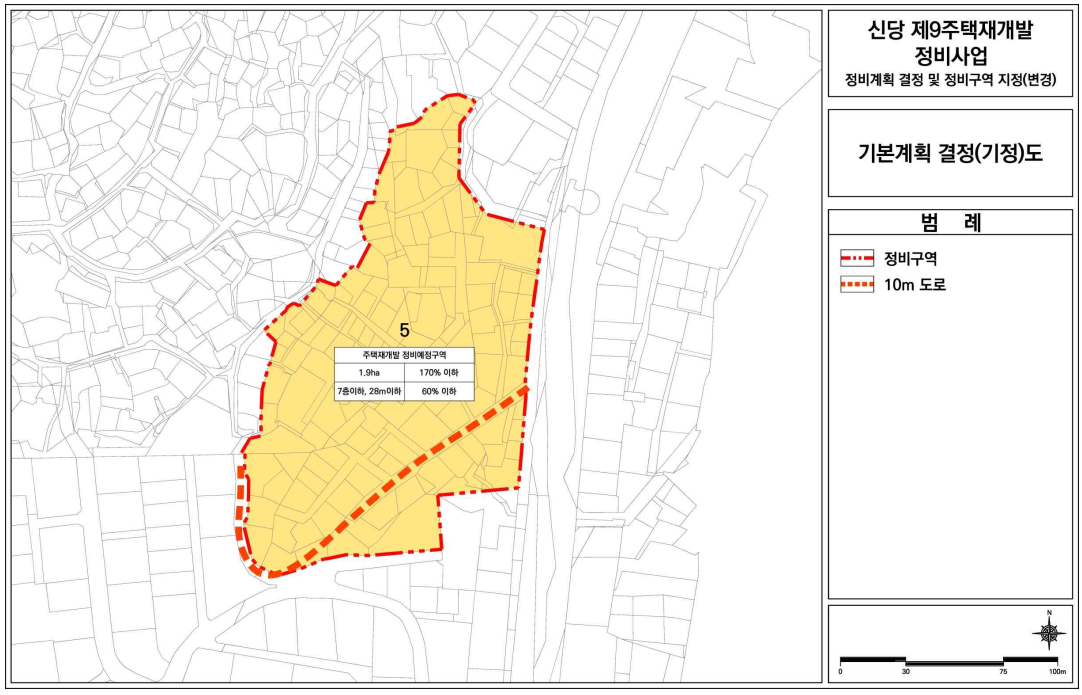
Ⅲ. 관련도면 : 붙임참조

Ⅳ.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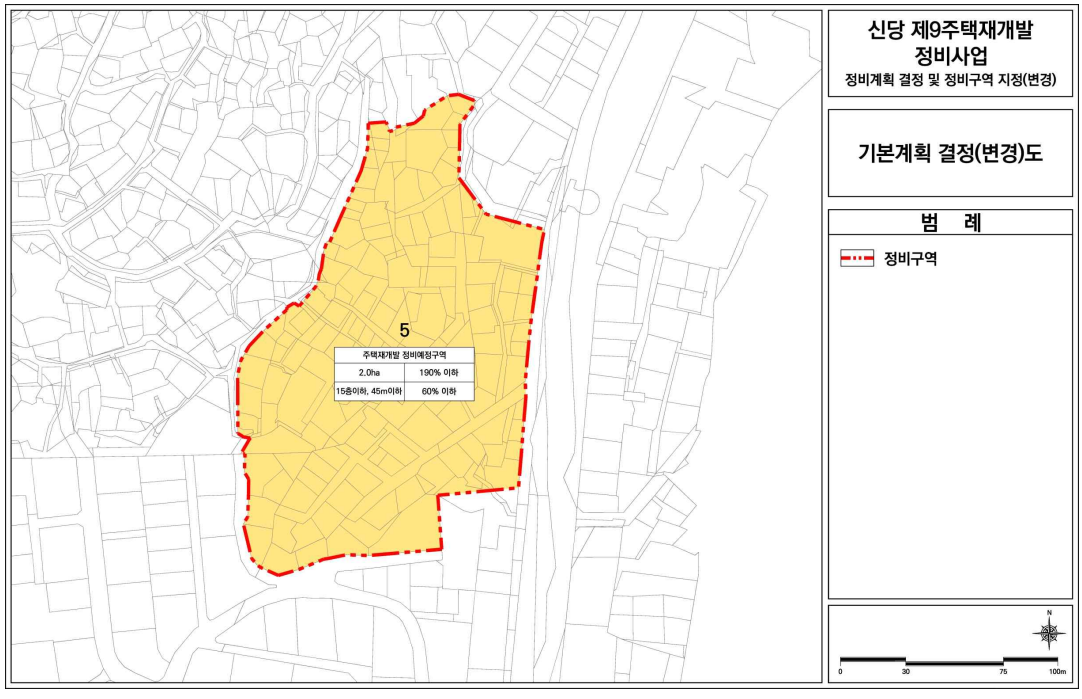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858),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2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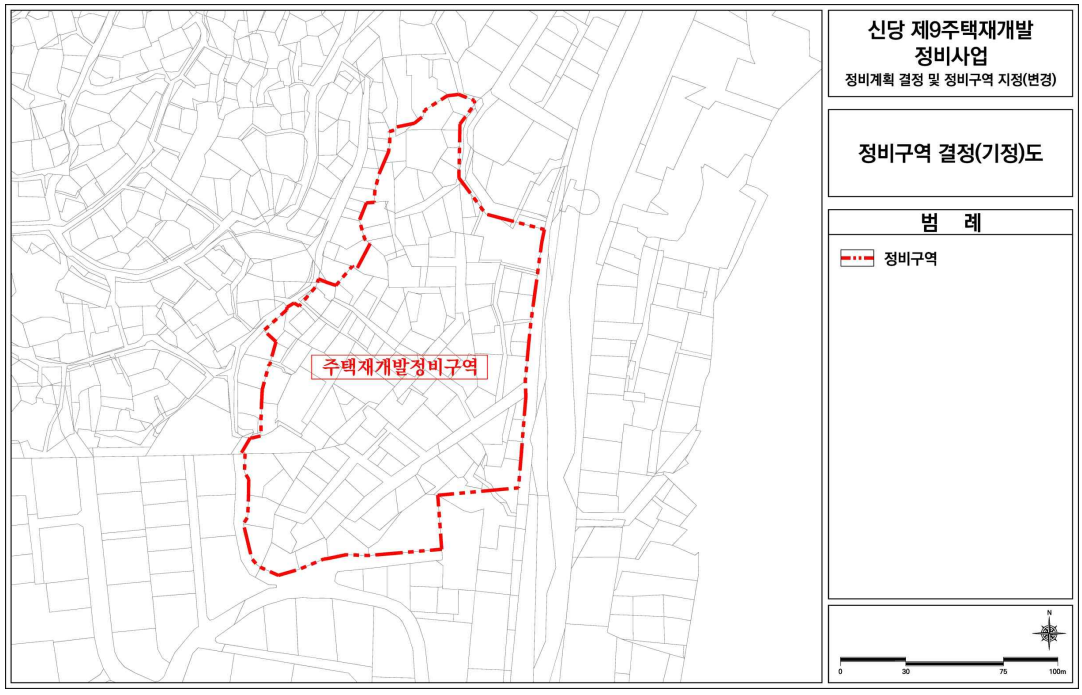
■ 기본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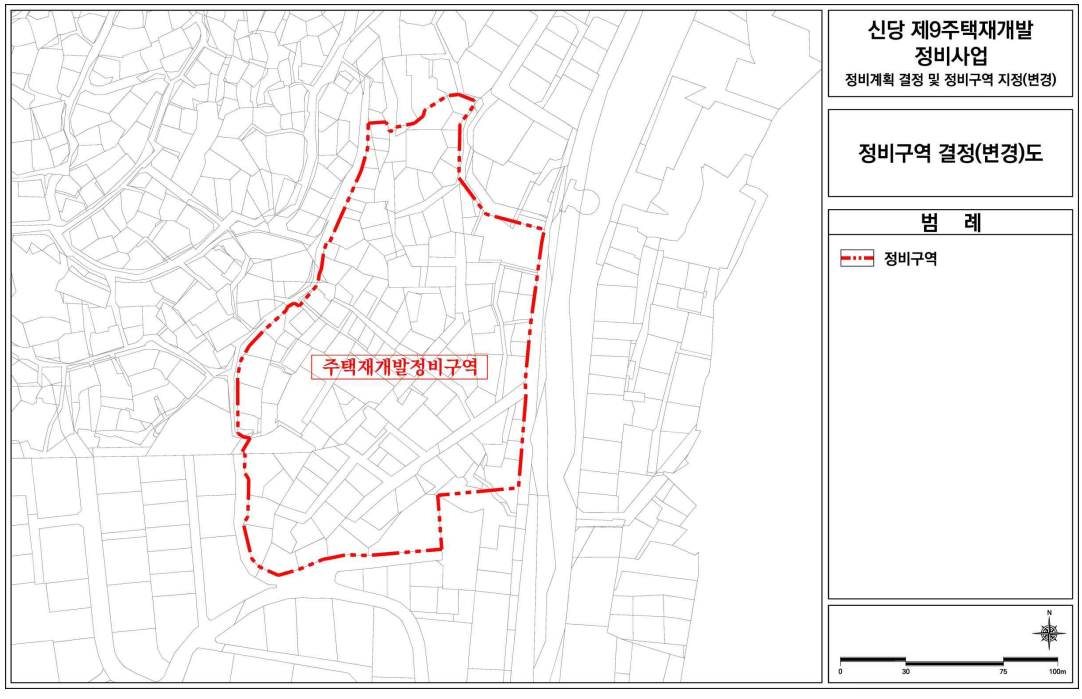
■ 기본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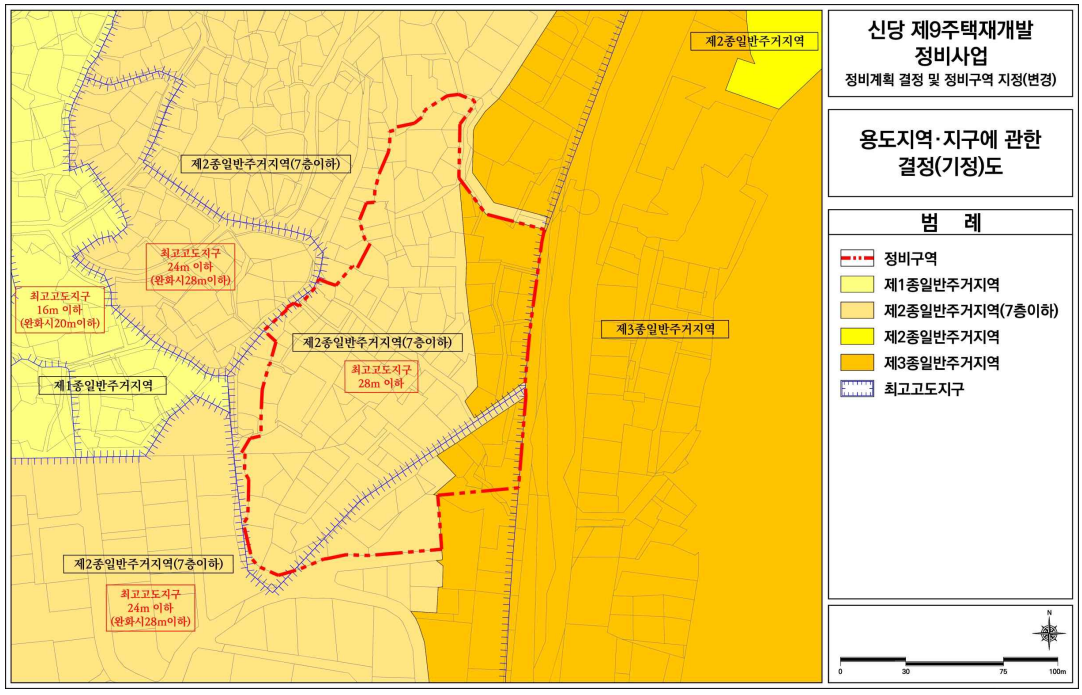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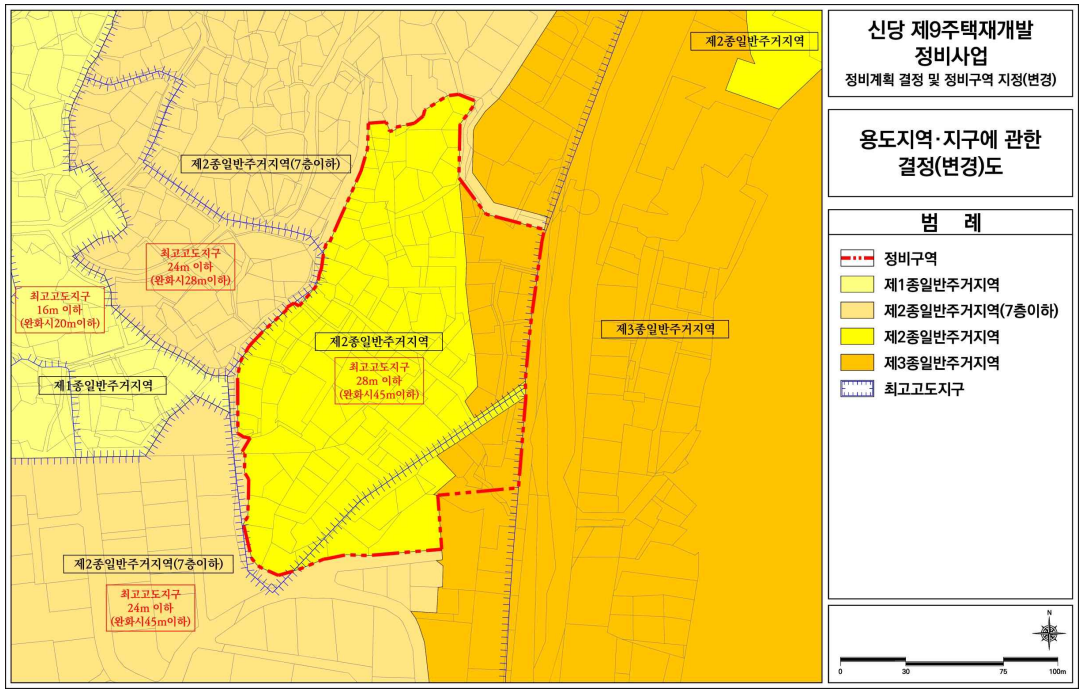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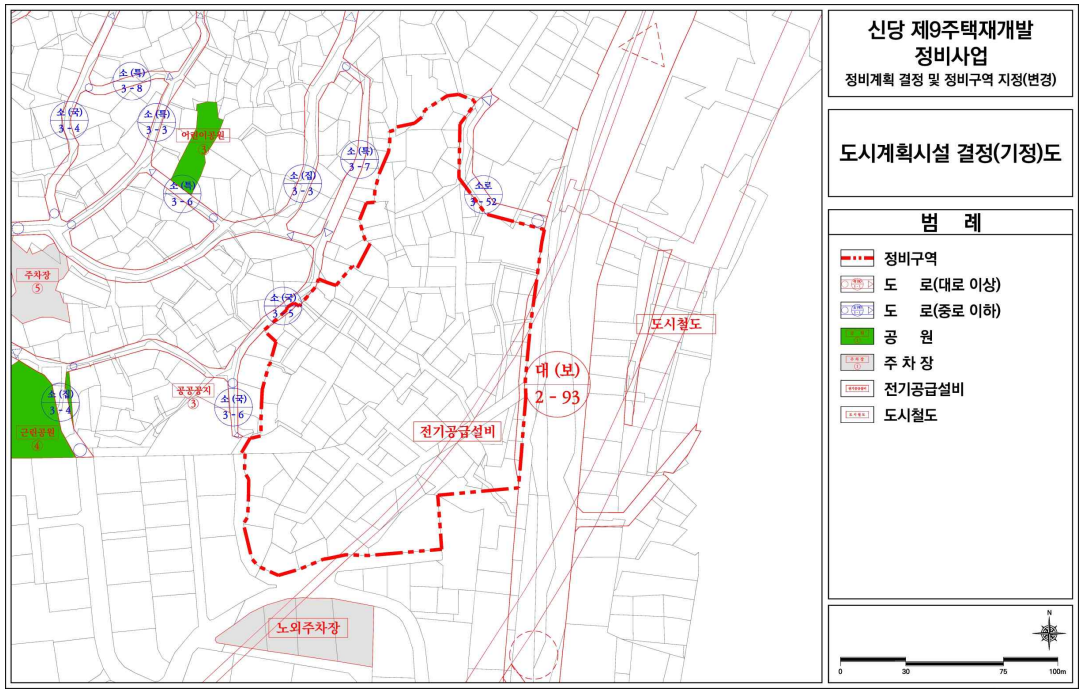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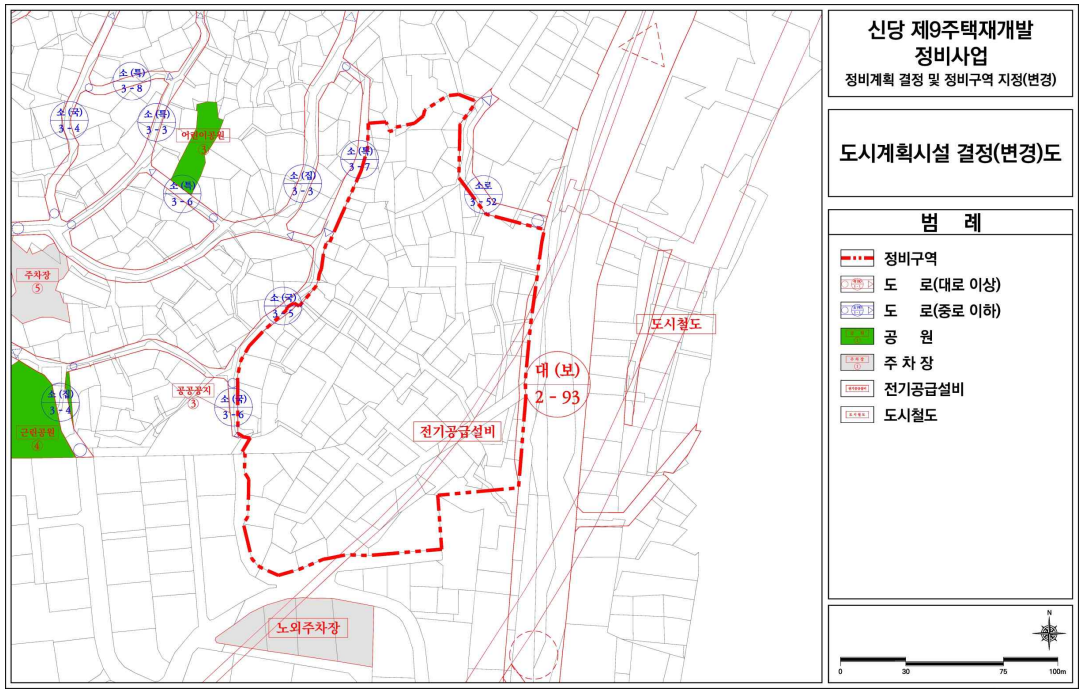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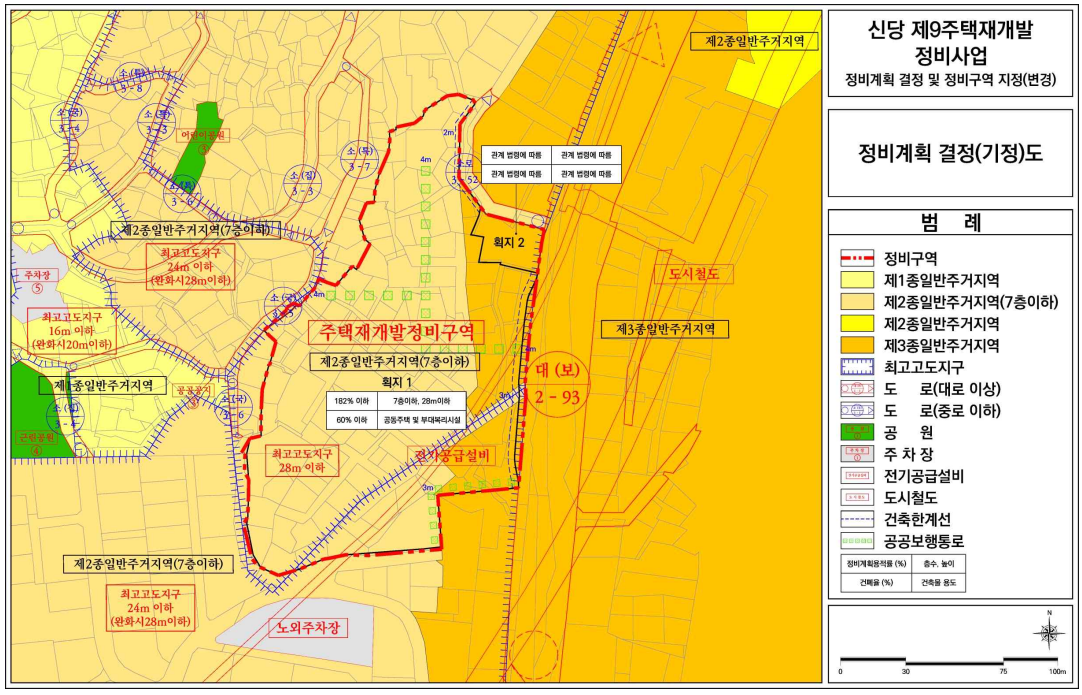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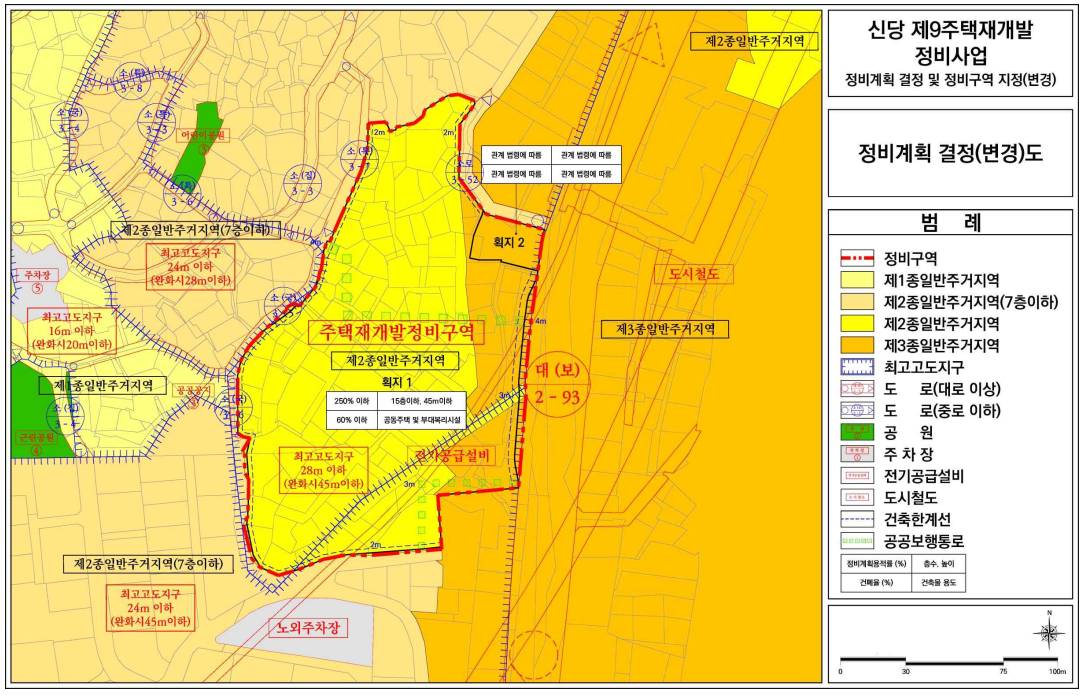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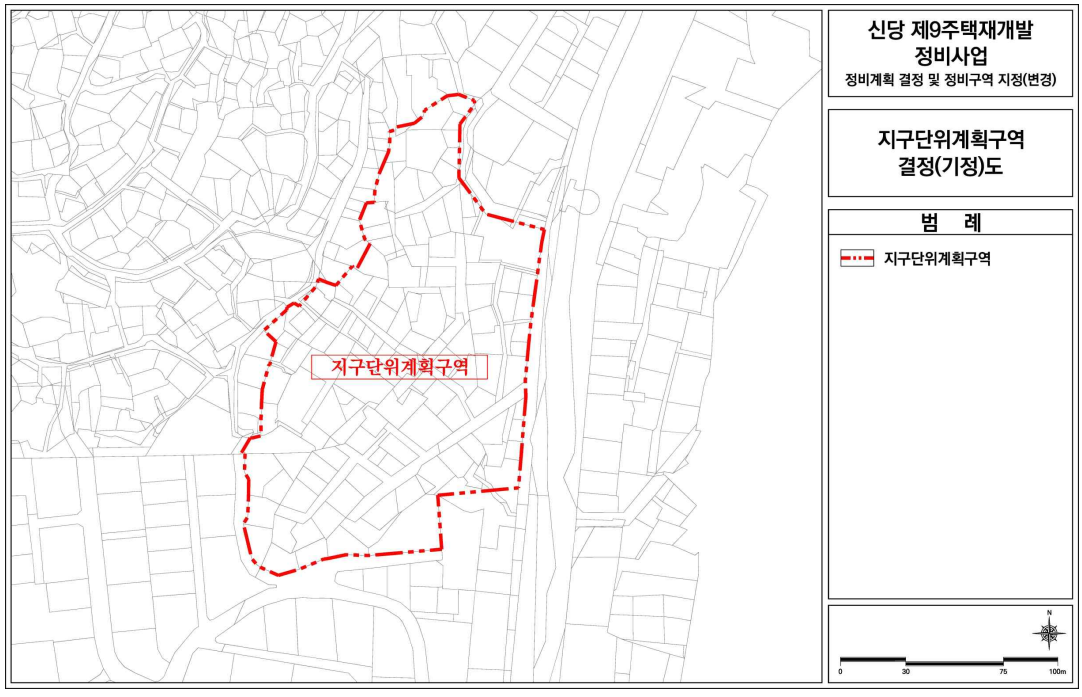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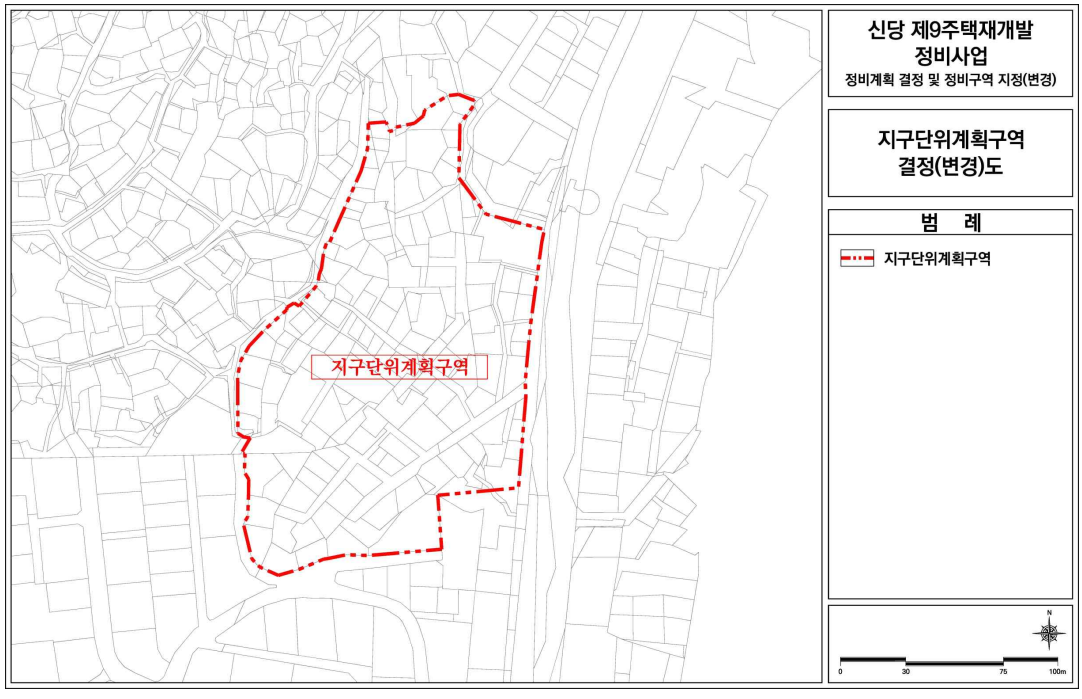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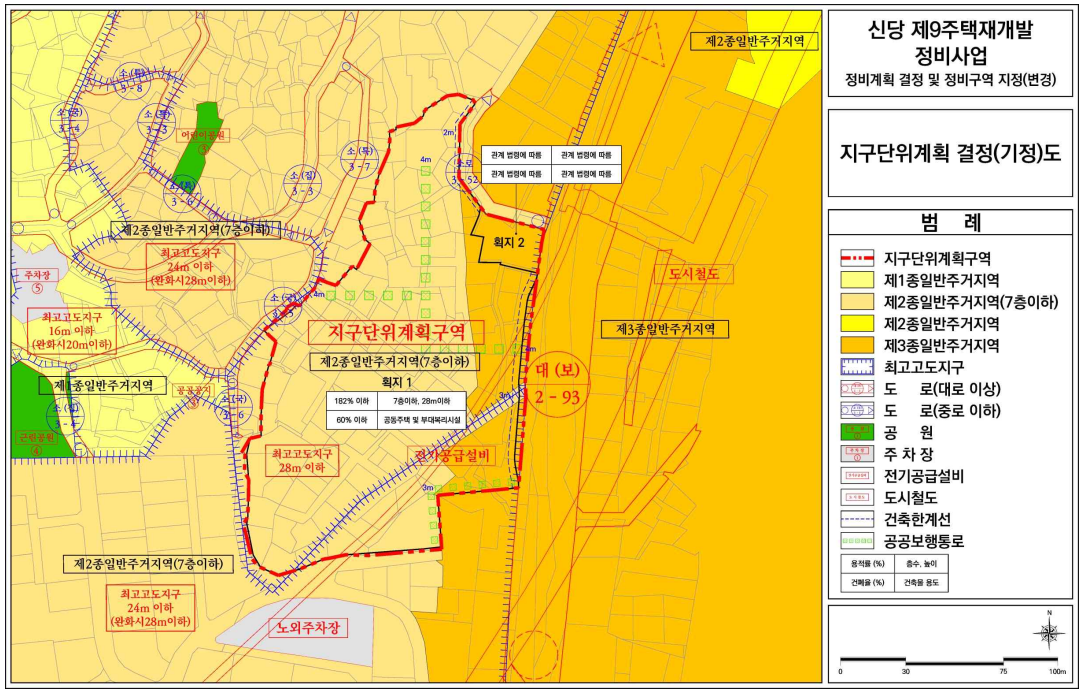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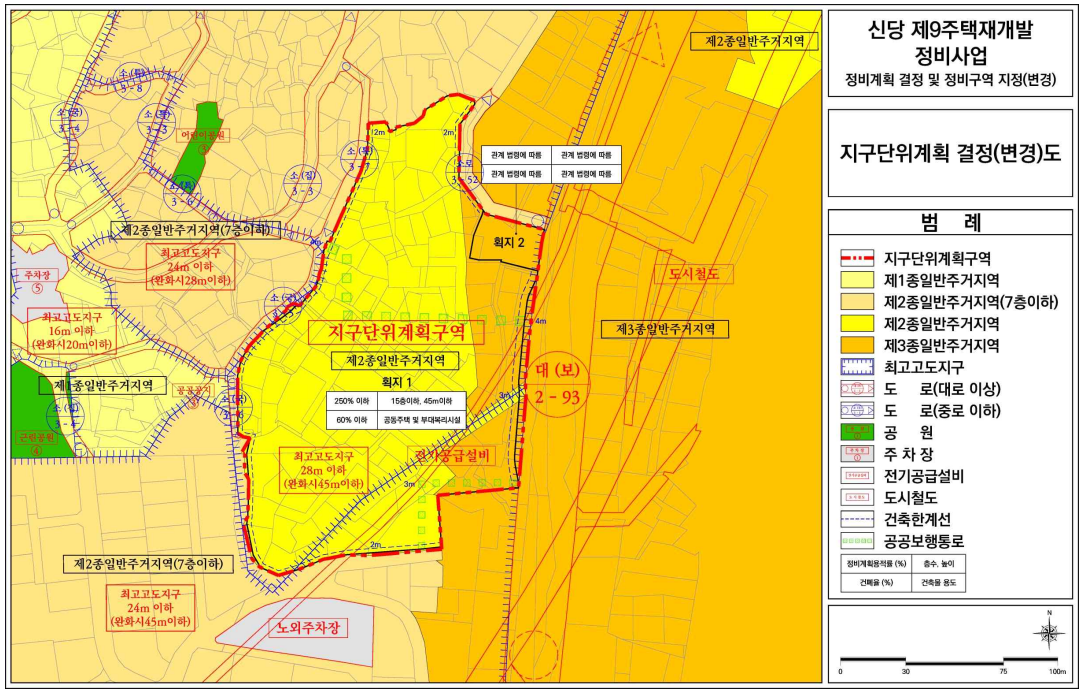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3호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31호(2022.8.4.) 및 제2023-368호(2023.08.24.)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중랑구 상봉동 116-49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기정 : 지구지정일 ~ 2024년
   - 변경 : 지구지정일 ~ 2026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기정)공공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지상 1~2층	건축연면적 1,087.84㎡	중랑구에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용도 및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향후 중랑구청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2) (변경)공공시설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누구나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지상 1~2층	건축연면적 1,087.84㎡	중랑구에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용도 및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향후 중랑구청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
8. 관련 도면 : 변경없음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도면 게재 생략)

[붙임]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방재계획 : 변경
 1) 호우재해 : 변경없음
 2) 사면 및 지반재해 : 변경
  ① 터파기계획 : 변경없음
  ② 흙막이 벽체 : 번경없음
  ③ 지보재 : 변경
   - 기정 : 버팀대(STRUT) 지지공법 적용
   - 변경 : 건축슬라브지지식
  ④ 차수 및 지반보강재 :변경
   - 기정 : S.G.R. Grouting 공법 병행 적용
   - 변경 : E.S.G Grouting 공법 병행 적용
 3) 지진재해 : 변경없음
 4) 기타재해 : 변경없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 변경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변경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변경

(기정)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지상 1~2층	건축연면적 1,087.84㎡	설치 후 중랑구청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용도 및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향후 중랑구청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누구나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지상 1~2층	건축연면적 1,087.84㎡	설치 후 중랑구청 기부채납

※ 공공기여 세부계획(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시설 용도 및 세부계획(시설·운영계획 등)은 향후 중랑구청 공공시설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향후 측량결과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4호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0호(2021.01.28.)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승인되고, 제2025-634호(2025.11.13.)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승인된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 면적 : 382.7㎡
- 결정(변경)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역~강남역	540,698 (382.7)	서울시공고 제53호 (87.2.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변경)

[기정]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등 설치제공비율	•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4% 이상 53.58㎡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55.18㎡ (14.42%)	기본 용적률 1,0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월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용적률 기준) - 10.39%(390.80㎡)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SH선매입 = 15.79% : 55.26% : 28.95%(세대수 비율)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SH선매입 = 17.49% : 52.58% : 29.93%(연면적비율) • 공공임대주택 : 12세대 - 전용 19A Type(5), 19C Type(5), 39A Type(1), 39B Type(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42세대 - 전용 19B Type(14), 19C Type(9), 19D Type(14), 19E Type(5) • SH선매입 : 22세대 - 전용 19A Type(11), 19E Type(9), 39A Type(1), 39B Type(1)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100세대 미만 : 100㎡ 이상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150㎡ 이상 -300세대 이상 :200㎡ 이상	• 지상 4층 : 160.73㎡ 계획		

[변경]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등 설치제공비율	•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14% 이상 53.58㎡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55.18㎡ (14.42%)	기본 용적률 1,0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월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용적률 기준) - 10.39%(390.80㎡)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SH선매입 = 15.79% : 55.26% : 28.95%(세대수 비율)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SH선매입 = 17.49% : 55.15% : 27.36%(연면적비율) • 공공임대주택 : 12세대 - 전용 19A Type(5), 19C Type(5), 39A Type(1), 39B Type(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42세대 - 전용 19B Type(14), 19C Type(9), 19D Type(14), 19E Type(3), 39A Type(1), 39B Type(1) • SH선매입 : 22세대 - 전용 19A Type(11), 19E Type(11),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100세대 미만 : 100㎡ 이상 -10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150㎡ 이상 -300세대 이상 :200㎡ 이상	• 지상 4층 : 160.73㎡ 계획		

※ 주택규모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5. 인센티브 운영계획(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5호

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효창동 5-307번지 일원의 효창공원앞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2025.09.0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3호(2026.01.02.)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구 효창동 5-307 일원	-	증) 103,402.7	103,402.7	-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03,402.7	103,402.7	100.0	-
정비 기반시설 등	소 계	-	증) 25,676.0	25,676.0	24.9	-
	도 로	-	증) 15,584.3	15,584.3	15.1	-
	공 원	-	증) 9,082.9	9,082.9	8.8	-
	공공청사	-	증) 1,008.8	1,008.8	1.0	대토부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획 지	소 계	-	증) 77,726.7	77,726.7	75.1	-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공동주택)	소 계	-	증) 70,901.4	70,901.4	68.6	-
		1-1	-	증) 46,720.8	46,720.8	4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	증) 24,180.6	24,180.6	23.4	
	2 (교육연구)		-	증) 1,074.8	1,074.8	1.0	대토부지 (서울자동차고등학교)
	3 (종교시설)		-	증) 351.2	351.2	0.3	대토부지 (중앙그리스도의교회)
	4 (존치)	소 계	-	증) 1,755.9	1,755.9	1.7	-
		4-1	-	증) 488.5	488.5	0.5	교육연구시설 (한국대학원대학교)
		4-2	-	증) 1,267.4	1,267.4	1.2	종교시설 (효창교회)
	5 (근린생활시설)		-	증) 3,643.4	3,643.4	3.5	-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03,402.7	-	103,402.7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520.5	증) 619.6	23,140.1	22.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2,196.3	감) 45,881.4	6,314.9	6.1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08.4	감) 20,962.1	3,046.3	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677.5	감) 4,677.5	-	-	
	준주거지역	-	증) 70,901.4	70,901.4	68.6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효창동 3-83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4,970.5	-	•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유지 및 일부 변경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효창동 260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112.4	-	•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유지 및 일부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5-136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557.9	150% 이하	• 존치시설 용도지역 유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대토부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유지 및 일부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255-3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34.6	-	• 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역 유지
	신공덕동 139-232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764.7	-	• 도시계획시설 도로 내 혼재된 용도지역의 통합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139-24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306.1	-	• 도시계획시설 도로 내 혼재된 용도지역의 통합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127-1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5-133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08.8	200% 이하	•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효창동 255-17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96.1	-	• 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역 유지
	효창동 5-266 일원			1,250.2	-	• 존치시설 용도지역 유지
	효창동 5-19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46,720.8	388% 이하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 기준(2022.06.20.)」에 따라 효창공원앞역세권의 노후·불량한 주거지 정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효창동 5-26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272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5-160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4,180.6	444% 이하	
	효창동 5-495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5.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7.26%

= (3,174,616,164천원 - 1,762,460,143천원) / 1,451,908,100천원 X 100 = 97.26%

- 총수입 추정 : 3,174,616,164천원
- 총지출 추정 : 1,762,460,143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451,908,100천원(현금청산대상자, 국공유지 제외)

구 분		금액(천원)	비 율(%)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1,807,293,672	56.93%
	일반분양	924,588,958	29.12%
임대주택 등	재개발 임대주택	155,684,344	4.90%
	장기전세주택	113,773,070	3.58%
근린생활시설	조합원분양	52,098,000	1.64%
	일반분양	127,960,000	4.03%
매출부가세		-6,781,880	-0.21%
소 계		3,174,616,164	100.00%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종전자산 총 추정액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토지 추정액	478,151,144	국공유지 제외
건물 추정액	21,665,171	
공동주택 추정액	1,028,508,000	-
국공유지 추정액	372,058,212	-
합 계	1,900,382,528	-

•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종전자산 산출

※ 공동주택별 외부요인, 내부요인, 호별요인 및 기타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호별 가격을 추정하는 약식 감정을 적용하였음.

• 토지 종전자산 산출

※ 각 토지와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하여 토지가격을 추정하는 약식 감정을 적용하였음.

• 일반건물 종전자산 산출

※ 일반건물 추정 평가액 : 개략단가 X 연면적

- 개략단가 : 경과연수 30년 경과한 주택 평균 약 180만원/3.3㎡ 추정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액(a, 천원)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a-b)
공동 주택	전용 44㎡	1,128,336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97.26%)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59㎡	1,352,814		
	전용 84㎡	1,696,048		
	전용 114㎡	2,064,680		
근린 생활시설	지하2층 (전용 33㎡)	188,100		
	지하1층 (전용 33㎡)	250,800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액(a, 천원)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a-b)
	지상1층 (전용 33㎡)	627,000		

• 종후자산가액 추정
- 공동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택지비, 건축비 및 가산비 등을 추정하여 일반분양가를 산정하였으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95%로 결정하였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실거래가,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일반분양가 비율 등을 고려

※ 향후 추정분담금 타당성 검증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에 따른 비례율 변동표

비례율 변동표(%)		3.3㎡당 공사비(천원/3.3㎡)				
		7,470	7,885	8,300	8,715	9,130
일반분양가 (천원/3.3㎡)	57,640	124.48%	120.13%	115.76%	111.41%	107.04%
	55,020	115.23%	110.89%	106.51%	102.17%	97.79%
	52,400	105.98%	101.64%	97.26%	92.92%	88.54%
	49,780	96.73%	92.39%	88.01%	83.67%	79.30%
	47,160	87.49%	83.15%	78.77%	74.43%	70.05%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	30	보조 간선도로	1,608 (72)	한강로1가 50-1	공덕동 423-2	일반도로	-	백범로
변경	대로	2	1	30	보조 간선도로	1,608 (-)	한강로1가 50-1	공덕동 423-2	일반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454	효창동 3-305	효창동 255-18	일반도로	-	임정로
기정	소로	3	1	6~10	국지도로	280	효창동 5-246	효창동 5-32	일반도로	건고제560호 (63.09.19.)	
변경	중로	3	(2)	12	국지도로	334	효창동 5-246	효창동 255-16	일반도로	건고제560호 (63.09.19.)	
신설	중로	3	(3)	12	국지도로	180	효창동 3-194	신공덕동 139-24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257	효창동 5-711	효창동 260-5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4	4	국지도로	37	효창동 135-1	효창동 137-1	일반도로	서고제2011-75호 (11.03.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	2	국지도로	4	효창동 5-762	효창동 5-762	일반도로	-	

※ ( )는 임시번호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1	대로2-1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선형 정비
-	중로2-(1)	• 도로 신설 (B=15m, L=454m)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일부 구간 도로 확폭
소로3-1	중로3-(2)	• 도로 폭원 및 연장, 일부구간 선형 변경 (B=12m, L=334m)	• 백범로 및 임정로에서 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폭 및 연장하고 선형 변경
-	중로3-(3)	• 도로 신설 (B=12m, L=180m)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확폭
-	소로2-(4)	• 도로 신설 (B=8m, L=257m)	• 기존 생활 이용도로 대체를 위해 이면도로 신설
소로3-4	-	• 도로 폐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소로3	-	• 도로 폐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공원	소공원	효창동 5-712 일원	525.2	감) 525.2	-	-	
신설	①	공원	어린이공원	효창동 3-40 일원	-	증) 4,970.5	4,970.5	-	
신설	②	공원	어린이공원	효창동 260 일원	-	증) 4,112.4	4,112.4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소공원 폐지 - 면적 : 525.2㎡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효용성이 낮아지는 소공원 폐지
①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4,970.5㎡	• 효창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어린이공원 신설
②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4,112.4㎡	• 효창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어린이공원 신설

2)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공공공지	효창동 5-713	56.0	감) 56.0	-	용고제2006-66호 (06.12.28.)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면적 : 56.0㎡)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효용성이 낮아지는 공공공지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공공청사	-	효창동 5-133 일원	-	증) 1,008.8	1,008.8	-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 건축물의 범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 고
-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1,008.8㎡ - 연면적 : 1,750.0㎡ - 규모 : 지상 4층	• 대상지 내 위치한 기존 공공청사(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주민 공동시설	합 계	-	-	증) 18,720.0	18,720.0	
	경로당	획지 1	-	증) 1,400.0	1,400.0	
	어린이놀이터		-	증) 3,120.0	3,120.0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	증) 1,450.0	1,450.0	
	주민운동시설		-	증) 710.0	710.0	
	작은도서관		-	증) 710.0	710.0	
	주민공동시설			증) 11,330.0	11,330.0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1.25 이상 확보
= {500㎡+(2,993세대×2.0㎡)}×1.25 = 8,107.5㎡ 이상 < 18,720.0㎡ 계획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효창공원앞역세권(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3,402.7	획지1	70,901.4	효창동 5-307 일원	310	2	-	308	-	
			획지2	1,074.8							
			획지3	351.2							
			획지4	1,755.9							
			획지5	3,643.4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4">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구분</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
<tr><td rowspan="8">신규</td><td rowspan="8">효창공원앞역 세권 (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td><td rowspan="8">103,402.7</td><td>획지1</td><td>70,901.4</td><td>효창동 5-307 일원</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60 이하</td><td>가중 평균</td><td>202.0</td><td>398.6</td><td>407.1</td><td>120m (40층)이하</td></tr>
<tr><td>1-1</td><td>46,720.8</td><td>효창동 5-307 일원</td><td rowspan="2">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 rowspan="2">60 이하</td><td rowspan="2">준주거</td><td>204.0</td><td>388.0</td><td>388.0</td><td rowspan="2">*구간별 층수제한 (20~40층)</td></tr>
<tr><td>1-2</td><td>24,180.6</td><td>효창동 5-495 일원</td><td>198.0</td><td>419.0</td><td>444.0</td></tr>
<tr><td>획지2</td><td>1,074.8</td><td>효창동 5-359 일원</td><td>교육연구시설</td><td colspan="6" rowspan="5">관계 법령에 따름</td></tr>
<tr><td>획지3</td><td>351.2</td><td>효창동 5-356 일원</td><td>종교시설</td></tr>
<tr><td>획지4-1</td><td>488.5</td><td>효창동 5-357 일원</td><td>교육연구시설 (존치)</td></tr>
<tr><td>획지4-2</td><td>1,267.4</td><td>효창동 5-266 일원</td><td>종교시설 (존치)</td></tr>
<tr><td>획지5</td><td>3,643.4</td><td>효창동 5-140일원</td><td>근린생활시설</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1">• 주택공급계획
– 공동주택 2,993세대(분양주택 1,800세대, 재개발 의무 공공주택 450세대, 장기전세주택 743세대)
<table>
<tr><th rowspan="2">구 분
(전용면적)</th><th colspan="2" rowspan="2">계</th><th colspan="2" rowspan="2">분양주택</th><th colspan="6">공공주택</th></tr>
<tr><th colspan="2">소 계</th><th colspan="2">재개발의무</th><th colspan="2">장기전세</th></tr>
<tr><td>합 계</td><td>2,993</td><td>(100.0%)</td><td>1,800</td><td>(60.1%)</td><td>1,193</td><td>(39.9%)</td><td>450</td><td>(15.1%)</td><td>743</td><td>(24.8%)</td></tr>
<tr><td>40㎡ 이하</td><td>250</td><td>(8.4%)</td><td>62</td><td>(2.1%)</td><td>188</td><td>(6.3%)</td><td>188</td><td>(6.3%)</td><td colspan="2">–</td></tr>
<tr><td>40~60㎡ 이하</td><td>1,753</td><td>(58.6%)</td><td>990</td><td>(33.1%)</td><td>763</td><td>(25.5%)</td><td>262</td><td>(8.8%)</td><td>501</td><td>(16.7%)</td></tr>
<tr><td>60~85㎡ 이하</td><td>842</td><td>(28.1%)</td><td>600</td><td>(20.0%)</td><td>242</td><td>(8.1%)</td><td colspan="2">–</td><td>242</td><td>(8.1%)</td></tr>
<tr><td>85㎡ 초과</td><td>148</td><td>(4.9%)</td><td>148</td><td>(4.9%)</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공공주택 건설(재개발의무)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공공주택 건설(용적률 완화) : 완화되는 용적률(허용-기준)의 1/2 이상
※ 분양과 공공주택간 사회혼합(소셜믹스)을 고려하여 동별 혼합배치계획 수립</td></tr>
<tr><td colspan="3">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11">• 용도지역 변경 : 제1종,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사업대상지 요건 완화(「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2020.10.13.)」 2-1-3)
– 제1종일반주거지역(22,520.5㎡, 21.8%), 2차역세권(265㎡, 0.3%) 사업부지에 포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상한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 407.1% 이하(전체부지 평균 용적률)</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1">•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로부터 3m
– 단, 백범로변 5m, 금양초교변 5~10m</td></tr>
<tr><td rowspan="2">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2">전면공지</td><td colspan="11">•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3m
– 그 외 부분 휴게공간 조성</td></tr>
</table>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구분	기준	허용	상한	
	공개공지		• 백범로변 1개소 지정 : 1,000㎡ 이상									
	공공보행통로		• 남북방향(12m) 1개소, 동서방향(8m) 1개소 설치 -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용산구, 용산구-조합 간 합의서 체결 예정) -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불허구간		• 백범로, 효창원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존치지역 제외)									

※ 높이는 지반고를 제외한 건축물 높이를 의미함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2020.10.13.)」 적용
* 층수규제구간 외 전체지역 문화재 앙각기준 적용(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2 적용)
- 4대문 밖의 국가지정유산 : 보호구역 경계 지표에서 7.5m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용적률 계획

1) 획지1-1

구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1 (공동주택 등)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새로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공공임대 (장기전세) 부속토지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환산면적
	103,402.7㎡	46,720.8㎡	9,433.0㎡	2,371.1㎡	-	4,558.8㎡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건축물 기부채납 = 9,433.0㎡ - 2,371.1㎡ = 7,061.9㎡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4,462.5㎡)+공원(4,970.5㎡) = 9,433.0㎡							
(패키지)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4.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 (140.8㎡×150%+41,909.4㎡×200%+4,670.6㎡×250%)÷(140.8㎡+41,909.4㎡+4,670.6㎡) = 204.85% → 204.0% 이하 적용 • 허용용적률 : 388.0% (기준용적률+패키지 용적률) = (140.8㎡×150%+41,909.4㎡×430%+4,670.6㎡×450%)÷(140.8㎡+41,909.4㎡+4,670.6㎡) = 431.15% → 388.0% 이하 적용							

구 분			건축계획(안)	비 고
공공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92.0% 이상) - 계획 : 43,054.9㎡(92.2%) 〉 법정 : 42,983.1(92.0%)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또는 "장수명 주택" 계획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계획(추후 적용)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	· 법정 : 5,158.3㎡(3.00%) · 계획 : 5,550.0㎡(3.23%) - 용도 : 문화센터(강의실, 배움센터, 공방), 피트니스센	어린이공원 및 공공청사변

<table>
<tr><th>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td><td>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건축계획(안)</th><th>비 고</th></tr>
<tr><td></td><td></td><td></td><td>터(골프연습장, 키즈짐, 재활치료실) 도서실, 커뮤니티(마을카페, 북카페), 사무실, 기타공용공간</td><td>배치</td></tr>
<tr><td rowspan="5"></td><td rowspan="5">친환경 건축물 (2가지 이상 상향 적용)</td><td>환경성능부문</td><td>· 그린 1등급 이상</td><td rowspan="5">사업계획 승인시 이행</td></tr>
<tr><td>에너지성능부문</td><td>· 1+등급 이상</td></tr>
<tr><td>에너지관리부문</td><td>·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데이터 분석기능(상향적용)</td></tr>
<tr><td>신·재생에너지부문</td><td>·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td></tr>
<tr><td>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추가 적용</td><td>·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추가 적용(상향적용)</td></tr>
<tr><td></td><td>역사문화 보전</td><td>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 포함 등</td><td>· 해당 없음</td><td>-</td></tr>
</table>
</td></tr>
<tr><td rowspan="3">상한용적률</td><td colspan="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388.0%×(1+1.3×0.4325×0.1512) = 421.0% → 388.0% 이하 적용</td></tr>
<tr><td>가중치</td><td>• 공공시설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67.8% ÷ 388.0% = 0.4325</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061.9㎡ ÷ 46,720.8㎡ = 0.1512</td></tr>
</table>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산정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25.02.07.)' 적용

1) 획지1-2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 이용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1-2 (공동주택 등)</td><td rowspan="2">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td><td rowspan="2">새로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 rowspan="2">공공임대 (장기전세) 부속토지면적</td><td colspan="2">건축물 기부채납</td></tr>
<tr><td>대지지분</td><td>환산면적</td></tr>
<tr><td>103,402.7㎡</td><td>24,180.6㎡</td><td>15,900.8㎡</td><td>8,845.7㎡</td><td>3,000.9㎡</td><td>7,238.7㎡</td><td>-</td><td>756.9㎡</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건축물 기부채납 = (15,900.8㎡ - 8,845.7㎡ - 3,000.9㎡) + 756.9㎡ = 4,811.1㎡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11,121.8㎡)+공원(4,112.4㎡)+공공청사(666.6㎡) = 15,900.8㎡</td></tr>
<tr><td>(패키지) 허용용적률</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 198.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 (908.5㎡×150%+23,272.1㎡×200%)÷(908.5㎡+23,272.1㎡)
= 198.12% → 198.0% 이하 적용
• 허용용적률 : 419.0% (기준용적률+패키지 용적률)
= (908.5㎡×150%+23,272.1㎡×430%)÷(908.5㎡+23,272.1㎡)</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td><td>= 419.48% → 419.0% 이하 적용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건축계획(안)</th><th>비 고</th></tr>
<tr><td colspan="3">공공주택 공급</td><td>·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110.5% 이상)
- 계획 : 26,800.1㎡(110.8%) 〉 법정 : 26,719.6(110.5%)</td><td>-</td></tr>
<tr><td rowspan="8">서울형 주거환경 정책</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또는 “장수명 주택” 계획</td><td>·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계획(추후 적용)</td><td>건축위원회 결정사항</td></tr>
<tr><td>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td><td>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td><td>· 법정 : 3,045.9㎡(3.00%)
· 계획 : 3,400.0㎡(3.35%)
- 용도 : 문화센터(배움센터, 공방), 피트니스센터(골프 연습장, 키즈짐, 재활치료실) 도서실, 커뮤니티(마을카페, 북카페), 사무실, 기타공용공간</td><td>임정로 및 효창원로변 배치</td></tr>
<tr><td rowspan="5">친환경 건축물 (2가지 이상 상향 적용)</td><td>환경성능부문</td><td>· 그린 1등급 이상</td><td rowspan="5">사업계획 승인시 이행</td></tr>
<tr><td>에너지성능부문</td><td>· 1+등급 이상</td></tr>
<tr><td>에너지관리부문</td><td>·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데이터 분석기능(상향적용)</td></tr>
<tr><td>신·재생에너지부문</td><td>·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td></tr>
<tr><td>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추가 적용</td><td>·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추가 적용(상향적용)</td></tr>
<tr><td>역사문화 보전</td><td>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 포함 등</td><td>· 해당 없음</td><td>-</td></tr>
</table></td></tr>
<tr><td rowspan="4">상한용적률</td><td colspan="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419.0%×(1+1.3×0.3394×0.1677+0.7×0.0313) = 459.2% → 444.0% 이하 적용</td></tr>
<tr><td>가중치</td><td>• 공공시설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42.2% ÷ 419.0% = 0.3394</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54.2㎡ ÷ 24,180.6㎡ = 0.1677</td></tr>
<tr><td>α건축물</td><td>• 공공시설(건축물)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56.9㎡ ÷ 24,180.6㎡ = 0.0313</td></tr>
</table>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산정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25.02.07.)’ 적용

■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산정

① 획지1-1

구 분	면적(㎡)	부담기준	확보면적(㎡)	비 고
제1종일반 → 준주거	140.8	3단계 상향(25%)	140.8×25%=35.2㎡	
제2종(7층) → 준주거	29,869.3	2단계 상향(20%)	29,869.3×20%=5,973.9㎡	획지 (공동주택 등)
제2종일반 → 준주거	12,040.1	2단계 상향(20%)	12,040.1×20%=2,408.0㎡	
제3종일반 → 준주거	4,670.6	1단계 상향(15%)	4,670.6×15%=700.6㎡	
합 계	46,720.8	-	9,117.7㎡(종상향 면적 대비 19.52%)	24.87% 계획

② 획지1-2

구 분	면적(㎡)	부담기준	확보면적(㎡)	비 고
제1종일반 → 준주거	908.5	3단계 상향(25%)	908.5×25%=227.1㎡	획지 (공동주택 등)
제2종(7층) → 준주거	16,011.6	2단계 상향(20%)	16,011.6×20%=3,202.3㎡	
제2종일반 → 준주거	7,260.5	2단계 상향(20%)	7,260.5×20%=1,452.1㎡	
합 계	24,180.6	-	4,881.5㎡(종상향 면적 대비 20.19%)	29.99% 계획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획지1-1		획지1-2		
정비기반시설	① 토지	부지	도로	4,462.5㎡	(9.55%)	11,121.8㎡	(45.99%)	-
			공원	4,970.5㎡	(10.64%)	4,112.4㎡	(17.01%)	-
		건물대지지분	-	-	-	-	-	-
	②건축물(환산면적)		-	-	-	-	-	-
	③ 순부담산정시 제외면적 (국·공유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내	2,371.1㎡	(5.08%)	8,845.7㎡	(36.58%)	-
			용도 폐지되는 기존정비기반시설	-	-	3,000.9㎡	(12.41%)	-
	A 합 계(①+②-③)			7,061.9㎡	(15.11%)	3,387.6㎡	(14.01%)	-
기반시설 등	④토지	부지	공공청사	-	-	666.6㎡	(2.76%)	기존 부지면적(대토) 제외 기부채납
	⑤건축물(환산면적)		공공청사	-	-	756.9㎡	(3.13%)	기부채납 계획 연면적 : 1,750.0㎡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획지1-1	획지1-2	
B 합 계(④+⑤)	- -	1,423.5㎡ (5.89%)	-
C 현금	- -	- -	-
D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면적	4,558.8㎡ (9.76%)	2,440.8㎡ (10.09%)	• 획지1-1 :의무면적(9,117.7㎡)의 1/2한도(4,558.8㎡)까지 같음 • 획지1-2 :의무면적(4,881.5㎡)의 1/2한도(2,440.8㎡)까지 같음
순부담(A+B+C+D)	11,620.7㎡ (24.87%)	7,251.9㎡ (29.99%)	• 획지1-1 : 24.87% 〉 19.52%(의무순부담) • 획지1-2 : 29.99% 〉 20.19%(의무순부담)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양여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함
※ 상기 면적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및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기부채납 사항

구 분	공공청사	비 고
① 연면적	1,750.0㎡	-
② 건축비	3,782,727원/㎡	•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공공업무사무소(1,500㎡~5,000㎡) : 3,782,727(부가세 제외)
③ 설치비용	6,619,772,250원	• ①연면적 X ②건축비
④ 부지가액	8,745,726원	• 기부채납 부지 내 평균공시지가 2배 적용
⑤ 환산부지면적	756.96㎡	• ③설치비용 ÷ ④부지가액
⑥ 토지면적	666.60㎡	• 공공청사 별도부지 조성(기존 부지면적(대토) 제외 기부채납)
총 제공면적	1,423.5㎡	• ⑤환산부지면적 + ⑥토지면적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의무 공공주택은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건설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1/2 이상 건설
- 재개발의무 공공주택은 서울시에 매각(처분)
- 장기전세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 주택공급계획

구 분 (전용면적)	계	분양주택	공공주택		
			소 계	재개발의무	장기전세
합 계	2,993 (100.0%)	1,800 (60.1%)	1,193 (39.9%)	450 (15.1%)	743 (24.8%)
40㎡ 이하	250 (8.4%)	62 (2.1%)	188 (6.3%)	188 (6.3%)	-
40~60㎡ 이하	1,753 (58.6%)	990 (33.1%)	763 (25.5%)	262 (8.8%)	501 (16.7%)
60~85㎡ 이하	842 (28.1%)	600 (20.0%)	242 (8.1%)	-	242 (8.1%)
85㎡ 초과	148 (4.9%)	148 (4.9%)	-	-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0% 이상
공공주택 건설(재개발의무)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공공주택 건설(장기전세주택) : 완화되는 용적률(허용-기준)의 1/2 이상

■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① 획지1-1

계획기준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 1,905세대 × 15% ≒ 286세대 ∴ 286세대 계획 ≥ 286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공공주택 비율
합 계	286	15.01%	100.0%
32㎡	129	6.77%	45.1%
44㎡	128	6.72%	44.8%
59㎡	29	1.52%	10.1%

② 획지1-2

계획기준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 1,088세대 × 15% ≒ 164세대 ∴ 164세대 계획 ≥ 164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비율	공공주택 비율
합 계	164	15.07%	100.0%
32㎡	59	5.42%	36.0%
44㎡	89	8.18%	54.3%
59㎡	16	1.47%	9.8%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역세권 공공주택(장기전세주택) 계획

① 획지1-1

기준용적률		• 204.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패키지 허용용적률		• 388.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상한용적률		• 388.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완화용적률	• 388.0%-204.0% = 184.0%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 184.0%×1/2 = 92.0%				
	의무 연면적	• 46,720.8㎡(대지면적)×92.0% = 42,983.1㎡ 이상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확보계획 (부속토지 기부채납)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59.90㎡	84.80㎡	317세대	26,881.6㎡	-
		84.90㎡	113.10㎡	143세대	16,173.3㎡	-
		합계		460세대	43,054.9㎡	〉 42,983.1㎡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획지1-2

기준용적률		• 198.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패키지 허용용적률		• 419.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상한용적률		• 444.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완화용적률	• 419.0%-198.0% = 221.0%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 221.0%×1/2 = 110.5%				
	의무 연면적	• 24,180.6㎡(대지면적)×110.5% = 26,719.6㎡ 이상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확보계획 (부속토지 기부채납)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59.90㎡	84.80㎡	184세대	15,603.2㎡	-
		84.90㎡	113.10㎡	99세대	11,196.9㎡	-
		합계		283세대	26,800.1㎡	〉 26,719.6㎡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보전	• 자연환경 :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 반영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증가, 지구 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활환경 :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계획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시행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면적의 축소 • 사업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 내 차속제한, 저소음, 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
재난방지	• 지반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 •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예방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 재해 시 소방도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단지 내 동선체계 구축 • 비상 시 보행자동선이 비상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지양하고 지하로 유도	–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현 황	증감	계 획
신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 조합	1,625	1,368	2,993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대상지 동측 금양초등학교 입지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 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보행자도로에는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 – 학교 주변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겠음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협의 (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거리 200m 이내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접근통제	• 주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 내 출입을 통제	
영역성 강화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방범용 CCTV	• 방범용 CCTV 설치시 가로등과 가로수,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 등의 관계를 고려해 가시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해야하며, 간선도로보다는 주거지 내부 골목길의 진출입부와 막다른 골목 주변,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 • CCTV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하단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되 안내표지판은 주변과 차별화되는 색상(노란색, 주황색 등)이나 야간인식을 고려하여 형광기능을 추가하거나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	
조명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획지1	1-1	70,901.4	효창동 5-307 일원	46,72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효창동 5-495 일원	24,180.6	
	획지2		1,074.8	효창동 5-359 일원	1,074.8	교육연구시설 (서울자동차고등학교)
	획지3		351.2	효창동 5-356 일원	351.2	종교시설
	획지4	4-1	1,755.9	효창동 5-357 일원	488.5	존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4-2		효창동 5-266 일원	1,267.4	존치(효창교회)
	획지5		3,643.4	효창동 5-732 일원	3,643.4	근린생활시설

15. 환경성 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비오톱 및 동식물상	비오톱등급4등급 동식물상 보호	○	·비오톱유형평가 2등급(0.2%), 4등급(4.6%), 5등급(89.3%), 도로(5.9%), 개별비오톱 3등급(0.2%), 평가제외(93.9%), 도로(5.9%) ·주요 동식물상의 서식처 없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지역내 소규모 녹지공간 및 소생태계가 조성
	2.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대상지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함 ·녹지계획으로 연결성 최대 확보	·녹지계획에 반영
생활 환경	1.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절성토 비율 최소화 -지형 변화 최소화	·주변 토지이용 및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현황 및 용도지역 등 조사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주변 지역과 조화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2.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측정망을 참조한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공사시 토양오염물질 발생예상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
	3.물순환(생태면적률) 및 수질	생태면적률 30%	○	·대상지 내로 기존 건축물이 운영중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반영 ·공사시 토사유출 경미 ·운영시 오수발생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적용계획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 계획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4.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도로, 저층 건축물 일대로 바람길 형성	·바람길 확보 및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건물 배치
	5.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발생 경미	·비산방진망,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녹지대 최대 및 에너지절약 계획
	6.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감소추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수립
	7.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생활폐기물 등 관련기준에 따라 처리 운영시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처리
	8.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 사용 없음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옥상부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 수립
	9.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 진동발생 ·운영시 교통소음 발생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준수 ·운영시 녹지공간조성 등으로 소음감소
	10.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 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내 휴식 · 여가공간은 부족	·경관녹지, 공원, 획지 등을 조성하고 인근 녹지를 활용하여 휴식공간 조성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1.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됨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12.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보행자를 위한 보행동선 계획 및 가로공간조성	·휴식과 여가공간과의 연계성 확보 및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X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X	·자전거보관소 설치 미고려	-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효창공원앞역세권 (효창동 5-307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구 효창동 5-307 일원	-	증) 103,402.7	103,402.7	-	-

■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용산구 효창동 5-307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효창공원앞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03,402.7	-	103,402.7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520.5	증) 619.6	23,140.1	22.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2,196.3	감) 45,881.4	6,314.9	6.1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08.4	감) 20,962.1	3,046.3	2.9	
	제3종일반주거지역	4,677.5	감) 4,677.5	-	-	
	준주거지역	-	증) 70,901.4	70,901.4	68.6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효창동 3-83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4,970.5	-	•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유지 및 일부 변경
	효창동 260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112.4	-	•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유지 및 일부 변경
	효창동 5-136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557.9	150% 이하	• 존치시설 용도지역 유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대토부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유지 및 일부 변경
	효창동 255-3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5,734.6	-	• 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역 유지
	신공덕동 139-232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764.7	-	• 도시계획시설 도로 내 혼재된 용도지역의 통합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효창동 139-24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306.1	-	• 도시계획시설 도로 내 혼재된 용도지역의 통합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효창동 127-1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5-133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08.8	200% 이하	•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효창동 255-17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96.1	-	• 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역 유지
	효창동 5-266 일원			1,250.2	-	• 존치시설 용도지역 유지
	효창동 5-19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46,720.8	388% 이하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2022.06.20.)」에 따라 효창공원앞역세권의 노후·불량한 주거지 정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효창동 5-26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272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효창동 5-160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4,180.6	444% 이하	
	효창동 5-495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	30	보조 간선도로	1,608 (72)	한강로1가 50-1	공덕동 423-2	일반도로	-	백범로
변경	대로	2	1	30	보조 간선도로	1,608 (-)	한강로1가 50-1	공덕동 423-2	일반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454	효창동 3-305	효창동 255-18	일반도로	-	임정로
기정	소로	3	1	6~10	국지도로	280	효창동 5-246	효창동 5-32	일반도로	건고제560호 (63.09.19.)	
변경	중로	3	(2)	12	국지도로	334	효창동 5-246	효창동 255-16	일반도로	건고제560호 (63.09.19.)	
신설	중로	3	(3)	12	국지도로	180	효창동 3-194	신공덕동 139-24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257	효창동 5-711	효창동 260-5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4	4	국지도로	37	효창동 135-1	효창동 137-1	일반도로	서고제2011-75호 (11.03.17.)	
폐지	소로	3	-	2	국지도로	4	효창동 5-762	효창동 5-762	일반도로	-	

※ ( )는 임시번호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1	대로2-1	• 일부구간 선형 변경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선형 정비
-	중로2-(1)	• 도로 신설 (B=15m, L=454m)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일부 구간 도로 확폭
소로3-1	중로3-(2)	• 도로 폭원 및 연장, 일부구간 선형 변경 (B=12m, L=334m)	• 백범로 및 임정로에서 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폭 및 연장하고 선형 변경
-	중로3-(3)	• 도로 신설 (B=12m, L=180m)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확폭
-	소로2-(4)	• 도로 신설 (B=8m, L=257m)	• 기존 생활 이용도로 대체를 위해 이면도로 신설
소로3-4	-	• 도로 폐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소로3	-	• 도로 폐지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른 내부 도로 폐지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공원	소공원	효창동 5-712 일원	525.2	감) 525.2	-	-	
신설	①	공원	어린이공원	효창동 3-40 일원	-	증) 4,970.5	4,970.5	-	
신설	②	공원	어린이공원	효창동 260 일원	-	증) 4,112.4	4,112.4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 소공원 폐지 - 면적 : 525.2㎡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효용성이 낮아지는 소공원 폐지
①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4,970.5㎡	• 효창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어린이공원 신설
②	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4,112.4㎡	• 효창근린공원과 연계되는 어린이공원 신설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공공공지	효창동 5-713	56.0	감) 56.0	-	용고제2006-66호 (06.12.28.)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56.0㎡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효용성이 낮아지는 공공공지 폐지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공공청사	-	효창동 5-133 일원	-	증) 1,008.8	1,008.8	-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 건축물의 범위

도면 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 고
-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1,008.8㎡ - 연면적 : 1,750.0㎡ - 규모 : 지상 4층	• 대상지 내 위치한 기존 공공청사(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획지1	1-1	70,901.4	효창동 5-307 일원	46,720.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효창동 5-495 일원	24,180.6	
	획지2		1,074.8	효창동 5-359 일원	1,074.8	교육연구시설 (서울자동차고등학교)
	획지3		351.2	효창동 5-356 일원	351.2	종교시설
	획지4	4-1	1,755.9	효창동 5-357 일원	488.5	존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4-2		효창동 5-266 일원	1,267.4	존치(효창교회)
	획지5		3,643.4	효창동 5-732 일원	3,643.4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신설	허용용도(A)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시설 - 제6호의 종교시설	
		획지4	• 관계 법령에 따름	
		획지5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제13호의 운동시설	
	불허용도(a)	전구역	• 허용용도 외 불허	

2)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설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준주거지역	60% 이하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1-1	204% 이하	388% 이하	388% 이하	준주거
		1-2	198% 이하	419% 이하	444% 이하	준주거

※ 획지2,3,4,5는 관계법령에 따름

■ 획지1-1

<table>
<tr><td>구분</td><td colspan="8">산정내용</td></tr>
<tr><td rowspan="2">토지
이용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1-1
(공동주택 등)</td><td>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td><td>새로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공공임대
(장기전세)
부속토지면적</td><td colspan="2">건축물
기부채납</td></tr>
<tr><td>대지지분</td><td>환산면적</td></tr>
<tr><td>103,402.7㎡</td><td>46,720.8㎡</td><td>9,433.0㎡</td><td>2,371.1㎡</td><td>-</td><td>4,558.8㎡</td><td>-</td><td>-</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8">•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건축물 기부채납 = 9,433.0㎡ - 2,371.1㎡ = 7,061.9㎡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4,462.5㎡)+공원(4,970.5㎡) = 9,433.0㎡</td></tr>
<tr><td>(패키지)
허용용적률</td><td colspan="8">• 기준용적률 : 204.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 (140.8㎡×150%+41,909.4㎡×200%+4,670.6㎡×250%)÷(140.8㎡+41,909.4㎡+4,670.6㎡)
= 204.85% → 204.0% 이하 적용
• 허용용적률 : 388.0% (기준용적률+패키지 용적률)
= (140.8㎡×150%+41,909.4㎡×430%+4,670.6㎡×450%)÷(140.8㎡+41,909.4㎡+4,670.6㎡)
= 431.15% → 388.0% 이하 적용
<table>
<tr><td colspan="3">구 분</td><td>건축계획(안)</td><td>비 고</td></tr>
<tr><td colspan="3">공공주택 공급</td><td>·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92.0% 이상)
- 계획 : 43,054.9㎡(92.2%) 〉 법정 : 42,983.1(92.0%)</td><td>-</td></tr>
<tr><td rowspan="7">서울형
주거
환경
정책</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또는 "장수명 주택" 계획</td><td>·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계획(추후 적용)</td><td>건축위원회
결정사항</td></tr>
<tr><td>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td><td>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td><td>· 법정 : 5,158.3㎡(3.00%)
· 계획 : 5,550.0㎡(3.23%)
- 용도 : 문화센터(강의실, 배움센터, 공방), 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키즈짐, 재활치료실) 도서실, 커뮤니티(마을카페, 북카페), 사무실, 기타공용공간</td><td>어린이공원
및
공공청사변
배치</td></tr>
<tr><td rowspan="5">친환경
건축물
(2가지
이상
상향 적용)</td><td>환경성능부문</td><td>· 그린 1등급 이상</td><td rowspan="5">사업계획
승인시
이행</td></tr>
<tr><td>에너지성능부문</td><td>· 1+등급 이상</td></tr>
<tr><td>에너지관리부문</td><td>·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데이터 분석기능(상향적용)</td></tr>
<tr><td>신·재생에너지부문</td><td>·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td></tr>
<tr><td>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추가 적용</td><td>·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추가 적용(상향적용)</td></tr>
<tr><td>역사문화
보전</td><td>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 포함 등</td><td>· 해당 없음</td><td>-</td></tr>
</table></td></tr>
<tr><td row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8">•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388.0%×(1+1.3×0.4325×0.1512) = 421.0% → 388.0% 이하 적용</td></tr>
<tr><td>가중치</td><td colspan="7">• 공공시설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td></tr>
</table>

구분	산정내용	
		= 167.8% ÷ 388.0% = 0.4325
	α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061.9㎡ ÷ 46,720.8㎡ = 0.1512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산정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25.02.07.)' 적용

■ 획지1-2

구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2 (공동주택 등)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새로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공공임대 (장기전세) 부속토지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환산면적
	103,402.7㎡	24,180.6㎡	15,900.8㎡	8,845.7㎡	3,000.9㎡	7,238.7㎡	-	756.9㎡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건축물 기부채납 = (15,900.8㎡ - 8,845.7㎡ - 3,000.9㎡) + 756.9㎡ = 4,811.1㎡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 도로(11,121.8㎡)+공원(4,112.4㎡)+공공청사(666.6㎡) = 15,900.8㎡							
(패키지)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8.0% (용도지역별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 (908.5㎡×150%+23,272.1㎡×200%)÷(908.5㎡+23,272.1㎡) = 198.12% → 198.0% 이하 적용 • 허용용적률 : 419.0% (기준용적률+패키지 용적률) = (908.5㎡×150%+23,272.1㎡×430%)÷(908.5㎡+23,272.1㎡) = 419.48% → 419.0% 이하 적용							

구 분			건축계획(안)	비 고
공공주택 공급			·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110.5% 이상) - 계획 : 26,800.1㎡(110.8%) 〉 법정 : 26,719.6(110.5%)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또는 "장수명 주택" 계획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계획(추후 적용)	건축위원회 결정사항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최소 450㎡) 이상	· 법정 : 3,045.9㎡(3.00%) · 계획 : 3,400.0㎡(3.35%) - 용도 : 문화센터(배움센터, 공방), 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키즈짐, 재활치료실) 도서실, 커뮤니티(마을카페, 북카페), 사무실, 기타공용공간	임정로 및 효창원로변 배치
	친환경 건축물 (2가지 이상 상향 적용)	환경성능부문	· 그린 1등급 이상	사업계획 승인시 이행
		에너지성능부문	· 1+등급 이상	
		에너지관리부문	· 세대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데이터 분석기능(상향적용)	
		신·재생에너지부문	· 연도별 설치 비율 적용	

<table>
<tr><th>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td><td>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건축계획(안)</th><th>비 고</th></tr>
<tr><td rowspan="2"></td><td></td><td>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추가 적용</td><td>·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5등급 추가 적용(상향적용)</td><td></td></tr>
<tr><td>역사문화 보전</td><td>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 포함 등</td><td>· 해당 없음</td><td>-</td></tr>
</table>
</td></tr>
<tr><td rowspan="4">상한용적률</td><td colspan="2">•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419.0%×(1+1.3×0.3394×0.1677+0.7×0.0313) = 459.2% → 444.0% 이하 적용</td></tr>
<tr><td>가중치</td><td>• 공공시설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142.2% ÷ 419.0% = 0.3394</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54.2㎡ ÷ 24,180.6㎡ = 0.1677</td></tr>
<tr><td>α건축물</td><td>• 공공시설(건축물)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56.9㎡ ÷ 24,180.6㎡ = 0.0313</td></tr>
</table>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산정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25.02.07.)' 적용

■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산정

① 획지1-1

구 분			면적(㎡)	부담기준	확보면적(㎡)	비 고
제1종일반	→	준주거	140.8	3단계 상향(25%)	140.8×25%=35.2㎡	
제2종(7층)	→	준주거	29,869.3	2단계 상향(20%)	29,869.3×20%=5,973.9㎡	획지 (공동주택 등)
제2종일반	→	준주거	12,040.1	2단계 상향(20%)	12,040.1×20%=2,408.0㎡	
제3종일반	→	준주거	4,670.6	1단계 상향(15%)	4,670.6×15%=700.6㎡	
합 계			46,720.8	-	9,117.7㎡(종상향 면적 대비 19.52%)	24.87% 계획

② 획지1-2

구 분			면적(㎡)	부담기준	확보면적(㎡)	비 고
제1종일반	→	준주거	908.5	3단계 상향(25%)	908.5×25%=227.1㎡	획지 (공동주택 등)
제2종(7층)	→	준주거	16,011.6	2단계 상향(20%)	16,011.6×20%=3,202.3㎡	
제2종일반	→	준주거	7,260.5	2단계 상향(20%)	7,260.5×20%=1,452.1㎡	
합 계			24,180.6	-	4,881.5㎡(종상향 면적 대비 20.19%)	29.99% 계획

■ 공공시설 부담률 산정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획지1-1	획지1-2	
정비기반시설	① 토지	부지	도로	4,462.5㎡ (9.55%)	11,121.8㎡ (45.99%)	-
			공원	4,970.5㎡ (10.64%)	4,112.4㎡ (17.01%)	-
		건물대지지분	-	- -	- -	-
	②건축물(환산면적)		-	- -	- -	-
	③ 순부담산정시 제외면적 (국·공유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내	2,371.1㎡ (5.08%)	8,845.7㎡ (36.58%)	-
			용도 폐지되는 기존정비기반시설	- -	3,000.9㎡ (12.41%)	-
	A 합 계(①+②-③)			7,061.9㎡ (15.11%)	3,387.6㎡ (14.01%)	-
기반시설 등	④토지	부지	공공청사	- -	666.6㎡ (2.76%)	기존 부지면적(대토) 제외 기부채납
	⑤건축물(환산면적)		공공청사	- -	756.9㎡ (3.13%)	기부채납 계획 연면적 : 1,750.0㎡
	B 합 계(④+⑤)			- -	1,423.5㎡ (5.89%)	-
C 현금				- -	- -	-
D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부속토지면적				4,558.8㎡ (9.76%)	2,440.8㎡ (10.09%)	• 획지1-1 :의무면적(9,117.7㎡)의 1/2한도(4,558.8㎡)까지 갈음 • 획지1-2 :의무면적(4,881.5㎡)의 1/2한도(2,440.8㎡)까지 갈음
순부담(A+B+C+D)				11,620.7㎡ (24.87%)	7,251.9㎡ (29.99%)	• 획지1-1 : 24.87% 〉 19.52%(의무순부담) • 획지1-2 : 29.99% 〉 20.19%(의무순부담)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양여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함
※ 상기 면적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및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물 기부채납 사항

구 분	공공청사	비 고
① 연면적	1,750.0㎡	-
② 건축비	3,782,727원/㎡	•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공공업무사무소(1,500㎡~5,000㎡) : 3,782,727(부가세 제외)
③ 설치비용	6,619,772,250원	• ①연면적 X ②건축비
④ 부지가액	8,745,726원	• 기부채납 부지 내 평균공시지가 2배 적용
⑤ 환산부지면적	756.96㎡	• ③설치비용 ÷ ④부지가액
⑥ 토지면적	666.60㎡	• 공공청사 별도부지 조성(기존 부지면적(대토) 제외 기부채납)

구 분	공공청사	비 고
총 제공면적	1,423.5㎡	• ⑤환산부지면적 + ⑥토지면적

다) 건축물 높이계획

구 분		용도지역	높이기준	비 고
신설	획지1	준주거지역	120m 이하 (40층 이하) *구간별 층수제한(20~40층)	

※ 획지2,3,4,5는 관계법령에 따름
* 층수규제구간 외 전체지역 문화재 앙각기준 적용(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2 적용)
- 4대문 밖의 국가지정유산 : 보호구역 경계 지표에서 7.5m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로부터 3m - 단, 백범로변 5m, 금양초교변 5~10m	결정도 참고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3m - 그 외 부분 휴게공간 조성	결정도 참조
		* 조성지침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동일한 포장재료로 단차없이 조성 - 전면공지 내에는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 설치불가 다만, 차량 진·출입 금지를 위해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때, 조경을 위한 식수등의 설치는 허용함	
	공개공지	• 백범로변 1개소 지정 : 1,000㎡ 이상	
		* 조성지침 - 공개공지의 바닥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 권장	
통로	공공 보행통로	• 남북방향(12m) 1개소, 동서방향(8m) 1개소 설치	
		* 조성지침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및 지역권 설정 (지역권자 : 용산구, 용산구-조합 간 합의서 체결 예정) -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바닥 재료 및 포장 사용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백범로, 효창원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존치지역 제외)	결정도 참조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변경)
4. 정비계획 결정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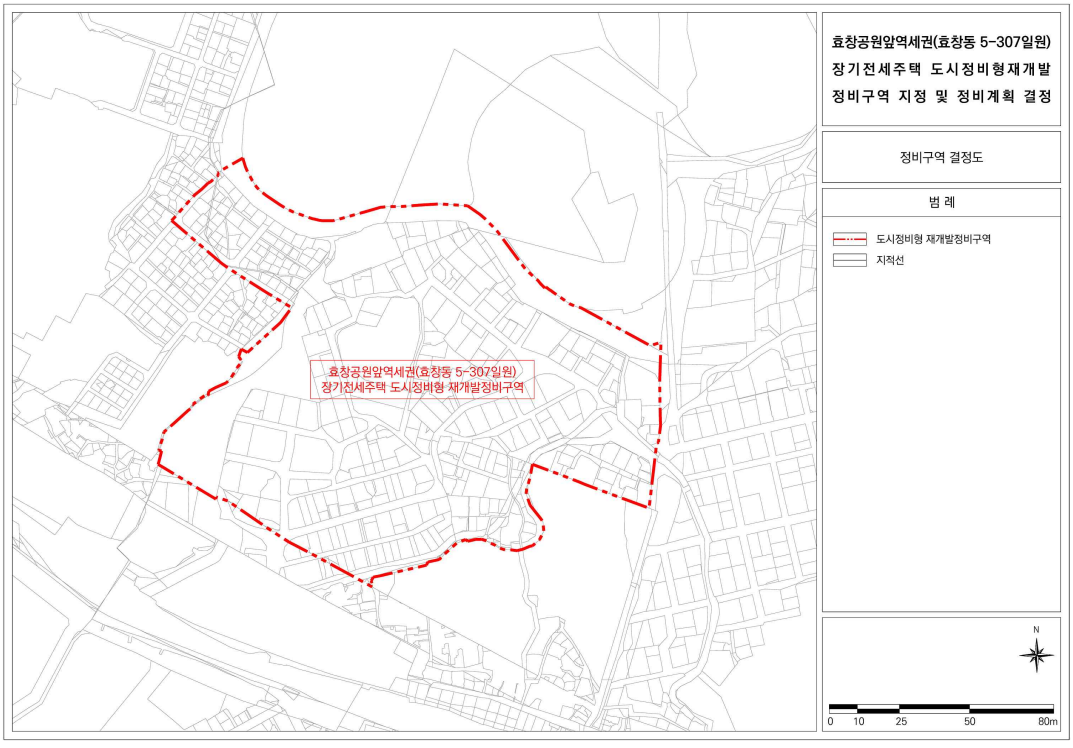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Ⅴ. 고시 관련 세부 내용은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0)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4)에 관계 도서를 비치합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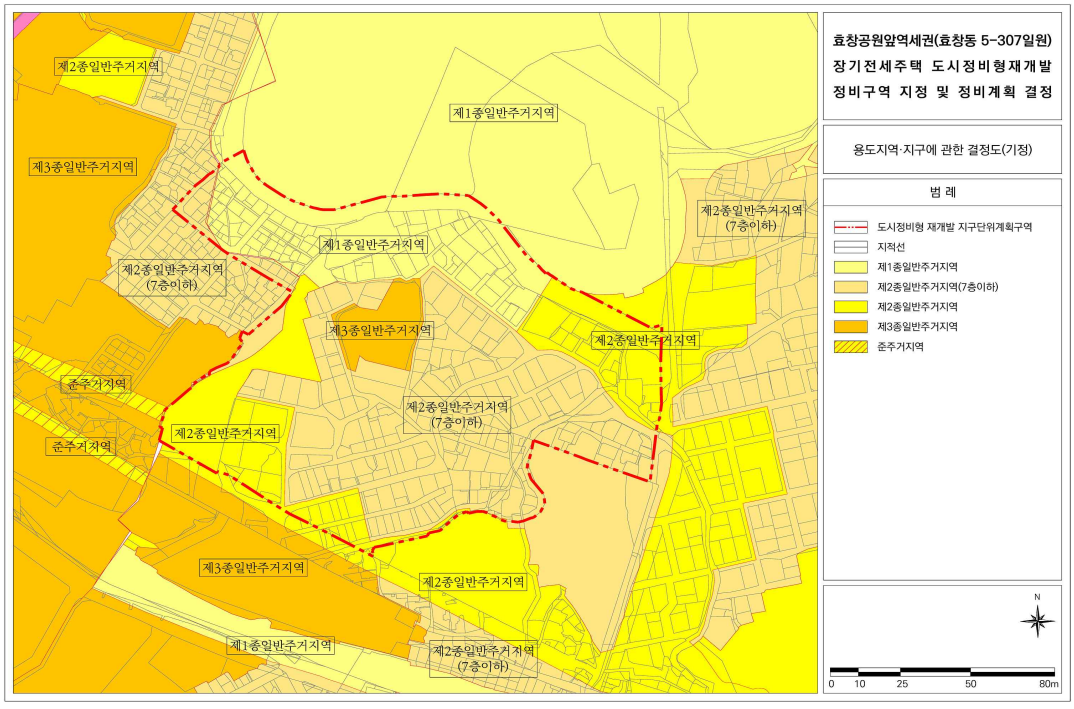
□ 관련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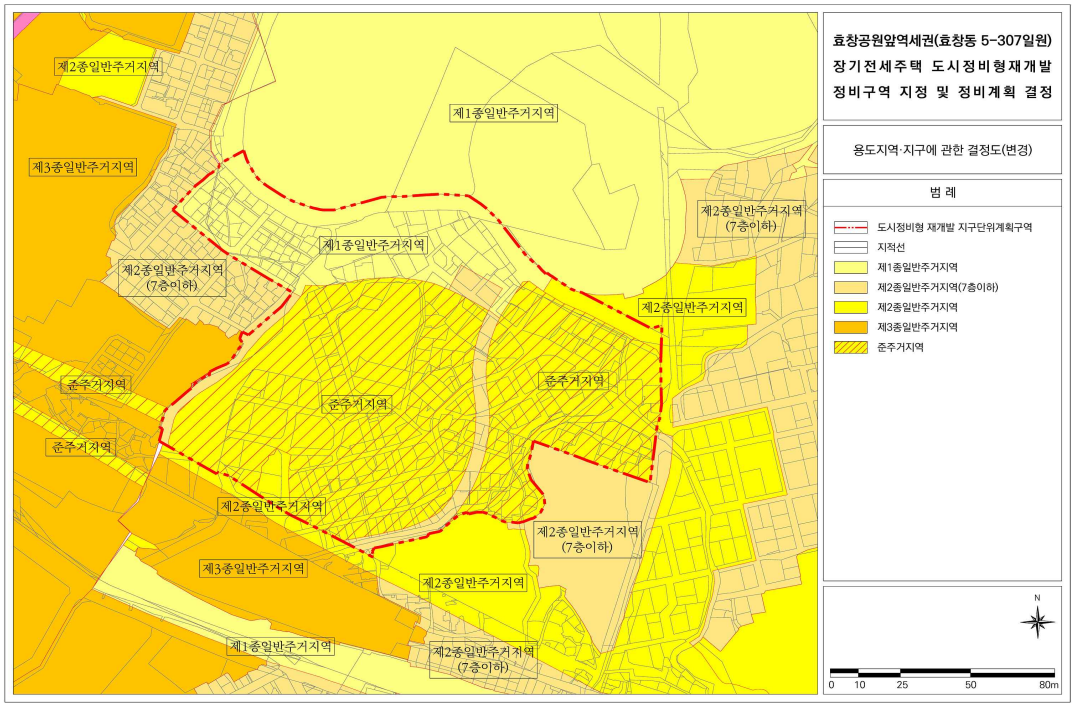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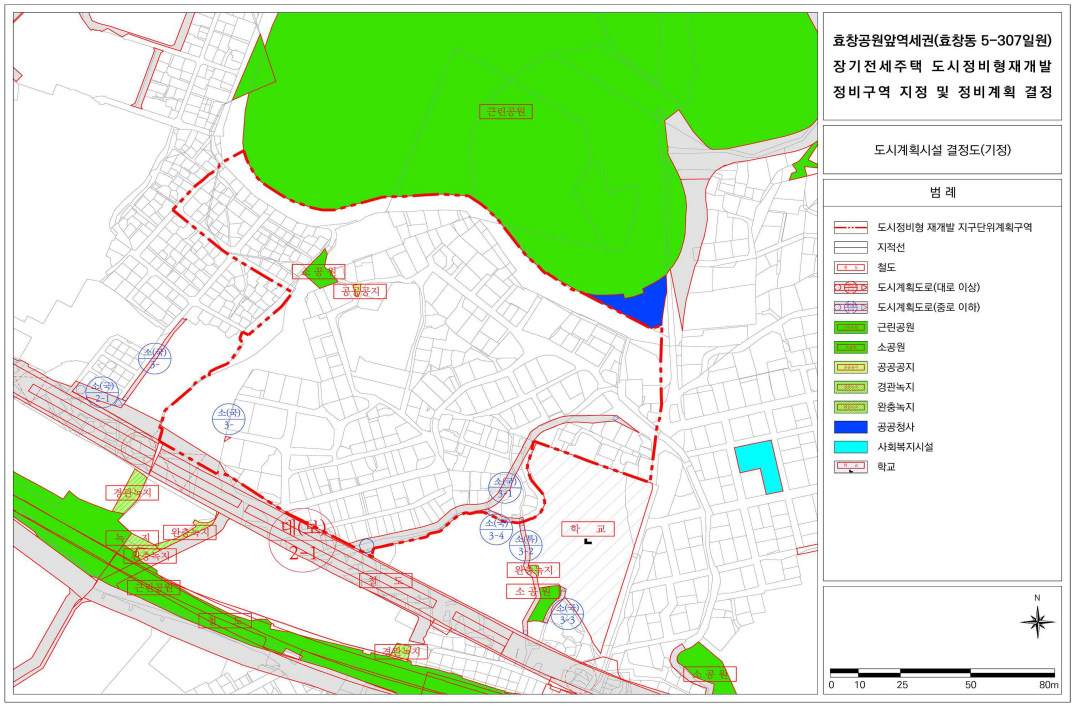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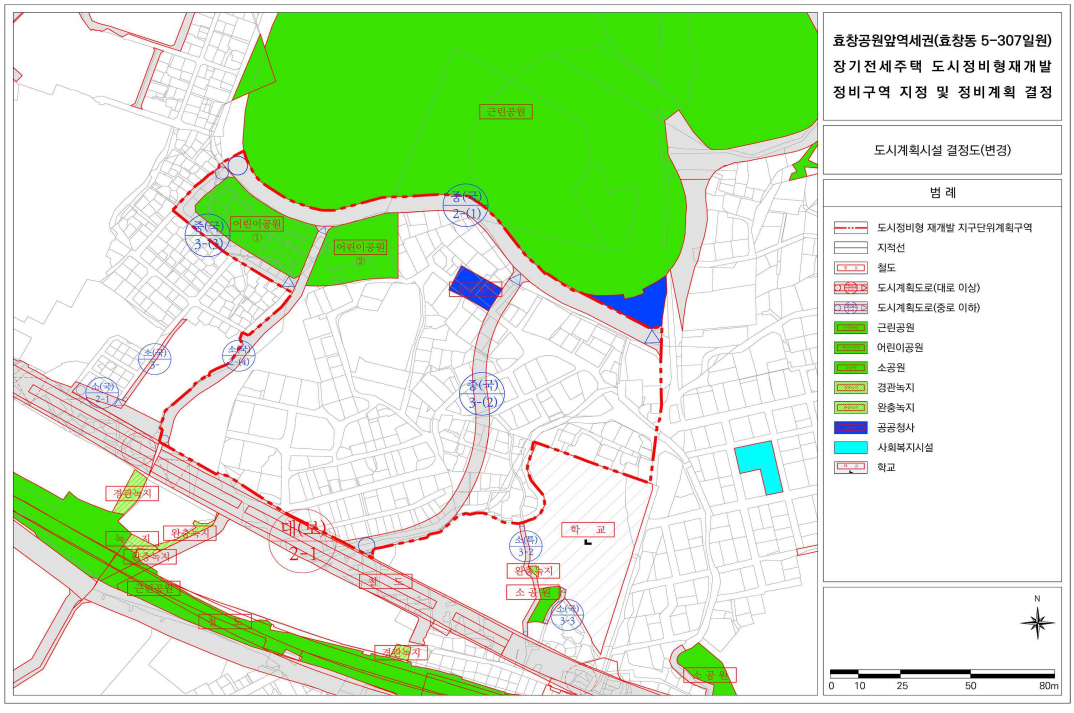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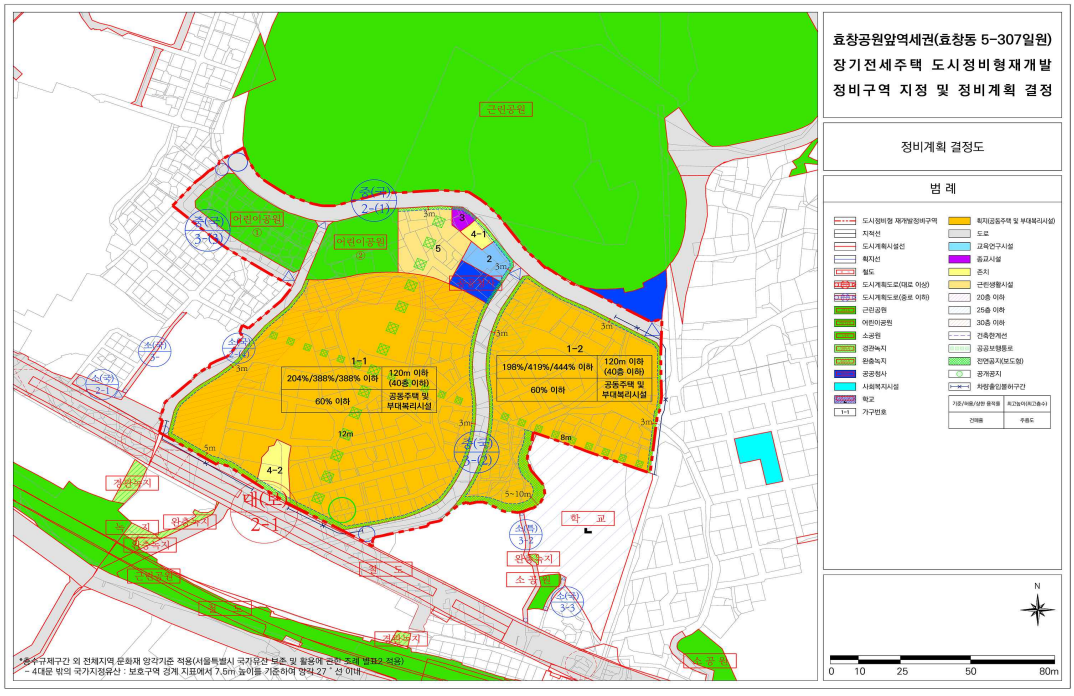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 정비계획 결정도 >



- 이 하 여 백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11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제1항에 의거, 반환기한이 5년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16.~2026. 4.30.(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 제1항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별첨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관,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15)

반환기한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

연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1	원천공제액	2015-01-20	2015년 1월 국민연금(공무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5-07-31	5,000
2	원천공제액	2015-05-07	2015년 4월 의료보험(시직원)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5-11-30	240
3	원천공제액	2016-04-19	2016년 4월 건강보험료 납부(시직원)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7-04-19	490
4	원천공제액	2016-04-20	2016년 4월 연말건강보험료 납부(공무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7-04-20	900
5	원천공제액	2017-04-25	2017년 4월 건강보험료 납부(청경)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8-04-26	480
6	원천공제액	2017-07-20	2017년 7월 고용보험료 납부(공무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8-07-06	180
7	원천공제액	2017-09-30	고용보험 납부(시간선택제)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8-09-18	10,860
8	원천공제액	2017-11-17	고용보험 납부(시간선택제)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8-11-19	7,270
9	원천공제액	2018-01-18	고용보험 납부(청경)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9-01-18	5,150
10	원천공제액	2018-01-18	퇴직급여 지급(촉탁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9-01-18	3,140
11	원천공제액	2018-02-19	고용보험 납부(청경)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9-02-19	5,150
12	원천공제액	2018-04-19	의료보험 납부(청경)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9-04-19	350
13	원천공제액	2018-04-19	2018년 4월 고용보험 연말정산금 납부(공무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9-04-19	620,740
14	원천공제액	2018-05-17	건강보험 연말정산 납부(4월) (공무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9-05-17	635,990
15	원천공제액	2018-07-06	2018년 6월 건강보험 납부(공무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19-06-18	43,230
16	원천공제액	2019-01-17	퇴직급여 지급(촉탁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20-01-14	162,010
17	원천공제액	2019-01-17	2019년 1월 국민연금 납부(공무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20-01-15	1,750

연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18	원천공제액	2019-01-17	2019년 1월 건강보험 납부(촉탁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20-01-15	410
19	원천공제액	2019-02-19	2019년 2월 정산주민세 납부(시간선택제)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20-02-19	2,340
20	원천공제액	2019-04-12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납부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20-04-11	28,900
21	원천공제액	2019-09-16	2019년 9월 고용보험 납부(공무직)	성동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2020-09-16	7,540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5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 음 -

1.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2. 공고 내용 : ’26년 1월~3월 서울특별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
 - 신규등록 74건, 변경등록 16건 ※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공고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27)

붙임 1. 기부금품 모집등록 1부.
2.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부. 끝.

□ 기부금품 모집등록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56	돌고도네이션	리찰스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2층 257호	국내 다양한 취약 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 돌봄, 자립, 교육 및 긴급 구호 활동 등	1,000	2026-1-2	2026-12-31	2027-12-31
2026-57	사단법인 메디엑세스	이재훈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1길 70, 지하1층	지구촌 보건, 의료 사업	319.205	2026-1-2	2026-12-31	2027-12-31
2026-58	재단법인 기쁨나눔	안정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5길 13, 1,2층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사업	900	2026-1-2	2026-12-31	2027-12-31
2026-59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조용중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278, 4층	해외 인도적 지원, 지역사회 발전, 국내 이주민 정착 및 생계 지원 사업	100	2026-1-10	2026-12-31	2027-1-10
2026-60	사단법인 좋은변화	홍민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8, 1층 105호	국내외 취약계층 생계, 교육, 보건지원 및 사회공헌 협력 사업	1,000	2026-1-2	2026-12-31	2027-12-31
2026-61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윤기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소외이웃 보호 및 지원	990	2026-1-12	2026-12-31	2027-12-31
2026-62	공정한사회를 바라는의사들의모임	박지용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38, 203호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공익적법률대응 및 정책대안 연구, 포럼, 대국민 캠페인	40	2026-1-12	2027-1-11	2028-1-1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63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김현집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자유회관	국내 · 외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아동 · 청소년 생활, 자립, 교육, 문화생활 등 지원	1,000	2026-1-12	2026-12-31	2027-12-31
2026-64	사단법인 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한원택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61길 4, 1층	국내외 재난 · 재해 지역 지원, 이주민지원 국제 구호 물류 운영, 난민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글로벌 공공외교 및 인도주의 활동	990	2026-01-12	2026-12-31	2027-12-31
2026-65	사단법인 뉴스타파 함께센터	김동현	서울시 중구 퇴계로 212-13, 4층	탐사언론인과 독립매체 육성을 위한 스쿨, 연수,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500	2026-01-12	2026-12-31	2027-12-31
2026-66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길 12, 지하1층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인권, 평화를 위한 활동	300	2026-01-17	2027-01-16	2028-01-16
2026-67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6층	서울시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틈새 위기가구 생계완화 및 저소득 복지 지원	100	2026-01-20	2027-01-19	2028-01-19
2026-68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	방정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16층, 1604호	국내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과 해외 저소득국가 아동 교육, 문화, 생계, 지원 등	770	2026-01-14	2026-12-31	2027-12-31
2026-69	사단법인 아디	박상훈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1207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모금	500	2026-01-14	2026-12-31	2027-12-3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70	국제기후종교 시민네트워크	김종화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68, 5층	스리랑카-인도네시아 기후재난 회복 연대 기금 모금	133.2	2026-01-14	2026-04-30	2026-12-31
2026-71	사단법인 예닮블록	송인명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602호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 지원, 취약 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 및 복지 지원, 사회적 취약 계층 복지 지원,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100	2026-01-14	2026-12-31	2027-12-31
2026-72	재단법인 삼성꿈장학재단	김우승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20층	교육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금 지원	24	2026-01-22	2026-12-24	2028-01-21
2026-73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 연합회	김명희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8, 210호	저출생문제해결을 위한 난임예방, 상담, 극복교육,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254.102.6	2026-02-01	2026-12-31	2027-12-31
2026-74	재단법인 환경재단	최열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7층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 개선 활동 :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국내외 지역, 개인 및 단체 지원	1,000	2026-01-16	2026-12-31	2027-12-31
2026-75	재단법인 한국암웨이 미래재단	조훈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6길 15, 2층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지원	600	2026-01-16	2026-12-31	2027-12-31
2026-76	사단법인 손끝으로여는 세상	정미화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36, 상가501동 B109호	시각장애인들의 정보문화 취득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점자도서관 운영비 등 모금	25	2026-01-16	2027-01-15	2028-01-15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77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김도종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소외계층 지원	120	2026-01-23	2027-01-22	2027-12-31
2026-78	사단법인 웜글로벌코리아	김종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13, 6층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 및 해외봉사단 파견, 해외 긴급구호 사업, 해외기관과 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및 문화 교류 사업, 국내외 취약계층 자립 지원 사업 등	900	2026-01-23	2026-12-31	2027-12-31
2026-79	재단법인 넷마블문화재단	도기욱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14층	지역사회 나눔 사업	80	2026-01-23	2026-12-31	2027-12-31
2026-80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김영준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9길 135, 상가1동 101호 평화박물관	생명, 인권, 평화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조사연구 사업	300	2026-01-23	2027-01-22	2028-01-22
2026-81	사단법인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3, 1007호	사육곰 매입 구조 및 돌봄, 사육곰 농가 내 사육곰 복지 향상 지원	990	2026-01-23	2027-01-22	2028-01-22
2026-82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손병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5, 501호	국가 발전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한 역사 연구 및 교육, 정책 연구를 통한 국회 입법활동 기여, 국제 교류 및 학술 사업 추진, 한국 사회 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공론 형성 및 아카데미 운영	99	2026-02-02	2026-12-31	2027-12-31
2026-83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	임혜숙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 26, 3F	자살 예방 관련 사업	400	2026-02-02	2026-12-31	2027-03-3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84	사단법인 따뜻한하루	김광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28-10 , 제비동 111호	취약계층(한부모, 저소득, 미혼모 등) 및 지역사회 복지 지원, 취약계층 생계, 교육, 긴급지원 등	900	2026-02-02	2027-02-01	2028-02-01
2026-85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	조경진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53, 심오피스 2층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인프라 구축, 생물 다양성을 위한 공원녹지 질 개선, 모두에게 공평한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 모금	100	2026-02-06	2026-12-31	2027-12-31
2026-86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엔젤스헤이븐	국내외 생활 시설 거주 장애인과 어린이 및 취약계층 구호사업	500	2026-02-06	2026-12-31	2027-12-31
2026-87	사단법인 에코피스아시아	김원호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1길 5, 숲센터 4층	아시아 생태계 복원 및 국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캠페인	500	2026-03-01	2027-02-28	2028-02-29
2026-88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김홍남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5길 9	시민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사업	30	2026-02-07	2027-02-06	2028-02-06
2026-89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김정환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 106호	국내취약계층 지원 사업, 저개발국가 국제개발협력 사업,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	900	2026-02-12	2026-12-31	2027-12-31
2026-90	사단법인 동물사랑네스트	김진아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가길 7-3, 3층	동물 구조, 치료, 보호, 입양, 유기묘 쉼터 운영	291	2026-02-12	2027-02-11	2028-02-1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91	사단법인 생명의숲	허상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201호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위한 도시숲 조성 및 캠페인	100	2026-02-12	2027-02-11	2028-02-11
2026-92	사단법인 해피맘	조태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1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노인, 여성을 위한 교육·후원·문화예술지원 사업	650	2026-02-12	2026-12-31	2027-12-31
2026-93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송필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5, 시몬타워 6층	장애인 및 북한 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노인 등 지원 및 사회재난 지원	990	2026-02-12	2026-12-31	2027-12-31
2026-94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최종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사회적기업 설립 및 경영지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회 취약계층 지원	990	2026-03-01	2027-02-28	2028-02-29
2026-95	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 인권협회	오선애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 5층	장애인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권익신장	1,000	2026-03-10	2027-03-09	2028-03-09
2026-96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	전진경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동물보호 사업	680	2026-02-12	2026-12-31	2027-12-31
2026-97	사단법인 다문화아이티	김용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5	다문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IT, AI 교육으로 디지털 역량 향상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 및 정보격차 해소	33	2026-02-12	2026-12-31	2027-12-3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98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	정은주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3길 65, 예원비전센터 6층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40	2026-02-12	2026-12-31	2027-06-30
2026-99	벗들의벗	박일우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326, 302호	청소년 지속가능 자립 지원	60	2026-02-20	2027-02-19	2028-02-19
2026-100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	김대준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506호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176.57	2026-02-20	2027-02-19	2027-03-31
2026-101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	전선영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1길 26, 215호	아동, 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취약 계층 대상 보호·돌봄·자립·회복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	900	2026-02-20	2027-02-19	2028-02-19
2026-102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	허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5, 6층	화상경험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200	2026-02-23	2027-02-22	2028-02-22
2026-103	사단법인 평화나무	김용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12, 3층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기간 언론 집중 모니터링 및 가짜뉴스 감시활동	120	2026-03-01	2026-06-02	2026-10-31
2026-104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	김성환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저소득 노인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700	2026-03-01	2027-02-28	2028-02-28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105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유재수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7층	저소득층 장기부전 환자 대상 장기 이식 치료비 통합지원	80	2026-03-01	2026-12-31	2027-12-31
2026-106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오정현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902호	국내 사회재난 및 국외 재난재해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사업	800	2026-03-09	2027-03-08	2028-03-08
2026-107	롤링주빌리	박선종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26, 402호	금융취약계층 채무 상담을 통해 협상 및 조정을 추진하고, 해결방안 모색, 불법 사금융 피해 및 추심행위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교육, 행사 등 추진, 불합리한 소비자 금융제도 개선방안 제안 및 홍보	250	2026-03-15	2027-03-14	2028-03-14
2026-108	김복동의희망	김서경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23-1, 202호	재일동포 사회와 국내외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차별,인권침해,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 교육, 문화홍보사업	278	2026-03-05	2026-12-31	2027-12-31
2026-109	카인더	진준영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55, 309-502	불우이웃돕기 및 지원사업	500	2026-03-05	2027-03-04	2028-03-04
2026-110	재단법인 숲과나눔	장재연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6층	환경 · 안전 · 보건 분야의 인재양성 국가사회적난제의대안개발과실천 사회각구성체사이의소통과협력을위한활동	500	2026-03-05	2026-12-31	2027-12-31
2026-111	사단법인 메디피스	채종일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30, 401호	국내 · 외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200	2026-03-05	2027-03-04	2028-03-04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112	사단법인 따뜻한엄마고양이협회	고형숙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37-7, 501호	유기묘 구조, 치료, 봉사 및 입양 연계 지원 사업	900	2026-03-05	2027-03-04	2027-03-04
2026-113	재단법인 진선재단	박선영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1706호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문화사업 활성화	900	2026-03-13	2026-12-31	2027-12-31
2026-114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권선진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비장애인의 장애공감을 위한 공익사업 운영	500	2026-03-13	2026-12-31	2027-12-31
2026-115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정영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1403호	국내 위기가정 및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	500	2026-03-13	2026-12-31	2027-12-31
2026-116	이웃환경보건운동본부	김영중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나길 19-12, 5층 1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락, 환경보건 용품 등 지원	500	2026-03-16	2027-03-15	2028-03-15
2026-117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빈디야바차니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301호	요르단, 말라위, 잠비아, 레바논 등 전세계 51개국에서 긴급구호, 국제적 구제사업, 개발사업 및 옹호사업	1,000	2026-04-01	2027-03-31	2028-03-31
2026-118	사단법인 고양이보호협회	박선미	서울시 양천구 등촌로 58	길고양이 및 유기묘 보호사업	610	2026-04-01	2027-03-31	2028-03-3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119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박진원	서울시 중구 소공로 34	국내외 소외 계층 및 공익 목적 사업 지원	990	2026-04-01	2027-03-31	2028-03-31
2026-120	오늘의행동 사회적협동조합	정경훈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21길 10, 2층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에게 파라메디컬 타투 시술 및 심리 상담 지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1인 공방에 산재예방 및 응급처치를 위한 '그린손가락 안전키트 ' 보급	44.485	2026-03-23	2026-12-31	2027-03-23
2026-121	사단법인 52패밀리	이지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7, 2층	아동양육시설의 어린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구제사업	899.45	2026-03-23	2026-12-31	2028-03-22
2026-122	스프링샤인 사회적협동조합	김종수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식 개선 활동 추진	50	2026-03-23	2026-04-30	2028-03-22
2026-123	재단법인 평화재단	최석호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42, 10층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을 통한 개인의 행복추구 및 사회적 문제해결, 기부 문화 확산	30	2026-03-30	2026-12-31	2027-02-28
2026-124	재단법인 한베평화재단	강우일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16, 4층	베트남전 관련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 · 출판 · 학술 활동, 피해자 지원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 인권회복, 한 · 베 문화 예술교류, 평화 · 인권 교육	300	2026-03-30	2027-03-29	2028-03-29
2026-125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정상율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708호	국내외 자연,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구호 사업 및 재난취약계층 지원	1.000	2026-03-30	2027-03-29	2027-12-3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126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인터내셔널	송필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5, 6층	국내외 참전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가정 지원 및 해외 국제개발사업 지원	300	2026-03-30	2026-12-31	2027-12-31
2026-127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세움	허인영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위기수용자 자녀 경제적, 심리 정서적 지원, 수용자 자녀 관련 조사 연구 및 교육사업, 수용자 자녀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국내 · 외 단체와의 교류활동 진행	500	2026-03-30	2027-03-29	2028-03-29
2026-128	사단법인 위키코리아	임귀복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3길 27, B동 지하1층	위기 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미혼모(부)의 긴급한 생계 필요 충족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800	2026-03-30	2027-03-29	2028-03-29
2026-129	사단법인 평화의숲	류영재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7길 29, 501-1호	국내 · 외 숲, 정원조성 및 환경, 동식물 보호를 위한 지원과 시민참여 사업	500	2026-04-05	2027-03-31	2028-03-31

(다음장에 계속)

□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5-129-1	재단법인 넷마블문화재단	도기욱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38, 14층	지역사회 나눔 사업 운영	80	2025-4-21	2025-12-31	2026-12-31
2026-57-1	사단법인 메디엑세스	이재훈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1길 70, 지하1층	지구촌 보건, 의료 사업	319.205	2026-1-2	2026-12-31	2027-12-31
2026-66-1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12, 지하1층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인권, 평화를 위한 활동	350	2026-1-17	2027-1-16	2028-1-16
2025-144-1	사단법인 위드	양일선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47, 3층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교육 및 청소년 구호구제 사업	514	2025-6-10	2026-6-9	2027-6-9
2025-37-1	재단법인 한국유방건강재단	노동영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핑크리본 캠페인(유방 건강의식 및 유방암 예방의식 고취)	900	2025-1-1	2025-12-31	2026-12-31
2026-9-1	재단법인 한국유방건강재단	노동영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핑크리본 캠페인(유방 건강의식 및 유방암 예방의식 고취)	900	2026-1-1	2026-12-31	2027-12-31
2025-47-1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박형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900	2025-1-10	2026-1-9	2026-12-3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5-48-1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박형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900	2025-1-10	2026-1-9	2026-12-31
2026-31-1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박형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900	2026-1-10	2027-1-9	2027-12-31
2026-32-1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박형철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9길 6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900	2026-1-10	2027-1-9	2027-12-31
2024-128-1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빈디야 바차니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성공회빌딩 본관 301호	51개국 긴급구호, 국제적 구제사업 및 개발사업	1,000	2024-7-5	2025-3-31	2026-3-31
2025-130-1	재단법인 옥스팜코리아	빈디야 바차니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성공회빌딩 본관 301호	51개국 긴급구호, 국제적 구제사업 및 개발사업	1,000	2025-4-24	2026-3-31	2027-3-31
2025-132-1	국기원	노순명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세계태권도한마당 후원금	1,000	2025-5-8	2025-8-31	2025-12-31
2026-34-1	사단법인 대한항암요법 연구회	안진석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1501호, 1502호	암에 관한 다기관 임상시험 수행 및 지원, 암 임상연구 홍보사업	120	2026-1-1	2026-12-31	2027-12-31

등록 번호	모집자명	대표자	주소	모집목적	모집목표액 (백만원)	모집시작일	모집종료일	사용기한
2026-100-1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	김대준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506호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	176.57	2026-2-20	2027-2-19	2027-3-31
2025-182-1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김병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사업, 구호사업 지원, 나눔문화 확산	91	2025-11-1	2026-10-31	2026-12-31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7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5. 1.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8016697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29길 6-21	수도요금	2023년 3월 등 17납기	17회	327,5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29길 6-21	주식회사 지***징	134511-0******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63번길 14, 나동 202호		327,550원	2026. 3. 9.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상열(☎ 02-3146-45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9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4. 29.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2468379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8길 42, 201호	수도요금	2024년 10월 등 9납기	9	486,12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건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8길 42, 201호	조*묵	2회 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8길 42, 201호	486,120원	2026. 4. 30.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강경문(☎02-3146-33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98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6.4.16.~2026.4.30.(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6건																
1	20233824	174호6899	셀토스	000047339214201 20251225002613	잠실역	0004:19	2025-11-27	16:10	2025-11-27	20:29	20,800	0	20,800	김*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6길	기타	2026-04-21
2	20234022	199호5374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1225000809	신설동	0000:42	2025-11-28	16:49	2025-11-28	17:31	1,100	0	1,100	박*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9길	기타	2026-04-21
3	20234131	175허4331	그랜저 하이브리드(GRAND EUR HYBRID)	000047339214201 20260125004231	구파발역	0000:45	2025-12-08	10:23	2025-12-08	11:08	800	0	800	주*회* *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폐문부재	2026-04-21
4	20234185	240부7608	A5 Sportback 40 TFSI quattro	000047339214201 20260125003726	신설동	0001:54	2025-12-16	11:21	2025-12-16	13:15	5,900	0	5,900	(*)*광 *산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이사불명	2026-04-21
5	20234240	101호7223	K5	000047339214201 20260125003182	사당노외	0001:39	2025-12-24	06:41	2025-12-24	08:20	4,000	0	4,000	정*섭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65번길	수취인불명	2026-04-21
6	20234352	166호6045	레이	000047339214201 20260125002180	구파발역	0013:43	2025-12-17	07:45	2025-12-17	21:28	2,400	0	2,400	김*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수취인불명	2026-04-2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11호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정기) 변경등록을 미이행하여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동법 제6조의4제1항 제3호) 및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동법 제6조의4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통지문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호(대표자명)	영업표지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1	(주)더라이트웨이(조*혁)	프로젝트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37	정기변경 미이행	기타
2	㈜두나미스에프앤비 (안*찬)	SALLER MARKET(샐러마켓)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30	정기변경 미이행	이사불명
3	(주)바구니(박*수)	레몬비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25	정기변경 미이행	기타
4	(주)별빛강물(고*진)	바틀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7	정기변경 미이행	기타
5	(주)비엠알홀딩스(이*천)	약선보식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19길 24	정기변경 미이행	기타
6	(주)온어힐(김*남)	더피터커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11	정기변경 미이행	수취인불명

연번	상호(대표자명)	영업표지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7	㈜와우에프앤에스 (최*원)	와우곱창, 와우버거, 와우편의점, 와우감자탕, 와우호프, 와우소곱창, 와우피자, 와우커피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길 39	정기변경 미이행	수취인불명
8	(주)일가브라더스(한*환)	뚱스밥버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49	정기변경 미이행	수취인불명
9	(주)제레미코리아(장*혁)	제레미20(Jeremie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정기변경 미이행	이사불명
10	㈜제이엔에프아이티씨 (이*훈)	스펙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정기변경 미이행	기타
11	(주)프랜조이(이*환)	포25(PHO25)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75-8	정기변경 미이행	기타
12	㈜플레인브랜드리테일 (이*석)	PLAIN BRAND(플레인브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명길 26	정기변경 미이행	수취인불명
13	㈜플렉스에이앤디 (안*근)	와이낫떡볶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77	정기변경 미이행	기타
14	엠제이라인(유*훈)	삼꾸미집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 38-9	정기변경 미이행	이사불명
15	맘맘테이블(김*정)	맘맘테이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4길 33	정기변경 미이행	이사불명
16	성대생우동짜장(오*진)	성대생우동짜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21	정기변경 미이행	기타

연번	상호(대표자명)	영업표지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17	㈜에스티씨센트럴키친 (박*하)	순수치킨, 잇츠카츠, 정답떡볶이, 봄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나길 20	정기변경 미이행	수취인불명
18	이건(F&B)에프앤비 (안*식)	서울식당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6나길 35-12	정기변경 미이행	수취인불명
19	폴프랭크카페코리아㈜(송*록)	폴프랭크카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10	정기변경 미이행	폐문부재
20	(주)건양물산(오*현)	건어무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0길 13	폐업	기타
21	(주)고컴퍼니(고*현)	빠스타그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폐업	수취인불명
22	㈜더블유씨엠인터내셔널 (원*환)	터치카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3길 66	폐업	이사불명
23	(주)더블유엔푸드(이*영)	똠팔이(TOM8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28	폐업	수취인불명
24	(주)더컴바인코리아(이*)	옥토넛무인키즈카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144	폐업	수취인불명
25	(주)디알오에프(김*창)	뽕도리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40-9	폐업	수취인불명
26	㈜라라라아일랜드 (이*영)	라라라서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9	폐업	기타

연번	상호(대표자명)	영업표지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27	(주)바인에프씨(김*훈)	셰프의국수앤육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27길 9	폐업	수취인불명
28	(주)베이커리라리(백*진)	카페라리(Cafe La Lee)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7길 22	폐업	수취인불명
29	㈜심플프로젝트컴퍼니(김*웅)	부타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4길 31-18	폐업	이사불명
30	(주)야베스코리아(김*식)	몬스터스시&사시미, 더바디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폐업	수취인불명
31	(주)육가온(은*동)	어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4	폐업	수취인불명
32	(주)케이브컴퍼니(박*준)	굴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26	폐업	수취인불명
33	(주)팔공키친(윤*준)	팔공냉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5	폐업	기타
34	(주)해골에프앤비(이*주)	해골피자(HAEGOAL PIZZA)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43	폐업	기타
35	(주)희다(강*훈)	카페희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31번길 97	폐업	폐문부재
36	꼼떼(주)(이*우)	꼼떼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317-14 2층	폐업	수취인불명

연번	상호(대표자명)	영업표지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37	소고산제일루(엄*태)	소고산제일루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폐업	기타
38	엠제이부티끄(주)(민*홍)	시카고뷰티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14	폐업	이사불명
39	주야맛남(최*묵)	주야맛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30	폐업	폐문부재
40	지니위니(차*화)	지니위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5길 23	폐업	수취인불명
41	퀸슈가링왁싱(문*음)	퀸슈가링왁싱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3길 21	폐업	수취인불명
42	피자하우스(조*호)	피자하우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15길 20	폐업	기타
43	㈜탑플레이트에프씨(이*준)	탑플레이스피씨카페(PC CAFE), 다다르다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25	파산	기타
44	㈜정우에프앤비(한*우)	휘카페(Whicafe)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59	폐업	기타
45	㈜샤이랜드(채*환)	샌드만난김밥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5	폐업	기타
46	㈜에이치앤비푸드(최*현)	우포키친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393-20	폐업	수취인불명

연번	상호(대표자명)	영업표지	주소	등록취소 사유	반송사유
47	아임퐁닭 주식회사 (이*용)	퐁닭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보완 미이행	수취인불명
48	㈜제이에프파트너스 (정*헌)	키팜, 고수의 운전면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1길 62	보완 미이행	기타

2. 제목: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실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기간 : 2026. 4. 16. ~ 2026. 4. 30.(15일간)

4. 내용

– 가맹본부는 제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영업표지에 대한 변경사항을 법령에 정해진 기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제1항 3호의 ‘중요사항 누락’으로 판단하여 등록기관의 직권으로 영업표지가 등록취소되며 동법 제6조의4제1항 4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도 해당 영업표지가 등록 취소됨.

– 우리시는 동법 각호에 해당되는 영업표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등기우편 발송), 수취인불명 및 이사(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한바 본 공시송달을 시행하고자 함

※ 등록취소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희망자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같은법 제33조 · 제35조 · 제41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 과징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귀사가 다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그 전에 정보공개서를 다시 등록해야 함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팀(02-2133-540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1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4. 30.(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프리마종합건설 (김연우)	건축공사업 01-47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6, 501호(삼성동, 엘지트윈텔)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9. 23.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6.5.8.~2026.10.7.)	법 제83조 제3호
㈜리브건설 (이진희)	건축공사업 01-56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20 , 4층(대치동) (대치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10. 13. 효력상실에 따른 말소	법 제10조	영업정지 5개월 (2026.5.8.~2026.10.7.)	법 제83조 제3호
㈜영선종합건설 (강동주)	건축공사업 01-4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4길 6 , 4층(역삼동) (역삼동)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 2025. 9. 23.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	법 제10조	영업정지 6개월 (2026.5.8.~2026.11.7.)	법 제83조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14호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심의 결과 공고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2026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의안건: 마곡지구 16단지 아파트 미술작품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2. 심의결과: 당선작 1작품

심의결과	작품명	작품 이미지	작가명
당선작	아름다운 비상(飛上)		곽호진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02-2133-9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18호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심의 결과 공고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미술작품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2026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의안건: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 미술작품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2. 심의결과: 당선작 1작품

심의결과	작품명	작품 이미지	작가명
당선작	COSMOS ASCENT		김규진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02-2133-9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19호

2026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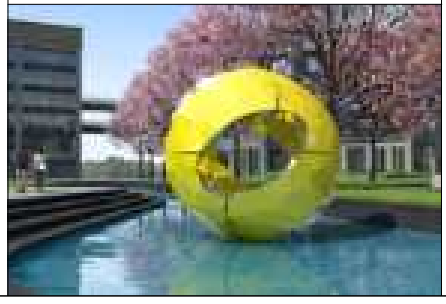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의일시: 2026. 4. 7.(화), 14:00
2. 심의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별관동 회의실
3. 심의대상: 일반안건 7건(11작품)
4. 심의결과: 승인 9작품, 조건부승인 2작품
5. 작품별 심의 결과: 별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02-2133-27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연번	심의 구분	건축물 위치	작품개요		심의결과
			분야	작품명	
1	3심	서초구 서초동 1448-1번지 일원	조각	미래로 피어오르다 	승인
2	재심	강동구 둔촌동 489	조각	겹의 빛, 피어나는 균형 	승인

연번	심의 구분	건축물 위치	작품개요		심의결과
			분야	작품명	
3-1	신규	서울시 망우동 506-1외 4필지	조각	Big City Life 	승인
3-2	신규		조각	Happy Cell 	승인
4-1	신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조각	사유의 공간 (Space of Thought) 	승인

연번	심의 구분	건축물 위치	작품개요		심의결과
			분야	작품명	
4-2	신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	미디어	Orbital Quiet 	승인
4-3	신규		조각	내면(Within) 	승인 (조건부)
			조건 : 배수타공에 대한 상세도면 제출		
4-4	신규		조각	생명의 씨앗(Seed of life) 	승인

<table>
<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심의
구분</th><th rowspan="2">건축물 위치</th><th colspan="2">작품개요</th><th rowspan="2">심의결과</th></tr>
<tr><th>분야</th><th>작품명</th></tr>
<tr><td>5</td><td>신규</td><td>동대문구
청량리동 368</td><td>조각</td><td>Rainbow Circle
  </td><td>승인</td></tr>
<tr><td rowspan="2">6</td><td rowspan="2">위치
변경</td><td rowspan="2">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원</td><td>조각</td><td>Flamingos
  </td><td>승인
(조건부)</td></tr>
<tr><td colspan="3">조건 : 아동이 작품에 매달리거나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 안내판 설치</td></tr>
<tr><td>7</td><td>위치
변경</td><td>중구 무교동
97번지</td><td>조각</td><td>정오의 만남II 1988
(Rendes-Vous at High noon II)
  </td><td>승인</td></tr>
</table>

2026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보고안건

연번	건축물 위치	작품개요		최초승인	보고사항
		분야	작품명		
1	서초구 잠원동 28-6번지 외 3필지	회화	The Whole towards the Hole 	2025년 제10차	경미한 위치 변경 - 중심점 기준 약 3.9m 이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2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4. 29.(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간 : 2026. 4. 30. ~ 2026. 5. 13.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7, E-mail : jieun1004@seoul.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jieun1004@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기한 : 2026. 5. 13.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조*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3나길 *1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2-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김*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길 *0-7,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2-20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김*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2-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4	김*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8*길 7-*5,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5	김*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6	정*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2*-6,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7	정*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7*2-1*,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8	복*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길 *2,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반송내역		발송물 구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9	박*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길 2*-6,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0	이*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1*길 *0,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1	이*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길 9*,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2	박*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3	김*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가길 *4,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4	신*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길 6,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5	김*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길 51,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보관기간경과	2026-03-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30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대상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관련 위반대상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아 대표자 자택으로 등기우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등본상 주소 확인하고 인근 보령소방서 업무협조로 직접송달 의뢰 하였으나 현장확인 시 부재로 송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4.16.(목)~2026.5.4.(월)

3. 통지사항
 1) 사전통지서 대상: 주식회사 아는소방씨엔씨(110111-8******) 【대표자: 심*연】
 2) 사무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28*, 18**호(로즈**빌딩)→ 실제 존재하지 않음
 3) 대표자 주소: 충남 보령시 흥곡천변로8*, ***동,****호(보령**LH*단지)
 4) 위반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위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서를 관계인에게 미제출)
 5) 부과금액: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6) 등기번호: 1078834581492, 1078834665204, 1078834731320, 1078834803837, 1078834855688, 1078834909579, 1078835045977 (과태료 사전통지서)
 7) 송달불능사유: 자택은 폐문부재, 회사는 존재하지 않음

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포함)를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아 대표자 자택으로 수차례 등기우편 및 문자전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보령소방서에 업무협조로 직접송달 의뢰하였으나 부재로 관리사무실에 전달을 부탁하고 귀가하는 등 송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져 공시 송달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76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3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4. 30.(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에이알지종합건설㈜ (이철승)	건축공사업 01-3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6 , 502호(개포동) (개포동)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일: 2025. 5. 12. - 위반사항: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내역: 영업정지 5개월 [2025. 6. 27.~2025. 11. 26.]	법 제10조	등록말소 (2026.5.15.)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4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부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5-10-16 07:15:21	43러7316	최*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2	남산3호터널	2025-10-16 09:31:03	109하6844	주식회사 제***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789번길
3	남산3호터널	2025-10-16 09:48:32	183더1737	H***G X**G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나길
4	남산3호터널	2025-10-16 11:01:14	50루0393	강*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	남산1호터널	2025-10-16 11:10:35	170오8729	전*아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백송길
6	남산1호터널	2025-10-16 13:05:44	224두9407	박*규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147번길
7	남산3호터널	2025-10-16 13:25:19	349저9218	보****인알*****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	남산1호터널	2025-10-16 14:50:00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9	남산1호터널	2025-10-16 15:41:49	28마5376	정*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37길
10	남산3호터널	2025-10-16 16:13:48	59오0218	주식회사 엘***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11	남산3호터널	2025-10-16 16:21:23	08마3944	주식회사 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9길
12	남산1호터널	2025-10-16 16:36:46	286마3233	M**********R O******S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13	남산1호터널	2025-10-16 16:47:38	58마7386	김*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7길
14	남산3호터널	2025-10-16 17:28:02	41두8916	P*K V******R A***********H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15	남산1호터널	2025-10-16 18:30:07	60다7981	박*준	경기도 광주시 태재로
16	남산3호터널	2025-10-16 18:59:05	27러4706	윤*욱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2나길
17	남산3호터널	2025-10-16 19:27:07	349고6374	박*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757번길
18	남산1호터널	2025-10-16 19:29:48	160모5759	(주)엠****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19	남산3호터널	2025-10-16 20:17:12	125호6067	주식회사 바***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0	남산3호터널	2025-10-16 20:27:47	101허4480	주식회사 유***카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1	남산3호터널	2025-10-16 20:55:44	56누1058	(주)티***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5길
22	남산1호터널	2025-10-17 10:45:37	64나0273	김*욱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가길
23	남산1호터널	2025-10-17 11:01:23	42가6656	W*N G********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24	남산3호터널	2025-10-17 11:42:15	61로6728	박*식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창동로
25	남산1호터널	2025-10-17 11:44:45	199보4591	황*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26	남산3호터널	2025-10-17 12:35:52	16어9753	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6길
27	남산3호터널	2025-10-17 13:08:38	250루7474	성*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8	남산3호터널	2025-10-17 13:37:47	273나8527	조*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아침길23번길
29	남산3호터널	2025-10-17 13:40:38	241나3794	박*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30	남산1호터널	2025-10-17 13:49:59	23오1092	K*****V A********D A********B U**I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31	남산1호터널	2025-10-17 15:54:39	181저2880	K**N J****D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4번길
32	남산1호터널	2025-10-17 16:09:12	185무2346	박*순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1길
33	남산1호터널	2025-10-17 16:41:47	24수9625	H*N S****Y**N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5길
34	남산3호터널	2025-10-17 16:50:28	221주9059	한*원	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35	남산1호터널	2025-10-17 17:03:47	62루6454	강*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71길
36	남산1호터널	2025-10-17 17:09:37	34두2579	강*건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길
37	남산1호터널	2025-10-17 18:49:33	109호1361	뉴****카(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8	남산1호터널	2025-10-17 18:58:29	47부9187	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133번길
39	남산1호터널	2025-10-17 18:59:30	115호5672	에***카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0	남산1호터널	2025-10-17 19:42:05	60다7981	박*준	경기도 광주시 태재로
41	남산1호터널	2025-10-17 20:38:50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5길
42	남산1호터널	2025-10-17 20:40:19	300서2591	김*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43	남산1호터널	2025-10-17 20:52:13	119나3791	G****R M*****L A*****Y J*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44	남산3호터널	2025-10-20 08:18:56	33오2909	조*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길
45	남산1호터널	2025-10-20 09:59:00	122누3450	(주)특**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6	남산3호터널	2025-10-20 10:28:32	23더4364	주식회사 원******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3길
47	남산3호터널	2025-10-20 11:42:39	10서3787	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48	남산1호터널	2025-10-20 11:46:30	05나4087	V*********V F*****H A***L U**I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8번길
49	남산1호터널	2025-10-20 13:01:27	252도8180	김*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로
50	남산3호터널	2025-10-20 14:06:11	322러7679	이*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51	남산1호터널	2025-10-20 14:35:03	39라8889	김*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52	남산3호터널	2025-10-20 14:42:10	144가9079	주식회사 예**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로
53	남산1호터널	2025-10-20 15:20:53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54	남산1호터널	2025-10-20 15:35:02	171어4056	김*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55	남산3호터널	2025-10-20 15:42:49	182허1399	(주)렌****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56	남산1호터널	2025-10-20 15:46:16	291주8230	한*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253번길
57	남산3호터널	2025-10-20 16:53:57	102노2697	Q**N M*****G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1마길
58	남산1호터널	2025-10-20 18:00:52	134머3252	김*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59	남산1호터널	2025-10-20 18:01:15	142누3446	김*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60	남산1호터널	2025-10-20 18:24:04	190어0280	김*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470번길
61	남산1호터널	2025-10-20 18:43:06	540어0368	Z***G T**N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62	남산1호터널	2025-10-20 18:43:11	154호2307	(주)강***카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63	남산3호터널	2025-10-20 19:06:19	186루1030	박*자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79번길
64	남산3호터널	2025-10-20 19:10:50	25머7057	정*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81번길
65	남산1호터널	2025-10-20 19:37:29	386노9120	금*현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66	남산1호터널	2025-10-20 20:13:06	146하4979	주식회사 비*******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67	남산1호터널	2025-10-20 20:56:56	23모9287	D******V U*****K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아낙고개길4길
68	남산3호터널	2025-10-21 10:03:20	39도5640	이*윤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69	남산1호터널	2025-10-21 10:39:47	25노0911	윤*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70	남산1호터널	2025-10-21 10:39:49	124조8444	보**코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1	남산1호터널	2025-10-21 10:53:13	04오4888	양*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72	남산3호터널	2025-10-21 12:52:54	325보1929	박*진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미락4길
73	남산3호터널	2025-10-21 13:03:16	03버3059	한*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74	남산3호터널	2025-10-21 14:06:13	120소9999	주식회사 아***역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75	남산3호터널	2025-10-21 16:33:19	57루9128	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길
76	남산1호터널	2025-10-21 16:38:33	132나2222	류*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번길
77	남산1호터널	2025-10-21 17:21:59	249서5203	진*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8	남산1호터널	2025-10-21 17:43:22	63저2679	주식회사 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79	남산1호터널	2025-10-21 18:18:09	14머1931	조*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0	남산3호터널	2025-10-21 18:24:01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81	남산3호터널	2025-10-21 19:09:01	155호6023	주식회사 위*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414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82	남산1호터널	2025-10-21 19:17:40	12노4923	J* M*****A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13번길
83	남산3호터널	2025-10-21 19:25:48	25오9927	박*용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84	남산1호터널	2025-10-21 20:20:33	61모8996	N****V F*******K S*******N U**I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2길
85	남산3호터널	2025-10-21 20:49:23	26허9972	주식회사 하***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86	남산3호터널	2025-10-22 07:09:26	27러5155	김*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군봉7길
87	남산3호터널	2025-10-22 07:11:37	255머3956	이*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57길
88	남산1호터널	2025-10-22 07:34:06	207머4991	L* J**N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1길
89	남산1호터널	2025-10-22 09:46:04	41수3617	채*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90	남산1호터널	2025-10-22 10:29:26	188라2151	황*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91	남산1호터널	2025-10-22 10:41:21	111소2531	(주)이*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2	남산1호터널	2025-10-22 10:59:49	384저6096	전*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0길
93	남산3호터널	2025-10-22 11:38:14	55가7597	M*****E T*****Y P.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94	남산1호터널	2025-10-22 12:55:37	64저9398	초**설 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95	남산1호터널	2025-10-22 13:48:21	224두2171	김*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진밭로
96	남산3호터널	2025-10-22 13:51:57	146호1838	(주)피****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7	남산3호터널	2025-10-22 15:00:39	65노5390	김*식	경기도 시흥시 상직길
98	남산1호터널	2025-10-22 15:36:45	67무6889	K********V B*******K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19길
99	남산1호터널	2025-10-22 16:34:47	232우1363	김*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100	남산1호터널	2025-10-22 16:35:33	48도1562	김*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101	남산1호터널	2025-10-22 17:25:59	134머3252	김*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가길
102	남산1호터널	2025-10-22 17:54:09	05조0891	조*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103	남산1호터널	2025-10-22 17:54:45	257저8420	공*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104	남산1호터널	2025-10-22 19:01:34	18머3907	주식회사 라*****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5	남산1호터널	2025-10-22 19:26:09	198서8323	(주)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06	남산1호터널	2025-10-22 19:44:48	126저8607	엔*******아(주)	울산광역시 북구 모듈화산업로
107	남산3호터널	2025-10-22 20:06:20	155러7768	T**N Q***G C***G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97번길
108	남산3호터널	2025-10-23 08:41:31	183두8029	C**I Y*N J***G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7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09	남산1호터널	2025-10-23 09:41:20	14가5314	T*N E*****I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110	남산3호터널	2025-10-23 09:54:30	147머5740	(주)예**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전궁리
111	남산1호터널	2025-10-23 10:11:59	204라1429	김*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112	남산1호터널	2025-10-23 10:26:28	46도9170	굳*굳*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남산3호터널	2025-10-23 10:57:18	54오3338	주식회사 성**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4	남산1호터널	2025-10-23 11:04:51	343가5419	여*문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115	남산1호터널	2025-10-23 11:48:36	396구2945	S****O A********A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6길
116	남산3호터널	2025-10-23 13:33:47	67무6889	K********V B*******K	경상북도 경산시 둥지로19길
117	남산1호터널	2025-10-23 14:38:49	114나5589	M*N C******G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118	남산1호터널	2025-10-23 16:41:57	140오3952	한*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9	남산3호터널	2025-10-23 16:50:26	21부8052	L**G L**N E*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120	남산1호터널	2025-10-23 16:52:30	38우7790	유*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48길
121	남산3호터널	2025-10-23 16:56:26	140조5205	지********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122	남산3호터널	2025-10-23 17:12:51	16부8407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123	남산1호터널	2025-10-23 17:18:13	174수9748	손*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로
124	남산1호터널	2025-10-23 17:22:03	105다4991	강*애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2길
125	남산1호터널	2025-10-23 17:53:57	29다3912	장*호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27번길
126	남산1호터널	2025-10-23 18:22:12	61어6982	(주)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7	남산3호터널	2025-10-23 18:33:05	52보5362	민***사(양*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28	남산3호터널	2025-10-23 18:43:47	157가5129	진*형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96번길
129	남산3호터널	2025-10-23 19:17:45	247고5545	강*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130	남산1호터널	2025-10-23 19:44:11	137주1171	윤*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131	남산1호터널	2025-10-23 20:17:19	22루0643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30길
132	남산1호터널	2025-10-23 20:55:25	62너9030	주식회사 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133	남산1호터널	2025-10-24 09:24:06	172수6531	편*리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길
134	남산3호터널	2025-10-24 14:05:15	226두7824	주식회사 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35	남산1호터널	2025-10-24 15:16:24	64두6420	서*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36	남산1호터널	2025-10-24 15:36:44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137	남산3호터널	2025-10-24 15:58:41	161호1858	그***카(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38	남산1호터널	2025-10-24 16:04:59	228우4559	주식회사 티***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139	남산1호터널	2025-10-24 16:06:10	312어5526	P**M V*N C*O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7번길
140	남산1호터널	2025-10-24 16:13:11	21더8679	이*륜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41	남산1호터널	2025-10-24 16:40:22	17노5034	(주)왕****기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길
142	남산1호터널	2025-10-24 16:43:27	181고7345	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143	남산1호터널	2025-10-24 17:26:54	68수6136	배*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5길
144	남산1호터널	2025-10-24 17:42:15	200우1381	엄*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45	남산1호터널	2025-10-24 18:05:44	284무3175	유*엽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수남로23번길
146	남산1호터널	2025-10-24 18:20:00	362조9945	보**발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147	남산1호터널	2025-10-24 18:23:32	334두2159	선**술(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48	남산1호터널	2025-10-24 18:59:18	64가6429	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49	남산3호터널	2025-10-24 19:37:48	60노4661	박*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150	남산3호터널	2025-10-24 19:54:26	174누1924	(주)한*********소(K**C)	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151	남산3호터널	2025-10-24 20:32:05	02주1057	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52	남산3호터널	2025-10-24 20:34:24	46모1983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9길
153	남산3호터널	2025-10-24 20:35:35	320나7764	이*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강화동로74번길
154	남산3호터널	2025-10-24 20:40:50	264너8468	최*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남산1호터널	2025-10-27 09:30:09	39거7283	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6	남산3호터널	2025-10-27 10:38:07	104너1200	(주)삼****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86번길
157	남산3호터널	2025-10-27 12:35:20	116호4048	주식회사 렌***더	충청남도 서산시 안견로
158	남산3호터널	2025-10-27 12:40:40	43모8231	H***G G*****G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12길
159	남산3호터널	2025-10-27 12:43:04	315러6866	구*형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60	남산1호터널	2025-10-27 13:12:29	296우5338	주식회사 퓨****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61	남산1호터널	2025-10-27 13:14:32	48고3878	K**G E****E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123번길
162	남산1호터널	2025-10-27 14:19:48	191소3455	주식회사 케*******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63	남산1호터널	2025-10-27 15:38:55	304나2084	주식회사 포**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1184번길
164	남산1호터널	2025-10-27 16:03:02	30다0700	(주)아**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165	남산3호터널	2025-10-27 17:50:03	351모4716	R****S C********R T***R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66	남산1호터널	2025-10-27 18:22:12	61어6982	(주)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7	남산3호터널	2025-10-27 19:07:46	54너7899	손*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3길
168	남산3호터널	2025-10-27 19:10:01	222허6049	롯**탈(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169	남산1호터널	2025-10-27 19:36:44	142호7382	㈜*카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정3길
170	남산1호터널	2025-10-27 20:36:11	236더4904	윤*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1	남산1호터널	2025-10-28 08:04:21	377가4954	유*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16번길
172	남산3호터널	2025-10-28 09:51:59	20로3478	사단법인 참****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173	남산3호터널	2025-10-28 09:55:51	192호4206	주식회사 위*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414번길
174	남산1호터널	2025-10-28 10:08:12	374로7584	박*희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산길
175	남산3호터널	2025-10-28 10:31:13	139저1342	M*****D B****H T****R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76	남산1호터널	2025-10-28 10:57:18	17더5140	이*숙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
177	남산3호터널	2025-10-28 11:13:50	164도9711	전*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안길
178	남산1호터널	2025-10-28 11:38:46	328주5035	류*환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179	남산1호터널	2025-10-28 11:44:35	248루9996	조*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7길
180	남산1호터널	2025-10-28 11:58:38	142호2455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81	남산1호터널	2025-10-28 13:51:35	204수8217	우**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8길
182	남산1호터널	2025-10-28 14:35:35	306누8249	(주)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넉바위길
183	남산3호터널	2025-10-28 14:37:55	333오5308	박*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84	남산1호터널	2025-10-28 15:46:15	41조1660	임*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185	남산1호터널	2025-10-28 15:56:06	105다4991	강*애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2길
186	남산1호터널	2025-10-28 19:05:16	100저3692	농****인 주식회사 광**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장미길
187	남산1호터널	2025-10-28 19:26:29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5길
188	남산1호터널	2025-10-28 19:59:05	57수8142	(주)우****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189	남산1호터널	2025-10-28 20:24:43	06루4025	주식회사 큐*****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90	남산3호터널	2025-10-28 20:45:01	371조1803	주식회사 에********프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191	남산1호터널	2025-10-29 09:03:26	52모3433	N****M I***N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로27번길
192	남산1호터널	2025-10-29 09:35:14	142호1990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93	남산1호터널	2025-10-29 10:24:01	308주9854	김*호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우기1길
194	남산1호터널	2025-10-29 10:43:42	24구8998	서*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696번길
195	남산1호터널	2025-10-29 12:11:54	111다3423	(주)울*****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9길
196	남산1호터널	2025-10-29 13:04:15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197	남산1호터널	2025-10-29 13:46:02	27너2720	최*비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785번길
198	남산1호터널	2025-10-29 13:48:46	32부4106	K********V I******K S**********D U**I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199	남산1호터널	2025-10-29 14:14:32	66어8075	(주)백****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00	남산1호터널	2025-10-29 14:17:19	157고4856	이*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201	남산1호터널	2025-10-29 14:27:06	394두3769	A*****N, B*****N D****A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02	남산1호터널	2025-10-29 15:01:55	179너8528	여*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송길
203	남산3호터널	2025-10-29 15:07:21	11가0245	호**드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04	남산1호터널	2025-10-29 16:04:56	189오6324	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205	남산1호터널	2025-10-29 17:25:52	282구7037	이*****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06	남산1호터널	2025-10-29 18:00:19	64노9706	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07	남산3호터널	2025-10-29 18:30:25	54버0915	서*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가길
208	남산1호터널	2025-10-29 18:34:58	69더6083	주식회사 카********원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209	남산1호터널	2025-10-29 18:41:23	133하3920	주식회사 비*******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210	남산3호터널	2025-10-29 18:45:53	239수9810	염*겸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11	남산1호터널	2025-10-29 19:02:08	27부7419	김*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7길
212	남산3호터널	2025-10-29 19:21:43	27누7225	이*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13	남산1호터널	2025-10-29 19:24:01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5길
214	남산3호터널	2025-10-29 19:24:36	129우5443	임*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87길
215	남산1호터널	2025-10-29 19:52:47	37모3118	바*****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9길
216	남산1호터널	2025-10-29 19:54:56	229모2279	신*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87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17	남산1호터널	2025-10-30 10:27:39	142호1310	주식회사 하*카 (H****R co.Ltd)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8	남산1호터널	2025-10-30 11:25:57	172다3330	한*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19	남산1호터널	2025-10-30 12:20:58	266버2898	Q**N G***G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220	남산3호터널	2025-10-30 12:37:26	60두7289	유한회사금****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21	남산1호터널	2025-10-30 12:52:12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222	남산1호터널	2025-10-30 14:07:04	67거2275	(주)레*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413번길
223	남산3호터널	2025-10-30 14:21:15	172저4518	한*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95번길
224	남산1호터널	2025-10-30 14:23:39	133하3920	주식회사 비*******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225	남산3호터널	2025-10-30 14:45:44	20로3478	사단법인 참****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226	남산1호터널	2025-10-30 14:48:47	13소8943	주식회사 강**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227	남산1호터널	2025-10-30 15:12:10	285거3938	주식회사 티*******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2길
228	남산3호터널	2025-10-30 15:41:44	210버7976	보**업(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줄터길
229	남산1호터널	2025-10-30 16:56:55	281머8025	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30	남산1호터널	2025-10-30 17:15:52	202거8219	주*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231	남산1호터널	2025-10-30 17:40:21	113러7064	백*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월롱산단3길
232	남산1호터널	2025-10-30 18:37:08	156하2413	(주)동***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233	남산1호터널	2025-10-30 18:40:33	61가2518	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234	남산3호터널	2025-10-30 19:06:06	20로3478	사단법인 참****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235	남산3호터널	2025-10-30 19:17:14	167러6278	(주)케****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파담로
236	남산1호터널	2025-10-30 20:09:30	49소0802	위*올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237	남산3호터널	2025-10-31 07:33:35	216머9702	김*진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238	남산1호터널	2025-10-31 07:38:34	381더2307	박*호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39	남산1호터널	2025-10-31 08:09:45	288나8548	공*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296번길
240	남산1호터널	2025-10-31 10:52:43	53수1469	주식회사 삼***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241	남산1호터널	2025-10-31 10:58:32	199보4591	황*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242	남산1호터널	2025-10-31 11:18:02	105도1412	기**설(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243	남산1호터널	2025-10-31 11:32:27	263나8539	H***G M*****N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44	남산1호터널	2025-10-31 11:45:41	290너6855	(주)제**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245	남산1호터널	2025-10-31 13:47:03	200로1965	(주)에*******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84번길
246	남산1호터널	2025-10-31 14:28:37	231저1180	Q*E Y****G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2길
247	남산1호터널	2025-10-31 16:44:25	239수9810	염*겸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248	남산3호터널	2025-10-31 16:45:21	21두0344	박*란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249	남산3호터널	2025-10-31 17:23:22	153머9690	신*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50	남산3호터널	2025-10-31 17:25:16	286더7239	이*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51	남산1호터널	2025-10-31 18:25:39	32구1337	주식회사 에*****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제2농공단지로
252	남산3호터널	2025-10-31 19:35:57	27너1811	K**********A A********A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53	남산1호터널	2025-10-31 19:41:10	281고3028	박*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16번길
254	남산3호터널	2025-10-31 19:45:13	18모6111	주식회사 에****스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255	남산1호터널	2025-10-31 20:01:50	361부6712	최*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256	남산1호터널	2025-10-31 20:21:30	01누0625	나*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257	남산3호터널	2025-10-31 20:22:28	68수3223	다*******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7길
258	남산1호터널	2025-10-31 20:33:50	36도4942	주식회사 청****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59	남산1호터널	2025-11-03 07:02:37	377가4954	유*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16번길
260	남산1호터널	2025-11-03 07:37:03	10러7976	(주)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1	남산3호터널	2025-11-03 09:23:14	22오8519	신*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00길
262	남산1호터널	2025-11-03 11:20:21	158루4235	주식회사 아*****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263	남산1호터널	2025-11-03 12:26:20	240노5974	이*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64	남산1호터널	2025-11-03 14:21:01	18조7594	임*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65	남산1호터널	2025-11-03 16:04:02	168고8184	주식회사 디***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266	남산1호터널	2025-11-03 19:02:27	37무1268	농****인 유한회사 신***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진북로
267	남산1호터널	2025-11-03 19:07:54	69마4203	신*율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353번길
268	남산1호터널	2025-11-03 19:44:30	253라8792	L* G*****U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0번길
269	남산1호터널	2025-11-03 19:47:10	09나0104	이*화	세종특별자치시 나리1로
270	남산3호터널	2025-11-03 19:49:28	325부4215	허*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71	남산3호터널	2025-11-03 20:15:18	53나3135	전*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3길
272	남산3호터널	2025-11-03 20:59:51	281고3028	박*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16번길
273	남산1호터널	2025-11-04 07:25:27	30저8038	엄*현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274	남산1호터널	2025-11-04 07:56:23	137로2850	안*민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71번길
275	남산1호터널	2025-11-04 09:24:48	21부9262	최*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5길
276	남산1호터널	2025-11-04 11:19:15	60두7289	유한회사금****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77	남산1호터널	2025-11-04 11:21:59	277수3188	주식회사 우***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8길
278	남산1호터널	2025-11-04 11:22:46	137무7198	주식회사 굿***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5길
279	남산3호터널	2025-11-04 11:44:43	48모0888	한**산(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길
280	남산1호터널	2025-11-04 13:10:21	101호9420	주식회사 빌**카	경기도 구리시 우미내길
281	남산1호터널	2025-11-04 13:22:53	173수1250	심*학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82	남산1호터널	2025-11-04 13:34:26	117수9026	주식회사 스*****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283	남산1호터널	2025-11-04 15:01:13	334구5345	김*해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284	남산1호터널	2025-11-04 15:10:27	176도8818	C*O W****N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4길
285	남산3호터널	2025-11-04 15:53:53	104서7498	A*****V U*****K A**********H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26번길
286	남산1호터널	2025-11-04 16:07:17	62로9169	김*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287	남산1호터널	2025-11-04 17:38:26	367주3346	타**드 주식회사	경기도 오산시 눕새로
288	남산1호터널	2025-11-04 17:56:48	350누1775	주식회사 문****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
289	남산1호터널	2025-11-04 17:58:11	372구7066	주*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290	남산3호터널	2025-11-04 17:59:19	111무3910	주식회사플**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9가길
291	남산1호터널	2025-11-04 19:53:10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5길
292	남산1호터널	2025-11-05 07:10:57	363도3662	C*I L***N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2길
293	남산1호터널	2025-11-05 07:51:19	61어6982	(주)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94	남산1호터널	2025-11-05 11:45:00	49노4869	심*연	경기도 광주시 독산동길
295	남산1호터널	2025-11-05 12:44:48	282마4963	김*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08번길
296	남산3호터널	2025-11-05 13:23:30	283부1827	박*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97	남산1호터널	2025-11-05 13:24:23	224두9407	박*규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147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98	남산1호터널	2025-11-05 13:39:07	128너4563	L* A*****Y A*********H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299	남산1호터널	2025-11-05 13:52:31	373보4330	주식회사 시*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300	남산1호터널	2025-11-05 14:40:33	243머3953	L* H**G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바길
301	남산1호터널	2025-11-05 15:30:13	358조6785	박*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302	남산3호터널	2025-11-05 15:41:31	37더1825	최*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303	남산3호터널	2025-11-05 15:46:36	62서0700	이*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112번길
304	남산3호터널	2025-11-05 15:57:46	131보6216	주식회사 라***드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305	남산1호터널	2025-11-05 16:02:13	245누4374	Z***G C******N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1길
306	남산1호터널	2025-11-05 16:09:23	05가8194	주식회사 블*****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307	남산1호터널	2025-11-05 17:28:45	161라2261	(주)에*******역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08	남산1호터널	2025-11-05 17:30:47	12러7284	권*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309	남산1호터널	2025-11-05 18:05:16	19너7288	임*봉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9길
310	남산3호터널	2025-11-05 18:37:29	142호3749	(주)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311	남산1호터널	2025-11-05 18:40:05	161허9908	주식회사 울****니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312	남산3호터널	2025-11-05 18:51:35	35버22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313	남산3호터널	2025-11-05 19:24:17	149너6972	박*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0길
314	남산1호터널	2025-11-05 20:46:06	19더8493	최*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315	남산1호터널	2025-11-05 20:58:20	160구9687	모*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다길
316	남산3호터널	2025-11-06 09:30:33	51마7156	K*M P**R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2길
317	남산3호터널	2025-11-06 10:15:49	100러1921	정*비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28라길
318	남산1호터널	2025-11-06 10:17:51	27소0396	한*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19	남산1호터널	2025-11-06 10:18:59	116허7057	주식회사 저****카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1길
320	남산3호터널	2025-11-06 11:08:28	04조8019	김*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낙산길
321	남산1호터널	2025-11-06 11:30:50	129러3784	주식회사 창****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석포로
322	남산1호터널	2025-11-06 11:39:01	171루4346	주식회사 시**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323	남산1호터널	2025-11-06 12:09:49	362조9945	보**발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324	남산1호터널	2025-11-06 13:54:20	177저6213	V*******N W*******H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25	남산1호터널	2025-11-06 14:44:35	219다7474	주식회사 원***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326	남산3호터널	2025-11-06 14:50:17	176소8389	한*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14길
327	남산3호터널	2025-11-06 15:14:52	46더8811	이*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328	남산3호터널	2025-11-06 15:46:56	283부1827	박*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29	남산1호터널	2025-11-06 16:01:50	61모7442	강*욱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330	남산1호터널	2025-11-06 17:35:14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5길
331	남산1호터널	2025-11-06 19:36:15	249저4609	이*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37마길
332	남산1호터널	2025-11-06 20:11:27	19모6638	배*식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남산1길
333	남산1호터널	2025-11-06 20:25:22	191저5330	P**O H***A	인천광역시 서구 면개포로
334	남산1호터널	2025-11-06 20:48:22	20조9746	김*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6길
335	남산1호터널	2025-11-07 07:26:47	24서4777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336	남산1호터널	2025-11-07 07:37:24	377가4954	유*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내기로16번길
337	남산3호터널	2025-11-07 09:53:33	63루8006	박*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38	남산1호터널	2025-11-07 10:36:04	66노9631	A******L N****S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26번길
339	남산3호터널	2025-11-07 11:46:51	196오9601	김*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340	남산1호터널	2025-11-07 12:00:52	10고5836	주식회사 호***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341	남산3호터널	2025-11-07 12:14:49	225조7727	주식회사디***탈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외천로
342	남산3호터널	2025-11-07 12:46:35	52누1243	이*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길
343	남산3호터널	2025-11-07 13:01:37	27가8016	P*K M****M V**********H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번길
344	남산3호터널	2025-11-07 13:04:33	61루8936	P**O W****U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59번길
345	남산1호터널	2025-11-07 15:28:08	197수2594	주식회사 왕*(상*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46	남산1호터널	2025-11-07 15:53:55	235고4730	류*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47	남산1호터널	2025-11-07 15:58:43	153오9432	주식회사 용***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13번길
348	남산1호터널	2025-11-07 16:52:15	24우6723	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8길
349	남산3호터널	2025-11-07 17:03:51	277너6864	주식회사 서***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50	남산3호터널	2025-11-07 17:23:51	67노4910	(주)한****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268번길
351	남산3호터널	2025-11-07 17:44:26	121보8656	농****인 양***년 주식회사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법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52	남산1호터널	2025-11-07 18:55:09	14다5194	자***오(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로
353	남산1호터널	2025-11-07 19:33:11	10두3999	M*******O C********A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2가길
354	남산3호터널	2025-11-07 19:34:18	154주2797	T**********R G***R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159번길
355	남산1호터널	2025-11-07 19:37:06	61도6262	한*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356	남산3호터널	2025-11-07 19:47:50	210모4000	홍*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57	남산1호터널	2025-11-07 19:54:06	357더3172	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29번길
358	남산3호터널	2025-11-07 20:04:06	141구8057	A* A******Y G*********H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서암로3길
359	남산1호터널	2025-11-07 20:46:47	245주4170	허*식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불너머길
360	남산3호터널	2025-11-07 20:50:16	269나8518	주식회사 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361	남산1호터널	2025-11-10 08:32:00	236노5305	신*종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로
362	남산1호터널	2025-11-10 09:33:35	33두2249	권*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363	남산1호터널	2025-11-10 09:57:10	151서8368	주식회사 유****발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도개6길
364	남산3호터널	2025-11-10 10:46:22	327수8001	그****점(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65	남산1호터널	2025-11-10 11:53:34	56부3520	대****징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옥토골길
366	남산3호터널	2025-11-10 12:03:35	163가2641	주식회사 이*텍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현암길
367	남산1호터널	2025-11-10 12:47:38	241모2268	P**G Y*****N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7길
368	남산1호터널	2025-11-10 12:58:56	11도1221	이*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6길
369	남산3호터널	2025-11-10 15:06:03	27너2720	최*비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785번길
370	남산3호터널	2025-11-10 16:08:01	05주0763	이*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35번길
371	남산3호터널	2025-11-10 16:59:03	16너7891	최*철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로16번길
372	남산1호터널	2025-11-10 17:52:51	116부7660	김*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22번길
373	남산1호터널	2025-11-10 19:55:10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5길
374	남산1호터널	2025-11-10 19:57:52	321거2333	박*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375	남산1호터널	2025-11-10 20:27:28	192더2519	주식회사 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76	남산3호터널	2025-11-11 08:51:06	123러5408	주식회사 비*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3길
377	남산1호터널	2025-11-11 09:28:33	166구2252	C*****N K****A N****E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378	남산1호터널	2025-11-11 10:02:29	46로7880	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79	남산1호터널	2025-11-11 10:18:39	40우1253	손*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45번길
380	남산3호터널	2025-11-11 12:42:54	49다2459	지*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381	남산1호터널	2025-11-11 13:21:46	경기33너8288	박*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44번길
382	남산3호터널	2025-11-11 13:24:43	333오5308	박*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83	남산1호터널	2025-11-11 13:51:20	08루4310	(주)인**켓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384	남산1호터널	2025-11-11 13:52:30	200나2296	에*******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길
385	남산1호터널	2025-11-11 14:23:26	07나8002	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86	남산3호터널	2025-11-11 14:28:10	45오8287	L* X*****N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2길
387	남산3호터널	2025-11-11 14:37:41	109거3257	현*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388	남산1호터널	2025-11-11 14:41:20	110라7783	(주)조***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89	남산3호터널	2025-11-11 14:59:29	382버9379	이*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90	남산1호터널	2025-11-11 16:05:37	19노2689	압*****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8길
391	남산1호터널	2025-11-11 16:22:59	227가1881	이*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392	남산1호터널	2025-11-11 17:40:10	162허7290	주식회사 알*****니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93	남산1호터널	2025-11-11 17:40:14	148어6546	송*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487번안길
394	남산1호터널	2025-11-11 17:49:10	233수7237	주식회사 도**통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5번길
395	남산3호터널	2025-11-11 18:02:27	60수3966	엄*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태평로60번길
396	남산3호터널	2025-11-11 18:06:50	09도4320	(주)그**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397	남산1호터널	2025-11-11 18:25:11	01서7914	박*수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6길
398	남산1호터널	2025-11-11 18:57:16	208라1444	김*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7길
399	남산3호터널	2025-11-11 19:20:05	07머5393	K*****E M*****H W****E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7길
400	남산3호터널	2025-11-11 19:38:53	14소0312	W**G M******G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5번길
401	남산3호터널	2025-11-11 19:50:18	07모2463	서***디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2길
402	남산3호터널	2025-11-11 20:08:22	66서4714	N*M DANYIL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403	남산1호터널	2025-11-11 20:15:51	267머2222	이*숙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18길
404	남산1호터널	2025-11-11 20:24:10	43나9339	성*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7길
405	남산1호터널	2025-11-11 20:40:05	175나7105	주식회사 다***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06	남산1호터널	2025-11-11 20:48:46	236누9879	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45번길
407	남산3호터널	2025-11-12 09:09:58	51마7156	K*M P**R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2길
408	남산3호터널	2025-11-12 11:38:49	264너8468	최*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9	남산1호터널	2025-11-12 11:47:06	157고4856	이*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410	남산1호터널	2025-11-12 11:59:23	31보5435	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411	남산1호터널	2025-11-12 12:14:05	101허2772	(주)리****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로
412	남산1호터널	2025-11-12 12:18:14	49도0458	장*석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413	남산1호터널	2025-11-12 13:28:12	37서8018	김*성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414	남산3호터널	2025-11-12 13:41:01	365너6888	최*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56번길
415	남산3호터널	2025-11-12 15:00:56	38허7009	(주)라****카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65번길
416	남산1호터널	2025-11-12 16:51:48	221로6975	W**G Z*****G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0다길
417	남산3호터널	2025-11-12 17:01:49	35소2966	정*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418	남산3호터널	2025-11-12 18:36:49	100저3692	농****인 주식회사 광**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장미길
419	남산1호터널	2025-11-12 19:47:23	10두3999	M*******O C********A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2가길
420	남산3호터널	2025-11-12 20:06:32	43나9339	성*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7길
421	남산3호터널	2025-11-12 20:12:49	160나5521	이*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길
422	남산1호터널	2025-11-12 20:47:13	59무7280	한*석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423	남산1호터널	2025-11-13 10:03:39	142러4360	노*기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옥동길
424	남산1호터널	2025-11-13 11:06:52	319너8434	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9길
425	남산1호터널	2025-11-13 11:40:47	137구5660	주식회사 한******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426	남산1호터널	2025-11-13 12:35:47	09어0216	김*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40길
427	남산1호터널	2025-11-13 12:55:31	11더2838	유*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8	남산3호터널	2025-11-13 13:13:16	150고6596	임*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429	남산3호터널	2025-11-13 13:24:44	245모2420	이*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해안동로283번길
430	남산1호터널	2025-11-13 14:45:04	46두1721	K**N S***H**N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31	남산1호터널	2025-11-13 14:48:41	247마4981	새*랑 *회 (염*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432	남산1호터널	2025-11-13 14:51:34	109누5822	김*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8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33	남산3호터널	2025-11-13 15:04:24	03모1823	주식회사 원*****시 (W**t a*****y Corp.)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434	남산3호터널	2025-11-13 15:54:26	15조6345	이*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가길
435	남산3호터널	2025-11-13 16:02:54	27노8692	산*******니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42번길
436	남산1호터널	2025-11-13 16:15:44	145라5443	주식회사 더**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37	남산1호터널	2025-11-13 16:27:33	159주8498	최*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8길
438	남산3호터널	2025-11-13 18:42:11	65로7765	김*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6길
439	남산3호터널	2025-11-13 18:56:59	245무2156	김*민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440	남산3호터널	2025-11-13 19:02:59	109두1398	최*영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441	남산1호터널	2025-11-13 19:20:32	58우5211	김*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42	남산1호터널	2025-11-13 19:53:23	58우5634	이*환	경기도 파주시 번뛰기길
443	남산3호터널	2025-11-13 20:05:31	19서7581	조*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8길
444	남산1호터널	2025-11-13 20:13:54	37더3290	김*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곡로
445	남산3호터널	2025-11-13 20:29:08	316고2245	홍*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446	남산1호터널	2025-11-13 20:37:04	32루0207	정*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447	남산1호터널	2025-11-13 20:43:18	272부7551	(주)위***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48	남산1호터널	2025-11-14 07:18:17	166구5630	김*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199번길
449	남산1호터널	2025-11-14 10:21:49	111부2805	기*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2길
450	남산3호터널	2025-11-14 11:14:37	12라4077	이*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451	남산3호터널	2025-11-14 12:07:41	262너6820	주식회사 제******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52	남산3호터널	2025-11-14 12:20:39	347루6606	박*훈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453	남산1호터널	2025-11-14 12:43:05	43보3727	M********A O*****V U*****K K**I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454	남산1호터널	2025-11-14 13:13:58	188다6652	김*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455	남산1호터널	2025-11-14 15:11:16	53라6751	이*미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비동동촌길
456	남산1호터널	2025-11-14 15:20:27	14버6967	임*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3가길
457	남산1호터널	2025-11-14 15:20:45	164가8932	강*종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12번길
458	남산1호터널	2025-11-14 15:45:29	198오8898	주식회사 티*****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7길
459	남산1호터널	2025-11-14 17:58:20	155노7637	광* 시**********업협동조합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460	남산1호터널	2025-11-14 18:35:42	370어7177	(유) 라*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61	남산3호터널	2025-11-14 19:28:35	15저2505	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0길
462	남산3호터널	2025-11-14 19:59:04	169너3768	고*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봉안길
463	남산3호터널	2025-11-14 20:46:07	326무4688	유*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5-03-07 12:00:30	133하5582	10,300	강*애	경기도 하남시
2	남산1호터널	2025-04-02 17:50:03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	남산1호터널	2025-04-07 19:41:54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4	남산1호터널	2025-04-15 18:45:29	109호4018	10,300	S**********O DAVID	서울시 강남구
5	남산1호터널	2025-04-21 20:33:37	142호2229	10,300	이*택	서울시 강동구
6	남산1호터널	2025-04-23 12:50:36	21나8068	10,300	김*영	서울시 강남구
7	남산1호터널	2025-05-01 17:31:15	21나8068	10,300	김*영	서울시 강남구
8	남산1호터널	2025-05-07 14:14:06	181보7868	10,300	주식회사 헤****털	서울시 강남구
9	남산1호터널	2025-06-04 17:45:21	142호1599	10,300	이*연	서울시 강남구
10	남산1호터널	2025-06-09 16:59:46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1	남산1호터널	2025-06-12 18:43:01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2	남산1호터널	2025-06-17 13:23:18	109호2842	10,300	강*수	서울시 강남구
13	남산3호터널	2025-06-17 14:41:24	34호7855	10,300	김*희	서울시 양천구
14	남산3호터널	2025-06-19 15:29:15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5	남산1호터널	2025-06-20 15:52:17	142호2367	10,300	정*택	서울시 종로구
16	남산3호터널	2025-06-23 20:25:17	224호5332	10,300	이*화	서울시 강서구
17	남산3호터널	2025-07-01 11:23:54	31호1688	5,150	민*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18	남산1호터널	2025-07-01 17:43:14	152호2425	10,300	김*기	서울시 구로구
19	남산3호터널	2025-07-01 19:07:49	200하9465	10,300	주식회사 케*티	서울시 종로구
20	남산3호터널	2025-07-03 15:13:01	177호4204	5,150	(주)좋*****소	서울 서초구
21	남산1호터널	2025-07-04 14:09:45	101하1581	10,300	정*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2	남산3호터널	2025-07-04 14:42:37	165하3075	10,300	월****스(이*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3	남산3호터널	2025-07-04 16:03:37	125호6662	10,300	권*성	서울시 성동구
24	남산1호터널	2025-07-04 17:35:46	198허5274	10,300	㈜하***푸드	충청남도 공주시
25	남산3호터널	2025-07-04 18:56:03	122하9957	10,300	김*윤(유**)	서울시 송파구
26	남산3호터널	2025-07-07 07:12:11	360루3351	10,300	진*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7	남산1호터널	2025-07-07 15:23:08	180하4245	10,300	주식회사 케*티	서울시 종로구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8	남산1호터널	2025-07-07 16:49:15	69머3735	10,300	선*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9	남산3호터널	2025-07-07 20:24:35	101하9726	10,300	이*훈	서울시 마포구
30	남산3호터널	2025-07-09 07:34:09	153호7313	10,300	(주)아********험	서울 중구
31	남산1호터널	2025-07-09 09:48:54	362나2000	10,300	㈜타**드	서울시 서초구
32	남산1호터널	2025-07-09 11:18:52	148호9020	10,300	스*** **곤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33	남산3호터널	2025-07-09 13:44:37	146하9650	10,300	류*범	경기도 광주시
34	남산1호터널	2025-07-10 12:03:41	157무4776	10,300	주식회사 엠***스	경기도 화성시
35	남산3호터널	2025-07-11 13:08:32	167저7026	10,300	가**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6	남산1호터널	2025-07-11 17:20:40	192하4060	10,300	주식회사 해*	서울 서대문구
37	남산1호터널	2025-07-14 16:29:26	141허9724	5,150	주식회사 케*티	서울시 종로구
38	남산1호터널	2025-07-14 19:49:25	195호9947	10,300	권*수	서울시 강남구
39	남산1호터널	2025-07-15 10:00:49	167하4881	10,300	조*현	서울시 강북구
40	남산1호터널	2025-07-15 20:21:27	173우9431	10,300	법무법인 위****즈	서울시 강남구
41	남산1호터널	2025-07-16 20:50:45	134호5278	10,300	임*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42	남산3호터널	2025-07-17 12:29:32	167하2631	10,300	주식회사 필*****션	경기도 과천시
43	남산3호터널	2025-07-17 13:02:54	174하5350	10,300	주식회사 바***스	서울시 서초구
44	남산3호터널	2025-07-17 17:50:00	252버8533	10,300	주식회사 새*	서울시 강남구
45	남산1호터널	2025-07-18 17:31:30	356무7000	5,150	박*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46	남산1호터널	2025-07-21 13:46:36	133거3237	10,300	농업회사법인㈜ 바**트	충청북도 음성군
47	남산3호터널	2025-07-21 15:04:37	101허4837	10,300	김*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48	남산1호터널	2025-07-21 15:25:39	110하8597	10,300	홍*웅	서울 송파구
49	남산3호터널	2025-07-21 18:30:43	177호3157	10,300	홍*슬	서울시 강서구
50	남산1호터널	2025-07-22 07:50:30	174호5568	10,300	주식회사 이** **움	서울시 중구
51	남산1호터널	2025-07-22 10:50:40	184주5082	10,300	주식회사 라***템	경기도 남양주시
52	남산1호터널	2025-07-22 11:27:56	149하9326	10,300	홍*희	경기도 시흥시
53	남산1호터널	2025-07-22 16:40:59	175하6965	10,300	주식회사 엘***이	서울시 송파구
54	남산1호터널	2025-07-23 12:44:59	192허1167	10,300	박*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55	남산3호터널	2025-07-23 18:08:52	110하9041	10,300	정*곤	서울시 광진구
56	남산1호터널	2025-07-23 18:45:46	142호3594	10,300	허*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57	남산1호터널	2025-07-23 20:02:24	181보7868	10,300	주식회사 헤****털	서울시 강남구
58	남산1호터널	2025-07-24 13:05:52	106호5956	10,300	조*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59	남산1호터널	2025-07-24 14:28:05	157호4935	10,300	㈜케***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60	남산3호터널	2025-07-24 19:43:27	156호4210	10,300	㈜케***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61	남산3호터널	2025-07-28 19:07:32	119주4323	10,300	이*희	서울시 은평구
62	남산3호터널	2025-07-29 15:49:12	141서2526	10,300	이*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63	남산1호터널	2025-07-29 17:57:16	317루8246	10,300	주식회사 드** 바******스	서울시 종로구
64	남산3호터널	2025-07-29 18:22:54	125호1021	10,300	구*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65	남산1호터널	2025-07-30 13:02:47	342루9026	10,300	김*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66	남산3호터널	2025-07-30 18:32:17	169허7045	10,300	㈜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67	남산3호터널	2025-07-31 12:51:05	27하7562	10,300	심*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68	남산3호터널	2025-07-31 16:01:34	109허7701	10,300	이*호	서울시 용산구
69	남산1호터널	2025-08-01 13:25:35	199호4999	10,300	양*호	경상남도 김해시
70	남산1호터널	2025-08-01 17:38:30	142호3648	10,300	임*진	서울시 동작구
71	남산1호터널	2025-08-04 07:25:31	28머4855	10,300	장*운	광주광역시 남구
72	남산1호터널	2025-08-04 09:34:00	169호9803	10,300	신*서	서울시 강남구
73	남산1호터널	2025-08-04 12:01:16	219더4147	10,300	이*라	경기도 하남시
74	남산1호터널	2025-08-04 12:35:45	222구9512	10,300	부엌간 차**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5	남산1호터널	2025-08-04 13:19:16	174하5866	10,300	P*K J*Y W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6	남산1호터널	2025-08-04 18:12:57	53하9500	10,300	김*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77	남산1호터널	2025-08-05 11:20:14	198허8056	5,150	㈜세*코	서울시 강동구
78	남산1호터널	2025-08-05 13:30:24	133하6385	10,300	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9	남산3호터널	2025-08-05 19:17:46	397로3455	10,300	황*성	서울시 은평구
80	남산1호터널	2025-08-06 08:28:12	125호5240	10,300	유*경	서울시 서초구
81	남산3호터널	2025-08-06 16:00:58	194하3739	10,300	㈜우**행	서울시 중구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82	남산1호터널	2025-08-07 07:28:48	133하1010	10,300	한*희	충청남도 공주시
83	남산3호터널	2025-08-07 20:02:51	397로3455	10,300	황*성	서울시 은평구
84	남산3호터널	2025-08-07 20:17:28	105하4735	10,300	유*훈	경기도 평택시
85	남산3호터널	2025-08-08 10:39:50	199호1823	10,300	㈜우**행	서울시 중구
86	남산1호터널	2025-08-08 14:30:53	109호1381	5,150	조*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87	남산1호터널	2025-08-08 20:35:25	101하9726	10,300	이*훈	서울시 마포구
88	남산3호터널	2025-08-11 18:14:59	101하8853	10,300	홍*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89	남산3호터널	2025-08-11 18:24:00	220하1080	10,300	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90	남산1호터널	2025-08-12 11:10:43	167호3135	10,300	비***아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91	남산1호터널	2025-08-12 14:40:43	104호8875	10,300	주식회사 나**스	경상북도 구미시
92	남산1호터널	2025-08-12 19:04:00	220하1080	10,300	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93	남산1호터널	2025-08-13 11:48:39	197하3108	5,150	이*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94	남산3호터널	2025-08-13 14:04:08	103호3368	10,300	김*훈	서울시 구로구
95	남산1호터널	2025-08-13 19:44:47	175호9525	10,300	정*신	서울시 성동구
96	남산1호터널	2025-08-14 10:58:07	165호3374	10,300	곽*홍	서울시 종로구
97	남산1호터널	2025-08-14 13:48:50	167저7041	10,300	현*****링㈜	서울시 종로구
98	남산1호터널	2025-08-14 14:13:37	172호1911	10,300	김*근	경기도 남양주시
99	남산1호터널	2025-08-14 14:31:11	201호5148	5,150	㈜세*코	서울시 강동구
100	남산3호터널	2025-08-14 14:46:44	55하2398	10,300	한*정	인천광역시 서구
101	남산1호터널	2025-08-14 17:22:05	101호2029	10,300	이*라	경기도 김포시
102	남산3호터널	2025-08-18 11:44:22	172하3363	10,300	김*용	서울시 서초구
103	남산3호터널	2025-08-19 09:02:47	177호6396	10,300	이*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04	남산1호터널	2025-08-20 11:19:55	175호7097	10,300	(유)베**********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105	남산1호터널	2025-08-20 13:57:48	171더3353	10,300	김*영	서울시 강남구
106	남산1호터널	2025-08-21 20:53:55	178허7173	10,300	주식회사 케*티	서울시 종로구
107	남산1호터널	2025-08-22 07:56:38	109호7658	10,300	노*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08	남산1호터널	2025-08-22 14:02:46	219우2964	10,300	정*훈	인천광역시 서구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09	남산1호터널	2025-08-22 18:54:30	125호5699	10,300	지*은	서울시 강남구
110	남산1호터널	2025-08-25 09:26:21	169허2786	10,300	신*서	서울시 강남구
111	남산3호터널	2025-08-25 12:26:30	110하8597	10,300	홍*웅	서울 송파구
112	남산3호터널	2025-08-25 15:12:15	149호8791	10,300	유**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13	남산1호터널	2025-08-25 17:03:50	179호2816	10,300	김*규	경기도 군포시
114	남산1호터널	2025-08-25 19:31:06	134호2431	10,300	J** **N	인천광역시 중구
115	남산1호터널	2025-08-26 16:01:15	167호2582	10,300	이*희	서울시 동대문구
116	남산3호터널	2025-08-26 16:49:46	261어6369	10,300	김*준	서울시 중구
117	남산1호터널	2025-08-26 17:42:25	134호5152	10,300	구*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18	남산1호터널	2025-08-26 20:15:46	197호8710	10,300	김*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19	남산1호터널	2025-08-28 18:02:25	134호5152	10,300	구*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120	남산3호터널	2025-08-28 18:51:50	209수8939	10,300	김*경	경기도 김포시
121	남산1호터널	2025-08-28 19:27:04	161호4510	10,300	김*웅	경기도 화성시
122	남산1호터널	2025-09-01 13:26:24	196하4981	10,300	주식회사 리**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23	남산3호터널	2025-09-02 12:32:37	134호5152	10,300	구*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49호

체납처분비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김*라 포함 7명
○ 서류의 송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8, 동아청솔아파트 ***동 ****호 외
○ 서류의 명칭: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서류의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에 따라 발생한 체납처분비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6년 3월 4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2026년 4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0000222-10228501-2026012-0000027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상속대위등기)	김*라	2026.03.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8, 동아청솔아파트 ***동 ****호	수취인불명	2026.04.16.	17,077,550
2	0000222-10228501-2026012-0000027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상속대위등기)	김*자	2026.03.0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중터길 **	폐문부재	2026.04.16.	17,077,550
3	0000222-10228501-2026012-0000027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상속대위등기)	김*성	2026.03.0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중터길 **	폐문부재	2026.04.16.	17,077,550
4	0000222-10228501-2026012-0000027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상속대위등기)	김*현	2026.03.04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601, ****동 ***호(목동동, 휴먼시아 해솔마을)	폐문부재	2026.04.16.	17,077,550
5	0000222-10228501-2026012-0000027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상속대위등기)	김*희	2026.03.0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23번길 17, ****동 ****호(다산동, 다산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폐문부재	2026.04.16.	17,077,550
6	0000222-10228501-2026012-0000027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상속대위등기)	정*희	2026.03.0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9, ****호 (성남동,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	폐문부재	2026.04.16.	17,077,550
7	0000222-10228501-2026012-0000027	체납처분비 독촉고지(상속대위등기)	김*환	2026.03.0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89, ****호(성남동, 성남센트럴푸르지오시티)	폐문부재	2026.04.16.	17,077,55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50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최*원
○ 서류의 송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동 ****호(창곡동, 위례더힐55) 외
○ 서류의 명칭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서류의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한 납부최고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6년 3월 13일에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납부기한을 2026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2026년 4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 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710-104102-202310-2-642-000987	주민세(사업소분)	최*원	2026.0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동 ****호(창곡동, 위례더힐55)	수취인불명	2026.04.16.	64,370
2	710-140003-202308-2-642-100003	법인지방소득세	최*원	2026.0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동 ****호(창곡동, 위례더힐55)	수취인불명	2026.04.16.	2,732,120
3	710-140003-202308-2-642-100004	법인지방소득세	최*원	2026.0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동 ****호(창곡동, 위례더힐55)	수취인불명	2026.04.16.	14,572,890
4	710-104102-202211-2-642-001077	주민세(사업소분)	최*원	2026.0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동 ****호(창곡동, 위례더힐55)	수취인불명	2026.04.16.	64,370
5	710-140003-202306-2-642-500004	법인지방소득세	최*원	2026.0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동 ****호(창곡동, 위례더힐55)	수취인불명	2026.04.16.	6,267,800
6	710-104102-202310-2-642-000987	주민세(사업소분)	최*원	2026.03.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지-***-* 티에스**호(문정동)	수취인불명	2026.04.16.	64,370
7	710-140003-202308-2-642-100003	법인지방소득세	최*원	2026.03.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지-***-* 티에스**호(문정동)	수취인불명	2026.04.16.	2,732,120
8	710-140003-202308-2-642-100004	법인지방소득세	최*원	2026.03.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지-***-* 티에스**호(문정동)	수취인불명	2026.04.16.	14,572,890
9	710-104102-202211-2-642-001077	주민세(사업소분)	최*원	2026.03.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지-***-* 티에스**호(문정동)	수취인불명	2026.04.16.	64,370
10	710-140003-202306-2-642-500004	법인지방소득세	최*원	2026.03.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지-***-* 티에스**호(문정동)	수취인불명	2026.04.16.	6,267,8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5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너*스 등 344명
4.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5. 6.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4. 16. ~ 2026. 5. 6.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820루70**	(*)*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9 17:5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	220하10**	주*회*케*피*	경기도 화성시	2026-02-14 22: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	350러65**	주*회*티*바*오	경기도 구리시	2026-03-16 09:0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4	212우70**	주*회*김*코*앤*	경기도 용인시	2026-03-18 15:2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5	87노12**	주*회*솔*몬	경상북도 상주시	2026-03-17 18:0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	226로85**	송*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9 07:1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	175허30**	(*)*세*렌*카	경기도 연천군	2026-03-19 15: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	175허30**	(*)*세*렌*카	경기도 연천군	2026-03-19 15:5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0 11:5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0	62러09**	주*회*아*인*스*리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8 13:5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	26주08**	주*회*아*티*코*시*템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7 18:0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	68모20**	주*회*미*빌*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16 17: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	30모92**	김*복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22 15:54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50,000
14	169허24**	(*)*라*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1 17:1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	220호87**	(*)*창*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11 10: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6-2	50,000
16	161고64**	제*앤*스*1*식*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16 17: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	192호92**	(*)*오*스	경기도 수원시	2026-03-05 08:56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18	89더07**	농*회*법*주*회*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13 18:20	태릉~서울여대	50,000
19	45보59**	(*)*알*이*조*스	경기도 안산시	2026-03-17 14:5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20	195하39**	주*회*하*랜*알*이*리*	경기도 용인시	2026-03-05 09: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1	220하55**	주*회*에*엠*루*	경기도 화성시	2026-02-12 17: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	33무93**	(*)*이*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9 13:1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3	800저83**	주*회*진*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9 18: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4	169허24**	(*)*라*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1 17:1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	215부81**	윈*톤*식*사	경기도 오산시	2026-03-10 19:5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	211너29**	주*회*리*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0 09:29	김포공항교차로~김포공항입구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223하99**	로*전*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05 09:0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8	176하90**	(*)*클*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3-06 18:3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9	215부81**	윈*톤*식*사	경기도 오산시	2026-03-10 20: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0	04조97**	주*지*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9 16:36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31	05하17**	(*)*파*코*아	경기도 하남시	2026-03-10 10:30	한신종합상가앞	50,000
32	132어88**	K*A*K*Y*E*A	경기도 성남시	2026-03-18 15: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	132어88**	K*A*K*Y*E*A	경기도 성남시	2026-03-18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4	57너55**	(*)*산*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6 18:3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5	125나47**	(*)*인*터*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6 09: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6	68모20**	주*회*미*빌*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16 19: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0 11:5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8	257가81**	주*회*화*피*피	경기도 포천시	2026-03-21 10:3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9	02수36**	(*)*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20 14:3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0	224주84**	주*회*바*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19 13:2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1	380로16**	주*회*퍼*픽*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20 11: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2	331무81**	주*회*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2 15: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3	360보11**	주*회*시*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6-03-18 17: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4	02하97**	주*회*도*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3 16:3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5	02하97**	주*회*도*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3 16: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6	206하82**	주*회*베*프*젝*코*아*이*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1 07:35	대치역~도곡역	50,000
47	160호33**	주*회*마*스*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3 11: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8	195하39**	주*회*하*랜*알*이*리*	경기도 용인시	2026-03-04 08: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50,000
4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6 1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50	169허24**	(*)*라*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1 17:1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1	04소74**	한*중*기*발*협*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13 16:2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6 17:27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53	377고25**	(*)*블*앤*코*아	대구광역시 남구	2026-03-18 20:4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	341저60**	(*)*투*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6 08:18	대치역~도곡역	50,000
55	168루60**	(*)*명*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9 18:5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56	711하20**	주*회*티*피*트*	충청남도 공주시	2026-03-21 10:41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60,000
57	298어14**	(*)*상*남	경기도 하남시	2026-03-17 18:1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1 17:17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59	374마81**	(*)*씨*스*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6 09:13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60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1 10:33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61	807다69**	(*)*래*캐*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9 11:3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2	31루10**	(*)*로*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8 07:55	중앙시장앞	50,000
63	289부99**	(*)*로*	경기도 용인시	2026-03-16 18: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64	169하29**	(*)*웃*브*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5 13:1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50,000
65	경기83사91**	주*회*비*에*에*치	경기도 부천시	2026-03-21 10:18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66	09누80**	(*)*아*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13 08: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50,000
67	328저68**	(*)*스*릭*코*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2 07: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8	56저22**	주*회*에*앤*공*	경기도 광주시	2026-03-18 09:4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69	51보70**	벽*공*미*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0 16: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0	162수89**	(*)*한*국*색*토*양*전*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17 18:1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71	807다69**	(*)*래*캐*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9 11: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2	83수51**	주*회*하*징*크*택*호	경기도 평택시	2026-03-18 08: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3	191허60**	극*이*어*이*화*구*	경기도 김포시	2026-03-06 08: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4	143호22**	(*)*외*컴*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20 08:23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75	807다69**	(*)*래*캐*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9 11: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6	50마21**	주*회*의*명*학*학	경기도 김포시	2026-03-17 1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77	179하37**	인*레*스	경기도 용인시	2026-02-24 18:3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8	169하8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19 12: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9	169하8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03-18 09: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0	33무53**	(*)*화*운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22 17:5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1	81보66**	주*회*세*툴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18 06:33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82	22보86**	김*란	경기도 시흥시	2026-03-17 18:5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3	52더21**	최*희	경상남도 창원시	2026-03-13 16:3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7길 26	50,000
84	10누45**	임*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7 18:2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85	서울31사73**	한*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3 10:17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86	89가45**	김*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6 08:48	성내교	50,000
87	95가42**	김*수	경기도 시흥시	2026-03-11 08:31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88	60다11**	S*K*B*A*A*M*N*H*R*E*E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22 18:25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89	41소07**	박*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7 17: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0	68누37**	송*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6 17: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91	56두37**	김*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6 08:30	강동구청역~풍납사거리	50,000
92	22고24**	K*I*A*A*K*A*O*S*I*I*L*M	충청남도 논산시	2026-03-18 12: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3	820가80**	정*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1 08:4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4	59서35**	유*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7 08:0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5	376두78**	최*성	경기도 안산시	2026-03-12 08:4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50,000
96	서울31바52**	황*건	경기도 안양시	2026-03-16 20: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7	서울31자70**	김*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16 23:26	상봉지하차도교차로	50,000
98	104무62**	황*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19 18:0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99	경기52바44**	손*표	경기도 수원시	2026-03-20 17:3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0	20구65**	안*진	충청북도 청주시	2026-03-18 20: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01	230구13**	L*E*O*G*Y*N	경기도 가평군	2026-03-10 15: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50,000
102	301오94**	선*서	경기도 평택시	2026-03-18 14:47	을지로입구역~한국은행앞교차로	50,000
103	805주42**	최*식	경기도 김포시	2026-03-16 15: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4	41서70**	고*연	경기도 광명시	2026-03-17 12:14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105	07노72**	김*현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13 09:3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6	59서35**	유*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6 08: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07	14가84**	H*S*A*N*H*K*A*A*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20 08: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08	179하32**	이*휘	경기도 시흥시	2026-02-17 00: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9	179하32**	이*휘	경기도 시흥시	2026-02-15 21: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0	179하32**	이*휘	경기도 시흥시	2026-02-17 00:4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1	115라87**	최*리나	경기도 성남시	2026-03-20 08: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2	144로85**	박*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7 17:1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3	144로85**	박*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7 17:1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14	233하21**	우*혁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0 19:3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5	136가33**	H*N*M*N*A*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9 19: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6	28구22**	이*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16 16:1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7	144로85**	박*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7 17: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18	221호83**	강*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15 15:02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19	61고80**	전*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9 10: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0	86누84**	송*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6-03-10 15:27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 196 (잠실동)	50,000
121	116호64**	유*환	경기도 부천시	2026-02-12 20: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22	서울31바61**	구*조	경기도 부천시	2026-03-17 20:41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23	125호62**	한*호	경기도 부천시	2026-02-27 09: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24	56무50**	이*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18 14:47	을지로입구역~한국은행앞교차로	50,000
125	159저28**	Z*A*Y*N*H*A*	경기도 안산시	2026-03-20 12:1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26	02모40**	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7 07:36	숙명여고앞	50,000
127	109호39**	박*철	충청남도 부여군	2026-02-15 23: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8	12저09**	차*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7 08:08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29	서울32자36**	이*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21 13:22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30	21가67**	김*훈	경기도 용인시	2026-03-22 19:3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31	02루65**	이*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8 18: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32	서울31아37**	정*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18 16:54	봉천고개~은천삼거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3	서울32사28**	김*철	경기도 시흥시	2026-03-20 09:3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4	109호73**	F*R*S*I*N*T*E*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26 0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5	21오64**	이*길	경기도 성남시	2026-02-19 00: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36	84우41**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6-03-17 09: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7	145모89**	안*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6 17: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8	221호37**	임*읍	경기도 수원시	2026-02-14 21:2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39	221호37**	임*읍	경기도 수원시	2026-02-14 21: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40	42호61**	박*훈	경기도 수원시	2026-03-02 15:5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1	경기85바47**	박*분	경기도 과천시	2026-03-18 08:3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42	720루49**	이*희	경기도 광주시	2026-03-11 08: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04-2	60,000
143	09호96**	C*U*G*I*H*E*K*U*I*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7 0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4	239조60**	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13:1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5	서울31아62**	김*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6 0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0	50,000
146	126버71**	이*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7 15:4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7	서울32사65**	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6 15:3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48	234가17**	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5 09: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50,000
149	서울31자74**	장*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19 07: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0	38모78**	최*옥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8 09:1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51	서울36바17**	손*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2 08:30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152	84도49**	강*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5 11:1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 (여의도동)	50,000
153	인천30바72**	이*술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3-16 20:0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54	363두94**	이*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3-11 11:21	잠실새내역~잠실3사거리	50,000
155	01오63**	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0 07:43	도곡역~매봉역	50,000
156	95보33**	민*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0 10: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7	50부57**	성*율	경기도 용인시	2026-03-19 17:29	공릉동 오일뱅크 회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58	서울31사48**	김*배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0 11: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59	163너36**	정*태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9 19:2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0	125호45**	신*철	경기도 성남시	2026-03-13 1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1	153하89**	김*수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04 14: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2	서울32사52**	전*호	경기도 하남시	2026-03-18 07:36	학여울역~대치역	50,000
163	15모52**	이*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8 08: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64	315더31**	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20 11: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65	07머79**	김*경	충청남도 서산시	2026-03-20 18:0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6	249루27**	김*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0 12: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67	259보27**	김*묵	충청남도 아산시	2026-03-18 16:0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168	서울31자23**	남*병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20 16:57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169	서울32바40**	강*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8 12: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0	서울31사26**	지*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2 13:03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23 (상계동, 상계주공2단지아파트)	50,000
171	264우28**	T*N*L*K*E*V*A*I*I*O*I*H	경기도 안산시	2026-03-18 20:0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72	120서11**	박*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9 17:3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73	45저43**	정*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3 07:49	삼성교~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174	50고45**	심*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9 08:36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175	서울31사46**	안*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6 16:12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176	181하81**	백*성	경기도 안산시	2026-02-13 18:0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77	56부08**	이*완	경기도 광주시	2026-03-17 20:1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8	224호20**	L*U*E*L*N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14 12:06	금천소방서~말미사거리	50,000
179	160하13**	최*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25 17:1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80	268주33**	김*열	경기도 여주시	2026-03-22 08:5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81	31보81**	O*K*O*T*U*N*R*N*A*T*R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3-22 01: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82	02머83**	정*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20 18:4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83	802라70**	김*찬	경기도 안양시	2026-03-17 14:3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84	221하20**	이*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13 10:2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85	01가86**	U*E*B*K*V*A*R*T*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22 17: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6	경기90아28**	김*래	경기도 양주시	2026-03-17 09:3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60,000
187	84모14**	서*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8 13:1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88	49수88**	강*영	부산광역시 남구	2026-03-17 08:14	도곡역~메봉역	50,000
189	53더93**	가*진	경기도 고양시	2026-03-18 09:25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190	175오31**	이*만	경기도 이천시	2026-03-20 10:4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91	202호89**	김*균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6 02: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2	223허80**	남*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09 07:17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93	63로99**	이*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6-03-20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4	경기39바46**	조*옥	경기도 광명시	2026-03-18 22:0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95	07보90**	김*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7 18:3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96	서울31사27**	곽*석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7 20:16	삼성교~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197	37무18**	최*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18 08:45	육사야구장~삼육에코팜센터	50,000
198	37무18**	최*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16 08:33	육사야구장~담터1교차로	50,000
199	139루34**	정*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0 20:4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00	37누54**	손*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17 10: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01	153누17**	김*경	인천광역시 중구	2026-03-16 17:3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02	서울31바39**	박*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20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3	46두76**	길*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20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4	서울89자10**	박*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0 11:14	압구정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205	서울81배22**	김*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20 13:26	을지로1가교차로~한국은행앞교차로	50,000
206	223하39**	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05 16: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07	139무88**	송*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20 06:52	등촌역~강서구청입구교차로	50,000
208	서울38아57**	박*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16 19: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09	41거02**	T*A*T*I*H*N*T*A*	대전광역시 서구	2026-03-16 18: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10	245버36**	조*산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6 17:5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11	229하16**	박*자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5 17: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12	27노30**	오*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3-21 21:00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3	164다32**	김*환	경기도 고양시	2026-03-18 14:2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14	257마40**	국*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19 18:4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15	28구22**	이*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16 16:2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16	45고11**	이*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20 18: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7	226하12**	최*용	경기도 포천시	2026-03-07 12: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18	50라37**	최*희	경상북도 구미시	2026-03-20 14: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19	324주17**	P*A*Z*E*G*E*	경기도 파주시	2026-03-17 10:51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220	251마24**	유*희	인천광역시 동구	2026-03-20 14: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21	51루74**	이*숙	경기도 하남시	2026-03-18 09: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22	116노43**	김*연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16 17:4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23	15두28**	박*봄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16 10:21	영등포유통상가앞	50,000
224	26모86**	P*K*U*L*N	경기도 화성시	2026-03-20 12:0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25	199호13**	최*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7 08:41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226	184도48**	이*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6 17: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27	354노99**	전*호	경상남도 창원시	2026-03-17 00:5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28	107부98**	김*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19 18: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9	11소78**	N*U*E*D*C*I*U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6 09: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30	151소82**	신*현	경기도 하남시	2026-03-18 19: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1	106로18**	김*혁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20 17:5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32	10마97**	Y*L*A*H*V*U*T*M*O*K*M*L*I*U*L*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22 16:5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33	142호63**	최*운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09 08:2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34	51고03**	임*민	인천광역시 중구	2026-03-18 17: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5	239두94**	김*	전라남도 여수시	2026-03-16 09: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6	281루53**	송*석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3-11 18: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7	81무78**	이*경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6-03-18 10:4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38	300서25**	김*현	경기도 수원시	2026-03-20 17:3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9	04나26**	신*옥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6-03-22 18:0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0	294모14**	성*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17 12:05	천호대교북단	50,000
241	360조51**	김*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0 19: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2	39소63**	김*덕	경기도 광주시	2026-03-20 19: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43	86거24**	신*철	경기도 광주시	2026-03-16 07:23	대치역~도곡역	50,000
244	59부07**	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0 19:5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45	서울31사36**	신*덕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18 07: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6	81로35**	송*하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19 09:1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47	서울31자73**	황*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20 19: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48	48모79**	김*균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20 17: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9	서울31자34**	김*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17 08:20	매봉역~양재역	50,000
250	69나66**	이*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20 18: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51	경기34바41**	현*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0 18: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52	서울31바52**	정*열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20 09:2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53	130호22**	이*준	경기도 양주시	2026-03-09 18: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54	243버53**	곽*	경기도 양주시	2026-03-20 13:0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55	383도84**	이*희	경기도 오산시	2026-03-20 08:2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6	396무78**	김*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3 17:28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57	165호94**	임*준	경기도 용인시	2026-03-06 12:5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58	165호94**	임*준	경기도 용인시	2026-03-06 12: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59	28어10**	신*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8 17:3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60	서울31아68**	장*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17 09:0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61	224호91**	김*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12 18: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2	08가25**	조*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18 09: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3	394모87**	신*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20 11: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4	07조44**	임*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19 20: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65	28루86**	정*현	서울특별시 중구	2026-03-19 17:1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66	01다53**	한*조	경기도 파주시	2026-03-20 19: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7	서울32자60**	기*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20 20:0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68	13누45**	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8 13:1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69	111모56**	최*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9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70	111모56**	최*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20 15:1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71	81가60**	문*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19 16: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2	174도16**	윤*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9 20: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73	서울31사19**	고*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18 10: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4	164구63**	김*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7 18:0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75	서울31자90**	주*문	경기도 양주시	2026-03-17 12:2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76	서울32사17**	임*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8 11:16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277	58루07**	김*수	대전광역시 서구	2026-03-18 08:3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78	845무41**	김*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6 12: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9	17저11**	현*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1-16 13:40	서초IC~양재IC	50,000
280	119고72**	최*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22 09:1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81	05무74**	이*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0 07:43	도곡역~매봉역	50,000
282	10소05**	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7 08: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3	86무06**	최*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9 12: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84	서울31자54**	최*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8 15:59	잠실역~잠실새내역	50,000
285	165허59**	B*A*C*G*V*N*E*N*T*L*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16 13:24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86	43머21**	김*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17 08:4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87	서울32아27**	정*세	경기도 김포시	2026-03-17 08:0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8	22머69**	박*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2 08:57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289	서울32사83**	김*열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2 08:57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290	30라02**	김*호	경기도 화성시	2026-03-21 20:3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91	서울38아49**	안*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18 16:42	강남소방서앞	50,000
292	86무06**	최*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17 13: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3	80고23**	김*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17 14:40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4	115어32**	하*룡	경상남도 하동군	2026-03-18 19: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95	32마05**	장*원	경기도 양주시	2026-03-18 19: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96	74루52**	정*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17 18:12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60,000
297	284라85**	김*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8 09:0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98	서울32아23**	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2 08:56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299	서울81배48**	송*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6 09:4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00	서울31바31**	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2 18:16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301	800우15**	조*화	경기도 구리시	2026-03-13 17:26	원효대교북단~원효로2가교차로	50,000
302	148주52**	김*진	인천광역시 중구	2026-03-15 11: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	50,000
303	706조32**	서*희	경기도 포천시	2026-03-19 15:0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60,000
304	377로42**	김*아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20 10: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05	38조64**	노*우	대전광역시 동구	2026-03-18 17:3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06	29보24**	K*M*L*D*M*R*F*N*S*V*C*	경기도 화성시	2026-03-18 0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07	157어31**	김*규	경상남도 함양군	2026-03-17 14:33	이수역~사당역	50,000
308	38조64**	노*우	대전광역시 동구	2026-03-18 17: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09	인천30바32**	차*용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18 18:3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0	231소33**	J*N*H*N*Q*A*	경기도 시흥시	2026-03-18 13:3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1	109하15**	정*형	경기도 화성시	2026-02-12 16:5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12	184서52**	박*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8 08:07	매봉역~양재역	50,000
313	171조77**	유*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20 08: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14	19버14**	김*향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12 12:3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5길 48	50,000
315	경기89자94**	윤*열	경기도 군포시	2026-03-20 09: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6	56가06**	남*배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19 09: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17	86거24**	신*철	경기도 광주시	2026-03-20 07: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8	32모32**	오*서	경기도 양주시	2026-03-16 14:1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19	서울81배46**	김*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20 18:1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20	62주70**	한*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17 11:1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1	32다79**	N*R*U*A*E*O*A*U*A*I*T*J*M*K*A*M*T*G	경상남도 창원시	2026-03-16 06:38	흥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322	서울중타27**	한*실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17 17:28	종로5가역~흥인지문교차로	40,000
323	31무15**	조*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3-19 12:0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24	10소05**	이*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0 07: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5	840모42**	K*N*R*S*I*A*R*U*O*N*	경기도 안산시	2026-03-20 07: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26	277우69**	정*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20 09: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27	221주52**	S*N*P*N*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19 20: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28	83조77**	김*호	경기도 수원시	2026-03-19 08:0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29	349무62**	정*귀	경기도 수원시	2026-03-20 18:1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30	349무62**	정*귀	경기도 수원시	2026-03-20 18:1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31	349무62**	정*귀	경기도 수원시	2026-03-20 18:1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32	서울86자66**	박*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19 07: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3	231소33**	J*N*H*N*Q*A*	경기도 시흥시	2026-03-18 13:3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34	231소33**	J*N*H*N*Q*A*	경기도 시흥시	2026-03-18 13:3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35	289가73**	서*경	경기도 광주시	2026-03-19 08: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36	312보92**	안*남	경기도 안산시	2026-03-22 07: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7	03도70**	송*웅	경기도 안성시	2026-03-17 10: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8	266다16**	황*훈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7 22:1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39	84모14**	서*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8 07:44	강남소방서앞	50,000
340	13저66**	윤*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12 19:11	삼양입구사거리~미아사거리역	50,000
341	09러58**	도*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17 18:5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42	10두41**	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12 14:2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2 (신사동)	50,000
343	04나26**	신*옥	울산광역시 울주군	2026-03-22 18:1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4	33너01**	박*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20 07:44	도곡역~매봉역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61호

2026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 제3항,「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 제5항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 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2. 지원금액: 18,000백만원

3.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
   가. 2026년 신규 융자 건은 위의 이자율 적용
   나. 2026년 이전 융자 건 중, 2025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상환기간 연장되는 건은 위의 이자율 적용
   다. 2026년 이전 융자 건 중, 상환기간 내의 융자금은 기존 약정된 이자율 적용

4.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다.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마. 2024.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 융자 제외 대상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
-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 신탁업자가 공동시행 · 지정개발자 · 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 융자 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5. 융자금 한도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 서울시 융자금과 국토교통부 융자금('26년 지원 예정) 중복 지원되는 경우, 융자금 한도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융자금 한도 합계 중 일부만 적용될 수 있음

6.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8.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 융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9. 지원절차

계획공고	지원신청	지원심사	지원결정	결정통보	대출신청	대출심사	자금대여	대출실행
서울시	추진주체*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추진주체	추진주체⇒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가. 신청서류 제출(추진위원회/조합→자치구)
    1) 접 수 처 :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2) 접수기간 : 2026. 5. 1.(금) ~ 5. 11.(월)

10. 신청서류
  가. 융자신청서 (공문_문서형식)
  나. 융자금 집행계획서 (파일 형식)
  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파일 형식)
  라.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파일 형식)
  마.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파일 형식)
  바.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파일 형식)
  사.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파일 형식)
  아.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파일 형식)

11. 기타

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조합업무지원)에 등재되어야 함

※ 자치구에 신청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집행계획, 집행내역)

나. 서울시 융자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2133-719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63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2. 정지기간 : 2026.4.16.~2026.7.15.(3개월)
3. 처분내역

대 상 자		위반내용	영업정지	
법인명	주 소		산림사업의 종류	기간
지은조경㈜ (대표자 : 이주현)	서울 관악구 관악로40길47, 1-13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미충족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3개월 (2026. 4. 16.~ 2026. 7. 15.)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274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서울시는 이주비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정비사업 이주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라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이주비)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 사업명칭: 주택공급 정상화 사업비 융자 지원 (시범사업)
- ○ 지원목적: 이주비 조달이 어려운 정비사업 조합에 서울시가 이주비를 직접 융자하여 이주 촉진 및 주택공급 정상화 도모
- ○ 지원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서울특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조례」제6조
- ○ 융자규모: 160억원
- ○ 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2. 추진 절차

사업 공고	총회 의결	조합 신청	사업지 선정 및 통보
융자 실행계획 등 공고 (서울시)	융자 안건 총회 의결 (조합)	융자신청서, 이주비 조달 현황 등 제출 (조합→자치구→서울시)	시급성, 효과성 등 검토 후 사업지(조합) 선정 및 통보 (서울시→조합, SH)

심사 서류 제출	적격 심사	융자약정 및 집행	원리금 상환
조합원 추천 명단 및 구비서류 제출 (조합→SH)	자격요건 충족, 근저당 설정 가능 여부 등 심사 (SH)	융자약정 체결, 근저당권 설정 및 융자집행 (SH→조합→조합원)	입주시 융자 원금 일시 상환 (조합→SH)

※ 융자는 SH에서 조합에 실행, 조합에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 대상으로 융자 지급

2. 신청 대상 및 자격

○ 대상조합: 서울시 내 조합원 500명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만 해당

○ 신청자격: ’25.6.27.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26.12.31.까지 이주 개시(예정)인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

○ 대상조합원: 조합이 추천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구역내 거주자(조합원 혹은 임차인)의 이주 목적으로 융자지원이 필요한 자

– 부동산 담보(근저당권) 1순위 설정이 가능하고, 기타 제한물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 신용관리대상자(개인회생, 파산자, 신용회복 대상 등)에 해당할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 자에 해당할 경우 제외

3. 융자 조건 및 한도

○ 융자용도: 정비사업 주민 이주비

○ 융자한도

– 조 합: 이주 필요액의 80% 이내 (예산 한도 이내)

– 조합원: LTV 50% 이내 (최대 3억 원 한도)

※ 실제 이주(조합원 이주 혹은 임차인 보증금 반환)를 위한 증빙 범위 내 금액 지급

○ 융자금리: 4.5%

○ 융자조건

– 조합원 개별 부동산에 서울시 명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융자금의 120%)

– 조합 정관에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융자기간: 융자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융자결정 취소 전까지

※ 융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② 정비구역 해제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③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④ 융자금을 정비사업 주민 이주비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상환방법: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원리금 일시 상환

※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4. 대상지 선정 기준

○ 시급성: 이주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주가 지연(예상)되어 융자금 지원이 시급한 구역

○ 효과성: 융자 후 신속하게 이주·철거가 가능한 구역으로 사업효과가 큰 구역

○ 기 타: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인허가 관련 소송 진행 여부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5. 18. ~ 2026. 5. 22.

○ 접 수 처: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조합총회 결의서만 2026. 6. 5.(금)까지 제출하고, 나머지는 신청 시 제출)

① 융자 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이주비 조달 현황(붙임 양식)

③ 이주·철거 계획(붙임 양식)

④ 융자 지원 확약서(붙임 양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양식)

⑥ 기타 사업 요약서(붙임 양식)

⑦ 융자금 신청 조합원 권리 및 채무 등 명세(붙임 엑셀 양식)

⑧ 신청 조합원 명단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가능한 권리명세(별도 파일)

⑨ 융자금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별도 파일)

⑩ 융자대상자 감정평가서 평가서 사본(※ 평가사 원본 대조필 날인) (별도 파일)

⑪ 서울시 융자금 신청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서(별도 파일)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조합업무지원)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자치구에 신청한 공문 및 신청서류 등 일체 등재

○ 조합은 서울시 융자지원 사업지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대행기관(서울시주택도시개발공사)에 심사 서류(필요 시 대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전에 상환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행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융자 기간 중 조합원 명의변경 시 융자금은 승계되지 않으며, 즉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속, 이혼의 경우 제외)

○ 입주권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 소유자 전체가 신청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조합원 명의로 융자를 신청하고 각각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융자 신청 조합원은 소유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고, 기타 제한물권이 없어야 하며, 대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융자금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융자 지원은 융자 한도 내에서 적격 심사를 통해 실제 이주(본인 이주 혹은 임차인 반환)를 위한 금액만을 지급하오니 실제 소요 비용을 초과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 설정 및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 융자금은 천원 단위 절사 후 지급됩니다.(예시: 103,345,678원 → 103,345,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거정비과(☎02-2133-71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6-1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폭언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신설하여 내·외부 민원 서비스 향상
 나.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현행화
2. 주요내용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신설
 (안 제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총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
   ○ 연락처 : 전화 02-6033-5089, FAX 02-6033-5098
   ○ 이메일 : gagory@sen.go.kr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법무행정서비스-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붙임 2】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명: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6년 월 일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26-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 7.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38호(2023. 4. 13.),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39호(2023. 4. 13.),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40호(2023. 4. 13.)로 실시계획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54호(2023. 5.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55호(2023. 5. 2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56호(2023. 5. 25.), 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실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이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연번	사 업 명	사업시행 위치	사업규모
1	군자동 134-53 ~ 146-10간 도로개설	군자동 134-53 ~ 146-10	폭 6m, 연장 215m
2	군자동 115-21 ~ 115-12간 도로개설	군자동 115-21 ~ 115-12	폭 4.5m, 연장 20m
3	자양동 84-1~ 79-14간 도로개설	자양동 84-1 ~79-14	폭 6m, 연장 107m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실효일자: 2026. 4. 16.

사. 실효사유: 재정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시행 불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토 지 조 서

1. 사 업 명: 군자동 134-53~146-10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4.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군자동 130-110	대	10	10	1	광진구					
2	군자동 134-5	도	3	3	1/2	신○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반포동,반포리체)				
					1/2	하○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반포동,반포리체)				
3	군자동 117-1	도	2996	828	1	광진구					
4	군자동 141-10	도	1	1	1/2	신○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반포동,반포리체)				
					1/2	하○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반포동,반포리체)				
5	군자동 116-17	도	3	3	1	임○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 321				
6	군자동 115-2	도	498	498	1	○글로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4길 46, 201호(서초동)				
7	군자동 115-23	도	25	25	1	광진구					
8	군자동 111-6	도	115	105	1	광진구					
9	군자동 115-5	대	26	26	1/2	신○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반포동,반포리체)				
					1/2	하○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반포동,반포리체)				

토 지 조 서

1. 사 업 명: 군자동 115-21~115-12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4.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군자동 115-11	도로	86	86	1/2	신○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반포동,반포리체)				
					1/2	하○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 104동 2002호(반포동,반포리체)				

토 지 조 서

1. 사 업 명: 자양동 84-1~79-14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4.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연번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자양동 84-16	도로	202	202	1/2	우○우	서울시 강동구 길동 329-16				
					1/2	광진구					
2	자양동 82-3	도로	124	124	1	서울시					
3	자양동 830-3	도로	306.1	306.1	1	광진구					
4	자양동 79-23	도로	123	123	1	광진구					

◈ 성북구고시 제2026-54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총독부고시 제1940-208호(19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결정(변경) 및 성북구고시 제2019-99호(2019.6.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성북구고시 제2021-99호(2021.6.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성북구고시 제2025-162호(2025. 11. 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성북구 안암동5가 산1-55일대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및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2241-3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산1-5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32,090㎡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변경)
  ○ 착 수 일 : 2019. 6. 13.
  ○ 준공예정일 : 2027. 12. 31.(기간 연장)
사.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안암동5가	산1-55	임야	4,513	4,5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서울특별시				
2	안암동5가	산1-93	임야	12,664	12,66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서울특별시				
3	안암동5가	산1-95	임야	14,777	14,77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서울특별시				
4	안암동5가	산1-96	임야	136	1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서울특별시				

◈ 송파구고시 제2026-48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 9. 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잠실동 186-7호 건축물 최고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7,687 (355.2)	-	367,687 (355.2)	서고 제397호 ('84.7.4)

※ ( )는 금회 변경대상지(송파구 잠실동 186-7호) 면적임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3) 높이계획: 변경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이면부	용도지역 존치시	10m 도로변	20m 이하	22.99m 이하	잠실동 186-7호에 한함
		6m 이하 도로변	15m 이하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송파구 잠실동 186-7호	• 최고높이 완화 (20% 이내)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물 최고높이 20% 이내 완화

Ⅳ. 관계도면: 변경없음(게재생략)

※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송파구고시 제2026-49호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96호(2015. 9. 24.)로 결정(변경)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잠실동 223-3호 건축물 최고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367,687 (281.0)	-	367,687 (281.0)	서고 제397호 ('84.7.4)

※ ( )는 금회 변경대상지(송파구 잠실동 223-3호) 면적임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1)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2) 용적률 계획(변경없음)

3) 높이계획: 변경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이면부	용도지역 존치시	10m 도로변	20m 이하	-	잠실동 223-3호에 한함
		6m 이하 도로변	15m 이하	17.2m 이하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송파구 잠실동 223-3호	• 최고높이 완화 (20% 이내)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신축을 위한 건축물 최고높이 20% 이내 완화

Ⅳ. 관계도면: 변경없음(게재생략)

※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02)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6-562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43호(2004.5.20.)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문화지구) 결정된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하여 도시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한 계획으로 변경(재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휴일 포함)
2. 열람장소 : 종로구 문화과(☎2148-1813), 이화동 주민센터(☎2148-5303), 혜화동 주민센터(☎2148-5332)
3.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결정(변경)(안)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문화지구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대학로 문화지구	종로구 혜화동·동숭동·이화동·연건동·명륜동 일대	대학로 일대 문화자원보존 및 문화환경 조성	446,569.0	2004.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43호)	-
변경	-	대학로 문화지구	종로구 혜화동·동숭동·이화동·연건동·명륜동 일대	대학로 일대 문화자원보존 및 문화환경 조성	480,882.0	-	-

※ 게재 생략된 내용(세부조서 등)은 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로 갈음

4.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 비치
5.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종로구 문화과, 이화·혜화동주민센터 혹은 kha5997@seoul.go.kr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공람(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문화과(☎2148-1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공고 의견서

<table>
<tr><td>계 획 명
(공고번호)</td><td colspan="4">도시관리계획(대학로 문화지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562호)</td></tr>
<tr><td>위 치</td><td colspan="4">종로구 대학로 일대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연건동, 명륜동)</td></tr>
<tr><td>열람기간</td><td colspan="4">2026년 4월 17일 ~ 2026년 5월 1일</td></tr>
<tr><td rowspan="3">의 견
제 출 인</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
(법인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소유필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의 견 내 용</td></tr>
<tr><td colspan="5"></td></tr>
</table>

2026년 월 일

제출인 : 인(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귀하

◈ 성동구공고 제2026-572호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한양대역세권(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성 동 구 청 장

Ⅰ. 열람기간: 2026. 4. 16. ~ 4. 30.(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Ⅱ.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성동구청 도시계획과(고산자로 270, 11층 ☏02-2286-5553)

Ⅲ. 열람내용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신규)(안)

Ⅳ.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Ⅴ. 의견제출 방법: 팩스(02-2286-5928) 및 이메일(aminlove3@sd.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 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가능

Ⅵ. 기타사항
- 본 계획(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수립된 계획(안)으로 사업의 사업 주체 등은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획은 확정된 사항이 아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02-2286-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행당동 19번지 일대	95,079.0	감)6,822.9	88,256.1	서고 제2010-78호 (2010.3.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	결정사유
변 경	행당동 19번지 일대	88,256.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일부 중첩 구역을 제척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5,079	감)6,871.0	88,20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2,826	감)290.6	22,535.4	25.5	
	제3종일반주거지역	57,608	감)6,580.4	51,027.6	57.9	
	준주거지역	14,645	-	14,645.0	16.6	

※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이 될 수 있음.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	결정사유
변 경	행당동 19번지 일대	88,256.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일부 중첩 구역을 제척으로 인한 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인센티브 운용 계획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1)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변경)

■ 계획내용(변경)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가능구역	행당동 32-1번지 일대	8,390	감)6,871	1,519	-

■ 계획내용 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서
특별계획가능구역	행당동 32-1번지 일대	1,519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일부 중첩 구역을 제척으로 인한 변경

3) 특별계획가능구역 일반지침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서 참고

라. 경마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이하 여백 -

2 한양대역세권(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장기전세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한양대역세권 (행당동 31-1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	증)21,800.7	21,800.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	결정사유
신설	①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원	21,800.7	· 성동구 행당동 31-11번지 일대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1,800.7	-	21,800.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5,217.6	감)13,617.7	1,599.9	7.3	
	제3종일반주거지역	6,583.1	감)6,453.0	130.1	0.6	
	준주거지역	-	증)20,070.7	20,070.7	92.1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44	주간선	5,910 (237)	행당동 행당광장	성동교앞 (행당동 71-9)	일반도로	건고2493 '66.6.21.	왕십리로
변경	대로	1	16	35~44 (36)	주간선	5,910 (237)	행당동 행당광장	성동교앞 (행당동 71-9)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48	20.5~25.5	집산 도로	444 (193)	행당동 20-7	행당동 77-1	일반도로	'08.07.31	살곶이길
변경	대로	3	A	20.5~30 (30)	집산 도로	444 (193)	행당동 20-7	행당동 77-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57 (57)	행당동 37-5	행당동 37-31	일반도로	-	

※ ( )는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6	대로 1-16	- 폭원(B): 35~44m (구역 내 36m) - 연장(L): 5,910m (구역 내 186m)	· 왕십리로 교통시설 체계를 고려한 폭원 확장
중로 1-448	대로 3-A	- 폭원(B): 20.5~30.0m (구역 내 30m) - 연장(L): 444m (구역 내 285m)	· 살곶이길의 증가되는 교통수요를 반영한 폭원 확장
-	소로 3-A	- 폭원(B): 6m - 연장(L): 57m	· 기존 협소한 현황도로의 재정비 및 긴급 차량의 진입로 확보 등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행당동 39-5번지 일원	-	증)488.3	488.3	-	

■ 사회복지시설 결정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결정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위치	비고
신설	①	19,582.4	행당동 31-11번지 일원	공동주택

※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용도	구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①	권장용도 (A)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16.48% 이하
		상한	◦ 500.00% 이하
	최고높이		◦ 160m 이하

나)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형태		◦ 탑상형 위주 배치 - 대형필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야확보 및 랜드마크 부여 - 가로변 시각통로 확보 및 고층부 개방감 부여	
외관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유채색 계통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	
	재료	◦ 주변 경관과 조화된 재료 선택 유도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5.1.24.) 준용

■ 공공기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 기준	기준용적률		◦ 216.48% 이하	
	상한용적률		◦ 500% 이하	
	완화용적률의 1/2		◦ 141.76% 이상 - 완화용적률(283.52%)의 1/2 이상	부지면적 환산 5,552.0㎡
공공기여 제공계획	총 공공기여 제공량		◦ 141.81% - 장기전세주택 97.79% - 공공시설 44.02%	부지면적 환산 5,558.31㎡
	공공기여시설	장기전세주택	◦ 총 205세대(59㎡, 84㎡) 계획	계획기준 전용 84㎡ 이하
		공공시설	◦ 건축물 기부채납: 사회복지시설 - 연면적: 1,900.0㎡ - 규모: 지하1층~지상7층 - 용도: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 도로 : 550.71㎡	토지면적 기준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형태 등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운영기준</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5">필수</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 또는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으로 계획
◦적합 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td><td>리모델링이
쉬운구조
(라멘구조)</td></tr>
<tr><td>환경성능부문</td><td rowspan="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 환경성능부문 ㉡ 에너지성능부문 ㉢ 에너지관리부문 ㉣ 신·재생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table>
<tr><th>구분</th><th>주거</th><th>비주거</th></tr>
<tr><td>㉮</td><td>1,000세대 이상</td><td>연면적 합계 10만㎡ 이상</td></tr>
<tr><td>㉯</td><td>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td></tr>
<tr><td>㉰</td><td>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td></tr>
<tr><td>㉱</td><td>30세대 미만</td><td>연면적 합계 3천㎡ 미만</td></tr>
</table>
◦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적용대상의 구분이 최상일 경우(㉮)는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과 동일 고시의 녹색건축물 인센티브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5등급 추가 적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계획내용을 착공 전까지 예비인증, 사용승인 시 인증받아야 함</td><td>㉯기준 적용</td></tr>
<tr><td>에너지성능
부문</td><td>㉮기준으로
상향 적용</td></tr>
<tr><td>에너지관리
부문</td><td>㉯기준 적용</td></tr>
<tr><td>신·재생에너지</td><td>㉮기준으로
상향 적용</td></tr>
<tr><td>역사문화보전</td><td>◦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td><td>해당없음</td></tr>
<tr><td>권장</td><td>커뮤니티
지원시설</td><td>◦공동주택 거주자와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입안권자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필요 시 설치</td><td>-</td></tr>
</table>

라) 공공기여 산정

■ 장기전세주택 설치계획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대지지분
59A	148세대	59.99㎡	87.08㎡	2,850.5㎡
59B	20세대	59.99㎡	86.83㎡	347.7㎡
소 계	168세대	10,078.32㎡	14,625.08㎡	2,928.26㎡
84A	29세대	84.98㎡	122.17㎡	709.4㎡
84B	8세대	84.99㎡	122.74㎡	196.6㎡
소 계	37세대	3,144.45㎡	4,524.92㎡	905.99㎡
합 계	205세대	13,222.77㎡	19,150.00㎡	3,834.25㎡

※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기준에 따라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공공기여 산정

구분	산출값		비 고
대지지분	488.3㎡		◦ 기부채납 토지의 대지면적
연면적	1,900.0㎡		◦ 건축계획(안)에 따른 연면적
공사비 산정	건축비	7,733,000,000원	◦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 노인복지센터 4,477,000원/㎡ ◦ 연면적 X 건축비 단가 / 부가세 = 1,900㎡ X 4,477,000원/㎡ / 1.1
	설계비	330,189,356원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제2절 3-2-2. 적용 ◦ 7,733,000,000원(건축비) X (4.270(설계비요율) /100)
	감리비	81,475,043원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제2절 3-2-2. 적용 ◦ 7,733,000,000원(건축비) X (1.054(감리비요율) /100)
총 공사비	8,144,664,399원		◦ 건축비 + 설계비 + 감리비 ◦ 7,733,000,000원 + 330,189,356원 + 81,475,043원 = 8,144,664,399원
부지가액	11,889,238원		◦ 2025년 공시지가 X 2 ◦ 5,944,619원/㎡ X 2 = 11,889,238원
환산부지 면적	685.05㎡		◦ 연면적 X 건축비 / 부지가액 ◦ 1,900㎡ X 8,144,664,399원 / 11,889,238원 = 685.05㎡
기부채납 면적	1,173.35㎡		◦ 대지지분 + 환산부지면적 ◦ 488.3㎡ + 685.05㎡ = 1,173.35㎡

※ 「2024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 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상한 용적률	216.48% / 500% 이하	◦ 기준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중평균 ◦ 상한용적률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용적률 증가분	283.52%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500% - 216.48% = 283.52%
증가 용적률의 ½	141.76%	◦ 용적률 증가분의 50% : 283.52% x 50% = 141.76% 이상

구분	계획내용	비고
증가용적률 ½의 대지지분 (A)	5,552.00㎡	◦ 획지면적 x (장기전세주택 지상부연면적 ÷ 전체 지상부연면적) = 19,582.4㎡ x ((19,150.00㎡ X 141.76%) ÷ (19,150.00㎡ X 500%))
기반시설 제공 대지지분 (B)	1,724.06㎡ (44.02%)	◦ 대지지분 : 기반시설 면적 ⅹ 기반시설 용적률 ÷ 상한용적률 = {(1,214.2㎡x200%)+(130.1㎡x250%)+(1,173.3x500%)}÷500% ◦ 용적률: 기반시설 면적 ⅹ 기반시설 용적률 ÷ 획지면적 = {(1,214.2㎡x200%)+(130.1㎡x250%)+(1,173.3x500%)}÷19,582.4㎡
장기전세주택 필요 대지지분 (A- B)	3,827.94㎡ (97.74%)	◦ 장기전세주택 대지지분 - 기반시설 대지지분 = 5,552.00㎡ - 1,724.06㎡
장기전세주택 계획 대지지분	3,834.25㎡ 계획 (205세대, 97.79%)	◦ 획지면적 x (장기전세주택 공급면적 ÷ 용적률산정용 전체연면적) = 19,582.4㎡ x (19,150.00㎡ ÷ 97,803.51㎡)

※ 추후 공공기여계획 및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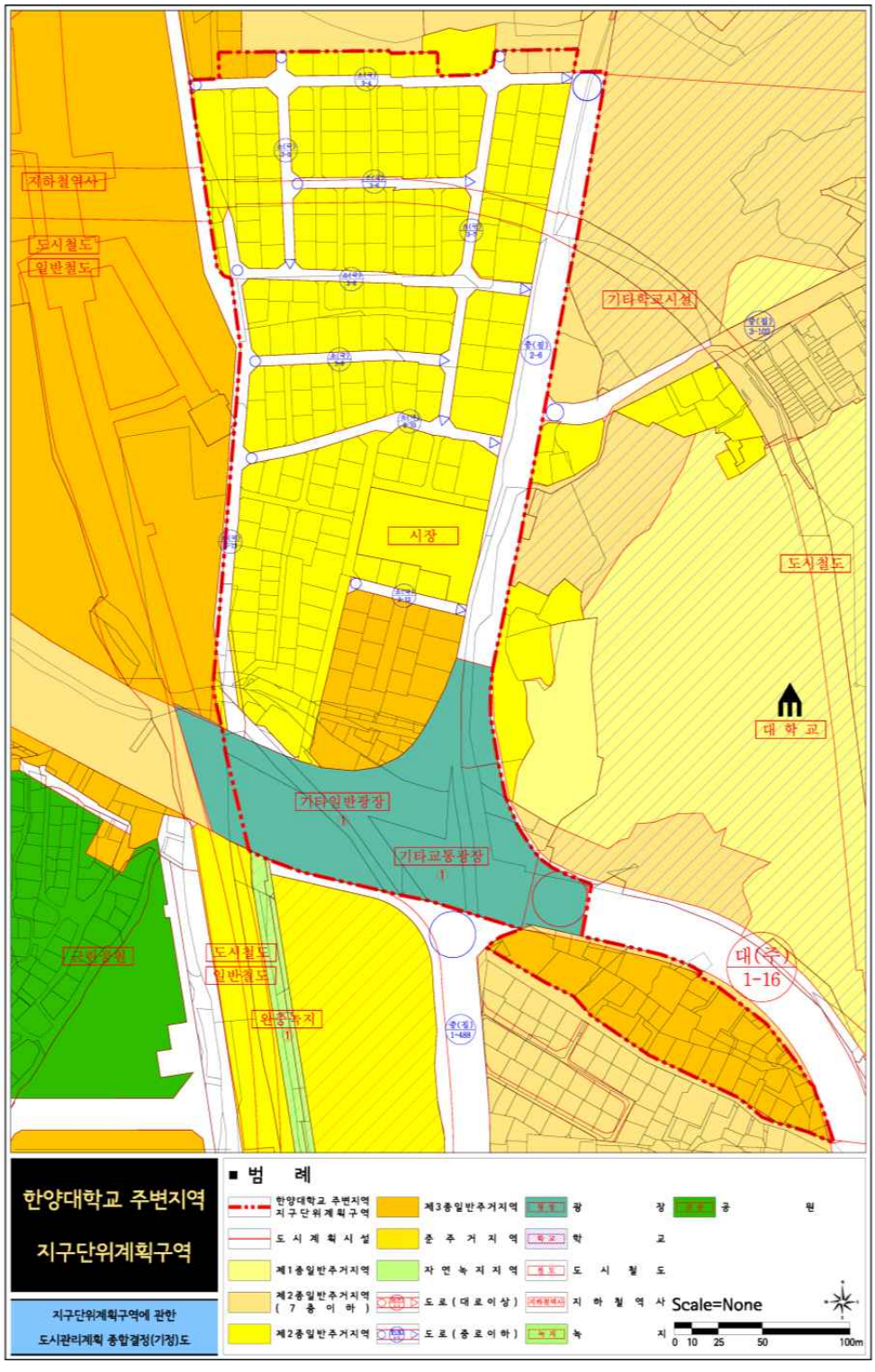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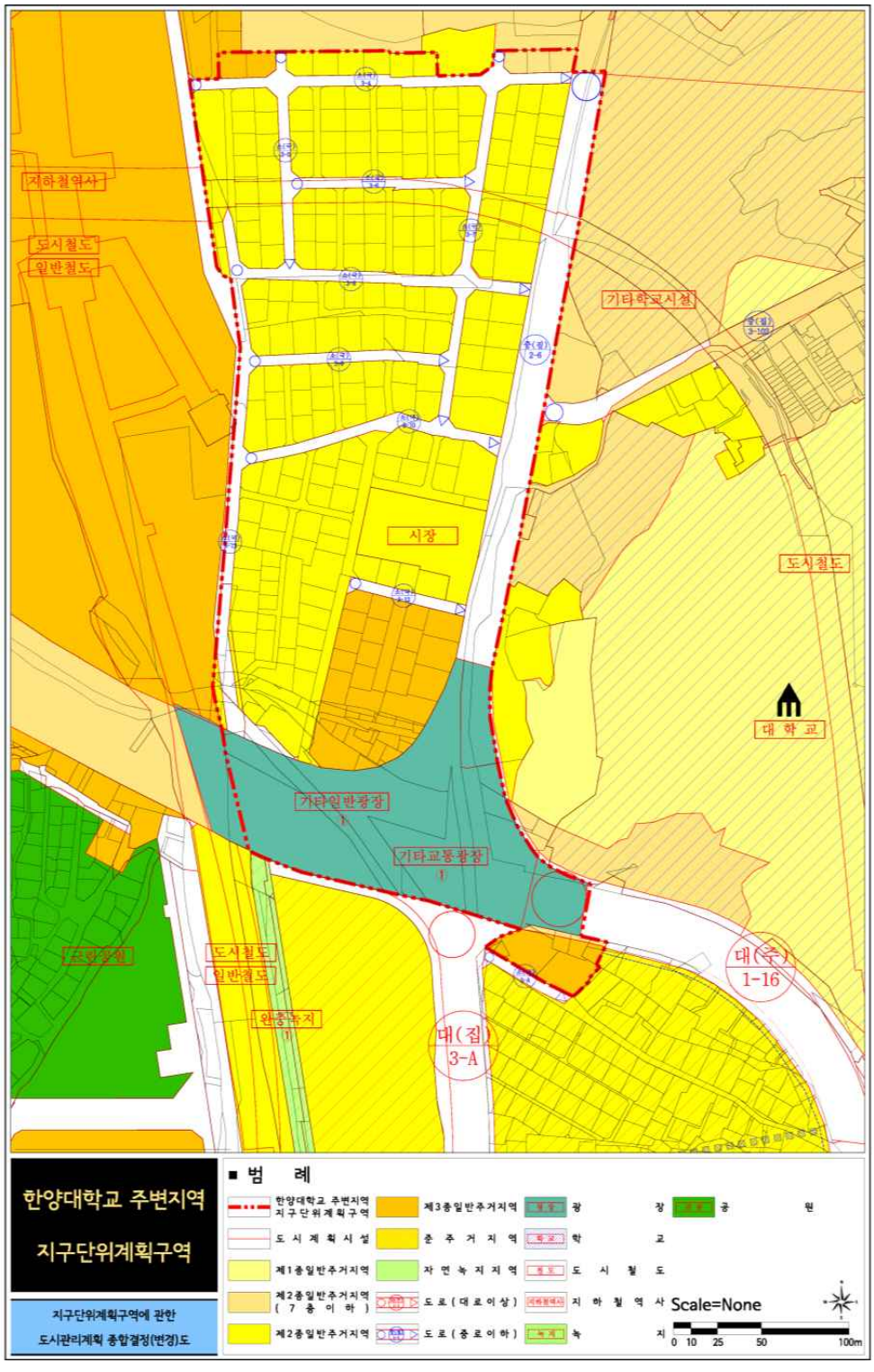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보도 부속형)	건축한계선 3m
공공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6m 이상 폭원 확보	

- 이하 여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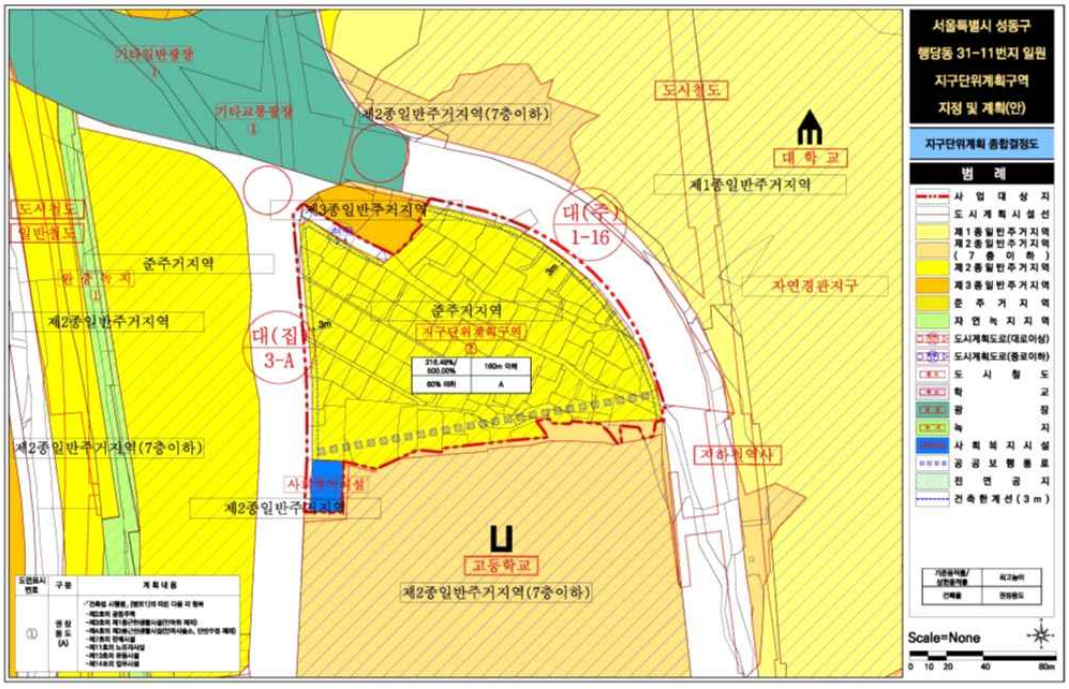
< 한양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기정)도 >



< 한양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변경)도 >



< 한양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도 >



◈ 성북구공고 제2026-691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북악산근린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내용
   가. 공 원 명 : 북악산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330-558
   다. 지　　목 : 대
   라. 부지사용계약 면적 : 10㎡

2. 계약기간 : 2025. 11. 30. ~ 2028. 11. 28.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공원녹지과(☎02-2241-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공고 제2026-6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7-9번지 일대 강북구 공고 제2024-1682호(2024.12.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6.01.21.)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4)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우체국	강북구 미아동 127-9번지	-	증)2,097.5	2,097.5	-	

○ 건축물의 범위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60% 이하	150% 이하	20m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개공지 및 보행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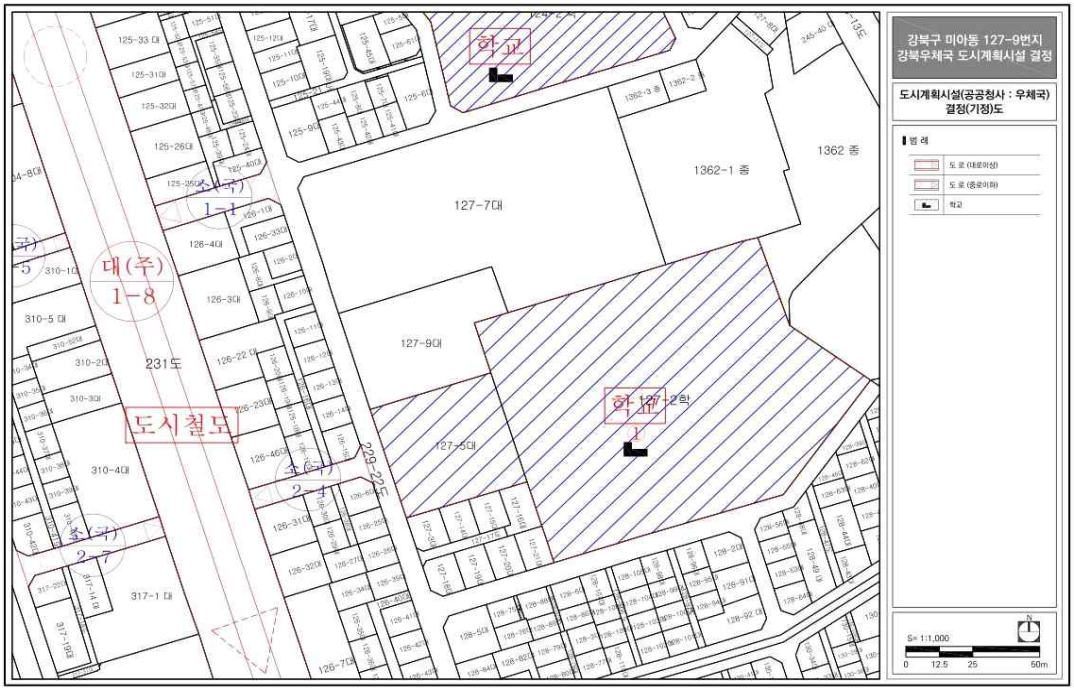
○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공공청사	○ 공공청사(우체국) 신설 - 면적: 2,097.5㎡	○ 우체국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노후된 강북우체국 건축물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02-901-6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 강북구공고 제2026-634호

오동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갱신(연장)을 위한 의견 청취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오동근린공원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갱신(연장)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안)
가. 계약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산27-122, 번동 산27-92
나. 계약면적 : 3,398㎡(번동 산27-122: 2,947㎡, 번동 산27-92: 451㎡)
다. 계약목적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라. 계약내용 : 붙임 참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공고방법 : 강북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아. 열람장소 및 문의처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02-901-6929)

붙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1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라 정하고, 강북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1-7	임야	280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지급)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 계약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29년 ○○월 ○○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협의하여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의자·음수대·안내표지판·산책로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의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과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울타리) 등 공원의 녹지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녹화공간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지방세법」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 강북구청장 (인)

◈ 강북구공고 제2026-658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0호(2010.03.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2호(2026.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39-181 일대
나. 조성계획 개요

구분		위치	공원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소공원	최초	미아동 439-181 일대	3,581.00	715.52	-	시설면적률 19.98%
어린이공원	최초	미아동 637-300 일대	8,649.00	4,479.20	-	시설면적률 51.79%

※ 시설별 세부 사항은 붙임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도면 참조

다.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라. 공람기간: 공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마.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공원녹지과(☎ 02-901-6923)
바.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조서

1. 총괄표(위치:강북구 미아동 439-181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3,581.00	715.52				44	
공원시설	소 계	515.60	515.60				-	
	기반시설 산책로	515.60	515.60				-	
	조경시설	-	-				-	
	휴양시설	199.92	199.92				17	
	유희시설	-	-				-	
	운동시설	-	-				-	
	관리시설	-	-				27	
녹지 및 기 타		2,865.48	-				-	
시설율 (법정 20%)		(715.52㎡ ÷ 3,581.00㎡) × 100 = 19.98%						
건폐율 (법정 20%)		-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581.00	715.52					44	
기반시설	계			515.60	515.60					-	
	산책로		〃	515.60	515.60					-	
휴양시설	계			199.92	199.92					17	
	휴게소	가	부지내	199.92	199.92					-	
	휴게소-1	가-1	〃	114.20	114.20					-	
	휴게소-2	가-2	〃	8.20	8.20					-	
	휴게소-3	가-3	〃	13.70	13.70					-	
	휴게소-4	가-4	〃	47.42	47.42					-	
	휴게소-5	가-5	〃	8.10	8.10					-	
	휴게소-6	가-6	〃	8.30	8.30					-	
	파고라	①	〃	-	-					1	
	야외테이블	②	〃	-	-					5	
	바테이블	③	〃	-	-					2	
	등의자	④	〃	-	-					6	
	앉음벽	⑤	〃	-	-					3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관리시설	계			-	-					27	
	공원안내판	⑥	부지내	-	-					5	
	공원등	⑦	〃	-	-					16	
	CCTV	⑧	〃	-	-					5	
	분전함	⑨	〃	-	-					1	
녹지 및 기타				2,865.48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515.60		–	–	
신설	산책로	–	1	2.3~2.5	155.2	370.20	산책로	남서측 대지경계	동남측 대지경계	
신설	산책로	–	2	1.8	19.2	34.5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신설	산책로	–	3	1.6	14.0	22.30	산책로	서측 대지경계	산책로-1	
신설	산책로	–	4	2.3	17.4	44.20	산책로	북서측 대지경계	산책로-1	
신설	산책로	–	5	1.8	17.7	33.10	산책로	북동측 대지경계	산책로-1	
신설	산책로	–	6	1.8	5.8	11.30	산책로	남동측 대지경계	산책로-1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조서

1. 총괄표(위치:강북구 미아동 637-300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8,649.00	4,479.20				119	
공원시설	소 계		1,663.90	1,663.90				-	
	기반시설	광장	458.10	458.10				-	
		산책로	1,205.80	1,205.80				-	
	휴양시설		832.10	832.10				46	
	유희시설		1,528.00	1,528.00				17	
	운동시설		447.70	447.70				7	
	관리시설		7.50	7.50				49	
녹지 및 기 타			4,169.80	4,169.80				-	
시설율 (법정 -%)			(4,479.20㎡ ÷ 8,649.00㎡) × 100 = 51.79%						
건폐율 (법정 20%)			-						

2. 시설조서(최초결정)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8,649.00	4,479.20					119	
기반시설	계			1,663.90	1,663.90					-	
	광장	가	부지내	458.10	458.10					-	
	산책로	산	〃	1,205.80	1,205.80					-	
휴양시설	계			832.10	832.10					46	
	휴게소	나	부지내	832.10	832.10					-	
	휴게소-1	나-1	〃	498.00	498.00					-	
	휴게소-2	나-2	〃	108.60	108.60					-	
	휴게소-3	나-3	〃	191.60	191.60					-	
	휴게소-4	나-4	〃	8.30	8.30					-	
	휴게소-5	나-5	〃	8.40	8.40					-	
	휴게소-6	나-6	〃	17.20	17.20					-	
	데크스탠드	①	〃	-	-					1	
	파고라	②	〃	-	-					4	
	조형플랜터	③	〃	-	-					1	
	야외테이블	④	〃	-	-					6	
	사각벤치	⑤	〃	-	-					16	
	바테이블	⑥	〃	-	-					5	
	등의자	⑦	〃	-	-					11	
	앉음벽	⑧	〃	-	-					2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유희시설	계			1,528.00	1,528.00					17	
	어린이놀이터	다	부지내	1,528.00	1,528.00					-	
	조합놀이대	⑨	〃	-	-					2	
	짚라인놀이대	⑩	〃	-	-					1	
	마운딩놀이대	⑪	〃	-	-					1	
	회전놀이대	⑫	〃	-	-					2	
	오르기놀이대	⑬	〃	-	-					2	
	슬라이드놀이대	⑭	〃	-	-					1	
	네트놀이대	⑮	〃	-	-					1	
	트램펄린	⑯	〃	-	-					2	
	소리놀이대	⑰	〃	-	-					2	
	흔들놀이대	⑱	〃	-	-					3	
운동시설	계			447.70	447.70					7	
	체력단련장	라	부지내	447.70	447.70					-	
	복합 체력단련시설	⑲	〃	-	-					3	
	체력단련시설	⑳	〃	-	-					4	
관리시설	계			7.50	7.50					49	
	음수전	마	부지내	7.50	7.50					1	
	공원안내판	㉑	〃	-	-					6	
	공원등	㉒	〃	-	-					30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CCTV	㉓	〃	-	-					11	
	분전함	㉔	〃	-	-					1	
녹지 및 기타				4,169.8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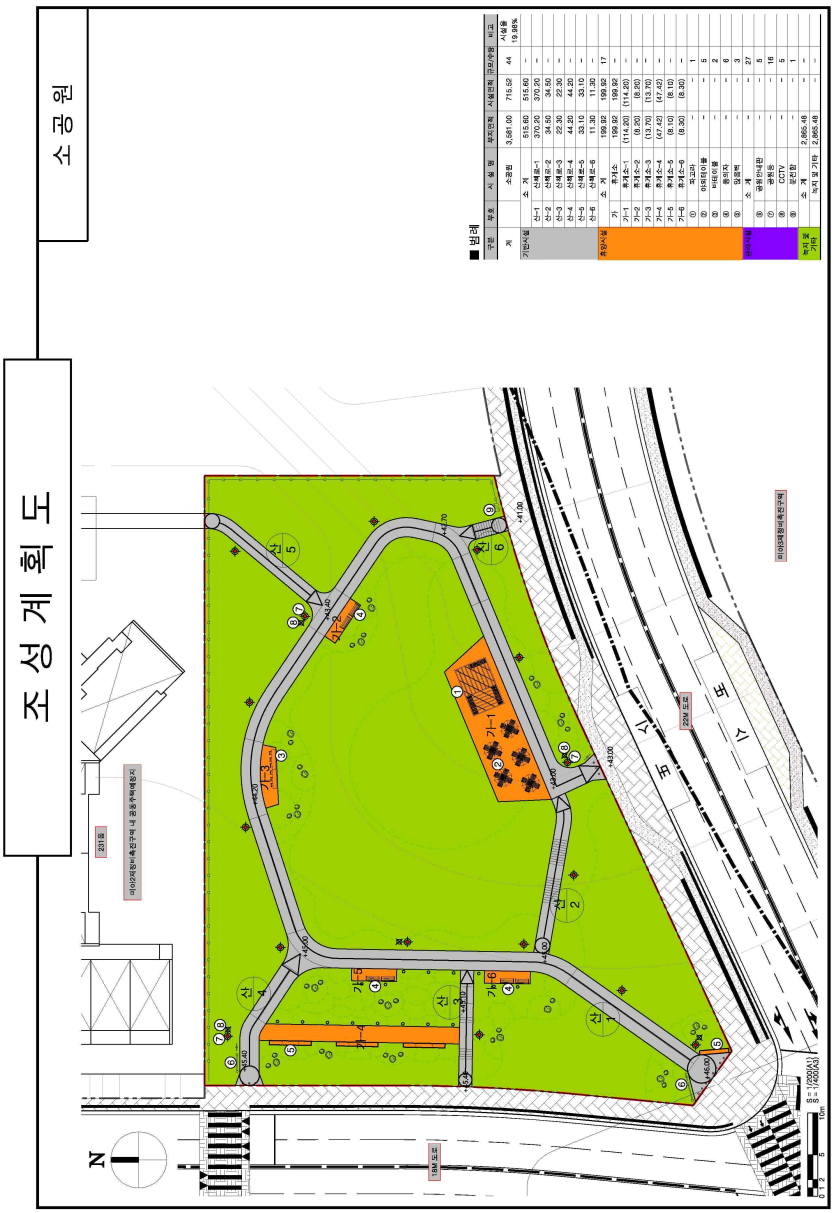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205.80		-	-	
신설	산책로	-	1	2.5	18.4	47.10	산책로	서측 대지경계	산책로-2	
신설	산책로	-	2	3.0	203.2	609.40	산책로	가-1	가-2	
신설	산책로	-	3	2.0~2.5	56.3	135.00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	가-1	
신설	산책로	-	4	3.0	6.5	24.60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	산책로-2	
신설	산책로	-	5	2.0	70.7	169.10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2	
신설	산책로	-	6	2.0	16.2	33.60	산책로	나-2	산책로-2	
신설	산책로	-	7	2.0	82.2	187.00	산책로	산책로-2	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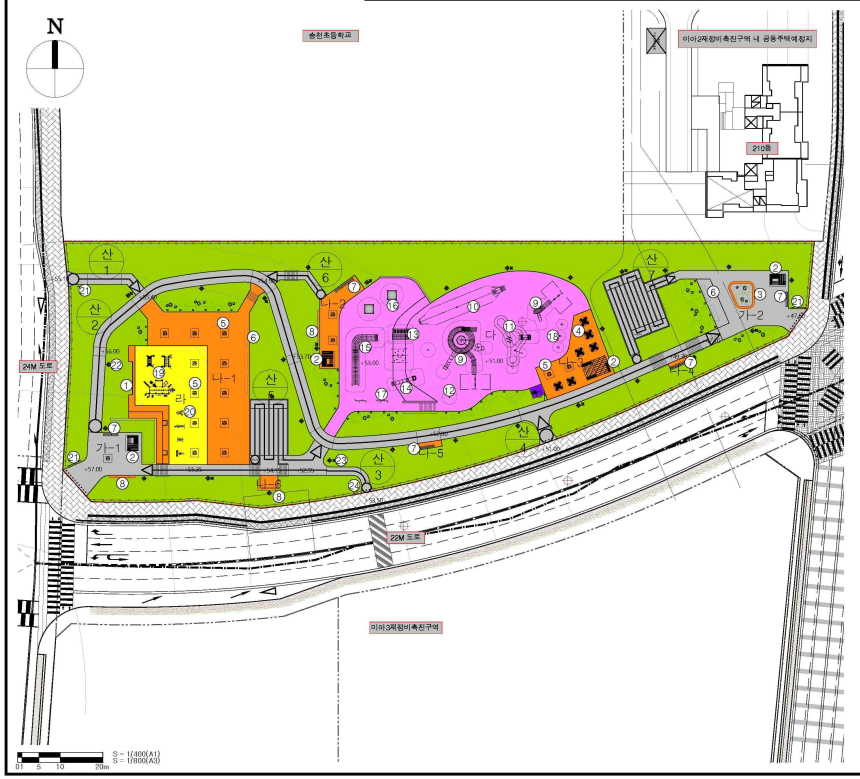
조 성 계 획 도

소 공 원


N
1/2000
0 20 40 80 120m
남 산 1 호 터 널
남 산 1 호 터 널
231m 도로
181m 도로
가-1
가-2
가-3
가-4
가-5
가-6
산-1
산-2
산-3
산-4
산-5
산-6
산-7
산-8
산-9
산-10
산-11
산-12
산-13
산-14
산-15
산-16
산-17
산-18
산-19
산-20
산-21
산-22
산-23
산-24
산-25
산-26
산-27
산-28
산-29
산-30
산-31
산-32
산-33
산-34
산-35
산-36
산-37
산-38
산-39
산-40

조 성 계 획 도

어 린 이 공 원



■ 범례

구분	부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수량	비고
계		어린이공원	8,649.00	4,479.20	119	시설물 51.79%
기반시설		소 계	1,663.90	1,663.90	-	
	가	광장	458.10	458.10	-	
	가-1	광장-1	(162.70)	(162.70)	-	
	가-2	광장-2	(295.40)	(295.40)	-	
	산-1	산록-1	47.10	47.10	-	
	산-2	산록-2	609.40	609.40	-	
	산-3	산록-3	135.00	135.00	-	
	산-4	산록-4	24.60	24.60	-	
	산-5	산록-5	169.10	169.10	-	
	산-6	산록-6	33.60	33.60	-	
	산-7	산록-7	187.00	187.00	-	
휴양시설		소 계	832.10	832.10	46	
	나	휴게소	832.10	832.10	-	
	나-1	휴게소-1	(498.00)	(498.00)	-	
	나-2	휴게소-2	(108.60)	(108.60)	-	
	나-3	휴게소-3	(191.60)	(191.60)	-	
	나-4	휴게소-4	(8.30)	(8.30)	-	
	나-5	휴게소-5	(8.40)	(8.40)	-	
	나-6	휴게소-6	(17.20)	(17.20)	-	
	①	데크스탠드	-	-	1	
	②	파고라	-	-	4	
	③	조형플랜터	-	-	1	
	④	이회데이블	-	-	6	
	⑤	시각벤치	-	-	16	
	⑥	바텀이블	-	-	5	
	⑦	등의자	-	-	11	
	⑧	앙음벽	-	-	2	
유희시설		소 계	1,528.00	1,528.00	17	
	다	어린이놀이터	1,528.00	1,528.00	-	
	⑨	조합놀이대	-	-	2	
	⑩	정리미놀이대	-	-	1	
	⑪	마운딩놀이대	-	-	1	
	⑫	회전놀이대	-	-	2	
	⑬	오르기놀이대	-	-	2	
	⑭	슬라이드놀이대	-	-	1	
	⑮	네트놀이대	-	-	1	
	⑯	흔들원판	-	-	2	
	⑰	소리놀이대	-	-	2	
	⑱	흔들놀이대	-	-	3	
운동시설		소 계	447.70	447.70	7	
	라	체력단련장	447.70	447.70	-	
	⑲	복합체력단련시설	-	-	3	
	⑳	체력단련시설	-	-	4	
관리시설		소 계	7.50	7.50	49	
	마	음수전	7.50	7.50	1	
	㉑	공원안내판	-	-	6	
	㉒	경계등	-	-	30	
	㉓	CCTV	-	-	11	
	㉔	분전함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4,169.80	-	-	
		녹지 및 기타	4,169.80	-	-	

◈ 강북구공고 제2026-669호

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0호(2010. 12. 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510호(2025. 9. 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된 "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09 일대
나. 조성계획 개요

구분		위치	공원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소공원	최초	미아동 791-109 일대	1,200.00	197.96	-	시설면적률 16.50%

※ 시설별 세부 사항은 붙임 공원조성계획 조서 및 도면 참조

다. 관계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라. 공람기간: 공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마.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8층 공원녹지과(☎ 02-901-6923)
바.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북구 미아동 791-109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1,200.00	197.96				16	
기반 시설	소 계	135.12	135.12				-	
	광 장	27.12	27.12				-	
	도 로	108.00	108.00				-	
휴양시설		24.00	24.00				4	
운동시설		36.00	36.00				3	
관리시설		2.84	2.84				9	
녹지 및 기타		1,002.04	-				-	
시 설 율 (법정 20% 이내)		(197.96 / 1,200.00) X 100 = 16.50%						
건 폐 율 (법정 5% 이내)		0.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200.00	197.96					16	
기반시설	소 계			135.12	135.12					-	
	광 장		부지내	27.12	27.12					-	
	진입광장	가	부지내	27.12	27.12					-	
	도 로		부지내	108.00	108.00					-	
조경시설	소 계			24.00	24.00					4	
	휴게쉼터	나	부지내	22.00	22.00					-	
	파고라	①	부지내	-	-	목재				1	
	앉음벽	②	부지내	2.00	2.00	목재				-	
	등벤치	③	부지내	-	-	목재				3	
운동시설	소 계			36.00	36.00					3	
	체력단련장	다	부지내	36.00	36.00					-	
	야외운동기구	④	부지내	-	-	철재				3	
관리시설	소 계			2.84	2.84					9	
	안내시설	라	부지내	2.84	2.84	철재				-	
	공원등	⑤	부지내	-	-	철재				1	
	볼라드	⑥	부지내	-	-	철재				8	
녹지 및 기타			부지내	1,002.04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7.0	108.00				
	산책로	3	1	4.0	27.0	108.00	산책로	진입로	광장	

조성계획도

미아 제11구역 내 소공원

S=1 : 150

■ 조성계획총괄표

구분	번호	시설명		복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수용(개)	건폐면적	비도입면적	구성비(%)
총계				1,200.00	-	16.0	-	-	100.0
시부시설 통계				197.96	197.96	16.0	-	-	16.5
기반시설	가	소계		135.12	135.12	-	-	-	11.3
		광장		27.12	27.12	-	-	-	2.3
		포토		108.00	108.00	-	-	-	9.0
휴양시설	나	소계		24.00	24.00	4.0	-	-	2.0
	①	휴게쉼터		22.00	22.00	-	-	-	1.8
	②	파고라		-	-	1.0	-	-	-
	③	앙벨록		2.0	2.0	-	-	-	0.2
	③	등받이		-	-	3.0	-	-	-
유출시설	다	소계		36.00	36.00	3.0	-	-	3.0
	④	체육단련장		36.00	36.00	-	-	-	3.0
		이외운동기구		-	-	3.0	-	-	-
편익시설	라	소계		2.84	2.84	9.0	-	-	0.2
	⑤	안내시설		2.84	2.84	-	-	-	0.2
	⑤	음용등		-	-	1.0	-	-	-
	⑥	볼라드		-	-	8.0	-	-	-
녹지 및 기타		소계		1,002.04	-	-	-	-	83.5
		녹지 및 기타		1,002.04	-	-	-	-	83.5



◈ 도봉구공고 제2026-629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 의거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 내용
   가. 시 설 명: 둘리(쌍문) 도시자연공원구역
   나.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89번지, 89-2번지, 89-3번지
   다. 지　　목: 임야
   라. 부지사용계약 면적
      - 방학동 산89: 9,982㎡, 방학동 산89-2: 6,547㎡, 방학동 산89-3번지: 7,624㎡
   마. 계약목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부지사용 계약일 : 2026. 4. 8.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6. 4. 15. ~ 2029. 4. 1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2091-37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공고 제2026-63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1997-10호(1997.3.1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염리동 24-170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6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24-170(한서공영주차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가칭)한서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다.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기존 950.01㎡ → 리모델링 후 937.76㎡(한서공영주차장 4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 참조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체육진흥과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체육진흥과(☎3153-98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가칭) 한서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염리동	24-170	주차장	1,480	1,480	주차장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건 물 조 서

○ 사업명 : (가칭) 한서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연번	건물소재지		지목	건물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염리동	24-170	주차장	3840.75	3840.75	주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	-	-	

◈ 동작구공고 제2026-781호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주민공람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2호(2023.9.21.)’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3호(2025.11.27.)’로 변경된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2025.12.4.)’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 이에 따라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함.

2026년 4월 16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4. 16. ~ 2026. 4. 30.(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8층 도시정비2과(☎02-820-1996)
다. 공람사유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변경에 따른 공람
라. 공람내용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지역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87,314.3㎡	전체 : 264동 노후·불량 : 221동(83.7%)	충족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통합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및 노후·저층주거지 삶의 질 향상 실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83,183.0	증)4,131.3	87,31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2호 (2023.9.21.)	일부 도로 편입

나. 토지이용계획(안)

■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83,183.0	100.00	-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주택구역 소계	61,660.7	74.13	-
		모아주택 1구역	12,065.0	14.50	-
		모아주택 2-1구역	8,802.3	10.58	-
		모아주택 2-2구역	5,726.0	6.89	시 심의이행 (25.9.22.)
		모아주택 2-3구역	5,283.7	6.36	-
		모아주택 3구역	10,945.0	13.16	-
		모아주택 4구역	8,047.0	9.67	-
		모아주택 5구역 (206-1구역)	7,880.3	9.47	시 심의이행 (23.5.15.)
		모아주택 6구역 (인정아파트)	2,911.4	3.50	구 심의이행 (23.7.31.)
	정비기반시설	도로 등	5,514.3	6.63	-
시행구역 외 (존치구역)		학교, 근생시설 등	16,008.0	19.24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87,314.3	100.0	도로 일부 편입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56,810.0	65.1	-
		사업추진구역 1구역	10,826.2	12.4	-
		사업추진구역 2-1구역	7,584.1	8.7	-
		사업시행구역 2-2구역	5,726.0	6.6	신남성연립 시 심의이행(25.9.22)
		사업추진구역 2-3구역	4,791.3	5.5	-
		사업추진구역 3구역	10,031.0	11.5	-
		사업추진구역 4구역	7,106.4	8.1	-
		사업시행구역 5구역	7,824.0	9.0	206-1구역 사업시행인가 (25.9.4)
		사업시행구역 6구역	2,921.0	3.3	인정아파트 사업시행인가 (25.6.20)
	정비기반시설	소계	8,330.7	9.5	-
		도로	6,773.6	7.8	-
		공공공지	382.8	0.4	4구역
		소공원	1,174.3	1.3	1구역, 2-1구역, 3구역
	종교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682.4	0.8	2-1구역
시행구역 외 (존치구역)		소계	21,491.2	24.6	-
		존치	1,059.1	1.2	2-1구역, 4구역
		학교, 근생시설 등	15,206.9	17.4	-
		도로	5,225.2	6.0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계획(안)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258	사당동 194-7	사당동 196-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25-643호 (25.11.27)	사당로2자길
변경	소로	1	A	10~18	국지도로	258 (45)	사당동 194-7	사당동 196-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25-643호 (25.11.27)	신남성초 저촉구간 일부 확폭
기정	소로	2	A	8~12	국지도로	115	사당동 188-12	사당동 185-2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25-643호 (25.11.27)	사당로2라길
변경	소로	2	A	11	국지도로	115	사당동 188-12	사당동 185-21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25-643호 (25.11.27)	선형 및 폭원 정형화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760	사당동 266	사당동 204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시54 (73.4.25)	사당로2차길
변경	소로	2	9	8~10	국지도로	800 (203)	사당동 266	사당동 708-1112	보행자 우선도로	서울시54 (73.4.25)	연장,폭원, 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248	사당5동 189-7	사당5동 188-1	일반도로	서울시282 (78.6.13)	사당로2아길
변경	중로	2	A	15	국지도로	81.6	사당동 708-535	사당동 190-236	일반도로	서울시282 (78.6.13)	규모,연장, 선형,기종점 변경
기정	소로	3	58	6	국지도로	150	사당동 203-2	사당동 204	일반도로	서울시366 (73.4.28)	사당로4길
변경	소로	3	58	6~8	국지도로	150 (74.3)	사당동 203-2	사당동 204	일반도로	서울시366 (73.4.28)	일부구간 확폭
기정	소로	3	59	6	국지도로	144	사당동 213-2	사당동 215	일반도로	서울시54 (73.4.25)	사당로6길
변경	소로	3	59	6-10	국지도로	144 (69)	사당동 213-2	사당동 215	일반도로	서울시54 (73.4.25)	일부구간 확폭
기정	중로	3	-	12	국지도로	740	사당동 산32-55	사당동 190-107	일반도로	동작구고시 제1994-35호 (94.9.22)	사당로2가길
변경	중로	3	-	12	국지도로	740 (42)	사당동 산32-55	사당동 190-107	일반도로	동작구고시 제1994-35호 (94.9.22)	일부구간 구역계 편입
기정	대로	3	81	25~41.5	보조 간선도로	2,470	상도동 (숭실대)	사당동 1001-31	일반도로	건설부고시 제1971-198호 (71.4.7)	사당로
변경	대로	3	81	25~41.5	보조 간선도로	2,470 (95)	상도동 (숭실대)	사당동 1001-31	일반도로	건설부고시 제1971-198호 (71.4.7)	일부구역편입 및 편입구간확폭
기정	중로	3	1001	10	집산도로	69.8	사당동 189-8	사당동 181-188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1-2호 (11.1.6.)	상도중 진출입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3	1001	10~16	집산도로	84.5	사당동 708-535	사당동 1160-2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11-2호 (11.1.6.)	연장확장 및 일부확폭, 지번 현행화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72	사당동 183-36	사당동 183-49	일반도로	서울시고시 제2025-643호 (25.11.27)	사당로2사길

※ 향후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 및 고시 예정
※ 각 연장 내 ( )는 확폭·편입 등 구역 내 해당 구간을 뜻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A	소로1-A	· 선형 변경 및 일부 확폭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선형 정형화 및 신남성초 교문 저촉구간 일부 확폭을 통한 보행 안전성 향상
소로2-A	소로2-A	· 선형 변경 및 폭 정형화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선형 및 폭 정형화
소로2-9	소로2-9	· 연장 및 폭원, 종점 변경 L=760m → 800m B=8m → 10m (L=250m) 종점 : 사당동204 → 사당동708-1112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연장 확대 및 종점 변경, 모아타운 구역 내 포함되는 구간 폭원 확대
소로3-	중로2-A	· 연장 축소 및 기·종점 변경 L=248m → 81.6m 기점 : 사당5동 189-7 → 사당동 708-535 종점 : 사당5동 188-1 → 사당동 190-236 · 폭원·규모 변경 B=6m(소로) → 15m(중로)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획지 구간 폐도와 선형 변경에 따른 기·종점 지번 변경 및 폭원 확장 (6m,소로→ 15m,중로)
소로3-58	소로3-58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B=6m → 6~8m (L=74.3m)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확대
소로3-59	소로3-59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B=6m → 6~10m (L=69m)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확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	중로3-	· 구역 확장에 따른 도로 일부 구역 내 편입 (L=42m)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구역 확장으로 일부 구간 구역 내 편입
대로3-81	대로3-81	· 구역 확장에 따른 도로 일부 구역 내 편입 (L=95m)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구역 확장으로 일부 구간 구역 내 편입 및 편입구간 도로 연결 원활성을 위한 폭원 확폭 - 기존 폭 25m → 편입 후 폭 30m
중로 3-1001	중로 3-1001	· 연장 증가 및 기·종점 변경 L=69.8m → 84.5m B=10m → 10~16m 기점 : 사당동 189-8 → 사당동 708-535 종점 : 사당5동 181-888 → 사당동 1160-2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연장 증가 및 일부 확폭 · 지번 현행화에 따른 기·종점 변경
-	소로3-A	· 도로 신설	· 모아타운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2) 철도 계획(안)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폭원(m)	연장(㎞)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일대~ 구로구 온수동 산2-1 일대 (광명시 구간 제외)	10~30	43.76	서울시고시 제1999-333호 ('99.10.25.)	-

3) 공원 계획(안)

■ 공원 결정 조서 : 신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소공원1	소공원	사당동 190-236번지 일원	-	증) 351.5	351.5	-	· 도시철도 중복지정 · 2-1구역
신설	-	소공원2	소공원	사당동 708-1110번지 일원	-	증) 444.7	444.7	-	· 1구역
신설	-	소공원3	소공원	사당동 202-24번지 일원	-	증) 378.1	378.1	-	· 3구역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1	· 공원 신설 (면적 351.5㎡)	·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	소공원2	· 공원 신설 (면적 444.7㎡)	·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	소공원3	· 공원 신설 (면적 378.1㎡)	·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4) 공공공지 계획(안)

■ 공공공지 결정 조서 : 신설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사당동 206-12 일대	-	증) 382.8	382.8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면적 382.8㎡	· 지역 내 부족시설 확보를 위한 유보지 확보로서 공공공지 신설

5) 학교 계획(안)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학교	초등학교	사당동 199-1	12,275	서울시고시 제192호 (73.12.10)	신남성초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거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기준 이상 설치

구 분	세대수	기준면적	설치기준	비 고
사업가능(추진)구역 1 (모아주택 1구역)	372세대	1,162.5㎡ 이상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1,000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2.5㎡×1.25이상 설치	구역 내
사업가능(추진)구역 2-1 (모아주택 2-1구역)	222세대	565.6㎡ 이상		구역 내
사업가능(추진)구역 2-2 (모아주택 2-2구역)	139세대	434.3㎡ 이상		구역 내
사업가능(추진)구역 2-3 (모아주택 2-3구역)	131세대	362.5㎡ 이상		구역 내
사업가능(추진)구역 3 (모아주택 3구역)	313세대	878.1㎡ 이상		구역 내
사업가능(추진)구역 4 (모아주택 4구역)	237세대	656.3㎡ 이상		구역 내
사업가능(추진)구역 5 (모아주택 5구역)	217세대	678.1㎡ 이상		구역 내
사업가능(추진)구역 6 (모아주택 6구역)	84세대	262.5㎡ 이상		구역 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상기의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이용시설 권장시설

구 분	시설유형	사유	비 고
권장시설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주변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보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마. 교통처리계획(안)

■ 교통처리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보차혼용통로	사당로2길~사당로2자길 (2-2구역 내)	· 사당로2길과 사당로2자길의 보행 연계 및 기존 가로 기능을 유지하고자 사업가능구역 2-2구역 내 보차혼용통로(6m) 계획	2-2구역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1)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

○ 해당없음

2) 거점사업 이외의 모아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안)

■ 기 정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8개 구역 추진현황임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 이외의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역 번호	구역	대표 지번	면적 (㎡)	노후도 (%)	사업유형	비고
1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구역	사당동 183-6	12,065.0	73.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2-1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1구역	사당동 190-161	8,802.3	87.8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2-2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2구역	사당동 192-1	5,726.0	100.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심의이행 (25.9.22.)
2-3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3구역	사당동 193-10	5,283.7	65.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3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구역	사당동 202-2	10,945.0	82.8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구역 번호	구역	대표 지번	면적 (㎡)	노후도 (%)	사업유형	비고
4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구역	사당동 206-2	8,047.0	74.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5	모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5구역	사당동 206-1	7,880.3	87.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심의이행 (23.5.15.)
6	모아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6구역	사당동 196	2,911.4	100.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 심의이행 (23.7.31.)

※ 개별 사업구역 면적은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 기준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변 경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8개 구역 추진현황임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 이외의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역 번호	구역	대표 지번	면적 (㎡)	노후도 (%)	사업유형	비고
1	사업시행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183-6	10,826.2	73.2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2-1	사업추진구역 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190-161	8,266.5	87.8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2-2	사업시행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192-1	5,726.0	100.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신남성연립 시 심의이행 (25.9.22.)
2-3	사업추진구역 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193-10	4,791.3	65.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3	사업추진구역 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202-2	10,031.0	82.8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206-2	7,106.4	74.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5	사업시행구역 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206-1	7,824.0	87.5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206-1구역 사업시행인가 (25.9.4.)

구역 번호	구역	대표 지번	면적 (㎡)	노후도 (%)	사업유형	비고
6	사업시행구역 6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사당동 196	2,921.0	100.0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인정아파트 사업시행인가 (25.6.20.)

※ 개별 사업구역 면적은 연번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 기준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시행구역 내	건폐율	2종일반	60% 이하	1구역~6구역
		3종일반	50% 이하	
	용적률	2종일반	기준 200% 이하 법적상한 250% 이하	
		3종일반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2-1, 2-3구역 통합시행 시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용도지역 및 밀도계획 상향 검토 가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 공원 및 공공공지의 건축물 밀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가능함
※ 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인접대지 경계부	· 가로변 건축한계선 1.5~3m 적용 (※사업추진구역 2-2구역 2~3m, 5구역 1.5~2m, 6구역 1.5m) · 가로 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커뮤니티시설 배치 권장구간	사당로2라길 및 사당로2자길변 (1, 2-1, 2-3구역)	· 가로활성화시설 중 커뮤니티(공동이용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 가로 기능 유지 위한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배치 권장	-
근린생활시설 배치 권장구간	사당로2차길변 (3, 4구역)	· 가로활성화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 기존 근린생활가로 기능 유지 위한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 생활지원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 권장	-
보차혼용통로	2-2구역 내	· 2-2구역 내 사당로2자길~사당로2가길 연결을 고려한 보차혼용통로(6m) 1개소 지정 · 사당로2가길 접속부 일부 2-1구역 포함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안)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시행 구역	A-1~ A-6	유 형		·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
		용 도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치	구분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분양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임대비율)
					공공	매입			
합 계				1,725	29	207	1,489	-	13.68%
A-1	사업시행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183-6 일대	40type	108	9	52	47	-	18.01%
			59type	158	5	1	152		
			84type	106	-	-	106		
			소계	372	14	53	305		
A-2-1	사업추진구역 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190-161 일대	40type	60	-	31	29	-	16.74%
			59type	82	-	5	77		
			84type	73	-	-	73		
			소계	215	-	36	179		
A-2-2	사업시행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192-1 일대	46type	26	11	-	15	-	10.07%
			59Atype	35	2	-	33		
			59Btype	24	1	-	23		
			84type	54	-	-	54		
			소계	139	14	-	125		
A-2-3	사업추진구역 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193-10 일대	40type	30	1	12	17	-	11.45%
			59type	50	-	2	48		
			84type	51	-	-	51		
			소계	131	1	14	116		
A-3	사업추진구역 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202-2 일대	40type	88	-	26	62	-	10.22%
			59type	186	-	7	179		
			84type	56	-	-	56		
			소계	330	-	33	297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206-2 일대	40type	72	-	27	45	-	11.39%
			59type	81	-	-	81		
			84type	84	-	-	84		
			소계	237	-	27	210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치	구분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		분양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임대비율)
					공공	매입			
A-5	사업시행구역 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사당동 206-1 일대	34type	26	-	24	2	-	20.28%
			54type	20	-	14	6		
			59type	119	-	6	113		
			84type	52	-	-	52		
			소계	217	-	44	173		
A-6	사업시행구역 6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사당동 196 일대	59Atype	38	-	-	38	-	-
			59Btype	12	-	-	12		
			84type	34	-	-	34		
			소계	84	-	-	84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3,183.0	증) 4,131.3	87,314.3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4.4	증) 58.4	192.8	0.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7,434.1	감) 29,213.1	18,221.0	20.9	-
	제2종일반주거지역	651.3	증) 27,242.4	27,893.7	31.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4,963.2	증) 6,043.6	41,006.8	47.0	-

※ 2-1, 2-3구역 통합시행 시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용도지역 및 밀도계획 상향 검토 가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 표시	사업구역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합 계		57,492.4	-	-	-
특별 건축 구역	사업시행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826.2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지역환경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	-
	사업추진구역 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266.5			
	사업시행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726.0			
	사업추진구역 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4,791.3			

도면 표시	사업구역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사업추진구역 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031.0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106.4			
	사업시행구역 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7,824.0			
	사업시행구역 6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2,921.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상기의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배제 및 완화)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 : 변경없음

○ 해당없음

3.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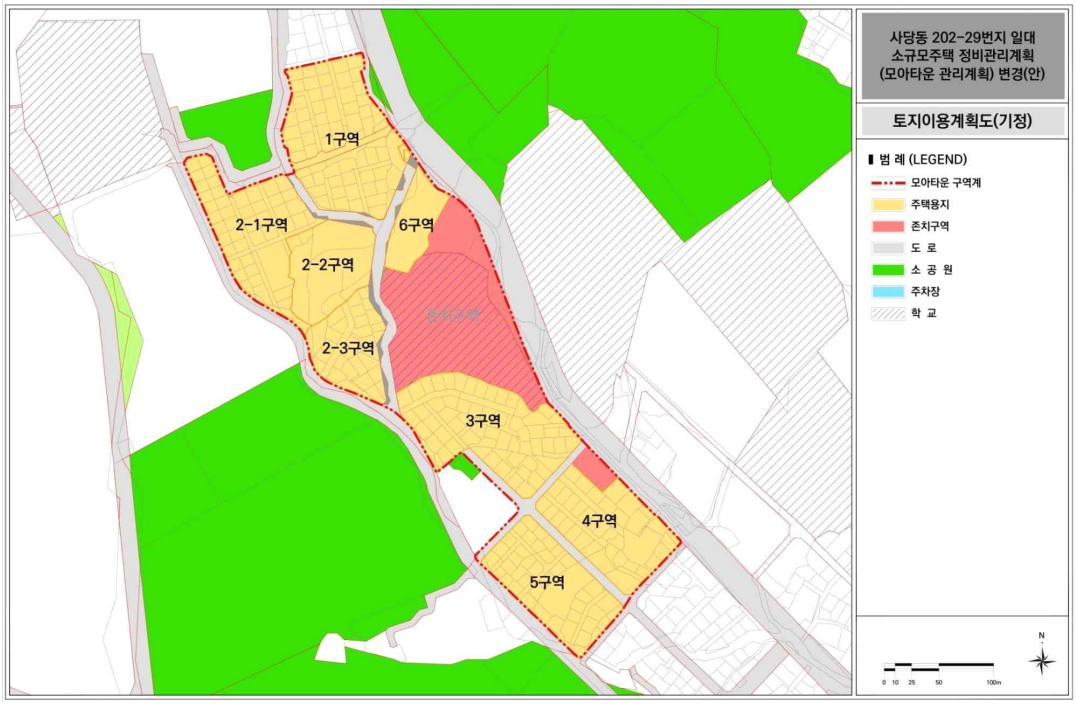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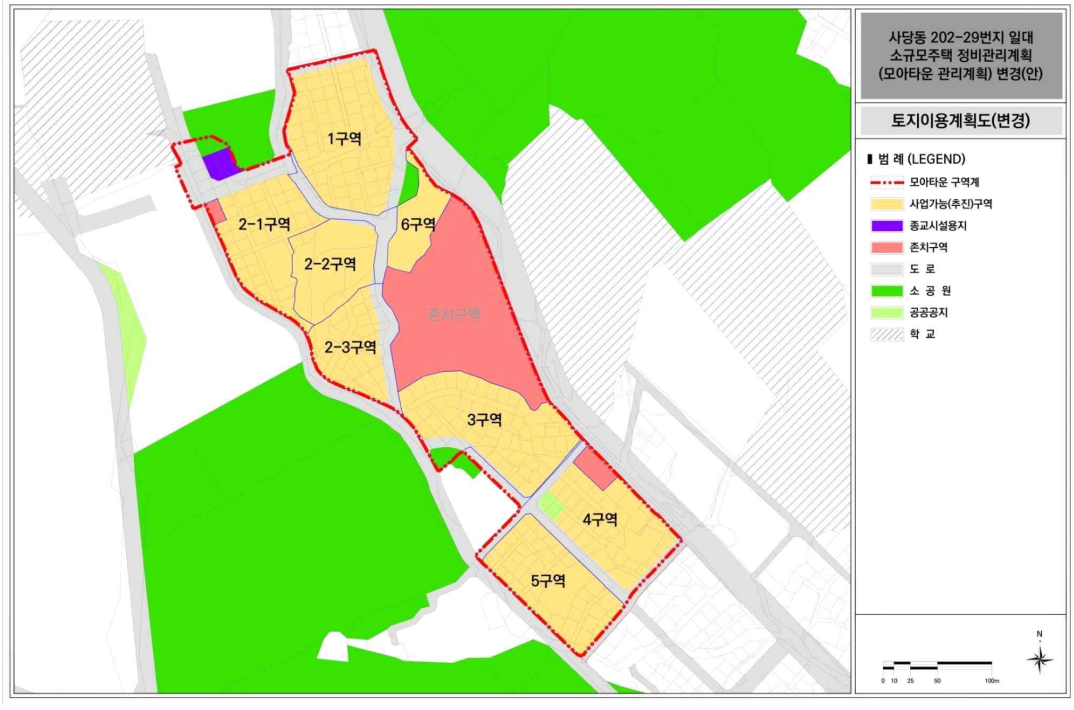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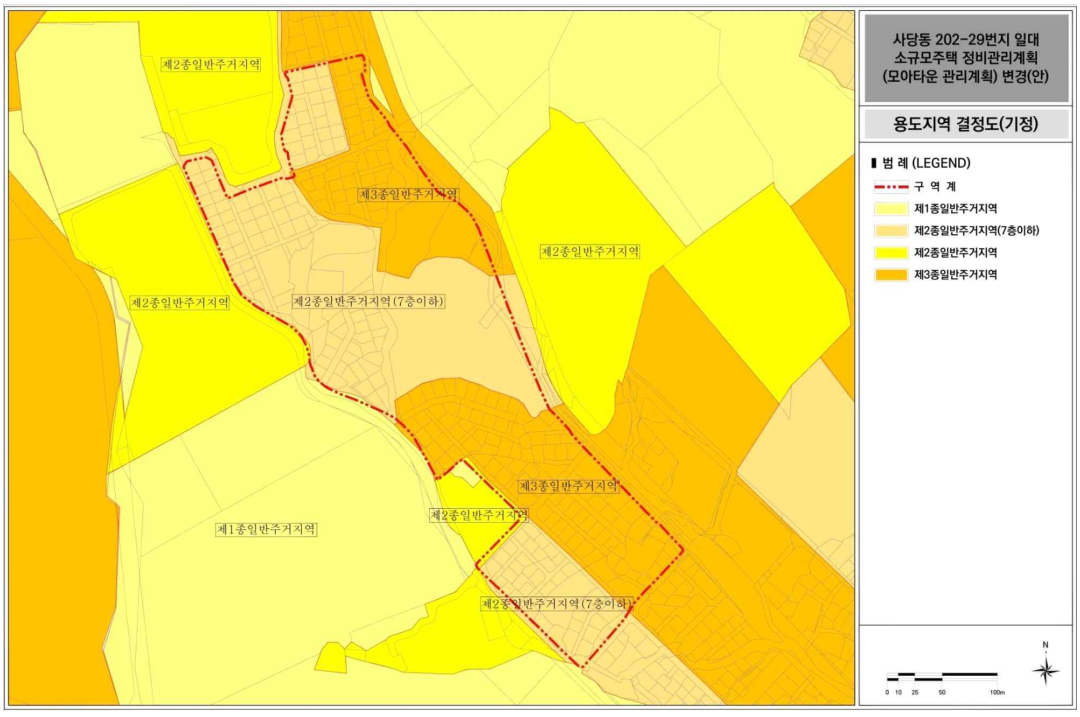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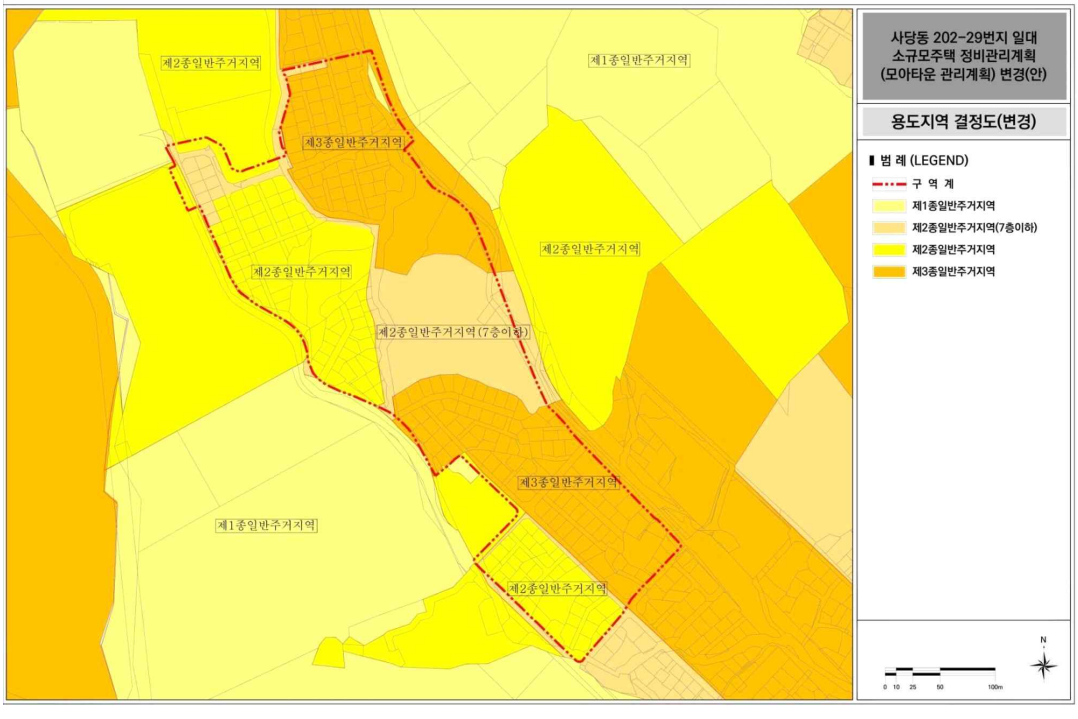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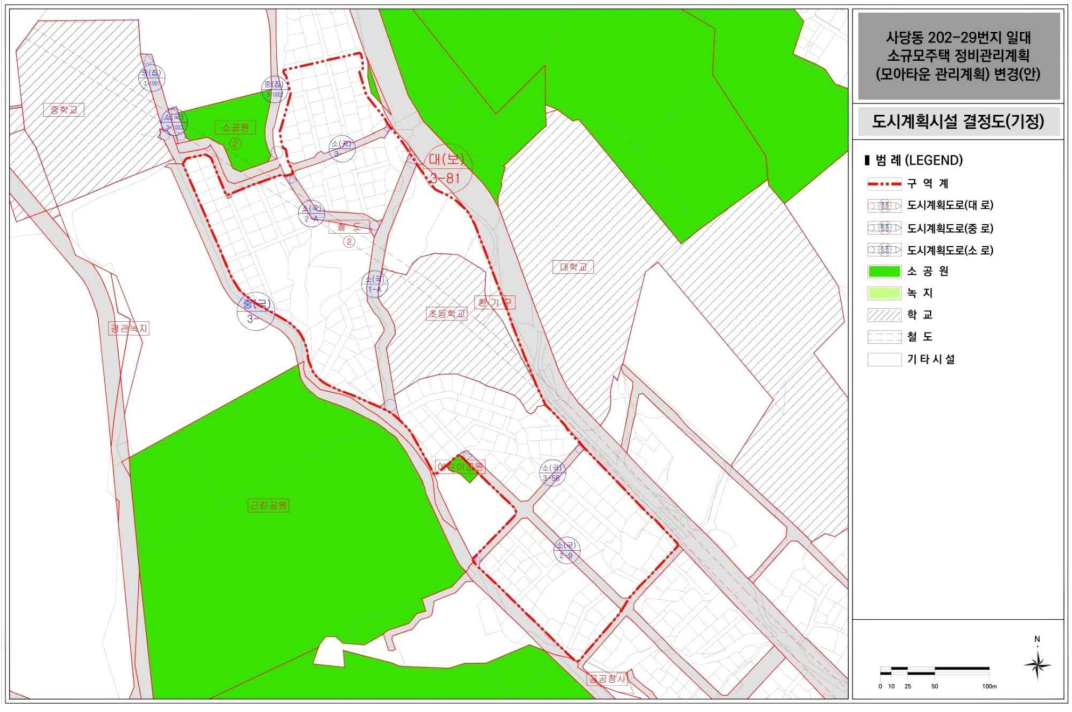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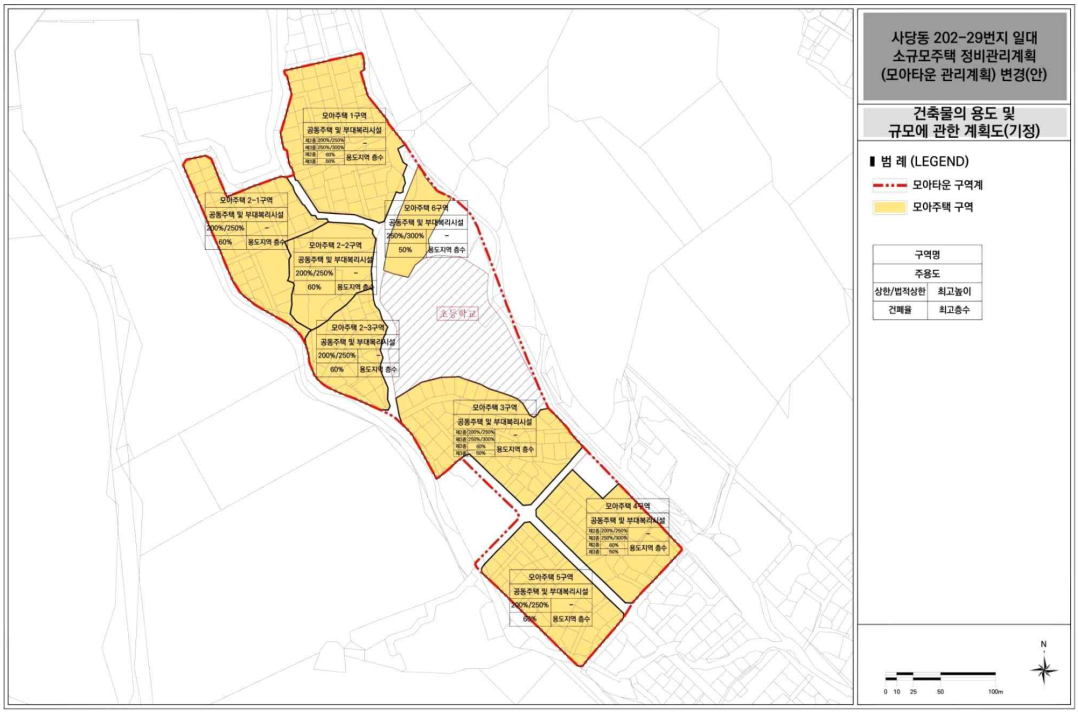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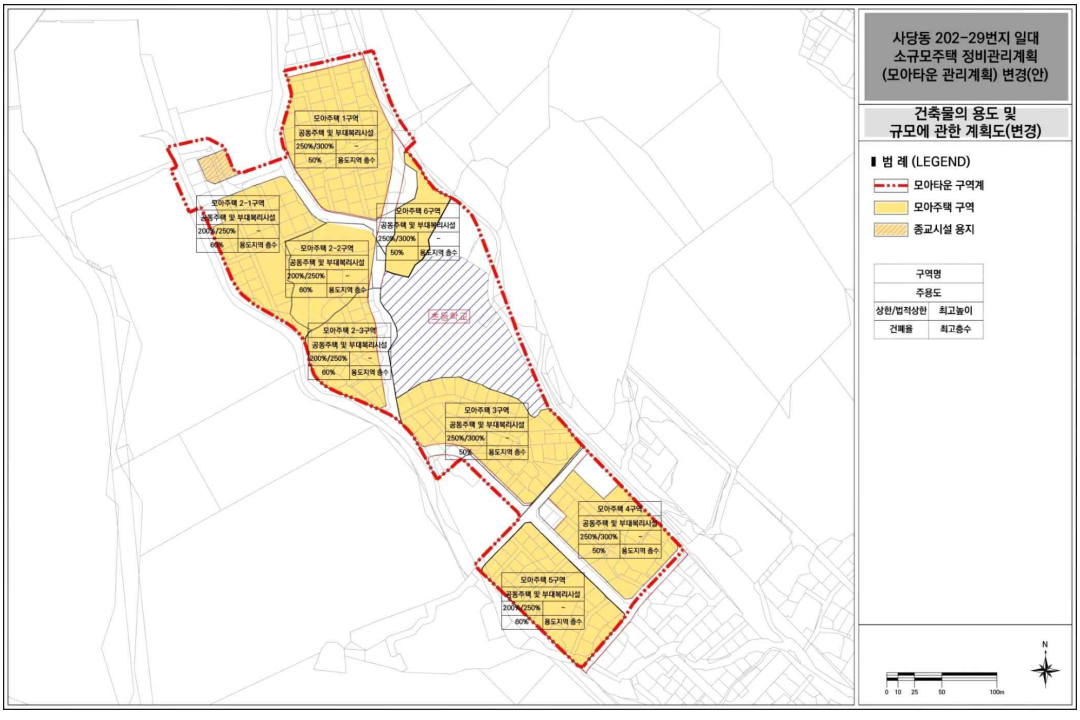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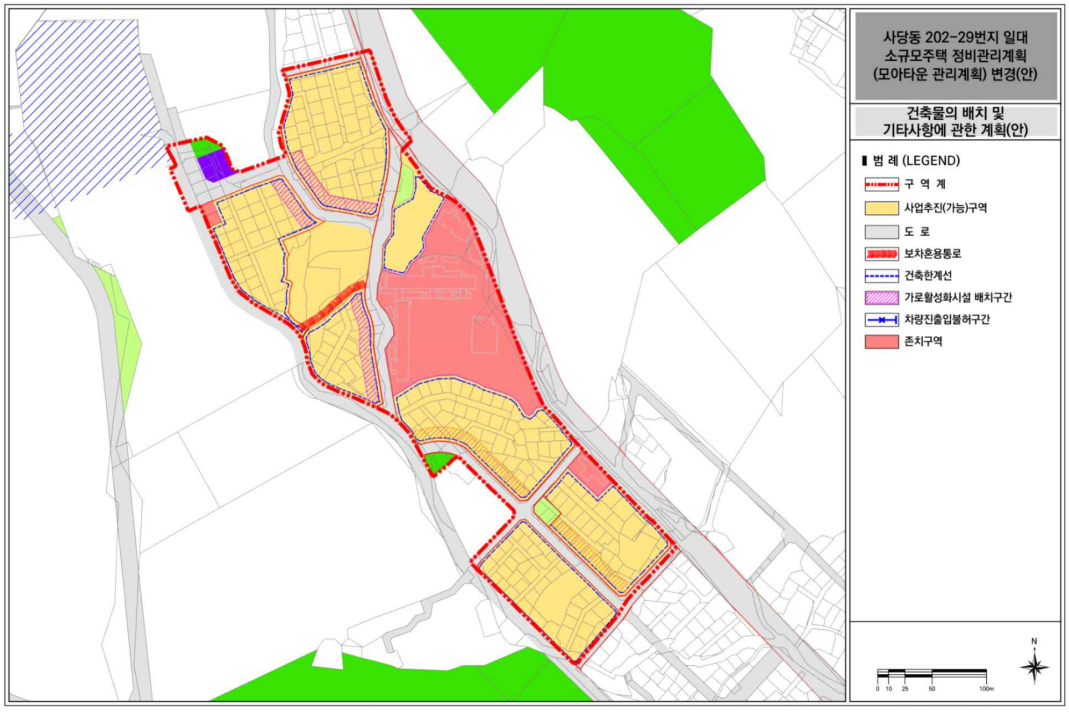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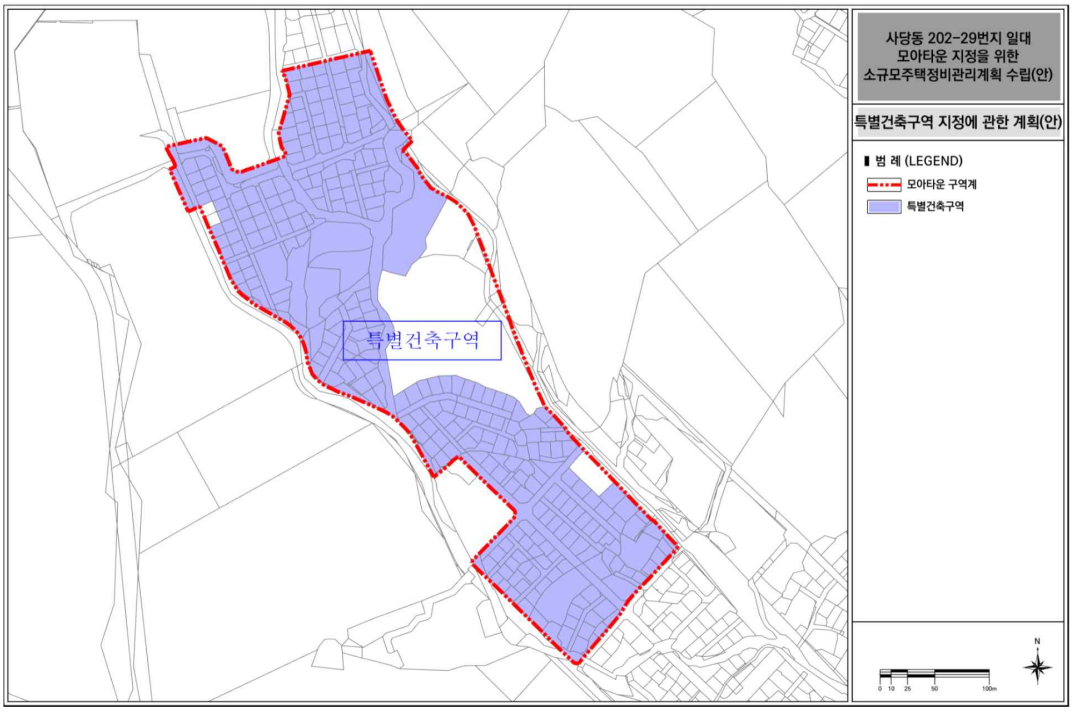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도(변경)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 강남구공고 제2026-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10호(2025.10.28)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98호(2025.12.26)로 결정 고시되고 강남구 고시 제2026-51호로 변경 고시 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세곡동 526-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변경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3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
- 명 칭: 강남구 헌릉로 590길(중로2-1) 신촌지구 연결교차로 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521.1㎡(도로 510.3㎡, 경관녹지10.8㎡)
- 규 모
  - 도로: 중로 2-1

연번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중로	2	1	15	집산도로	1,071	중로1-1	북측지구계	일반 도로	건고 05.12.29	일부선형 변경

  - 경관녹지

연번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1	경관녹지5	녹지	경관녹지	강남구 세곡동 526-4잡	588.5	건고 07.12.12	제2종일반 주거지역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층 경영지원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6년 6월 30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대장면적	편입		성명	주소	내용	
1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3	도	12,416.5	491.8	서울시 강남구				
2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26-3	잡	145.2	29.3	서울시 강남구				
계			12,561.7	521.1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9)

차. 관계서류 등은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공고 제2026-733호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5호(2017.09.21)에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82호(2025.12.4)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변경)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최초)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 일대
2. 공원면적 : 4,456.0㎡
3. 조성계획(안) :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녹지
4. 관련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송파구청 공원녹지과(☏2147-3387)
7. 본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가. 총괄표(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66일대)

구 분			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4,456.0	880.26	-	-	-		
공원시설	합계		4,456.0	880.26	-	-	-		
	기반시설	소계	778.46	778.46	-	-	-		
		도로	727.88	727.88	-	-	-		
		진입광장	50.58	50.58	-	-	-		
	조경시설		10.99	10.99	-	-	-		
	휴양시설		54.12	54.12	-	-	-		
	운동시설		36.69	36.69	-	-	-	-	
녹지 및 기타			3,575.74	3,575.74	-	-	-	-	
시설율(%)			시설율 : 19.75.%, 녹지율 : 80.2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구조	규모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계		-	4,456.0	880.26	-	-	-	-	-	-	
공원시설계		-	4,456.0	880.26	-	-	-	-	-	-	
도로 및 광장	소계	-	778.46	778.46	-	-	-	-	-	-	
	도로	-	727.88	727.88	-	-	-	-	-	-	
	진입광장	가-1	50.58	50.58	-	-	-	-	-	-	
조경시설	소계	-	10.99	10.99	-	-	-	-	-	-	
	앉음벽	A-1	10.99	22.0M	-	-	-	-	-	-	
휴양시설	소계	-	54.12	54.12	-	-	-	-	-	-	
	휴게공간	나-1	16.00	16.00	-	-	-	-	-	-	
	휴게쉼터	나-2	38.12	38.12	-	-	-	-	-	-	
	파고라A	B-1		1개소	-	-	-	-	-	-	
	파고라B	B-2		1개소	-	-	-	-	-	-	
운동시설	소계	-	36.69	36.69	-	-	-	-	-	-	
	운동공간	다-1	36.69	36.69	-	-	-	-	-	-	
	체력 단련시설A	C-1	-	1EA	-	-	-	-	-	-	
	체력 단련시설B	C-2	-	1EA	-	-	-	-	-	-	
	체력 단련시설C	C-3	-	1EA	-	-	-	-	-	-	
	체력 단련시설D	C-4	-	1EA	-	-	-	-	-	-	
기타시설	소계	-	3,575.74	-	-	-	-	-	-	-	
	녹지 및 기타	-	3,575.74	-	-	-	-	-	-	-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	합 계			-	310.64	727.88	-	-	-	
신규	소로	3	1	2.5	72.87	182.18	진입로	동측 진입로	서측 진입로	
신규	소로	3	2	2.5	127.47	323.92	연결로	소-1	소-1	
신규	소로	3	3	2.0	8.01	16.02	진입로	동측 진입로	소-2	
신규	소로	3	4	2.0	3.80	7.58	진입로	남측 진입로	소-1	
신규	소로	3	5	1.5	21.19	31.84	연결로	소-2	소-6	
신규	소로	3	6	1.5	11.75	17.66	연결로	소-2	소-7	
신규	소로	3	7	1.5	4.01	10.00	연결로	소-6	소-8	
신규	소로	3	8	4.0	7.91	30.79	연결로	소-7	가-1	
신규	소로	3	9	1.5	9.92	15.87	연결로	소-5	소-10	
신규	소로	3	10	2.0	30.00	60.00	연결로	소-1	가-1	
신규	소로	3	11	2.0	15.15	32.02	연결로	가-1	소-2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조선 기술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10동 309호	서울시계 내 한강 (미래한강본부 인근)	979.722㎡ (기선 1척, 부선 2척)	서울숲 선착장 파일공사	2026.04.07. ~ 2026.06.08.	' 26. 4. 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에스큐 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2 (드림빌딩 4층)	서울시계 내 한강 (방화대교)	77.25㎡ (기선 1척)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2026.04.20. ~ 2026.05.20.	' 26. 4. 7.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장애인 수상스키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198 (자양동 133-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198 (자양동 133-2)	34㎡ (수상레저기구 10척)	수상레저사업 운영	2026. 4. 10. ~ 2026. 10. 31.	2026. 4. 8.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에이스 해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	서울시계 내 한강 (행주대교 인근)	6.78㎡ (고무보트1척)	송유관로와 인근 수심측량 후 송유관로 노출 여부 조사	2026.04.13. ~ 2026.04.24.	’ 26. 4. 1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대상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버스 (대표 한상균)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1, 4층	· 한강버스 108 (선박 1척) · 한강버스 항로 및 선착장 (아라한강갑문~잠실대교)	324.05㎡	도선사업 운영	2026. 4. 12. ~ 2026. 12. 31.	2026. 4. 1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영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써클원네스 서울 (대표 박소희)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73	대체건조로 인한 휴업	공사면적 240㎡	대체건조를 위한 관로매설 공사	2026.4.15. ~ 2026.5.8.	2026. 4.13.
			관로매설 29.4㎡	관로매설	2026.5.9. ~ 2026.12.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88	서울시계내 한강 (강동대교)	(선박2척) 544.98㎡	내진보강공사 중 강동대교 교량받침 교체	허가일 ~ ' 26. 11. 18.	' 26. 4. 1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필름몬스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길 27, 4층	서울시계 내 한강 (성동구 성수동2가 827 일원)	7.2㎡ (고무보트1척)	tvN 드라마 〈위대한 방옥숙〉 촬영	2026.04.23.	' 26. 4. 14.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지오이앤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	서울시계 내 한강 (선유도~밤섬 일대)	6.71㎡ (고무보트1척)	서울복합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2026.04.22. ~ 2026.05.29.	'26. 4. 14.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16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04. 16. ~ 2026. 04. 29.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6. 04. 30. ~ 2026. 05. 13.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작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 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 달일	공시시 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번 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1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4 33	1	660522- *******	허*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 03-11 13:12	50,000	2026- 03-17	2026- 05-13	10788 35083 245	2026- 03-27	기타	제2026- 164호	1	2026- 04-09	2026- 04-16	2026- 04-29	210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말1길 8, 104동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분수광장 주변
2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4 35	1	941204- *******	박*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6- 02-22 09:04	50,000	2026- 03-17	2026- 05-13	10788 35083 244	2026- 03-27	기타	제2026- 164호	1	2026- 04-09	2026- 04-16	2026- 04-29	072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2,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나들목앞 주변
3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4 39	1	011013- *******	W****I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 03-13 18:58	50,000	2026- 03-17	2026- 05-13	10788 35083 267	2026- 03-27	폐문부재	제2026- 164호	1	2026- 04-09	2026- 04-16	2026- 04-29	04337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0길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역9번출구앞 광장 주변
4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4 41	1	711027- *******	김*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 03-14 08:40	50,000	2026- 03-17	2026- 05-13	10788 35083 269	2026- 03-26	기타	제2026- 164호	1	2026- 04-09	2026- 04-16	2026- 04-29	0480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6길 3-16,	61143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자양역아래 주변
5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4 83	1	820422- *******	반*수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 ******** *)자동차	2026- 03-16 08:26	50,000	2026- 03-18	2026- 05-13	10788 35086 564	2026- 03-30	기타	제2026- 164호	1	2026- 04-09	2026- 04-16	2026- 04-29	1290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6114357	운영총괄과	광나루한강공원내 거래여울마을 인근(98더6138)자동차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작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법인 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 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 제출 기한	등기번 호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송 달일	공시시 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번 호	납세자 기본 주소	부서코드	부서명	위반장소
6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4 89	1	910509- *******	김*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 03-11 00:50	50,000	2026- 03-20	2026- 05-13	10788 35094 308	2026- 04-02	기타	제2026- 164호	1	2026- 04-09	2026- 04-16	2026- 04-29	136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17번길 6-1,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달빛광장 2 주변
7	10-28 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2026 -03	0004 91	1	890116- *******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 주차행위(* ******** *)이륜차	2026- 03-14 13:25	50,000	2026- 03-20	2026- 05-13	10788 35094 310	2026- 04-02	폐문부재	제2026- 164호	1	2026- 04-09	2026- 04-16	2026- 04-29	04306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94다길	61143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내 2달빛광장 주변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1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 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관내 한강 L=41.5km
 - 면 적: 1,325,476㎡(암사생태공원 재정비 사업 5,665.6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암사생태공원 노후 이용환경 개선 및 재정비

5. 점용기간: 2024.1.25. ~ 2029.1.24.

6. 공사기간: 2026.4.10. ~ 2027.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1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02-758-3553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1번지 ~ 노원구 상계동 813번지
 - 면 적: 2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중송전 전력케이블 매설

5. 점용기간: (당초) 2020.10.5. ~ 2025.12.31.
 (변경) 2026.01.01. ~ 2030.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1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장(치수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6-41
 (변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66-41, 642-76
 - 면 적 : (당초) 395㎡ → (변경) 618㎡

4. 점용의 목적 : (당초) 고척교 하부 스탠드 데크 조성
 (변경) 고척교 하부 스탠드 데크 조성,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5. 점용기간 : 2026.1.23. ~ 2031.1.22.

6. 공사기간 : (당초) 2026.2.1. ~ 2026.5.15. → (변경) 2026.2.1. ~ 2026.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기전처) ☎02-2290-6377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86(두모교 하부)
 - 면 적 : 57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두모교 경관조명용 영상투사장치(빔프로젝트) 설치

5. 점용기간 : 2026.04.09. ~ 2031.04.08.

6. 공사기간 : 2026.04.09. ~ 2026.05.15.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양천구청장(치수과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양천구청)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36-1번지
 - 면 적: (당초) 204.05㎡ → (변경) 385.3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당초) 신목동역 바이크라운지
 (변경) 안양천 수변활력거점 수변카페 및 캐노피 조성
 - 내 역: (당초) 자전거 전용 주차장(120대), 화장실, 스마트 쉼터 등
 (변경) 카페, 화장실, 신목동역 출입구 우수피해 방지 위한 캐노피 설치 등

5. 점용기간: 2025.6.24.~2030.6.23.

6. 공사기간: (당초) 착수일로부터~2025.12.31.
 (변경) 착수일로부터~2026.12.31.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6호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94('24.02.26.)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 일부 오기 등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정정 사유

–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재 내용 중 일부 오기 사항 및 단서 누락 사항을 정정하기 위함

Ⅱ. 정정 내용

–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보상계수	적용량
정정전	산업육성	뷰티 · 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 뷰티 · 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사업자 : 패션, 섬유류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정률	0.3	최대 50%
정정후	산업육성	뷰티 · 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 뷰티 · 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디자인 사업자 : 패션, 섬유류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 전체 연면적 중 20% 이상 업종 도입 시	정량	50%	최대 50%

※ 타 인센티브 사항은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름
※ 산업육성(뷰티 · 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항목의 경우 뷰티 · 패션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이 수립 완료 시부터 적용 가능

Ⅲ. 그 외 사항은 정정 내용 없음

Ⅳ.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02-2133-4635),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84,-5785)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 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